발 간 등 록 번 호
32-9741568-001972-01

연 구 보 고 서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사법정책연구원

사 법 정 책 연 구 원
연구총서 2026-11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Measures to Promote the Law-Related Education by the Courts for Youth

연구책임자: 김 봉 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2014. 1. 1. 대법원 산하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2024년도에 선정된 연구과제 중 하나인『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연구의 진행 단계에 따라 연구원의 내부 검토 및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이고 충실한 자문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보고서가 국민을 위한 사법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좋은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용 목차

국문 요약 ····· xv

Abstract ····· xvi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

Ⅰ. 연구의 내용 ····· 4

Ⅱ. 연구의 방법 ····· 7

제2장 청소년 법교육에 관한 일반적 고찰 ····· 9

제1절 법교육과 관련한 기초적 이론 ····· 11

Ⅰ. 법교육의 개념 ····· 11

Ⅱ. 법교육과 유사 교육과의 구별 ····· 14

1. 인권교육과의 구별 ····· 14

2. 정치교육과의 구별 ····· 14

Ⅲ. 법교육의 목적 ····· 16

Ⅳ. 법교육지원법에 관한 개괄적 고찰 ····· 17

1. 법교육지원법의 제정 배경 ····· 17

2. 법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 ····· 19

3. 법교육지원법을 통한 법교육의 체계화와 활성화 ····· 25

Ⅴ. 법교육의 유형화 ····· 27

Ⅵ. 법교육 방식 ····· 27

1. 강의식 교육 ····· 28

2. 사례연구법 ····· 29

3. 모의재판 ····· 30

4. 판례 활용 법교육 ····· 32

5. 지역사회기반 학습 ····· 34

가. 현장 학습 ····· 34

나. 외부자원인사 활용 ····· 34

6. 역할놀이 ····· 35

7. 배심원 토론 ····· 36
8. 학생자치법정 ····· 38
9. 계기 수업 ····· 42
10. 교육연극 ····· 43
Ⅶ. 소결 ····· 45
제2절 학교 법교육과 학교 외 법교육 ····· 46
Ⅰ. 학교 법교육의 연혁(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46
1. 대한제국 말기 ····· 46
2. 교수요목기(1946년~1954년) ····· 46
3. 제1차 교육과정기(1954년~1963년) ····· 47
4. 제2차 교육과정기(1963년~1973년) ····· 48
5. 제3차 교육과정기(1973년~1981년) ····· 49
6. 제4차 교육과정기(1981년~1987년) ····· 50
7. 제5차 교육과정기(1987년~1992년) ····· 50
8. 제6차 교육과정기(1992년~1997년) ····· 51
9. 제7차 교육과정기(1997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 52
가. 제7차 교육과정기 ····· 52
나. 2007 개정 교육과정 ····· 54
다. 2009 개정 교육과정 ····· 55
라. 2015 개정 교육과정 ····· 57
10. 2022 개정 교육과정(현재) ····· 59
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 59
나. 2022 개정 초·중 공통 교육과정 '사회'에서의 법 ····· 59
다.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통합사회2'에서의 법 ····· 61
라.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진로선택과목인 '법과 사회' ····· 63
Ⅱ. 학교 법교육의 중요성과 문제점 ····· 67
1. 학교 법교육의 중요성 ····· 67
2. 학교 법교육의 문제점 ····· 69
가. 학교 법교육의 현실과 법교육 효과 등 ····· 69
나. 학교 법교육 교사의 문제 ····· 74
Ⅲ. 학교 외 법교육 주체의 역할 ····· 75
Ⅳ. 소결 ····· 76

제3장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 79

제1절 논의에 앞서 ····· 81

Ⅰ.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의 목표와 의의 등 ····· 81
1. 청소년 법교육의 목표로서의 사법 신뢰와 사법 접근성 ····· 81
가. 사법 신뢰의 측면 ····· 81
나. 사법 접근성의 측면 ····· 84
2. 청소년 법교육의 의의 ····· 85
3. 청소년 법교육의 강점 ····· 87
Ⅱ. 법원 법교육의 근거 ····· 88
제2절 대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 93
Ⅰ. 서설 ····· 93
Ⅱ. 법원전시관 학교연계 법교육 프로그램 ····· 94
1. 초등학교 고학년 ····· 94
2. 중 · 고등학생 ····· 96
Ⅲ. 법원전시관 방학 법교육 프로그램(2025년 겨울방학을 중심으로) ····· 97
1. 개요 ····· 97
2. 어린이 판사의 하루 ····· 98
가. 교육 일시와 참가 현황 등 ····· 98
나. 설문조사 결과 ····· 99
3. 공정한 판결을 부탁해 ····· 101
가. 교육 일시와 참가 현황 등 ····· 101
나. 설문조사 결과 ····· 102
4. 가인의 꿈, 나의 꿈 ····· 104
가. 프로그램 내용과 구성 ····· 104
나. 설문조사 결과 ····· 105
5. 어린이 활동지와 함께하는 전시 해설 ····· 106
6. 방학 법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주요 후기 ····· 107
Ⅳ.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 109
Ⅴ. 기타 법교육 프로그램 ····· 110
1. 법원전시관 견학 ····· 110
2. 사법역사문화관 법교육 프로그램 ····· 111
3. 대한민국 법원의 날 프로그램 ····· 112
4. 사법견학 프로그램 ····· 113
5. 대법원 유튜브 등 ····· 113
제3절 사법연수원의 청소년 법교육 ····· 115
Ⅰ. 서설 ····· 115
Ⅱ. 경기공유학교 연계 법교육 ····· 116

Ⅲ. 방학 중 청소년 법교육 ····· 118
1. 초등학생 법교육 ····· 118
가. 법교육 일정 ····· 118
나. 설문조사 결과 ····· 118
2. 중학생 법교육 ····· 123
가. 법교육 일정 ····· 123
나. 설문조사 결과 ····· 124
3. 고등학교 법교육 ····· 127
가. 법교육 일정 ····· 127
나. 설문조사 결과 ····· 128
Ⅳ. 기타 ····· 132
제4절 각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 133
Ⅰ. 법원의 법강연 ····· 133
1. 서설 ····· 133
2. 대전고등법원 ····· 133
3. 서울북부지방법원 ····· 134
4. 춘천지방법원 ····· 134
5. 기타 법원 ····· 136
Ⅱ. 법원 체험 프로그램 ····· 137
Ⅲ.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 143
1. 서설 ····· 143
2. 부산가정법원 ····· 144
3. 광주지방법원 ····· 144
4. 창원지방법원 ····· 145
제5절 소결 ····· 146

제4장 해외 주요국에서의 청소년 법교육 ····· 149

제1절 미국 ····· 151
Ⅰ. 미국에서의 법교육 전개 ····· 151
Ⅱ. 미국 학교에서의 법교육과 법원 외 법교육 주체 ····· 156
Ⅲ. 미국 법원에서의 법교육 ····· 161
1. 연방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 161
2. 연방법원행정처의 청소년 법교육 ····· 165
3. 연방사법센터의 청소년 법교육 ····· 167
4. 국립 주 법원센터 ····· 168

5. 각 주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 170
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 170
나. 워싱턴주 대법원 ····· 170
다. 코네티컷주 대법원 ····· 170
라. 미시간주 대법원 ····· 171
마. 테네시주 대법원 ····· 172
바. 유타주 대법원 ····· 172
제2절 영국 ····· 173
Ⅰ. 영국에서의 법교육 전개 ····· 173
Ⅱ. 영국에서의 법원 외 법교육 주체 ····· 176
Ⅲ. 영국 법원에서의 청소년 법교육 ····· 177
1. 영국 대법원 ····· 177
2. 국립사법박물관 ····· 178
3. 치안판사의 법교육 ····· 179
제3절 독일 ····· 180
Ⅰ. 독일에서의 법교육 전개 ····· 180
Ⅱ. 독일에서의 학교 법교육과 법원 외 법교육 주체 ····· 182
1. 독일에서의 학교 법교육 ····· 182
2.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 185
3. 주 법무부 ····· 186
4. 독일 변호사협회 ····· 187
Ⅲ. 독일 법원에서의 청소년 법교육 ····· 189
1. 법원견학 ····· 190
2. 학교방문 법교육 ····· 191
제4절 일본 ····· 193
Ⅰ. 일본에서의 법교육 전개 ····· 193
Ⅱ. 일본에서의 법원 외 법교육 주체 ····· 195
1. 일본에서의 학교 법교육 ····· 195
2. 일본 법무성 ····· 196
3. 일본 변호사연합회 ····· 197
4.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 ····· 198
Ⅲ. 일본 법원에서의 청소년 법교육 ····· 199
1. 일본 최고재판소 ····· 199
2. 일본 하급재판소 ····· 201
제5절 소결 ····· 203

제5장 법원 외 주요 법교육 주체의 청소년 법교육 ····· 207

제1절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 209
Ⅰ. 법무부 ····· 209
1. 법교육 통합 플랫폼 이로운법 ····· 209
2. 법무부 솔로몬로파크 ····· 213
3. 청소년꿈키움센터 ····· 217
4. 검찰청 ····· 218
5. 법무부 법교육 최근 동향 ····· 218
가. 법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법교육의 강화 ····· 218
나. 유튜브 활동의 강화를 통한 청소년 법교육의 활성화 ····· 220
Ⅱ.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 221
Ⅲ. 법제처 ····· 224
Ⅳ.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 225
1. 헌법재판소 ····· 225
2. 헌법재판연구원 ····· 228
Ⅴ. 교육청 ····· 232
제2절 민간단체 ····· 235
Ⅰ. 한국법교육센터 ····· 235
Ⅱ.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 239
Ⅲ. 대형로펌 공익재단 ····· 242
제3절 소결 ····· 243

제6장 법원 청소년 법교육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 ····· 247

제1절 법교육 조직구성과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 249
Ⅰ. 법교육 조직 ····· 249
1. 법원의 현황 ····· 249
2. 다른 법교육 주체의 현황 ····· 251
3. 개선방안 ····· 251
Ⅱ. 법교육 전문인력 ····· 252
1. 법원의 현황 ····· 252
2. 다른 법교육 주체의 현황 ····· 253
3. 개선방안 ····· 253
제2절 법원의 법교육 대상 인원과 지역의 확대 ····· 255
Ⅰ. 법교육 대상 인원의 확대 ····· 255

1. 법원의 현황 ····· 255
2. 다른 법교육 주체의 현황 ····· 256
3. 개선방안 ····· 256
Ⅱ.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법교육 지역의 확대 ····· 258
1. 법원의 현황 ····· 258
2. 다른 (해외) 법교육 주체의 현황 ····· 258
3. 개선방안 ····· 259
제3절 법원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 261
Ⅰ. 법원 체험형 법교육의 의의 ····· 261
Ⅱ. 다른 (해외) 법교육 주체의 현황 ····· 261
Ⅲ. 법원의 현황과 개선방안 ····· 262
제4절 법교육 자료의 제작 및 배포 ····· 265
Ⅰ. 법원의 현황 ····· 265
Ⅱ. 다른 (해외) 법교육 주체의 현황 ····· 266
Ⅲ. 개선방안 ····· 269
제5절 법원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의 구축 ····· 271
Ⅰ.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의 장점 ····· 271
Ⅱ. 법원의 현황과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의 의의 ····· 271
Ⅲ. 다른 (해외) 법교육 주체의 현황 ····· 272
Ⅳ.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의 핵심적 내용 구성 ····· 273
제6절 가칭 '사법부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 275
Ⅰ. 규칙제정의 필요성 ····· 275
Ⅱ. 규칙제정안의 예시 ····· 275
제7절 기타 ····· 278
Ⅰ. 법교육에서의 협력관계 구축의 확대 ····· 278
Ⅱ. 법교육 경연대회의 활성화 ····· 279
Ⅲ. 교사에 대한 사법교육 직무연수의 강화와 활성화 ····· 280
1. 사법교육 직무연수의 의의 ····· 280
2. 사법교육 직무연수의 강화와 활성화 방안 ····· 280

제7장 결론 ····· 283

참고문헌 ····· 290

표 목차

[표 1] 2009년 법교육위원회 법교육 사업 운영 방향 ····· 22
[표 2] 사례연구법 기반 법교육 표준 교육안 ····· 30
[표 3] 모의재판 표준 교육안의 예시 ····· 32
[표 4] 판례 활용 법교육안의 예시 ····· 33
[표 5] 역할놀이 법교육안 예시 ····· 36
[표 6] 배심원 토론 법교육안 ····· 37
[표 7] '법과 사회' 교과서의 목표 체계 ····· 53
[표 8]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법과 사회'의 내용 체계 ····· 54
[표 9]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법과 사회'의 내용 체계 ····· 55
[표 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법과 정치'의 내용 체계 ····· 56
[표 1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정치와 법'의 내용 체계 ····· 58
[표 12] 2022 개정 초 · 중 공통 교육과정 '사회'에서의 법 내용 체계 ····· 60
[표 13] 2022 개정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공통과목
'통합사회2'에서의 법 내용 체계 ····· 61
[표 14] '법과 사회' 과목의 내용 체계 ····· 64
[표 15] 2026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사회 · 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 비율 ····· 69
[표 16] 교육부 – 법원행정처 업무협약서 ····· 91
[표 17] '국민참여재판, 어디까지 아니?' 2024년 교육시간표 ····· 95
[표 18] '타임머신을 타고 온 꼬마 판사' 2022년 교육시간표 ····· 95
[표 19] '가인의 꿈, 나의 꿈' 2024년 교육시간표 ····· 96
[표 20] 2025년 겨울방학 법교육 프로그램 접수 일정 및 결과 ····· 97
[표 21] '어린이 판사의 하루' 프로그램 교육 일시와 참가 현황 ····· 98
[표 22] '어린이 판사의 하루' 프로그램 구성 ····· 99
[표 23] 거주지 ····· 99
[표 24]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 ····· 99
[표 25] 선생님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었나요? ····· 100
[표 26] 수업 및 체험 활동은 재미있었나요? ····· 100
[표 27] 오늘 수업으로 법과 법원에 대해 관심이 생겼나요? ····· 100
[표 28] 교육 후의 느낀 점이나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세요. ····· 100
[표 29] '공정한 판결을 부탁해' 교육 일시와 참가 현황 ····· 101
[표 30] '공정한 판결을 부탁해' 프로그램 구성 ····· 102

[표 31] 거주지 ····· 102
[표 32]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 ····· 102
[표 33] 선생님의 이야기가 이해하기 쉬웠나요? ····· 103
[표 34] 수업 및 체험 활동은 유익했나요? ····· 103
[표 35] 오늘 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 103
[표 36] 오늘 수업이 법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요? ····· 103
[표 37] 교육 후의 느낀 점이나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세요. ····· 103
[표 38] '가인의 꿈, 나의 꿈' 프로그램 구성 ····· 104
[표 39] 거주지 ····· 105
[표 40]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 ····· 105
[표 41] 수업 및 체험 활동은 유익했나요? ····· 105
[표 42] 오늘 수업으로 법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나요? ····· 105
[표 43] 교육받은 후의 느낀 점이나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말씀해주세요. ····· 105
[표 44] 프로그램 온라인 주요 후기 ····· 108
[표 45] 경기공유학교 연계 법교육 프로그램 구성 ····· 117
[표 46] 사법연수원 초등학교 법교육 일정표 ····· 118
[표 47] 2025년도 초등학생 겨울방학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서술식 의견 ····· 119
[표 48] 2024년도 초등학생 여름방학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서술식 의견 ····· 120
[표 49] 2021년도 초등학생 겨울방학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서술식 의견
(가장 유익했던 강의 및 그 이유) ····· 121
[표 50] 2021년도 초등학생 겨울방학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서술식 의견
(기타 의견 및 건의사항) ····· 122
[표 51] 2021년도 초등학생 겨울방학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서술식 의견
(개선과제 및 교육성과) ····· 123
[표 52] 사법연수원 중학교 법교육 일정표 ····· 124
[표 53] 2025년도 중학생 겨울방학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서술식 의견 ····· 125
[표 54] 2021년도 겨울방학 중학생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서술식 의견 ····· 126
[표 55] 사법연수원 고등학교 법교육 일정표 ····· 128
[표 56] 2025년도 겨울방학 고등학생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서술식 의견 ····· 129
[표 57] 2021년도 겨울방학 고등학생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서술식 의견 ····· 130
[표 58] 춘천지방법원의 법률강연 주제 ····· 135
[표 59] 춘천지방법원 법률강연 프로그램의 대상과 내용 등 ····· 135
[표 60] 춘천지방법원 '법관과의 대화: 찾아가는 법률강연' ····· 136
[표 61] 광주지방법원 법원 체험 프로그램 ····· 138
[표 62] 부산고등법원 법원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의 질문 목록 ····· 139

[표 63] 법교육 교재인 'Street Law'의 단원과 주요 내용 ····· 160
[표 64] 연방사법센터 법교육 주제와 주요 내용 ····· 168
[표 65] 국립 주 법원센터의 Justice Case Files 6개 주제와 내용 ····· 169
[표 66] 시민교육 교과의 목표와 내용 ····· 175
[표 67] 방문 프로그램 수업 주제 예시 ····· 187
[표 68] '사회와 법을 이해하는 15개의 이야기'의 목차 ····· 198
[표 69] 청소년 대상 온라인 콘텐츠 법교육 영상자료 ····· 212
[표 70] 이로운법 청소년 법교육 관련 자료 ····· 213
[표 71] 도서벽지 지역 내 법교육 현황 ····· 219
[표 72]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모집 개요 ····· 225
[표 73] 사이버 강좌 과정명과 주제 ····· 230
[표 74] 찾아가는 로파크 사업 교육 프로그램 ····· 236
[표 75] 학생자치법정 지정학교 현황 ····· 237
[표 76] '청소년의 법과 생활'의 내용 ····· 266
[표 77] 대상별 맞춤 교육 콘텐츠 체계와 주요 내용 ····· 273
[표 78] 기능별 교육 콘텐츠 체계 ····· 274
[표 79] 가칭 '사법부의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안 예시 ·· 276

그림 목차

[그림 1] 법무부 법교육프로그램 이수 현황 ····· 26
[그림 2]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절차 ····· 41
[그림 3] '통합사회2'에서의 법 관련 대단원 내용 ····· 63
[그림 4] (주)천재교과서의 '법과 사회'의 목차 ····· 66
[그림 5] 법 관련 교육 경험(학교) ····· 71
[그림 6] 학교에서 실용적인 법교육 필요성 ····· 72
[그림 7] 법원전시관 전경 ····· 94
[그림 8] 기획 전시 연계 어린이 활동지의 주요 내용 ····· 107
[그림 9]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시작 화면 ····· 109
[그림 10]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주요 학습 내용 ····· 110
[그림 11] 사법역사문화관 내부 사진 ····· 112
[그림 12] 사법연수원과 고양교육지원청 업무협약식 ····· 116

[그림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법원 체험 프로그램 기념촬영 ····· 142
[그림 14] 창원지법 법정동에서 열린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기념사진 ····· 145
[그림 15] 미국 연방대법원 법원전시관 모습 ····· 161
[그림 16] 미국 연방대법원 전시관 특별 기획전 목록 ····· 162
[그림 17] 학생 등을 위한 연방대법원 법교육 소책자 ····· 163
[그림 18]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법 관련 에세이 및 영상 콘테스트 홍보자료 ····· 164
[그림 19] 2024년도 Nelson Fellowship 수료 기념사진 ····· 165
[그림 20] 연방법원행정처 법교육 홈페이지 ····· 166
[그림 21] 연방법원행정처 법교육 홈페이지 배너에서의 법교육 유튜브 영상 예시 ···· 167
[그림 22] 뮌헨고등법원 법정 방청 브로슈어 ····· 191
[그림 23] 2022년에 실시된 '학교로 찾아가는 법치국가' 프로그램 현장 ····· 192
[그림 24] 법무성 유튜브 법교육 영상 예시 ····· 196
[그림 25] 일본 법무성 법교육 마스코트 ····· 197
[그림 26] 연도별 방문 법교육 강의 학교 수 ····· 199
[그림 27] 유튜브 일본 최고재판소 가상 투어 영상 ····· 200
[그림 28] 동경지방재판소의 재판원제도에 관한 홍보영상 ····· 202
[그림 29] 법교육 출장강연 프로그램의 예 ····· 211
[그림 30] 다국어 온라인 콘텐츠 법교육 영상 ····· 213
[그림 31] 솔로몬로파크 현황 ····· 214
[그림 32] 부산 솔로몬로파크 유튜브 ····· 216
[그림 33] 서울북부 청소년꿈키움센터 모의 법정 ····· 217
[그림 34] 법무부 유튜브 범죄예방 365 청소년 법교육 재생목록 예시 ····· 220
[그림 35] 법문화교육센터의 법(문화)교육 현황 ····· 222
[그림 36] 법문화교육센터의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 ····· 223
[그림 37] 법문화교육센터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 223
[그림 38]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 226
[그림 39] 헌법재판소 헌재톡 ····· 227
[그림 40] 헌법재판소 유튜브 재생목록 ····· 228
[그림 41] 제9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시상식 ····· 232
[그림 42] 서울시 교육청과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6개 로펌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 234
[그림 43] 울릉도를 방문한 '찾아가는 로파크 버스' ····· 236
[그림 44] 청소년 로스쿨 프로그램 내용 ····· 240
[그림 45] 청소년 리걸 클리닉 일정과 내용 ····· 241

국문 요약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은 청소년의 법의식을 함양하고, 청소년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내면화하는 것에 기여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 외국에서도 학교 법교육 외에도 다양한 법교육 주체들이 청소년을 상대로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을 해석 · 적용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국가 사법기관이다. 이러한 법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하는 경우, 법교육의 일반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법원에 대한 사법 신뢰와 사법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의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은 학교 법교육의 현실적 공백 보완,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증진, 합리적인 법 판단 능력과 법적 사고력의 배양, 예방적 차원의 법 준수 태도 형성 및 법교육에서의 중립성 확보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법원 외에도 다양한 법교육 주체가 청소년 법교육 활동을 하고 있지만,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다른 법교육 주체와 구별되는 고유한 강점을 가진다.

첫째, 법원은 민형사 등 특정 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법 분야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례가 축적된 국가기관으로서, 체험형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법교육을 할 수 있는 인적 · 물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체험 중심의 법교육은 청소년의 법 이해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학습 몰입도와 기억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둘째, 법원은 최종적으로 법을 해석 · 적용하는 독립된 사법부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어, 법원이 주체가 되는 법교육은 청소년이 법의 공신력과 정당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하며, 이는 법에 대한 신뢰 형성의 출발점이 된다.

셋째,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재판절차를 통해 구현되는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에 강점을 가지며, 이를 통해 청소년은 법의 핵심 가치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넷째, 재판 실무 경험을 갖춘 판사가 직접 법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법 적용의 현실적 맥락과 판단 과정의 복합성을 전달할 수 있고, 청소년의 질문에 대해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응답이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법교육이 법원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이루어질 경우, 교육의 수용성과 효과는 더 제고될 수 있다.

현재 법원은 대법원 법원전시관의 학교연계 법교육 프로그램과 방학 법교육 프로그램,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사법연수원의 경기공유학교 연계 법교육과 방학 중 청소년 법교육, 그리고 각 법원의 법원견학 프로그램, (출장) 법강연, 법원 (진로)체험형 프로그램, 모의재판 경연대회, 법원의 날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청소년 법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전시관과 사법연수원의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법원의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법원 이해도 제고'와 '체험형 활동' 항목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의 법원들과 국내 주요 법교육 주체들의 청소년 법교육 활동 및 방식 등과 비교하였을 때, 일부 개선 사항이 발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활성화 방안도 도출할 수 있었다.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은 법교육 조직구성과 전문인력의 양성, 법교육 대상 인원과 지역의 확대, 법원 체험형 법교육의 확대, 법교육 자료의 제작 및 배포,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의 구축, 법교육 관련 대법원규칙(가칭 '사법부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법교육에서의 협력관계 구축의 확대, 법교육 경연대회의 활성화, 교사에 대한 사법교육 직무연수의 강화와 활성화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었다.

주제어: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대법원의 법교육, 사법연수원의 법교육, 법원전시관을 통한 법교육, 사법신뢰, 사법 접근성, 학교 법교육

Abstract

Research on Measures to Promote the Law-Related Education by the Courts for Youth

Kim, Bongcheol
Research Fellow, JPRI

Law-related education for youth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legal consciousness and helps youth internalize the values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ccordingly,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many major foreign jurisdictions, various providers of law-related education offer programs for youth in addition to those provided in schools.

Courts are state judicial institutions that interpret and apply the law from an independent and neutral position,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nd provide the final resolution of disputes. When courts provide law-related education to youth, they contribute not only to achieving the general objectives of law-related education, but also to enhancing youth's trust in the judiciary and improving their access to justice.

In addition, law-related education by the courts plays an important role in supplementing the practical limitations of school-based law-related education, promoting understanding of the rule of law, fostering rational legal judgment and legal reasoning skills, encouraging law-abiding attitudes from a preventive perspective, and ensuring neutrality in law-related education.

Although various providers other than the courts also engage in law-related education for youth, court-led law-related education possesses unique strengths that distinguish it from other providers.

First, as state judicial institutions that have accumulated a broad range of practical and con-

crete cases across diverse areas of law rather than being confined to particular fields such as civil or criminal law, courts possess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necessary to provide law-related education through a variety of methods, including experiential learning. Such experience-based law-related education not only enhances youth's understanding of the law, but also increases learning engagement and strengthens the long-term retention of knowledge.

Second, because courts occupy a unique position as independent judicial institutions with the final authority to interpret and apply the law, court-led law-related education naturally enables youth to recognize the credibility and legitimacy of the legal system. This serves as an important foundation for building trust in the law.

Third, law-related education by the courts is particularly well suited to deepening youth's understanding of procedural justice and fairness as embodied in judicial proceedings. Through this process, youth come to appreciate that the core values of law lie not only in outcomes, but also in the fairness of the procedures through which those outcomes are reached.

Fourth, when judges with practical adjudicative experience participate directly in law-related Education, they can convey the real-world context of legal application and the complexity of judicial decision-making, while also responding to youth's questions in a practical and effective manner. The educational impact can be further enhanced when such programs are conducted within the symbolic setting of a courthouse.

At present, the Korean judiciary conducts law-related education through a variety of programs, including school-linked programs and vacation programs offered by the Court Museum of the Supreme Court, law-related education programs provided by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in cooperation with the Gyeonggi Shared School initiative and during school vacations, and programs operated by individual courts, such as courthouse tours, outreach lectures, court and career experience programs, mock trial competitions, and events held in connection with Court Day.

Survey results regarding the law-related education programs of the Court Museum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indicate that overall evaluations of these programs are highly positive. In particular, respondents expressed high levels

of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s effectiveness in improving understanding of the courts and with their experiential learning components. Nevertheless, comparisons with law-related education activities and methods implemented by courts in major foreign jurisdictions and by leading domestic law-related education providers reveal several areas for improvement, from which a number of measures for further development may be derived.

Measures to improve and promote law-related education for youth by the courts include establishing dedicated law-related education organizations and training specialized personnel; expanding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the geographic reach of law-related education; increasing experiential court-based programs; developing and distributing law-related education; building an integrated online law-related education platform; enacting a Supreme Court Regulation tentatively entitled the 'Regul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Judicial law-related education Committee'; expand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in law-related education; revitalizing law-related education competitions; and strengthening and promoting in-service judicial education programs for teachers.

Keywords: law-related education for youth by the courts, law-related education by the Supreme Court, law-related education by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law-related education through Court Museum, judicial trust, access to justice, law-related education in schools

제1장

서 론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청소년기는 도덕적 기준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은 단순한 법적 지식의 전달을 넘어, 청소년이 사회 규범인 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시민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법적 사고와 가치관은 성인이 된 후의 법적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청소년은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법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교육 관련 과목이 다른 과목에 포함되어 있거나 선택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법교육의 비중이 크지 않고 기회도 많지 않다. 이에 따라 학교 외에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법제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한국법교육센터 등을 포함한 여러 법교육 주체들이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법원도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법을 해석 · 적용하여 권리와 의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통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법원의 법교육을 통해 법뿐만 아니라, 법원의 역할과 기능 등을 이해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현대 민주사회에서 법원의 역할은 단순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재판기관이 아닌, 법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법의식 함양과 법치주의 내면화에 기여하는 것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국민의 의사와 지지가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민주주의의 속성상 국민의 법원에 대한 이해와 지지는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법원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법원과 사법제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화된 법교육을 통한 신뢰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법원이 진정한 국민의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원이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 방법으로서 법교육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에서는 법교육이 법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법교육은 청소년이 법과 이와 관련된 제도 및 법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법적 사고능력을 갖추게 할 뿐만 아니라, 학교 법교육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배운 법원과 소송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법원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법원을 통한 직접적인 법교육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극복하도록 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해 법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청소년이 법원의 독립성과 소송절차의 공정성과 법치국가에서 법원의 역할 등을 이해하는 것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법원의 법교육은 법교육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임을 알리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법원에 대해 긍정적이고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 법원과 법원 외 법교육 주체들의 법교육을 참고하여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I. 연구의 내용

우선 연구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기 전,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법교육'과 관련한 청소년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청소년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선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청소년을

1) 한국법교육학회, 사법부의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법원행정처 (2009), 1.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2] 그리고 청소년은 사전적(辭典的) 의미로 청년과 소년을 함께 불러 일컫는 용어로서, 아동기와 성년기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특정한 연령 세대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3]

한편,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성인 법교육 프로그램과 구분되어 초중고 학생과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법교육 주무부처인 법무부를 포함한 다른 법교육 기관 등도 원칙적으로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을 초중고 학생과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4] 그리고 청소년 법교육 관련 주요 연구도 청소년 법교육의 중심을 '성인이 아닌 학생'으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5]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청소년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초중고 학생과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으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보고서에서 말하는 학교 법교육의 경우에도 대학을 제외한 초중고 학교에서의 법교육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해, 우선 제2장에서는 청소년 법교육에 관한 일반적 고찰(제1절)을 한다. 우선 여기서는 연구보고서의 이론적 기반으로서 법교육의 개념과 유사 교육과의 구별, 법교육의 목적, 법교육지원법에 관한 개괄적 고찰, 법교육의 유형화와 방식 및 학교 법교육과 학교 외 법교육에 관하여 살펴본다. 학교 법교육과 학교 외 법교육(제2절)에서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 법교육의 연혁, 학교 법교육의 중요성과 문제점 및 학교 외 법교육 주체의 역할에 관하여 살펴본다.

---

2) 참고로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청년을 기본적으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기본법에서의 청소년의 연령과 청년기본법에서의 청년의 연령이 겹치는 측면이 존재한다.

3) 박종선, "청소년의 법의식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 한국과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화학연구 제14권 제4호 (2013), 347.

4) 예를 들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s://www.moj.go.kr/cppb/2448/subview.do (2026. 6. 25. 최종 확인).

5) 이에 따라 2019년도에 발간된 법원행정처 연구용역보고서(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도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을 초중고 학생으로 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현황과 활동 방식 등에 관하여 고찰하는데, 여기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목표를 사법 신뢰와 사법 접근성의 관점에서 알아보고, 또한 다른 법교육 주체와는 비교되는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의 의의와 강점 등에 관해서도 살펴본다(제1절). 그리고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현황과 활동 방식 등을 크게 대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제2절), 사법연수원의 청소년 법교육(제3절) 및 각급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제4절)으로 구분하여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에서의 청소년 법교육에 관하여 살펴보는데, 여기서는 청소년 법교육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만한 미국(제1절), 영국(제2절), 독일(제3절), 일본(제4절)에서의 청소년 법교육 현황과 활동을 법교육 전개 과정, 학교 법교육과 법원 외 법교육 주체의 청소년 법교육 활동 및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법원 외 주요 법교육 주체의 청소년 법교육 현황과 활동 방식에 관하여 알아보는데, 여기서는 법원 외 법교육 주체를 국가 · 공공기관(제1절)과 민간단체(제2절)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국가 · 공공기관의 법교육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법제처,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등의 청소년 법교육 현황과 활동 방식 등에 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법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한국법교육센터,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대형로펌 공익재단의 청소년 법교육 현황과 활동 방식 등에 관하여 알아본다.

제6장에서는 해외 주요국 법원과 국내 법원 외 법교육 주체의 청소년 법교육 현황과 활동을 참고하여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에 대한 개선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알아본다.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에 대한 개선점 및 활성화 방안은 법교육 조직구성과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제1절), 법교육 대상 인원과 지역의 확대(제2절), 법원 체험형 법교육의 확대(제3절), 법교육 자료의 제작 및 배포(제4절), 법원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의 구축(제5절), 법교육 관련 대법원규칙인 가칭 '사법부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제6절), 법교육에서의 협력관계 구축의 확대, 법교육 경연대회의 활성화, 교사에 대한 사법교육 직무연수의 강화와 활성화(제7절) 측면에서 제시한다.

제7장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보고서 주제인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II.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법교육과 관련한 문헌(단행본, 논문 등)을 조사 ·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헌의 조사 및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연구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신 문헌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한편, 해외 주요국의 (법원) 청소년 법교육에 관한 사항은 이를 체계화한 최근의 문헌이 많지 않아, 해외 주요국의 (법원) 법교육에 관한 최신 사항을 담고 있는 관련 홈페이지 등을 중점적으로 활용한다.

문헌적 연구 방식만으로는 청소년 법교육, 특히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 문헌 외에도 법교육과 관련한 뉴스 기사, 인터넷 자료, 그리고 더 나아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실과 사법연수원이 제공한 법교육 관련 프로그램 자료와 설문조사 결과 및 각급 법원의 홈페이지 자료 등도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서술식 연구보고서 작성 방식만으로는 (법원) 청소년 법교육에 관한 폭넓은 소개와 이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표와 그림을 삽입하였다.

..... 제2장

청소년 법교육에 관한 일반적 고찰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법교육과 관련한 기초적 이론

I. 법교육의 개념

전통적으로 법교육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한 교육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대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이 제정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천 년 전인데, 그 시대에도 법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발전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고대 로마 시대에도 법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발전했으며, 특히 법학이 발달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고대 로마에서는 소년들을 건강하고 강하게 키우며 또 신과 부모 및 법을 존중하는 사상을 불어넣어 주는 것을 중요한 교육 목표로 생각하였다. 특히 로마에서는 지금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연령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에게 로마 12표법을 암송하도록 했다. 12표법이란 로마에서 기원전 5세기경에 제정된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로서, 법조문이 열두 개의 표로 나누어져 편찬되어 있으며 제일 첫 조문이 '누군가가 너를 법원에 나오라고 부를 때에는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법교육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현재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초등학교 교육 단계에서부터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6)]

법교육(Law-Related Education)이란 특정한 학습 내용이나 교수 방법을 지칭하는 구체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법을 활용한 학습 경험을 이용하여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추상적 개념이기도 하다.[7)]

법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견해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개념으로는 1978년 제정된 미국의 법교육지원법(The Law Related Education Act of 1978)에서 제시된 법교육 개념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법교육을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법 전반, 법 형성 과정, 법 제도와 그에 바탕이 되는 근본 원리들과 가치에 대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법교육법은 기존의 법질서 전달과 교육에만 집중된 교육 현실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법교육 내용의 영역을 넓히려는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법과 관

6) 한국법교육학회, 사법부의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법원행정처 (2009), 11.
7) 곽한영 외 5인, 법교육학 입문, 박영스토리 (2022), 18.

련된 원리와 가치에 비중을 더 둔 것으로 판단된다.[8)]

또한, 법교육 대중화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는 법교육에 관해 '법, 자유, 평등 등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들과 이들 사이의 관계성을 가르치고 이것들을 함양한 공동체 사회에 필요한 적극적인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지식, 가치 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청소년 시민성 교육 특별위원회를 통해 법교육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실제적인 실정법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유, 정의 등 법의 기초 근간이 되는 개념들에 관심을 두고 교육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 쟁점들이 서로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중점을 두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는 입법과정이나 재판과정 등과 같이 법과 관련된 실제 법 실현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교육하는 것에 주목하는 교육이다. 이처럼 법교육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은 서로 배타적인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상호 보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법교육과 관련된 실천 방법이나 교육 형태에 따라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표현된 것으로 이해된다.[9)]

2008년 3월 28일 제정된 우리나라 법교육지원법에서는 법교육을 '청소년 및 일반 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 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 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제2조 제1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교육의 개념은 법학교육(Legal Education)과의 비교를 통해 더 선명하게 부각될 수 있다. 법학교육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면,[10)] 법교육은 비법조인인 청소년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법과 규칙의 배경이 되는 가치관이나 사법제도의 기능이나 의의를 경험하고 생각하도록 하는 교육으로서, 참여 위주의 교육, 사고력 중심의 교육을 의미한다.[11)]

---

8)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6.
9)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7.
1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법교육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법교육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청소년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법적 상황 대처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건전한 법의식[12]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과 관련된 지식, 태도, 가치관 등을 함양하게 하는 교육을 통해 사회공동체 속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시민교육의 한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13]

또한 법교육은 사회 구성원이 법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행사하며, 민주적 가치 속에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실현 방안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법교육이란 다음과 같은 본질적 요소를 갖는 개념이다.[14]

첫째, 법조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함이 아니라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둘째, 법에 관한 지식으로서의 법의 형성 과정, 법체계, 법의 원리, 개별 법률들의 내용 등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셋째, 단순히 그 기능과 지식에 그치지 아니하고 법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즉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 의식 등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다.

넷째, 민주시민으로서 현대 생활에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및 법적 분쟁에 대처하는 능력 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이다.

---

11) 법교육연구위원회,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방향, 법무부 (2006), 6.

12) '법의식(legal consciousness)'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법에 대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규범의식 또는 사회의식'이다. 또한 법의식을 '법제도가 그 합법성과 정당성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의욕 내지 정신이며 동시에 그 힘'이라고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사실상 법의식이라는 용어는 법감정, 법관념, 법지식, 법문화, 법태도 등의 개념들과 특별한 구분 없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법의식에 관한 개념은 용어 자체가 추상성을 가지고 있어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학자에 따라서 정의도 다르다[박종선, "청소년의 법의식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 한국과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화학연구 제14권 제4호 (2013), 347].

13)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7 참조.

14) 허종렬, "우리나라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 (2010. 12.), 47-48.

II. 법교육과 유사 교육과의 구별

1. 인권교육과의 구별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법학교육 외에도 법교육과 유사한 개념이 있는데, 우선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존중의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교육은 인권 자체를 중시하며 심지어는 준법보다 악법에 대한 저항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교육은 상대적으로 준법정신을 강조한다. 하지만 준법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대로 된 법교육은 인권교육을 지향하게 될 것이며, 인권교육 또한 법을 통한 것이어야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양자를 같이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자의 관계는 개념상으로만 볼 때에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을 각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포섭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한다.[15)]

2. 정치교육과의 구별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교과교육에서 법교육 영역은 오랫동안 정치교육 영역의 일부로 취급되어 왔다.[16)] 정치교육의 경우 헌법 체계에 따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지를 알게 하고, 선거제도,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의 의미와 중요성, 정당정치의 장단점, 지방자치제도의 필요성 등을 교육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모든 정치 제도나 국가의 구조는 결국 법에 의해 규율되고 유지되므로 법교육과 정치교육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17)]

정치교육도 규범교육과 가치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때로는 법을 다루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정치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법교육은 정치교육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실증과학인 정치학이 아니라 규범과학인 법학에 터를 잡고 있다. 따라서 접근방법도 법학에서 강조하는 법률관계론을 중시한다.[18)]

---

15) 허종렬, “우리나라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 (2010. 12.), 48.
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법교육 관련 초중등 교육과정 발전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1), 52.
1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법교육 관련 초중등 교육과정 발전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1), 38.
18) 허종렬, “우리나라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 (2010. 12.), 48-49.

법교육은 국가 기본질서에 해당하는 법률들을 배움으로써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적인 갈등을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인 사법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반면 정치교육은 헌법 질서에 따른 각종 정치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집단들이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다양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국가 질서 안에서 상호 공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타협해야 하는지에 관한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 즉 법교육을 통해서는 사회적 약속인 법을 지켜야 한다는 준법의식을, 정치교육을 통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표출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가는 실천적 시민성을 민주시민의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게 된다.[19]

또한, 법교육은 합법성을 강조하나 정치교육은 합목적성을 강조한다. 법교육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을 강조하나 정치교육은 합법성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집단들의 요구 사항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타협하는 합목적성이 강조된다. 그런데도 법교육과 정치교육을 구별하지 않고 법과 정치란 과목으로 통합하여 교육하는 것은, 합목적성에 의해 합법성이 훼손되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20]

참고로 학교 정치교육 외 대표적인 정치교육 주체로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국회는 '대한민국어린이국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회)민주주의와 국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국회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21] 국회박물관에서는 어린이박물관과 국회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22]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는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의회교실'과 '청소년 의회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23]

---

1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법교육 관련 초중등 교육과정 발전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1), 38.
2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법교육 관련 초중등 교육과정 발전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1), 38-39.
21) 대한민국어린이국회 홈페이지, https://child.assembly.go.kr/child (2026. 6. 25. 최종 확인). 국회는 입법절차 교육 등과 같은 법교육도 하고 있다.
22) 국회박물관 홈페이지, https://museum.assembly.go.kr/museum/main/main.do (2026. 6. 25. 최종 확인).
23)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https://www.smc.seoul.kr/publish/view.do?menuId=001005015001 (2026. 6. 25. 최종 확인). 참고로 '청소년 의회교실'은 의정활동 과정 체험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이고, '청소년 의회아카데미'는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아카데미(이론 수업)와 찾아오는 청소년 의회아카데미(현장 체험)로 구성된다.

III. 법교육의 목적

법교육은 학습자들을 법률전문가 또는 법학자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교육의 주요 목적이 실체적인 법학 지식 자체를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지 않은 것이다. 학문적인 법학 지식과 이론 교육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 기관이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고, 청소년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의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법교육에서 그렇게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법교육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24)]

이렇게 법교육의 목적을 전문가 교육이 아닌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할 수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교육지원법은 법교육의 목적을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 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의 함양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미국변호사협회는 법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① 확고한 자기 입장을 가진 문제 해결자 및 반성적 의사 결정자가 되는 것 ②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있으며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③ 윤리적 · 도덕적 문제를 성숙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25)]

그리고 기존 법교육의 개념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자면 법교육을 청소년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기저의 가치를 이해하고, 다양한 사회적 · 법적 갈등 상황을 직면했을 때보다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며, 기존의 왜곡된 법과 법질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건전한 법의식을 함양해 사회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법교육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법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어 올바르고 건전한 법의식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법치 사회의 실현이라고 한다.[26)]

기본적으로 법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법 지식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24) 곽한영 외 5인, 법교육학 입문, 박영스토리 (2022), 20.
25) 곽한영 외 5인, 법교육학 입문, 박영스토리 (2022), 20.
26)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12.

사회 속에서 법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법을 준수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이러한 법교육의 기본 개념과 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하자면 법교육의 목적은 법 지식과 법 이해력의 향상, 권리와 의무의 인식을 통한 준법의식의 강화,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주의의 인식 및 실현 강화, 법적 문제해결 능력과 법적 사고력의 향상,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강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교육 대상과 관련하여 일반 시민과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의 목적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법교육의 핵심 목적은 법의 기본 가치와 법의 공정성 등을 이해시켜, 청소년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따라서 청소년 법교육의 성격은 형성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법교육의 방식은 모의재판, 법원견학, 역할극 등과 같은 체험 중심 법교육에 그 중심에 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은 청소년 법교육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권리구제라는 실질적 기능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 시민에 대한 법교육 방식은 실제 사례 분석 및 서식 활용 등을 통한 권리구제 및 분쟁 해결에 그 중심이 있다.

Ⅳ. 법교육지원법에 관한 개괄적 고찰

1. 법교육지원법의 제정 배경

2008년 3월 28일에 법률 제8992호로 제정되고, 2008년 6월 29일 시행된 법교육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다. 이 법률은 1978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교육지원법을 모델로 하여 법교육이 더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27)]

이 법이 제정되기 전, 법무부는 2005년 3월 법교육의 전반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법교육추진기획단과 법교육연구위원회를 출범시켜 법교육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종합계획은 총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1단계에서 기반구축을, 2단계에서 참

27) 조진우, “법교육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비교법연구 제16권 제4호 (2016. 12.), 154.

여확산을, 3단계에서는 법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기반구축단계에서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산하에 법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학술적 연구를 진행하고, 법교육 교재로 한국인의 법과 생활과 청소년의 법과 생활을 발간하였다. 참여확산단계에서는 법교육 출장강연 및 학생자치법정 등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모의재판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였다.[28]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나타났다.[29]

첫째, 지나친 성과 위주의 법교육 사업이 갖는 한계점이 있었다. 법무부가 주도한 법교육 추진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할 수 있지만, 법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에 국한되다 보니 다소 외형적이며 성과주의에 입각한 사업추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하였다. 법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수요자인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기초 수요 조사나 실태 분석 과정이 생략되어 많은 교재와 프로그램들이 실제 교사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어 교육적 효과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소수 학생의 참여를 중심으로 학교 법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는 한계점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자치법정이나 모의재판 경연대회, 생활법 경시대회 등이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일부 소수 학생의 참여에 한정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생활법 경시대회에는 특목고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일부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이나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참여자는 법에 관심을 가진 일부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에게 국한되었다.[30]

셋째, 법교육 사업추진에서의 예산 부족과 조직 연계성에서의 한계점이 있었다. 법교육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산의 뒷받침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교육 사업 예산은 다

---

28) 김갑석, "법교육지원법이 한국 법교육 실천에 미친 영향",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1권 제3호 (2018. 12.), 18.

29) 이하는 이대성,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학교 법교육의 실천 과제", 사회과교육연구 제16권 제3호 (2009), 66-67 요약.

30) 예를 들어 법무부가 2005년부터 개최하는 생활법 경시대회 참가 학생은 매년 3000명 내외에 불과하고 그나마 특목고 또는 지방의 비평준화 학교 재학생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생활법 경시대회 준비반'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생활법 경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몇몇 학교는 준비반을 별도로 편성, 기본적인 법이론과 함께 중요한 대법원 판례,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지식 등을 공부하고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풀면서 대회를 준비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준비반이 없거나 '법과 사회' 수업을 운영하지 않는다[한경닷컴(2008. 10. 3. 기사) "[생글기자 코너] 경시대회, 학습자료부터 제공해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08092465561 (2026. 6. 25. 최종 확인)]. 그리고 생활법 경시대회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차례 대상을 외고가 거머쥐었고, 전체 수상자 40여 명 가운데 50~55%가 특목고생이었다고 한다[국민일보(2010. 2. 28.), "특목고 싹쓸이에 분리시상…역차별 · 형평성 싸고 공방",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3456997 (2026. 6. 25. 최종 확인).

른 사업 분야보다 적은 편이었다. 법무부 내에 별도의 법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문화진흥팀의 설치와 부서 인력 확충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지만, 솔로몬로파크[31]와의 업무 연계성의 문제라든가, 담당 직원의 업무 지속성 보장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유관 기관과의 형식적인 지원 협조 관계도 문제였다.

이러한 법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법교육을 위하여 법교육지원법의 제정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법교육지원법은 첫째, 2005년부터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에 대비하고 선진 법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법교육 사업을 확대해 왔으나, 법제도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전 국민적인 확산이 어렵고, 둘째, 현재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으로 이어지는 기존 교육 시스템만으로는 다양한 교육 분야 중 하나인 법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특히 기존 교육기관은 관련 전문인력과 경험이 없어 자체적으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가 어려우므로 별도의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셋째, 민간 법교육 활동의 미비로 법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제안 이유로 제시하였다.[32]

2. 법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

법교육지원법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교육지원법 제1조와 제2조 제1호에서는 각각 법교육지원법의 목적과 법교육을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법교육의 유형으로서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을 구분하였다.

법교육지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1) 솔로몬로파크(Solomon Lawpark)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공원으로,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후술하는 제5장(법원 외 주요 법교육 주체의 청소년 법교육)에서의 법무부 솔로몬로파크 부분(제1절, Ⅰ, 2) 참조.

32) 김갑석, "법교육지원법이 한국 법교육 실천에 미친 영향",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1권 제3호 (2018. 12.), 1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교육"이란 청소년 및 일반 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 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 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법교육"이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
3. "사회 법교육"이란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

둘째, 법교육지원법 제3조는 법교육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법교육 기본계획 수립 · 시행, 법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 배치 · 처우 및 연수, 법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 ·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국가의 시책마련 의무를,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체제 구축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교육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한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 배치 · 처우 및 연수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 고시인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이 2020년 5월에 제정되었다.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법교육지원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교육지원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2. 법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 배치 · 처우 및 연수
4. 법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 · 개발 및 지원
5. 법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 · 관리

6. 법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재정상의 지원) ① 「법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재정상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관 · 단체 또는 시설로서 재정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 · 의결한 법교육 관련 기관 · 단체 또는 시설

② 〈생 략〉

셋째, 법교육지원법 제4조에 의하면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교육위원회를 두는데(제1항), 이 위원회는 법교육의 정책 방향 설정,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교육 업무의 협력 ·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제2항).

법교육지원법
제4조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법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교육의 정책방향 설정
2.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교육 업무의 협력 ·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교육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⑥ 〈생 략〉

참고로, 2009년 법교육지원법 시행 초기에 당시 법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 법교육 사업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33]

[표 1] 2009년 법교육위원회 법교육 사업 운영 방향

1. 헌법교육 강화
2. 체험형 법교육 강화
3. 솔로몬로파크 운영 활성화
4. 생활공감 법교육 확산
5. 학교 법교육 강화
6. 방과 후 법교육 강좌 운영
7. 인터넷 정화를 위한 법교육 강화
8. 특수계층 법교육 강화
9. 민간단체 법교육 지원
10. 국민참여 법교육 이벤트 개최
11. 법교육 교재 보급

법교육위원회는 법교육 실천에 있어 기본방향을 제시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며, 법무부 외의 다른 정부부처나 민간기관과 법교육에 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순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그럼에도 실제로는 실질적 심의보다는 법무부에서 마련한 정책이나 예산 자료에 대해 일종의 자문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회의가 이루어져 심의의 실질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34] 참고로, 법교육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회밖에 열리지 않을 정도로 운영 실적이 저조했다.[35]

넷째, 법교육지원법 제5조 제1항은 법문화진흥센터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 단체 등을 법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33)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변화에 대응한 법교육 혁신 방안 연구, 법무부 (2020), 13. 2009년 법교육지원법 시행 초기에 논의된 법교육 사업 운영 방향의 주요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34) 이계정 외 3인, 법학기초정책연구 Ⅰ –법치주의의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5), 162.
35) 경향신문(2023. 8. 30.자 기사), "'무지의 벽' 부술 법교육 지원법엔 무관심…위원회는 존폐기로", https://www.khan.co.kr/article/202308302131005 (2026. 6. 25. 최종 확인).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로 법교육 활동 · 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법무부는 법교육을 실시하는 준법지원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36] 및 민간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여 법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8개의 민간기관과 72개의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었으나, 민간기관에 대한 모집공고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는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 소속기관은 대표적으로 솔로몬로파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등)가 있으며, 민간기관으로는 한국법교육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사법교육원, 충남대학교 및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공공안전연구원 등이 있다.[37]

법교육지원법

제5조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 단체 또는 시설을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1조 (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교육 활동 · 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3.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4.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5. 그 밖의 법교육 관련 사업

다섯째, 법교육지원법 제6조 이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교육 연구개

36) '청소년꿈키움센터'라고 하기도 한다.

37) 이계정 외 3인, 법학기초정책연구 Ⅰ –법치주의의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25), 164.

발(제6조), 학교 법교육 지원(제7조), 교원연수 제공(제8조), 사회 법교육 지원(제9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제10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교육지원법

제6조 (법교육 연구 개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육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 법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학교 법교육 활동 및 자치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함양을 위한 법교육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교육기관의 법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법의식 함양을 위하여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법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법교육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법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법교육지원법을 통한 법교육의 체계화와 활성화

법교육지원법은 편제에 있어 다른 특정 분야 교육 지원법들[38]보다 간명한 편제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법교육지원법에는 법교육의 정의, 법교육위원회, 법문화진흥센터, 법교육 연구개발, 학교 법교육 지원,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사회 법교육 지원의 총론적 규정 이외에 구체적인 규정이 많지 않다. 따라서 법교육지원법의 구체적인 집행은 법교육 종합계획에 맡겨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법교육지원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도 법교육지원법의 체계가 법교육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미흡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9]

그리고 법교육지원법은 법교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제정되었지만, 그 지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 보기에는 어렵다. 법 제정 이후 17년이 지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변화하는 법교육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40]

하지만, 법교육지원법의 제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렵고 특정 전문가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법'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법교육지원법 제정에 따라 다양한 법 관련 교재와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학교 안과 밖에서 활발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41]

더 나아가 법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 때, 법교육지원법은 입법 최초로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법교육 추진 및 법교육 인프라 구축과 함께, 특히 법교육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입법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생활법과 관련된 경시대회나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같이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법교육 행사가 주최되고, 학생 및 시민을 상대로 하는 법교육 교재가 발간되었으며, 법조인 및 법률전문가가 직접 나서는 법교육 출장강

38) 예를 들어, 과학교육진흥법, 통일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환경교육지원법, 경제교육지원법, 진로교육법 등.
39) 정상우(연구책임자), 법교육지원법 개정 방향 및 내용 연구, 법무부 (2015), 15.
40) 허성진, 법교육기초연구Ⅰ -우리나라 법교육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5), 20-21.
41) 정상우(연구책임자), 법교육지원법 개정 방향 및 내용 연구, 법무부 (2015), 17.

연도 활성화되었다. 또한, 법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자연히 법교육 교재 연구도 활성화되었으며, 교육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교육도 확대되었다.[42)]

더 나아가, 법무부의 법교육 예산은 2008년 9억 원에서 2022년 44억 원, 2023년에는 84억 원으로 15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하였고, 법무부 법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도 2017년 1만 9,386명 수준이던 것이 2022년 4만 7,703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43)]

참고로 법교육지원법이 법원의 법교육 활동의 근거를 형성하거나 규율하는 것은 아니지만,[44)] 법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법원의 법교육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다.[45)]

[그림 1] 법무부 법교육프로그램 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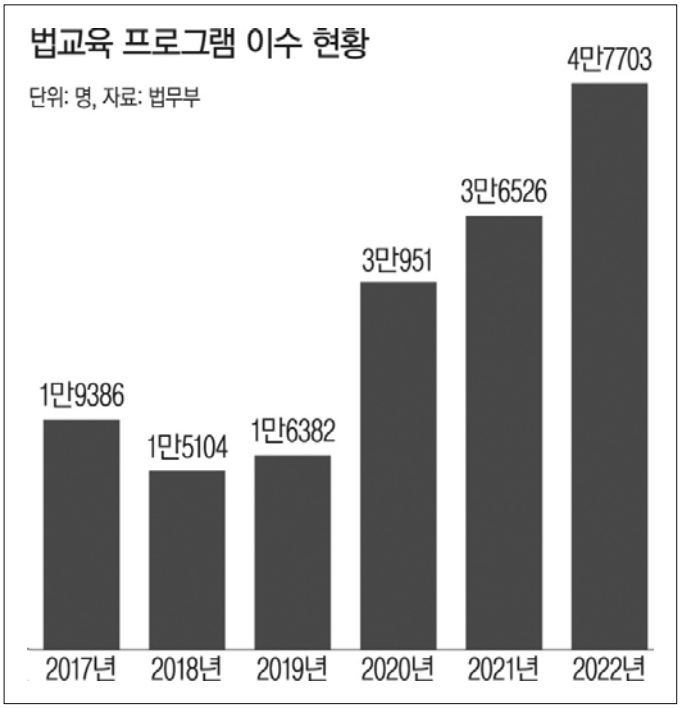

42) 이계정 외 3인, 법학기초정책연구 Ⅰ –법치주의의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25), 166–167.

43) 경향신문(2023. 8. 30.자 기사), "'무지의 벽' 부술 법교육 지원법엔 무관심…위원회는 존폐기로", https://www.khan.co.kr/article/202308302131005 (2026. 6. 25. 최종 확인).

44)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후술하는 제3장(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제1절(논의에 앞서), Ⅱ. 법원 법교육의 근거 참조.

45) 예를 들어, 특히 제6장(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에서 가칭 '사법부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제6절)과 관련하여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V. 법교육의 유형화

우선, 법교육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는 법교육의 유형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학교 법교육과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법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교육은 실시기관에 따라 학교 등과 같은 교육기관에 의한 법교육과 비 교육기관에 의한 법교육으로 나눌 수 있고, 비 교육기관에 의한 법교육은 다시 국회, 법원, 행정부 등 국가기관에 의한 법교육과 민간단체에 의한 법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법교육은 교육방법에 따라 교육기관이나 법교육 강사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법교육과 전시관이나 교재 및 홍보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법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법교육은 교육 대상을 기준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으로 나눌 수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은 다시 그 목적과 대상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차원의 법교육과 교사, 공무원,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차원의 법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46]

그리고 법교육은 교육이 수행되는 장소 또는 목적에 따라 크게 학교 법교육과 시민 법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법교육은 교과교육으로서 법교육과 비교과 교육으로서 법교육(창의체험 활동, 진로 교육 등), 학교 생활교육의 일부로서 법교육으로 구분된다. 시민 법교육은 평생교육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47] 한편, 경제적 약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 고령자, 이주민, 탈북자, 수형자 등 특정 계층 또는 특정 상황에 있는 집단에 대한 법교육과 그 외의 일반인에 대한 법교육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VI. 법교육 방식

법교육은 단순한 법 지식의 암기가 아닌, 학습자가 법의 내용과 가치 및 기능을

46) 박원규, 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4), 24.
47)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변화에 대응한 법교육 혁신 방안 연구, 법무부 (2020), 7.

이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교육 내용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 · 학습 방법을 적절히 선택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교육 방식은 기존의 지식 전달 방식에서부터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방식까지 있다. 주요 법교육 방식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이하에서 서술되는 주요 법교육 방식 외에도 모의선거, 모의입법, 법률 서식 활용, 영상 및 예술 등을 활용한 법교육 방식들도 있다.[48]

1. 강의식 교육

강의식 교육은 법교육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법교육 방식으로,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해설과 설명에 의하여 학습자를 이해시켜 나가는 방법이다.[49] 이러한 방식의 법교육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50]

첫째, 강의식 법교육은 많은 양의 지식을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학습시키려고 할 때 효과적이다. 이러한 방식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적인 정보나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제한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려고 할 때 매우 효과적인 법교육 방법이다.

둘째, 강의식 법교육은 특정한 가치나 태도를 주입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효과적이다.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교육자가 표정, 눈빛, 몸동작 등의 수단으로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한다든가 혹은 특정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는 학습자의 정의적 · 행동적 법의식을 교육자의 영향력에 의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강의식 법교육은 일정한 특성의 학습자에게 적절한 법교육 방법이다. 예를 들면, 모호성을 참지 못하여 언제나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주어야만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학습자나 근심 걱정이 많은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법교육 방법이다.

그러나 강의식 법교육은 이하에서 서술하는 사례연구법과 판례 활용 등을 결합하

48) 기타 법교육 방식에 관해서는 곽한영 외 5인, 법교육학 입문, 박영스토리 (2022), 345 이하 참조.
49) 김주선, “강의식 법교육과 학생자치법정이 고등학생의 법의식에 미치는 효과”,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권 (2008. 12.), 4.
50) 이하는 김주선, “법교육 방법이 법의식 형성에 미치는 효과 –고등학교에서의 강의식 법교육과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18.

여 진행할 수도 있지만,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법개념 등과 관련된 기초적 법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사례연구법

사례연구법은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내포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사실과 쟁점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쟁점이나 법적 논리 근거와 결론을 분석 · 평가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비판적인 사고력을 증진하고, 법적 추론능력을 향상하는 교수 · 학습 방법이다. 사례연구법에서 사례는 단순히 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명하거나 제시하는 법적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적 소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례 자체가 수업의 일차적 소재가 된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학생들은 스스로 수업에 참여하여 스스로 추론능력을 발휘하고, 쟁점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결론을 이끈다. 이는 법적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뿐 아니라, 기억이 오래 지속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51]

사례연구법은 학습자의 섬세한 분석 능력과 비판적 추론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법률을 사건에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효과적인 법교육 방식이다.[52] 사례연구법에 있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생생한 법적 사례와 능력 있는 법교육자,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이다.[53]

참고로 사례연구법에 기반한 법교육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51) 곽한영 외 5인, 법교육학 입문, 박영스토리 (2022), 337.
52) 허종렬 · 박형근 · 고영은, “사회과 법교육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제20권 제2호 (2010. 1.), 52.
53) 곽한영 외 5인, 법교육학 입문, 박영스토리 (2022), 337.

[표 2] 사례연구법 기반 법교육 표준 교육안

구분	단계	주요 활동 내용	학습 목표	지도 방법/자료
1	도입 단계	· 오늘의 학습 주제 제시 (예: 저작권 침해, 사이버 명예훼손, 학교폭력 사건 등) · 관련 뉴스 기사나 영상 자료 제시	· 학습 동기 유발 · 법적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뉴스 기사 클리핑, 사건 관련 영상 자료
2	사례 제시	· 실제 판례 또는 교육 목적의 가상 사건 소개 · 사건의 사실관계, 당사자, 쟁점 요약	· 법적 문제 상황 파악 능력 습득	판례 요약문 배포, 사건 타임라인 제시
3	쟁점 도출	· 법교육자가 사건 속 법적 쟁점 질문 제시 · 학습자들이 소그룹으로 쟁점 정리	· 법적 쟁점 분석 및 논리적 사고 훈련	칠판/포스트잇 활용, 조별 발표
4	토론 및 분석	· 조별 토론 후 입장(찬 · 반, 원 · 피고 입장) 정리 · 전체 토론 진행: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 비교	· 비판적 사고 · 설득 및 논거 제시 능력 배양	토론 규칙 제시, 법교육자의 질의응답
5	판례와의 비교	· 실제 법원의 판결문 및 판시 이유 분석 · 학생들의 토론 결과와 비교 · 검토	· 법적 판단 과정과 실제 판례의 논리 이해	대법원 판례 요약본, 교사의 해설
6	정리 · 확장	· 학습한 판례가 갖는 사회적 의미 정리 · 관련 법제도 · 권리 보호 방안 탐구 · 학습지 작성 및 성찰 활동	· 법의 사회적 기능 이해 · 민주시민 의식 함양	학습지, 피드백 토론

3. 모의재판

모의재판(Mock Trial)은 실제 재판의 절차와 형식에 따라 변론, 심리, 선고 등을 연습하여 재판을 해보는 것이다.[54] 단편적인 법개념 중심의 주입식 법교육은 학습자, 특히 학생들의 법적 사고능력을 함양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모의재판은 법교육이 지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법교육 방법의 하나로 모색되었다.[55]

모의재판은 재판절차에 따라 민사 모의재판, 형사 모의재판, 가사 모의재판 등으

54) 곽한영 외 5인, 법교육학 입문, 박영스토리 (2022), 340.
55) 박원규,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4), 25 참조.

로 구분되고, 쟁점이 사실관계인지 법리인지에 따라 사실인정 중심의 모의재판(mock trial)과 법리 공방 중심의 모의재판(moot court)[56]으로 구분될 수 있다.[57]

특히, 사실인정 중심의 모의재판은 진행 방식에 따라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하는 시나리오 방식 모의재판(scripted mock trial)과 참가자들이 재판 자료를 검토하여 스스로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재판절차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비시나리오 방식 모의재판(non-scripted mock trial)으로 구분된다. 이 중 시나리오 방식의 모의재판은 주로 법률과 재판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스스로 재판을 준비하기 어려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58]

모의재판은 그 목적에 따라 협의의 모의재판,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게임 등으로 환원시켜 이해할 수 있다. 즉, 모의재판은 이를 통한 사건 당사자들의 역할인지, 사건에 대한 법조 적용의 원리 이해와 법적 해결 능력의 배양, 집단 내부 다툼의 자치적 해결 등 그 목적에 따라 때로는 역할놀이, 때로는 시뮬레이션 게임, 때로는 자치법정의 모습으로 구현되는 것이다.[59]

학습자들은 모의재판을 통해서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법적 절차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체계와 법의 기초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 협력과 타협,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은 모의재판 과정을 거침으로써 법원의 소송절차와 구조, 법률 적용의 방법과 원리 및 법에 관한 지식, 기능, 태도의 여러 측면을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60]

참고로 모의재판 표준 교육안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

56) 법리 공방 중심의 모의재판을 '법정 변론 방식의 모의재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57) 박원규, 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4), 25.
58) 박원규, 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4), 25.
59) 허종렬·박형근·고영은, "사회과 법교육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제20권 제2호 (2010. 1.), 58.
60) 허종렬·박형근·고영은, "사회과 법교육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제20권 제2호 (2010. 1.), 58.

[표 3] 모의재판 표준 교육안의 예시

구분	단계	주요 활동 내용	학습 목표	지도 방법/자료
1	준비 단계	· 사건 주제 선정 (형사: 절도 · 폭행/민사: 계약 분쟁 등) · 시나리오 작성 · 역할 배분(판사, 검사, 변호사, 원 · 피고, 증인 등)	· 법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이해 및 역할 인식	사례집 제공, 역할 분장표 작성
2	사전 학습 단계	· 재판 절차와 기본 법원 구조 설명 · 각 역할의 권한 · 책임 학습 · 법정 예절 및 용어 교육	· 재판의 구조와 법적 절차 이해	PPT, 영상자료, 법조인 특강
3	모의재판 진행 단계	· 개정 선언 및 사건 개요 소개 · 검사/원고 측 모두진술 · 피고/피고 측 모두진술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 최종 변론 및 피고인 최후진술 · 판결 선고	· 실제 재판 체험을 통한 법적 사고력 · 논리적 표현력 강화	모의재판 교재 · 대본, 법정 모형 세트 (법복 등)
4	피드백 및 토론 단계	· 판결 결과 공유 · 참가자별 소감 발표 · 실제 재판과의 차이점 해설 · 절차의 의미 및 한계 설명	· 비판적 사고력 및 자기 성찰 능력 배양	피드백, 토론 진행
5	정리 및 확장 단계	· 헌법적 가치 · 사회적 의미와 연결 · 만족도 조사 및 효과 평가 · 후속 활동 연계(법원견학, 모의재판 대회 참가 등)	· 법적 가치 내면화 및 사회참여 의식 강화	설문지 · 학습지, 법원견학 등 안내 자료
6	정리 · 확장	· 학습한 판례가 갖는 사회적 의미 정리 · 관련 법제도 · 권리 보호 방안 탐구 · 학습지 작성 및 성찰 활동	· 법의 사회적 기능 이해 · 민주시민 의식 함양	학습지, 피드백 토론

4. 판례 활용 법교육

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활용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법적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법익이나 가치들이 충돌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 법교육 방식이다. 판례 활용 법교육에서는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주요 판례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보도록 한다. 이때의 판단은 토론이나 발표, 판결문 작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판단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사회 쟁점이 단순한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법적) 가치의 충돌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게 되고,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와 그 근거에 대해 성찰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61]

판례 활용 법교육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므로 학습자의 몰입도가 높고, 학습자로 하여금 법이 추상적 규범이 아니라 구체적 분쟁 해결 수단임을 알게 한다. 더 나아가 이 법교육 방식이 모의재판이나 토론 등의 방식과 결부되는 경우, 사실관계 파악 → 쟁점 도출 → 법리 적용 → 결론 도출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법적 사고 훈련의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

참고로 판례를 활용한 법교육안을 예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4] 판례 활용 법교육안의 예시

구분	단계	주요 활동 내용	학습 목표	지도 방법/자료
1	도입 단계	· 교육 목표 안내 · 판례의 의미와 중요성 설명 학습할 판례 소개	· 판례가 법적 판단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해	판례 요약본 배포, 관련 신문기사 · 영상 자료
2	사실관계 이해	· 판결문 또는 요약자료 읽기 · 사건의 배경, 쟁점, 당사자 주장 파악	·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구별 능력 습득	판례 발췌문, 사건 일지 · 도표
3	쟁점 분석	· 쟁점 질문 제시: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는 무엇인가?” · 학습자 개별 · 조별 토론	· 법적 사고력, 논리적 추론 능력 강화	칠판/화이트보드에 쟁점 정리
4	판례 요지 설명	· 실제 법원의 판결 이유 설명 · 다수 · 소수 의견 비교 · 법 해석 방법 제시	· 판례의 논리와 법적 근거 이해	판결문 해설자료, 법교육자/법조인의 강의
5	역할놀이 · 토론	· 판사, 변호사, 당사자 역할 분담 · 판결 전 · 후 상황을 재현 · 판결에 대한 찬반 토론 진행	· 다양한 입장 이해, 비판적 사고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모의 법정 자료, 역할 카드
6	정리 · 평가	· 판례가 우리 생활에 주는 교훈 정리 · “만약 여러분이 판사라면?” 자기 의견 발표 · 수업 평가 설문 작성	· 법적 가치 내면화 및 민주적 토론문화 체득	피드백 시트, 발표 자료

61) 곽한영 외 5인, 법교육학 입문, 박영스토리 (2022), 343.

5. 지역사회기반 학습

지역사회기반 학습(Community-Based Education)은 실제로 생활하는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법교육 방식이다. 지역사회 기반 학습의 방식은 다양한데, 이 중 대표적인 유형은 현장 학습과 외부자원인사 활용이다.

가. 현장 학습

현장 학습은 법교육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학생들이 관련 기관의 실제 모습 뿐 아니라 실제적인 절차와 감각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62]

법교육과 관련하여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는 법원, 검찰청, 경찰서, 교도소 등과 같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기관이자 상대적으로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평소 별도의 현장 학습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접근이 쉽지 않은 곳들이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63]

나. 외부자원인사 활용[64]

외부자원인사란 'resource person'을 번역한 용어로서 외부자원인사를 활용한 법교육 수업은 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외부강사가 방문하여 일정한 주제에 대해 강연하거나 협력 수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법 관련 직업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직 외에도 경찰, 법무사, 세무사, 법학 및 법교육 전공 교수, 변리사,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이 포함된다.

외부자원인사의 활용은 현장에서 접하기 어려운 주제나 이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외부자원인사의 활용은 학습자가 가질 수 있는 '법적 소외감(legal alienation)'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많은 학습자들이 법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것이 법적 기관과 구성원들에 대해 두려움과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연결되는데, 법 관련 직역에 종사하는 외부자원인사를 가까이에서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에게는

62) 허종렬 · 박형근 · 고영은, "사회과 법교육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제20권 제2호 (2010. 1.), 60.
63) 곽한영 외 5인, 법교육학 입문, 박영스토리 (2022), 355.
64) 곽한영 외 5인, 법교육학 입문, 박영스토리 (2022), 356-357.

본보기가 될 만한 외부자원인사와의 만남이 바람직한 역할모델과의 접촉 기회로 작용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긍정적인 자의식을 갖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관련 직업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에게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외부자원인사 활용은 일회성 행사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외부자원인사가 학습자의 관심사 및 수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동떨어진 법교육이 될 수 있다.

6. 역할놀이

역할놀이(Role-Playing)는 참여자가 어떤 사건의 역할을 맡아 실행함으로써 그 역할을 인지하게 하거나 상호 간의 이해능력을 높이고, 갈등 상황을 해결하도록 하는 법교육 방식이다. 학습자들은 역할놀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찬반의 논쟁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과 더불어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능력을 익힐 수 있다. 이처럼 역할놀이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활동으로 법교육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65]

참고로, 모의재판과 역할놀이의 구분에 관한 논의는 없다. 하지만 법교육 방식으로서의 모의재판과 역할놀이는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행동한다는 점, 그리고 양자가 체험형 법교육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모의재판은 실제 엄격성을 기반으로 하는 재판절차를 그대로 재현하는 법교육 활동이지만, 역할놀이는 반드시 실제 재판절차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비교적 자유로운 방식으로 다양한 갈등 상황, 사회문제, 정책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포섭하는 법교육 활동이라는 점에서 모의재판과 구별된다. 이러한 점에서 모의재판은 재판절차라는 엄격한 구조를 가진 전문화된 역할놀이로 정의할 수 있다.

역할놀이 법교육안을 예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65) 허종렬 · 박형근 · 고영은, "사회과 법교육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제20권 제2호 (2010. 1.), 56.

[표 5] 역할놀이 법교육안 예시

구분	단계	주요 활동 내용	학습 목표	지도 방법/자료
1	도입 단계	· 법적 갈등사례 제시 · SNS 분쟁, 학교폭력, 소비자 분쟁 등 일상적 법문제 소개	· 법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 · 법적 문제 상황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실제 사례 또는 뉴스 자료 등 활용
2	상황 제시	· 역할놀이에 사용할 사건 상황 설명 · 사건의 배경, 등장 인물, 갈등 요소 제시	· 법적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사건의 주요 쟁점을 파악	사례 시나리오 및 사건 설명 자료 제공
3	역할 배정	· 역할 배정(피해자, 가해자, 증인, 조정자 등) · 각 역할의 입장과 목표 설명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이해	역할 카드 제공
4	역할놀이 진행	· 각 역할에 따른 주장 제시 · 증언 및 질문 진행 · 갈등 해결을 위한 토론	· 법적 갈등 해결 과정 이해 · 의사소통 및 협력 능력 향상	토론 중심 활동
5	해결방안 도출	· 조정 또는 판단 과정 진행 · 합의안 또는 결정 도출	· 공정한 해결의 의미와 법적 판단 기준 이해	조정 · 판단 역할 및 합의안 작성 활동
6	정리 · 평가	· 활동에 대한 피드백 등 · 의견 발표 · 평가 설문 작성	· 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 심화 · 법과 사법절차의 역할 이해	피드백 시트, 발표 및 평가 자료

7. 배심원 토론

배심원 토론은 학습자가 배심원 입장에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재판 속 사건에 대해 분석하고 가치판단을 내리는 활동이다. 재판이 주요 소재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모의재판과 유사하지만, 학습자들이 판사, 검사, 변호인 등 다양한 역할을 맡는 모의재판과는 달리 배심원 토론에서는 모든 학습자가 배심원 역할을 맡아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부 우수 학습자만이 아니라 전체 학습자가 토론의 규칙과 절차를 이해하고 토론 능력과 태도를 향상하기에 적합하다.[66]

배심원 토론에서는 학습자가 법교육자가 제시하는 재판의 내용을 토대로 배심원 평결서를 작성한다. 모의재판과 마찬가지로 형사와 민사사건 모두 활용할 수 있지만,

66) 곽한영 외 5인, 법교육학 입문, 박영스토리 (2022), 343-344.

실제 국민참여재판이 형사사건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과 학습자의 흥미, 사건 구성 및 강의의 용이성을 고려한다면 형사사건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67]

참고로 배심원 토론 법교육안을 예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6] 배심원 토론 법교육안

구분	단계	주요 활동 내용	학습 목표	지도 방법/자료
1	도입 단계	· 국민참여재판제와 배심원제의 정의 및 의미 소개 · 배심원 규칙 안내 · 사건 시나리오와 공소사실 설명 및 쟁점 제시 · 역할분담 및 활동 안내	· 국민참여재판제와 배심원제의 의미, 구조 및 운영 방식 등을 이해, · 시나리오와 공소사실을 이해하고, 주요 쟁점을 확인 · 역할카드에 따른 역할을 인식하고 준비	PPT, 영상 (사건 개요) 자료집, 역할카드 등
2	모의재판 단계	· 검사와 변호인의 논거 제시 ·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 및 신문 · 증거제출 및 조사	· 검사와 변호인의 논거 제시 과정을 이해 · 피고인과 증인을 통해 사실확인과 반대신문의 의미를 체험 ·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경청하며 공정한 판단 태도를 기름	재판 진행 순서 안내, 절차 관리, 사건 대본, 증거자료 등 모의재판 자료
3	배심원 토론 단계	· 배심원단 내부에서 증거 등을 근거로 의견 교환 · 유 · 무죄 및 양형 관련 토론 진행	· 공정한 판단과 배심원 토론 규칙 실천 ·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의견 존중과 타협의 필요성을 체험	배심원 토론 규칙 배부 및 설명
4	평의 및 평결 단계	· 다수결 또는 합의 방식을 통한 평의를 통하여 평결을 도출 · 배심원단 대표의 결과 발표	·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 · 개인적 판단과 집단적 결론의 차이 이해	무기명 투표지 및 평의 및 평결을 위한 관련 자료
5	정리 · 평가	· 배심원단 평결 발표 · 실제 관련 사건의 판결 학습 · 실제 판결과 비교하며 차이점 토론 · 성찰문 작성(예를 들어 “배심원으로서 어려웠던 점과 배운 점”)	· 배심원제 장단점을 평가 · 배심원단 평결을 실제 판결과 비교하여 법적 판단의 차이 이해 · 시민 사법 참여 제도의 가치와 개선 가능성 모색	판결문 (요약) 및 해설자료, 성찰문 양식, 배심원 토론 만족도 조사 질문지

67) 곽한영 외 5인, 법교육학 입문, 박영스토리 (2022), 344.

8. 학생자치법정

학생자치법정은 미국의 청소년 법정(Teen Court)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대폭 수정하여 개발한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경미한 교칙 위반사건을 또래 학생들로 구성된 법정에서 스스로 조사 · 변호 · 판결 등을 맡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법적 지식, 가치 및 태도를 향상하기 위한 법교육 활동이다.[68]

참고로 미국의 청소년 법정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 청소년들에게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서, 정규 소년사법절차를 우회할 수 있게 하는 다이버전 프로그램(diversion program)이다. 다이버전 프로그램이란 범행 내용이 중대하지 않고 개선 가능성이 엿보이는 청소년들이 소년법원에 의한 사법절차를 받기보다 대안적인 방법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하여 소년 사법체계에 노출되는 청소년 수를 감소시켜 범죄자로서의 낙인을 막아 결과적으로 사후 비행을 줄이는 목적이 있다. 다이버전 프로그램은 체포, 기소, 판결, 구금과 같은 통상적 범죄자 처리 과정에서 벗어나 일단 사회 속에서 개선 · 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조치를 의미한다. 미국 청소년 법정에서는 가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처벌을 그 학생들이 완수하게 되면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관한 공식적인 법원의 재판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가해 학생들이 청소년 법정의 판결을 거부한다면 정규 법정에서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다.[69]

청소년 법정의 실시 결과 미국에서는 다양한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70]

첫째, 청소년 법정 실시가 비행청소년의 책임감을 향상시켰다. 청소년에게 자신의 행위가 범죄자 자신과 희생자 그리고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 가르쳐줌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게 한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삶의 모범이 되는 성인 자원봉사자와 삶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비행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둘째, 청소년 법정의 실시로 학생들 간의 동료효과를 볼 수 있었다. 정규의 소년법정과는 달리 청소년 법정의 피고인들은 어른들로부터 훈계를 듣지 않으며, 대신 그들의 동료들이 참여하는 사법절차를 경험한다. 같은 동료에 의해 재판받고 처벌을 받는

68) 정순원, "학생자치법정 확대를 위한 제도화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제4권 제3호 (2011. 12.), 109.
69) 허종렬 · 박형근 · 이지혜, "미국 청소년자치법정 효과 분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자치법정의 활용 가능성을 위한 시사점", 법과인권교육연구 제5권 제3호 (2012. 12), 113–114.
70) 한아름,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통한 법교육의 효과 분석", 법과인권교육연구 제2권 제2호 (2009. 8.), 89.

경험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것을 막아준다.

셋째, 청소년 법정의 시행 결과 청소년의 사회성이 발달하였다. 청소년 법정은 청소년들에게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고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장을 제공해 준다.

우리의 학생자치법정은 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자리가 아닌,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진행하며 교칙 위반 학생의 행동 개선을 위해서 어떤 교육적 처분을 이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두 함께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다.[71]

학생자치법정은 같은 학교의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담당 교사의 지도하에 판사, 검사, 변호인, 배심원, 서기, 법정 관리인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사안이 발생하여 학생자치법정이 열리게 되면 최종적으로 학생 배심원단의 평결에 의한 처벌 유형이 부과된다. 학생자치법정에서 판사는 재판을 원활히 진행하고 배심원단의 평결내용을 특별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수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72]

참고로 인천 미추홀 외국어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에서는 다벌점자 학생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스스로 반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칙 위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기상도우미, 분리수거 캠페인 등의 4단계를 비롯해 교육 처분을 결정하였다.[73]

청소년 범죄의 예방을 위해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법정과는 달리, 학생자치법정은 형사 절차가 아닌 학교 현장에 적용하도록 설계된 법교육 프로그램이면서 징계절차이다. 따라서 학생자치법정은 학교 내의 징계 처리 절차의 하나로서 학교 현장에서 적용된다. 미국의 청소년 법정과 우리의 학생자치법정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사법적 제도이지만, 후자는 사법적 제도가 아닌 일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차원의 제도라는 점이다.[74] 따라서 미국에서의 법교육 방식인 청소년 법정과 우리의 법교육 방식인 학생자치법정을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미국의 청소년 법정과 비교하여 우리의 학생자치법정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는 견해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계점을 소개하고 있다.[75]

---

71) 한국법교육센터, 중학생을 위한 학생자치 법교육, 법무부 (2022), 52.
72) 류기형, “학생자치법정을 활용한 학교 법교육이 중고등학생들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33.
73) 기호일보(2023. 8. 23. 기사), “인천 미추홀외고, 학생자치법정 열어 학생자치 꽃 피우다”,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996 (2026. 6. 25. 최종 확인).
74) 류기형, “학생자치법정을 활용한 학교 법교육이 중고등학생들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33.
75) 김주선, “법교육 방법이 법의식 형성에 미치는 효과 –고등학교에서의 강의식 법교육과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첫째, 학생자치법정이 다루는 대상과 판결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청소년 법정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미약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청소년 법정은 사법제도로서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음으로써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재판의 결과는 강한 제재력을 가진다. 만약 판결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정규 법정에 회부되고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반면에, 학생자치법정은 학교의 교칙 위반자를 대상으로 징계절차의 민주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청소년 법정에 비해 약하다. 따라서 한국 학생자치법정의 효과가 교칙에 대한 의식을 넘어 법의식으로 연결되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에 많은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 법정은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법적 제도로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이 엄격하고 치밀하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잘 훈련되어 있고, 재판의 과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 결과 청소년 피고인들의 재판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학생자치법정의 경우에는 학교의 민주적 징계절차를 위한 방법으로 존재하고 있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에 크게 영향받기 때문에 학생자치법정의 구성원 조직이나 사전 교육 등의 준비가 소홀하다. 따라서 학생자치법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법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셋째, 학생자치법정에서 다루는 법교육의 내용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청소년 법정은 대상 청소년들에게 일정한 법교육과 사회봉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법교육을 통하여 법의 일반적인 지식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봉사를 통하여 사회에 대한 책임과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이 결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게 된다. 그러나 학생자치법정은 대상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법지식과 원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없다. 다만,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을 중심으로 역할에 대한 지침 교육 정도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또한 규칙위반자(과벌점자)에게 부여되는 의무는 학교생활에 한정된 행동의 수정을 요구한다. 따라서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교육적 효과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이라는 법교육의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23 이하.

그럼에도 학생자치법정에서는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의 역할을 직접 맡아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사법절차를 경험하고 법을 적용할 기회를 접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법적 정보 획득 및 활용 능력, 법적 문제해결력과 사고력 등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법교육적 관점에서 학생자치법정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모의재판이 가상의 사건을 중심으로 역할을 나누어 대본을 미리 구성하고 이를 시연해 보는 것이라면, 학생자치법정은 학교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준비한 자료를 적절히 투입하면서 법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자치법정은 모의재판보다는 책임의식 및 능동적 참여 능력을 더 기를 수 있다.[76] 참고로 학생자치법정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절차[77]



76) 한아름,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통한 법교육의 효과 분석", 법과인권교육연구 제2권 제2호 (2009. 8.), 86.
77) 법무부 · 한국법교육센터, 학생자치법교육 매뉴얼 (2019), 20.

학생자치법정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78]

제1단계는 '규칙위반과 벌점부과'인데, 생활평점제를 시행하지 않고, 자치규약을 만들어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규칙위반 사실을 기록하거나 삼진아웃제를 활용하여 규칙위반 시 카드를 발급한다. 생활평점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학교별로 정해진 생활지도 규칙에 따라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한다.

제2단계는 '위반사실누적'이다. 규칙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규칙위반사실이 누적되거나 벌점이 쌓이게 된다. 학교별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학생들은 '규칙위반학생'이 되며, 이 학생은 학생자치법정 참석 대상자가 되고, 학생부 등에서 법정 참석을 통보한다.

제3단계는 '법정준비'인데, 이 단계에서는 법정 참여 명단이 결정된 후 담당 교사가 규칙위반학생,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단에 법정 개최를 알리고,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규칙위반학생의 변호사는 규칙위반학생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을 경우, 학생회에서 지정한 변호인(학선변호인)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제4단계는 '법정실행'인데, 이는 재판 시작, 주장(참석이유 진술, 변호인의 주장, 검사의 주장, 검사와 변호인의 최후 진술, 규칙위반학생의 최종 의견진술), 처분수준결정(휴정 및 배심원단 평의, 재개정, 배심원단 판결문 낭독, 재판부에 평결문 제출), 판결로 구성된다.

제5단계는 '이행확인'이다. 학생자치법정은 교육처분을 원칙으로 하는데, 교육처분은 교육적 의미가 있는 과제와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행동을 반성해 보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특성과 학생 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처분을 적용하고 개발한다.

9. 계기 수업[79]

계기 수업은 국가가 지정한 사회과 관련 국가 기념일이 도래하면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법교육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기 수업은 법이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국가를 구성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알릴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법적 소양을 기르고, 긍정적인 법의식

78) 법무부 · 한국법교육센터, 학생자치법교육 매뉴얼 (2019), 21 이하.
79) 곽한영 외 5인, 법교육학 입문, 박영스토리 (2022), 357 이하 참조.

을 함양하도록 할 수 있다. 계기 수업은 하나의 기념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이루어지지만, 1년 단위에서 보면 수시로 이루어진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계기 수업을 매우 잘 활용하는 편이다. 5월 1일 법의 날(Law Day)은 물론이고, 7월 4일 독립기념일, 9월 17일 헌법의 날(Constitution Day)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전국적인 단위로 법에 관련된 교육 이벤트를 개최하여 국민의 법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기 수업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념일로 3. 1절과 4. 19. 혁명 기념일, 4월 25일 법의 날, 6. 10. 민주항쟁 기념일, 7월 17일 제헌절 등을 들 수 있다. 3. 1절은 제헌헌법의 기초가 된 3. 1운동과 임시정부에 관한 내용을, 4. 19. 혁명 기념일과 6. 10. 민주항쟁 기념일, 7월 17일 제헌절 등은 민주적 헌법 성립의 토대를 마련한 3차, 9차 개헌과 헌법재판소 등에 관한 내용을, 4월 25일 법의 날에는 법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다.

참고로 법원의 경우에는 사법부의 실질적인 설립을 기념하고,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인 9월 13일 법원의 날이 계기 수업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념일이다.

10. 교육연극

법교육이 지닌 가장 큰 어려움은 추상적인 개념의 내용이 많아 학생들이 흥미를 갖기 쉽지 않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과 연관하여 상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극을 법교육 방식으로 활용하는 '교육연극'이 유용한 법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 원래 교육연극은 1900년대 초반 영국에서 고아, 빈곤층 아동들에게 별다른 시설이나 교과서 없이 교육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체험을 중시하는 진보적 교육사상을 주장했던 존 듀이의 영향으로 교육연극이 훌륭한 체험교육 수단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80]

교육연극은 형식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연극을 활용한 법교육은 사회적 이슈들을 법교육에 끌어들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인쇄 매체나 멀티미디어 매체 자료는 한 번 제작되면 내용을 쉽게 바꾸기 어렵고

80) 곽한영, "법,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법연 Vol. 88 (2025. 9.), 50.

또 제작 후 배포, 활용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연극은 대본만 고쳐서 연습하거나 심지어 피교육자들이 스스로 대본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교육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81]

교육연극은 관객을 상황에 몰입시켜 강렬한 정서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교육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대상의 연령이나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예를 들어 나이가 어린 학생들의 경우 '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몸으로 표현해보세요', '법이 없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세요' 등과 같이 즉흥적인 상상과 반응을 직접 표현하는 'Creative Drama'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고, 글을 읽고 쓰거나 동료 학생들과 협력 활동이 가능한 나이의 학생들은 직접 대본을 만들어서 짧은 극을 만들어보는 'Drama in Education'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연극을 활용할 수 있다.[82]

더 활용성이 높은 것은 전문 배우들이 체계화된 대본을 가지고 하는 'Theater in Educaion' 방식이다. 전문 배우들이 몇 개의 레퍼토리를 가지고 학교나 기관의 초청을 받아 현장을 찾아가 연극을 하면서 그 과정에 학생들을 끌어들여 연극의 일부에 참여하거나 함께 토론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학교의 입장에서는 준비의 부담이 덜 하고 잘 다듬어진 내용을 통해 교육적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Justice Theater' 극단의 경우 좀도둑질, 학교폭력, 갱단 문제, 사이버 따돌림 등 여러 개의 대본을 가지고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주제를 선택하여 공연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8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2년 법무부와 농협중앙회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법사랑 기금'을 바탕으로 한, 법교육 프로그램 중에 아동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연극공연이 전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다. 또한 2013년 중반 이후에는 각 지역 경찰서의 의경들이 창단한 연극 동아리들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주제로 한 연극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를 찾아가 공연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일시적인 행사로 그쳐서 현재는 명맥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84]

81) 곽한영 외 5인, 법교육학 입문, 박영스토리 (2022), 352.
82) 곽한영, "법,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법연 Vol. 88 (2025. 9.), 50.
83) 곽한영, "법,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법연 Vol. 88 (2025. 9.), 50.
84) 곽한영, "법,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법연 Vol. 88 (2025. 9.), 51.

VII. 소결

법교육은 단순한 법 지식의 전달이나 제도 설명에 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법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행사하며 민주적 가치 속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시민교육의 핵심 영역이다. 법교육은 인권교육 및 정치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규범과 법질서에 기초한 합법성과 제도 내 문제해결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교육적 정체성을 가진다.

권리구제와 법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는 일반 시민 법교육과는 달리, 청소년 법교육은 법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 책임과 참여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그 본질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체험 중심의 법교육 방식이 중요성을 가진다.

법교육지원법의 제정은 이러한 법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하고 활성화한 중요한 입법적 성과로서, 특히 법교육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적 의의가 크다. 법교육은 인권교육이나 정치교육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규범 이해와 제도 내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교육 영역이다.

한편, 법교육은 실시 주체 · 대상 · 방법 ·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으며, 강의식 교육, 사례연구법, 모의재판, 판례 활용, 지역사회 기반 학습, 역할놀이, 배심원 토론, 학생자치법정, 계기 수업, 교육연극과 같은 다양한 교수 · 학습 방식이 활용된다. 강의식 교육은 기초 개념 형성에, 사례연구법이나 판례 활용은 사고력 훈련에, 모의재판과 배심원 토론 및 학생자치법정 등과 같은 체험형 교육 방식은 교육내용의 체득화(體得化)에 각각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 법교육은 이들 방식을 학습 단계별로 결합한 혼합형 모델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 중 청소년 법교육에서는 체험형 방식이 법의 개념과 내용을 현실적 상황 속에서 이해하도록 하는데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절 학교 법교육과 학교 외 법교육

I. 학교 법교육의 연혁(고등학교를 중심으로)[85]

1. 대한제국 말기[86]

우리나라에서의 법교육은 근대 교육이 시작된 1800년대 후반에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한말, 개화기 조선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근대화였고, 여기서 기존 조선 사회의 기본 틀이었던 유교 원리를 대체하는 것으로 여겨진 것이 바로 서양의 법체계였다. 이에 따라 대한제국은 1895년 법관양성소 규정을 공포하고 법관의 실무 교육을 시작하였다. 당시 대한제국이 근대화 과정에서 법률체계의 정비와 법관의 확충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이는 것이지만, 법관양성소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곳이었으므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민간 차원의 법교육은 오히려 이보다 앞서 시작되었다. 1883년 설립된 최초의 민간교육기관인 원산학사에서는 공통 필수교과목 10개 가운데 '만국공법'과 '법률'이라는 두 개의 교과목을 교육하였다. 또한 당시 교육부라고 할 수 있는 학부편집국에서는 공법회통, 법학통론을 발간하기도 했고, 1899년 발표된 중학교 규칙에서 고등과 15개 교과목의 하나로 '법률'을 포함하여 개화기 학교 교육에서 법교육을 이미 중요한 과목으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법교육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법제도와 경제체제의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법제' 혹은 '법제 경제'라는 과목으로 바뀌었다가 군국주의가 강화되는 1932년을 기점으로 그마저도 폐지되었다.

2. 교수요목기(1946년~1954년)

교수요목기(教授要目期)는 일반적으로 광복 후부터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85)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법 관련 교육은 '사회' 과목에서 분리되지 못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지리와 함께 편성되어 있으며, 법 관련 내용도 비중이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1학기 '사회' 과목에서 국토와 함께 인권과 헌법 및 법의 의미와 역할에 관하여 학습하는데, 5학년 2학기와 6학년 '사회' 과목에서는 법 관련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 법교육의 연혁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86) 곽한영, 법교육이란 무엇인가, 박영스토리 (2025), 68-69 참조.

제35호로 공포된 '교육 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공포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광복 후,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는 그동안 지배해왔던 제국주의 교육방식을 청산하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기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사회과'라는 과목이 출현하게 되었고,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알게 하였다.[87]

당시에는 짧은 기간에 교수요목[88]을 제정하여 교과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당시 고등학교 사회과는 공민, 지리, 역사의 3개 분과로 나누어졌는데, 그중에서 공민 과목의 내용을 보면 1학년은 정치편(개론), 2학년은 경제편(개론), 3학년은 윤리철학편(개론)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법 영역과 연관 있는 1학년 정치편의 교과서의 명칭은 '정치문제'로 교과서의 단원은 모두 9개 주제[89]로 구성되었으며, 학습 내용은 헌법과 사법제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90]

3. 제1차 교육과정기(1954년~1963년)

미군정기에 임시로 마련된 교수요목은 1948년 정부 수립 및 1949년 교육법 제정을 계기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지향점은 같았지만, 미군정기에는 상대적으로 민주주의 교육의 보급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에 반하여 정부 수립 이후에는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현실 속에서 민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것은 초대 문교부 장관 안호상의 일민주의(一民主義)로[91] 구체화 되었다. 특히 한국전쟁의 경험으로 반공교육이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제1차 교육과정은 정부 수립 이후의 독자적인 교육과정 구성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교육과정에 이념

87) 김재연,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의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8.), 9.

88) 교수요목은 교수와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교과 편제에 따라 교수할 목적으로 작성한 일련의 수업 요목을 말한다. 교수요목은 일제시대부터 쓰던 것으로 '교육과정'과 같은 뜻을 가진다[우리역사넷 홈페이지, https://contents.history.go.kr/resources/front/html/txthj_p_03.html (2026. 6. 25. 최종 확인)].

89) '정치문제'의 단원 편성을 살펴보면 Ⅰ. 국가, Ⅱ. 민주정치, Ⅲ. 국민의 의무, Ⅳ. 국회, Ⅴ. 정부, Ⅵ. 국법, Ⅶ. 법원, Ⅷ. 지방자치, Ⅸ.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의 9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다.

90) 우지희,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6.

91) 일민주의는 1949년 이승만이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명분으로 제시한 이념이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이승만은 반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일민주의를 제기하였다.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념과 단일민족이라는 우리 민족의 특성에 맞는 이념의 필요성으로 인해 제기되었다. 이후 일민주의의 기본 이념은 안호상 등에 의해 더욱 이론화되어 남녀 · 상하 차별 없애기, 지방 · 파당 차별 없애기, 빈부 · 귀천 차별 없애기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일민주의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 있었으나 건국 직후의 지도이념이 되지 못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7190 (2026. 6. 25. 최종 확인)].

교육이 강화되는 특성을 동시에 보여준다.[92]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사회과를 일반사회, 도덕, 국사, 세계사, 지리의 5개 과목으로 구분하였다. 교수요목기의 법 영역과 연관 있는 정치편에 해당하는 과목은 1학년의 '정치와 사회'였으며 주당 수업 시간이 교수요목기의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 교과서의 전체 지면도 증가하였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학습 영역(민족과 국가, 사상 문제, 민주정치 등)이 추가되었지만, 학습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 영역은 여전히 헌법 내용이 위주였다.[93]

제1차 교육과정 '정치와 사회' 교과서에서는 정부 구조론이 내용의 핵심이다. 당시 제6호 헌법(1962) 체계에 따라 국회-정부-법원순으로 다루고 있었고, 대단원 '법원'에서 심급제, 민 · 형사 재판, 사법권의 독립과 견제 및 균형을 다루고 있었다. 뒤의 입헌정치 대단원에서 헌법도 다루었는데, 그 분량은 다 합쳐도 200페이지 중 30페이지 내외였다.[94]

4. 제2차 교육과정기(1963년~1973년)

제2차 교육과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58년부터 시작되었지만, 5.16 군사정변 이후 문교부 관계자가 대폭 교체되고 교육정책의 방향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는 1961년부터 시작되었다. 1961년 8월에 군사정부는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였고, 이 시기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은 반공의식에 철저하고 정신혁명을 이룬 신인간상 형성에 두어졌다.[95]

당시 고등학교 사회과의 과목은 제1차 교육과정의 5개 과목에서 7개 교과로 증편되어, '일반사회'가 '일반사회'와 '정치 · 경제'로 분리되었고, '지리'가 '지리Ⅰ'과 '지리Ⅱ'로 분리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 법 관련 내용은 필수과목인 '일반사회'와 인문사회계열의 선택과목인 '정치 · 경제' 과목에서 다루었고, 여전히 헌법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내용상으로도 공민 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법교육의 비중이 많이 축소되었다. 이는

92)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207&pageFlag=&sitePage= (2026. 6. 25. 최종 확인).
93) 우지희,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6.
94) 김명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정치와 법의 통합 문제 -2022 교육과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2021. 8. 30.), 9.
95)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208&pageFlag=&sitePage= (2026. 6. 25. 최종 확인).

4.19 혁명과 5.16 군사 정변 이후의 제3공화국에서 민족 주체성의 확립, 반공, 통일 등이 주요 과제로 등장함으로써 정치영역이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96]

제2차 교육과정 '정치 · 경제' 교과서에서는 헌법이 대단원을 차지하고 그 분량도 정치영역의 100여 페이지 중 30페이지 정도로 확대되었지만, 헌법 개정의 역사와 당시 헌법의 장별 주요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에 대부분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었다.[97]

5. 제3차 교육과정기(1973년~1981년)

제3차 교육과정의 배경에는 '국민교육헌장'의 반포와 유신헌법 제정이라는 정치적 변화와 함께 교육과정 이론의 면에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이라는 요인이 작용하였다. 정치이념 교육의 강화 현상은 이미 제2차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 나타났지만, 1972년 유신헌법의 제정 과정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되었다. 또한 1960년대에 미국에서 나타난 기초과학 교육의 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론의 등장이 1970년대 한국의 교육과정 이론에 영향을 미쳤던 것도 한 배경이 되었다.[98]

이 교육과정기에는 지금까지 사회과목에 포함되어 있었던 국사를 별도의 독립 교과로 만들고, 학문적 체계의 중복을 피하고자 기존의 '일반사회'를 없애고 '정치 · 경제'와 '사회 · 문화'의 두 과목으로 분리하였다. 당시 법교육의 학습 내용은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법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헌법 영역 외에도 '법의 기초이론', '개인 간의 생활에 관한 법', '범죄와 형벌', '경제와 복지에 관한 법', '행정에 관한 법', '국제 관계와 법' 등과 같은 법기초 이론 및 생활 관련 법 영역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또한 제2차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이었던 '정치 · 경제'가 필수과목으로 편제되어 법교육의 비중은 예전보다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99]

제3차 교육과정의 '정치 · 경제' 교과서에서는 정치영역 4개 단원 중 법 단원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국민과 법률생활' 2개 단원을 차지할 정도로 법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

96) 우지희,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7.
97) 김명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정치와 법의 통합 문제 −2022 교육과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2021. 8. 30.), 9.
98)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209&pageFlag=&sitePage= (2026. 6. 25. 최종 확인).
99) 우지희,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7−8.

이 중 헌법 단원은 제2차 때처럼 헌법의 장별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만, '국민과 법률생활' 단원은 법교육 내용임을 선명하게 드러내었다. 최근 교육과정의 법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민법, 형법, 사회법, 국제법이 소개되는가 하면, 과도한 법학적 내용 요소라 하여 지금 법교육에서는 다루지 않는 물권, 채권, 상법, 행정법도 다루고 있었다.[100]

6. 제4차 교육과정기(1981년~1987년)

이 교육과정은 민주사회, 고도 산업사회와 같은 다가올 미래 사회에 기대되는 인간상과 제5공화국의 출범에 따른 교육 개혁 조치에 근거하여 개편되었다. 사회과에는 기존의 '정치 · 경제'와 '사회 · 문화를 통합한 '사회Ⅰ', '사회Ⅱ'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일반계와 실업계의 필수과목인 '사회Ⅰ'에서는 재차 교육과정에서 편제된 헌법과 그 외의 법 영역이 편입되었고, 인문계의 선택과목인 '사회Ⅱ'에서는 헌법 영역만 포함되었다. 이로써 법교육의 다양한 영역들이 각각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어지면서 법교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101] 이러한 배경에는 사회적 교육과정 속에서 경제교육의 확대에 따라 법 관련 영역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102]

7. 제5차 교육과정기(1987년~1992년)

제5차 교육과정은 이전과 비교해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감소한 상황에서 개발되었다. 이 점에서 교육 내적인 필요에 의해서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 문교부가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으로 거론한 내용은 첫째, 교육철학 · 학문 내용 · 교육방법의 변화, 둘째 경제적 발전과 사회의 변화, 셋째 현행 교육과정 고시 이후 7년 경과, 넷째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 다섯째 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동향을 배경으로 하면서 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 개편이 있기 2년 전인 1985년에 구성된 교육개혁심의회는 향후의 교육개혁안을 제출하였는데, 이 개혁안에 제출된

100) 김명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정치와 법의 통합 문제 -2022 교육과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2021. 8. 30.), 9.
101) 우지희,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8.
102) 곽한영, 법교육 교수학습방법론 강의, 박영스토리 (2020), 38.

교육과정 개편 및 평가의 체계화 방안도 이러한 추세를 나타내준다.[103]

사회과에서는 1987년도에 강력히 추진된 경제교육의 영향으로 기존의 '사회Ⅰ', '사회Ⅱ'의 과목 명칭이 다시 '정치 · 경제', '사회 · 문화', '한국지리', '세계지리'로 환원되었다. 법교육에 관해서는 헌법 영역이 선택과목인 '사회Ⅱ'에서 공통 · 필수과목인 '정치 · 경제'의 정치교육 영역으로 전환되어 포함되었으며, 법 기초이론과 사법 영역 등은 필수과목인 '사회Ⅰ'에서 선택과목인 '사회 · 문화'로 변경 ·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 · 문화' 과목을 선택한 고교 인문계 과정의 학생들만 법의 일반 이론 등을 학습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정치 · 경제'의 헌법교육으로 만족해야 하는 등 전체적으로 법교육이 다시 위축되었다.[104] 참고로 '정치 · 경제' 교과서에서는 헌법상 기본권과 통치 기구에서의 법원 정도만을 다루고 있었으며, 그 분량도 정치영역 150쪽 중의 15쪽 내외로 축소되었다.[105]

8. 제6차 교육과정기(1992년~1997년)[106]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을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시 · 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 · 재량 권한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사회과에서는 '공통사회(상)'이라는 필수과목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국사 과목이 사회과 안에 복귀하였으며, '정치 · 경제'가 '정치', '경제'로 분리되었다.

법교육 측면에서는 '공통사회(상)'의 'Ⅴ. 개인과 국가' 단원에서 헌법 영역 이외의 법주제를 학습하게 되었고, '정치' 과목의 'Ⅱ. 시민 생활과 법' 단원에서도 법 영역을 다루고 있어 학습 내용이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공통사회(상)'의 법 단원은 총 260쪽 중 6%에 해당하는 15쪽에 불과하고, '정치'는 인문계의 선택과목이므로 오히려 법교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

103)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211&pageFlag=&sitePage= (2026. 6. 25. 최종 확인).
104) 우지희,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8-9.
105) 김명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정치와 법의 통합 문제 -2022 교육과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2021. 8. 30.), 9.
106) 우지희,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9.

9. 제7차 교육과정기(1997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가. 제7차 교육과정기

1995년 5월에 정부는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를 통해 '세계화 ·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여, 이른바 5.31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세계화 추세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였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이 관건이라는 기본 인식이 들어 있었다. 이러한 교육개혁 과정에서 열린 교육체제를 지향하는 탄력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되었다.[107] 이것이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 배경이다.

교육부는 1996년 3월 총론 시안 연구를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유관기관에 위탁하였고, 시안은 11월에 마련되어 3개월간의 교육부 심의를 거쳐 1997년 2월 확정되었다. 각론은 1996년 12월 각론 관련 36개 연구를 유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였고, 각론 시안은 1997년 10월에 마련되어 2개월간의 교육부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초 · 중등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은 1997년 12월에 고시되었다. 이 외에 1998년에는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이 추가로 고시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2000년 초등학교 1~2학년, 2001년 중학교 1학년, 2002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여 2004년 고등학교 3학년에 적용되었다.[108]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신설과 함께 사회과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중3까지 배운 학습 내용에 더 심화한 수준의 지식과 기능을 배울 수 있으며, 학습 내용을 현실 문제에까지 적용 확대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2-3학년에는 선택교육기간에 사회과 관련 1개의 일반선택과목과 9개의 심화 선택과목(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으로 구성되어 있었다.[109]

이 중 '법과 사회' 교과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사회과목으로 심화선택과목

107)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213&pageFlag=&sitePage= (2026. 6. 25. 최종 확인).
108)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213&pageFlag=&sitePage= (2026. 6. 25. 최종 확인).
109) 김재연,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의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0. 8.), 13.

이다. 이 교과가 심화선택과목으로 채택된 배경은, 지금까지의 법교육은 기존 체제와 제도에 관해 무비판적인 수용만을 강조하여 법적 분쟁 등의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법지식을 갖추게 하지 못했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법과 사회' 과목은 법치사회의 실현뿐만 아니라, 당면한 법적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신설되었다.[110] 반면 법교육과 연관된 '법과 사회'와 '정치' 과목을 일반계 고등학교 인문계열의 심화선택과목으로 분류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자연계열 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법교육의 기회가 줄어들었다.[111] 그리고 법교육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헌법 내용인 '헌법의 이념과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통치기구' 등이 심화선택과목인 '정치'에서도 다루어졌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참고로 '법과 사회' 교과서의 목표 체계는 다음과 같았다.

[표 7] '법과 사회' 교과서의 목표 체계[112]

총괄목표	행동 영역별 목표
법 현상 이해 증진	· 법 현상 이해 및 설명 · 자료 분석 및 추론: 법 현상과 쟁점 및 발전 방향 전망
법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	· 자료 분석 및 추론 · 쟁점 규명 및 가치와 태도 명료화
책임의식 및 능동적 참여 태도 함양	· 법체계와 법질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태도 증진 · 능동적 참여 능력 및 태도 증진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법과 사회'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았다.

110) 김재연,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의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8.), 13.
111) 우지희,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10.
112) 우지희,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10.

[표 8]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법과 사회'의 내용 체계

법과 사회
(1)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법의 의의와 구조 ・법의 일반 원칙과 법 적용 ・권리와 의무 (2) 개인 생활과 법 ・권리 능력과 미성년자의 권리 ・가족 관계와 법 ・민법의 기본원리와 법 문제 (3) 사회생활과 법 ・학교생활과 법 ・여성과 법 ・소비자의 권리 보호 ・근로자의 권리와 법 ・환경과 법 (4) 국가 생활과 법 ・기본권 보장 ・행정법과 행정 구제 제도 ・범죄와 형벌 ・재판의 종류와 원칙 ・국제법과 국제 분쟁 (5) 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 ・법 문화와 법의식 ・법률 구조 제도와 미래 사회의 법

나. 2007 개정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내용이 더 분화되었다는 특징이 확인된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국가 생활과 법'에서 다루어지던 형법 영역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죄와 형사 절차'라는 독립 단원으로 분리되었다. 즉, 사법-사회법-공법을 1:1:1로 편성하던 법교육의 내용 체계가 헌법-민법(사법)-사회법-형법의

1:1:1:1 체제로 변화한 것이다.[113]

참고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법과 사회'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았다.[114]

[표 9]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법과 사회'의 내용 체계

법과 사회
(1) 법 생활의 기초
・법의 필요성, 법 제도의 구조
・법의 연원, 민주적 정당성, 법의 해석과 적용
・다양한 분쟁 해결방법, 법률 구조
・법치주의, 준법 의무, 비판적 법의식
(2) 국가적 생활과 법
・입헌주의와 헌법, 기본권 보장과 제한, 헌법재판
・법치행정
・국제법의 기능, 국제 분쟁이 평화적 해결
(3) 개인적 생활과 법
・계약, 부동산,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혼인, 이혼, 친자, 상속
・민사 소송
(4) 사회적 생활과 법
・소비자 피해, 소비자권리, 소비자 권리구제
・근로 계약, 근로자 권리, 근로자 권리구제
(5) 범죄와 형사 절차
・형법의 의의와 기능, 범죄 성립 요건
・범죄의 형태와 유형, 형벌과 보안 처분
・형사절차

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6학년 '사회'에서 '우리

113) 김명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정치와 법의 통합 문제 -2022 교육과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2021. 8. 30.), 12.

114) 김명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정치와 법의 통합 문제 -2022 교육과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2021. 8. 30.), 11.

나라의 민주정치' 단원으로,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7학년 '사회'에서 '우리의 생활과 법', '인권보호와 헌법' 단원으로 편성되어 헌법 관련 내용이 전체적으로 강조되었다. 또한, 고등학교 '법과 사회'가 폐지되고 정치영역과 통합된 '법과 정치'가 탄생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법교육이 정치교육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교육지원법의 제정으로 법교육의 기반이 확산될 수 있는 시기에 '법과 사회'가 '법과 정치'로 개편됨으로 인해 법교육의 정체성이 다시 상실될 것이라는 비판,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권에 배치된다는 비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었다.[115)]

'법과 정치'는 고등학교 현장에서 교사에게는 가르치기 어려운 과목, 학생에게는 외울 것이 많은 과목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선택과목으로서의 선호도에서도 이전보다 못한 자리로 밀려나게 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수능에 적용된 2014학년도 수능에서 '법과 정치'의 선택률은 사회탐구 영역 응시 인원의 11.3%로, 사회탐구 영역 전체 10과목 중에 '경제', '세계사', '세계지리' 다음으로 낮은 순위였다. 직전 2013학년도에 '정치'는 24.2%, '법과 사회'는 11.4%였으니 단순하게 판단하면, '정치'를 선택했던 학생의 절반 정도가 다른 선택과목으로 이동한 셈이다.[116)]

참고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법과 정치'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았다.[117)]

[표 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법과 정치'의 내용 체계

법과 정치
(1) 민주정치와 법 ・정치의 의미와 기능 ・민주정치의 이념과 유형 ・민주정치의 발전과정 ・정치 권력의 의미와 정당성 ・법치주의의 의미와 민주정치와의 관계 (2)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115) 이수진,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법영역의 변화와 쟁점",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6권 제2호 (2023. 8.), 37.

116) 김명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정치와 법의 통합 문제 -2022 교육과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2021. 8. 30.), 13.

117) 김명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정치와 법의 통합 문제 -2022 교육과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2021. 8. 30.), 11-12.

법과 정치
・선거제도의 유형과 특성, 정당과 정당정치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 여론,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정치 문화, 법 문화 (3) 우리나라의 헌법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기본권 제한의 조건과 한계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4) 개인 생활과 법 ・민법의 기본원리, 계약과 불법행위 ・가족관계와 법, 부동산 관련 법 ・개인 간의 분쟁 해결의 절차와 방법 (5) 사회생활과 법 ・범죄와 형벌의 종류, 형사절차의 이해 ・행정 구제 제도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학교생활 ・소비자의 권리와 법, 근로자의 권리와 법 (6) 국제정치와 법 ・국제사회의 특성과 변화,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 ・국제법의 특성 및 국내법과의 관계 ・우리나라 외교 정책과 과제 ・국제사회 변동과 법적 쟁점

라.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어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법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다. 제6차 교육과정 이래 제시되어 왔던 사회과 내용 체계 영역에 '법' 영역이 처음으로 특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법 영역이 명료화되었다. 또한, 고등학교 '법과 정치'가 '정치와 법'으로 교과목명이 변경되었고, 법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교육의 내용 요소 축소가 강조되었다.[118]

118) 이수진,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법영역의 변화와 쟁점",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6권 제2호 (2023. 8.), 37.

이에 따라 헌법을 중단원 수준으로 축약하고, 민사재판, 행정 · 소비자 · 청소년 관련 법 요소가 대폭 축소 또는 삭제되었다.[119]

참고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정치와 법'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았다.[120]

[표 1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정치와 법'의 내용 체계

정치와 법
(1) 민주주의와 헌법
· 정치의 기능, 법의 이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 헌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 기본권의 내용,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2) 민주국가와 정부
·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 국가기관의 역할과 상호 관계
· 지방자치의 의의, 현실, 과제
(3) 정치과정과 참여
· 정치과정, 정치 참여
· 선거와 선거제도
· 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
(4) 개인 생활과 법
·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 재산 관계와 법
· 가족 관계와 법
(5) 사회생활과 법
· 형법의 의의,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종류
· 형사 절차와 인권보장
· 근로자의 권리와 법
(6) 국제 관계와 한반도
· 국제 관계의 변화, 국제법
·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 한반도의 국제 질서

119) 김명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정치와 법의 통합 문제 -2022 교육과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2021. 8. 30.), 13.

120) 김명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정치와 법의 통합 문제 -2022 교육과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2021. 8. 30.), 11-12.

10. 2022 개정 교육과정(현재)

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인간상 및 교육 목표 측면에서 포용성과 시민성이 보다 강조되고,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역량의 함양을 강조한다.[121] 사회과 교육과정은 사회과의 성격 및 정체성에 기초하여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설계하였다. 사회과는 총론에서 제시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122]과 연계하여 사회과 역량을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으로 설정하였다.[123] 일반사회 관련 영역은 정치, 법, 경제, 사회 · 문화적 측면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및 미래 사회의 문제나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124]

나. 2022 개정 초 · 중 공통 교육과정 '사회'에서의 법

2022 개정 초 · 중 공통 교육과정 '사회'에서의 법 영역 핵심 아이디어는 3가지로, '우리 사회에는 일상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들이 있으며, 사람들은 재판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인권보장을 위해 헌법에 기본권을 규정하고, 국가와 시민은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은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으로 구성된다.'로 이루어져 있다.[125] 그리고 2022 개정 초 · 중 공통 교육과정 '사회'에서의 법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121) 정상우 · 강은영,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법과 사회〉 과목의 전망", 법교육연구 제17권 제3호 (2022. 12.), 193.
122)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 2021. 11., 9.
123)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022, 3.
124)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022, 3.
125)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022, 13.

[표 12] 2022 개정 초 · 중 공통 교육과정 '사회'에서의 법 내용 체계[126)]

<table>
<tr><td colspan="2">핵심
아이디어</td><td colspan="3">· 우리 사회에는 일상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들이 있으며, 사람들은 재판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 인권보장을 위해 헌법에 기본권을 규정하고, 국가와 시민은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은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으로 구성된다.</td></tr>
<tr><td colspan="2" rowspan="3">범주</td><td colspan="3">내용 요소</td></tr>
<tr><td colspan="2">초등학교</td><td>중학교</td></tr>
<tr><td>3~4학년</td><td>5~6학년</td><td>1~3학년</td></tr>
<tr><td rowspan="3">지식 · 이해</td><td>법과 생활</td><td>–</td><td>· 법의 적용 사례
· 법의 의미와 역할</td><td>· 법의 의미와 목적
· 다양한 법과 사회법의 필요성
· 재판의 의미와 종류, 공정한 재판</td></tr>
<tr><td>인권과 기본권</td><td>–</td><td>· 인권의 의미
· 헌법상 인권의 내용
· 인권 침해 문제의 해결
· 인권 보호 활동 참여</td><td>· 인권과 기본권
· 기본권 제한, 기본권 침해 구제
·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권리 침해 대응</td></tr>
<tr><td>헌법과 국가</td><td>–</td><td>· 국회
· 행정부
· 법원
· 권력 분립</td><td>· 우리나라 정부 형태, 대통령과 행정부의 역할
· 입법 과정과 국회의 역할
· 법원의 역할과 헌법재판소의 성격</td></tr>
<tr><td colspan="2">과정 · 기능</td><td colspan="2">· 법적 문제 관련 정보를 수집 · 분석하기
· 인권 침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 권력 분립의 이유를 탐구하기</td><td>· 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 다양한 분쟁을 법적 관점에서 조망하기
· 법적 쟁점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 분석하기
· 법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면서 의사소통하기
·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법적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 기존 법의 한계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td></tr>
<tr><td colspan="2">가치 · 태도</td><td colspan="2">· 시민으로서의 준법 태도
· 권리와 책임의 조화
· 인권 친화적 태도
·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td><td>·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가치 내면화
· 법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수행
· 법체계와 절차에 대한 존중
· 법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존중
· 법을 개선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td></tr>
</table>

126)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022, 13.

다.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통합사회2'에서의 법

2022 개정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공통과목 '통합사회1'에는 법 영역에 해당하는 별도의 내용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고, '통합사회2'에서는 2가지가 제시되었다. '근대 시민 혁명 이후 확립된 인권은 오늘날 사회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시민의 노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의의 의미와 기준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 불평등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가 이에 해당한다.[127] 그리고 2022 개정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공통과목 '통합사회2'에서의 법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13] 2022 개정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공통과목 '통합사회2'에서의 법 내용 체계[128]

핵심 아이디어		• 근대 시민 혁명 이후 확립된 인권은 오늘날 사회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시민의 노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 정의의 의미와 기준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 불평등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 경제 주체들은 효율성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한다. • 국제사회의 협력과 세계시민 의식의 함양을 통해 세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와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를 통해 인류가 당면한 지구촌 문제해결과 바람직한 미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범주		내용 요소
지식·이해	인권 보장과 헌법	• 시민혁명 • 인권 • 헌법 • 시민참여
	사회 정의와 불평등	• 정의의 실질적 기준 • 정의관 • 사회불평등 • 공간불평등
	시장 경제와 지속 가능 발전	• 시장경제와 합리적 선택 • 경제 주체의 역할 • 국제 분업과 무역 • 금융 생활

127)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022, 115.
128)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022, 115.

	세계화와 평화	· 세계화 · 국제분쟁 · 평화 · 세계시민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 인구 문제 · 자원 위기 · 미래 삶의 방향 · 지속가능발전
과정 · 기능		· 탐구 주제를 나–지역–국가–세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기 · 탐구 주제의 역사적 배경 조사하기 ·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가치를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가치 간의 관계 탐구하기 · 갈등 상황에서 가치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예측 및 평가하기 · 탐구 주제를 그림이나 지도, 도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표현하기 · 탐구 대상에 대한 현장 조사 수행하기 · 탐구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기 · 의견 및 주장을 자료 및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 통합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타당성 평가하기 ·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활용하여 합의 도출하기
가치 · 태도		·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차원의 다양한 쟁점에 관한 관심 · 갈등 해결을 위한 타인과의 소통과 협력 · 타인의 감정 이해 및 타인의 가치와 태도 존중 · 다양한 생활방식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 배려 · 공동체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공동선의 실천 · 생태 · 평화적 관점에서 공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태도 ·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쟁점에 관한 관심 · 지구촌 공동체의 문제 및 위기 해결 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

참고로 현재 '통합사회2' 과목의 대표적인 교과서 중의 하나인 비상교과서의 '통합사회2'의 경우, 크게 5개의 대단원[129]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법과 관련된 대단원은 '인권 보장과 헌법', 그리고 '사회 정의와 불평등'이다. 이 두 대단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130]

129) 제1대단원은 '인권 보장과 법', 제2대단원은 '사회 정의와 불평등', 제3대단원은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 제4대단원은 '세계화와 평화', 제5대단원은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이다.

130) 비상교육 교과서 홈페이지, https://ibook.vivasam.com/CBS_iBook/974/contents/index.html (2026. 6. 25. 최종 확인).

[그림 3] '통합사회2'에서의 법 관련 대단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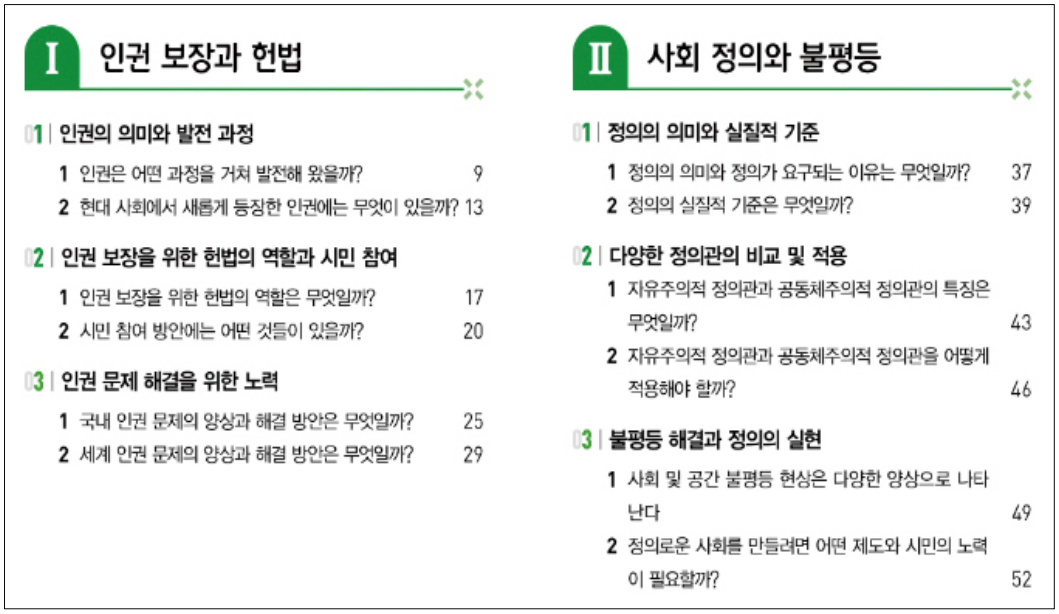

그러나 '사회 정의와 불평등'은 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정의에 관해서 다루고, 사회적 약자와 평등 및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학교에서 배운 도덕 · 사회과목과의 연계성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합사회2'에서의 법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헌법과 (국내 및 국제) 인권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라.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진로선택과목인 '법과 사회'

고등학교 사회과에서는 고교학점제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공통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은 유지하고, 일반 선택과목을 적정화하며, 진로 선택과목의 재구조화와 융합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의 교과 재구조화를 추진하였다. 일반 선택과목으로는 '사회와 문화' 단일 과목으로 구성하였고, 진로 선택과목[131]에는 '법과 사회', '정치', '경제', '국제관계의 이해'가, 융합 선택과목으로는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

131) 진로선택과목은 미래의 다양한 진로와 직업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유지하고 스스로 삶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연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 위한 과목으로, 학생들은 진로선택과목을 통해 심화된 학습이나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배울 수 있다(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022, 32).

생활'이 구성되었다.[132]

'법과 사회' 과목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대해 이해하고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학생들에게 법 관련 분야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는 일반사회 영역의 진로 선택과목이다.[133]

'법과 사회' 과목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양상을 법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법적 문제를 선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 사법과 입법자료를 수집 · 분석할 수 있는 정보 활용 능력,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력,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협력적 소통 등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34]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과 사회' 과목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14] '법과 사회' 과목의 내용 체계[135]

핵심 아이디어		· 개인 간 사적 자치에 의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분쟁을 해결한다. · 국가를 만든 목적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국가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따라 구성 · 운영된다. · 현대에는 복지국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인 생활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그 한계를 지켜야 한다. ·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법으로 규율할 문제가 있고, 법의 규율로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범주		내용 요소
지식 · 이해	개인 생활과 법	· 혼인, 출생, 상속 · 계약, 불법행위 · 부동산, 동산 · 권리와 의무
	국가 생활과 법	· 민주주의, 법치주의 · 헌법의 기본원리 · 기본권 내용, 제한 요건, 한계 · 형법, 죄형법정주의

132) 정상우 · 강은영,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법과 사회〉 과목의 전망", 법교육연구 제17권 제3호 (2022. 12.), 193-194.
133)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022, 219.
134)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022, 219.
135)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022, 221.

		· 범죄의 성립 요건, 형벌의 종류, 형사 절차 · 법원, 헌법재판소
	사회 생활과 법	· 근로자의 권리 · 사회보장법 · 경제법 · 현대적 법(률)관계 · 지적 재산권
	학교 생활과 법	· 학생과 청소년의 법적 지위 · 학교폭력 ·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
과정 · 기능		· 일상생활에서 개인 간의 법(률)관계 파악하기 ·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 등 법과 관련된 자료 수집 방법 파악하기 ·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기존의 법 개선방안 탐색하기 ·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기 ·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원리 분석하기 · 사회현상에서 법적 쟁점에 대한 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활용하기 · 법적 쟁점에 대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의사소통하기 · 법적 쟁점이 있는 문제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하기 · 법적 분쟁을 체계적으로 분석 · 평가하기
가치 · 태도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가치 내면화 · 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민주시민의 태도 · 민주적 법체계와 절차에 대한 존중 · 민주시민으로서 공동체의 발전에 대한 능동적 참여 · 법 개선 과정에 참여를 통한 민주시민의 자질 내면화 · 다양한 법적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와 대안에 대한 관용적 태도

'법과 사회' 과목의 내용 요소는 법의 기초부터 헌법, 민법, 형법, 사회법까지 비교적 고르게 반영하고 있다. 다만 '국제법'이나 '인권과 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법과 사회' 과목에 제시되지 않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선택과목인 '정치와 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지식재산권이나 학교폭력과 같이 학생의 생활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영역의 주제가 핵심적인 내용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진로 선택과목 중 '정치'와 '국제 관계의 이해'의 일부 성취기준에서 법교육 내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정치' 과목에서는 헌법의 기초 부분에 해당하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정당 제도나 선거 제도, 정부 형태, 국가기관의 역할과 권력 분립, 지방자치제도 등과 같이 통치 구조의 핵심적인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제 관계의 이해’에서는 국제법의 필요성과 특징, 기능과 함께 국제법의 법원,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136]

현재 ‘법과 사회’ 과목의 대표적인 교과서 중의 하나인 (주)천재교과서의 ‘법과 사회’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주)천재교과서의 ‘법과 사회’의 목차[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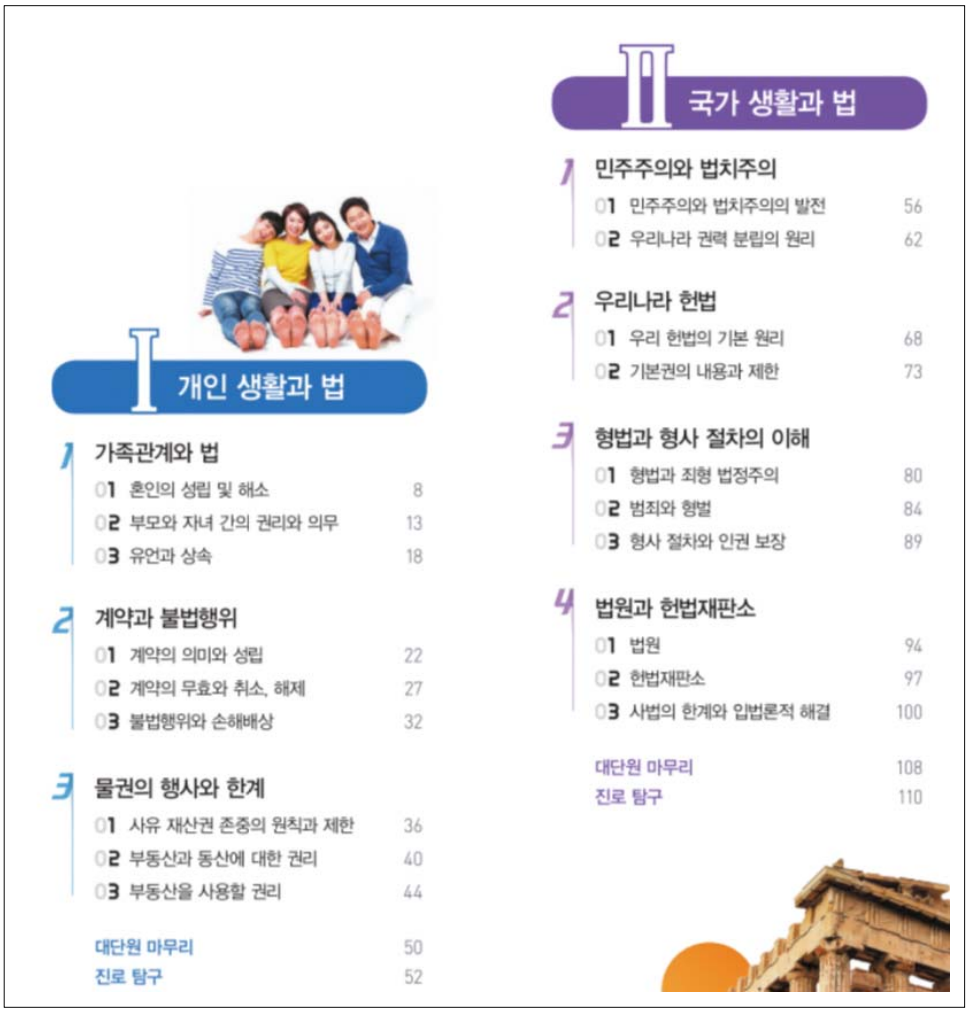

136) 서지수 · 박성혁,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생활법교육 내용 범위 및 계열 분석”, 법교육연구 제20권 제2호 (2025. 8.), 213.

137) (주)천재교과서 홈페이지, https://view.chunjae.co.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G9f4N2_ArszTyKf3kxg-y4LqpJzPRk4G7mGXsKYTtms;isExternal=eQ;printUse=;enableDapSide=;pageView= (2026. 6. 25. 최종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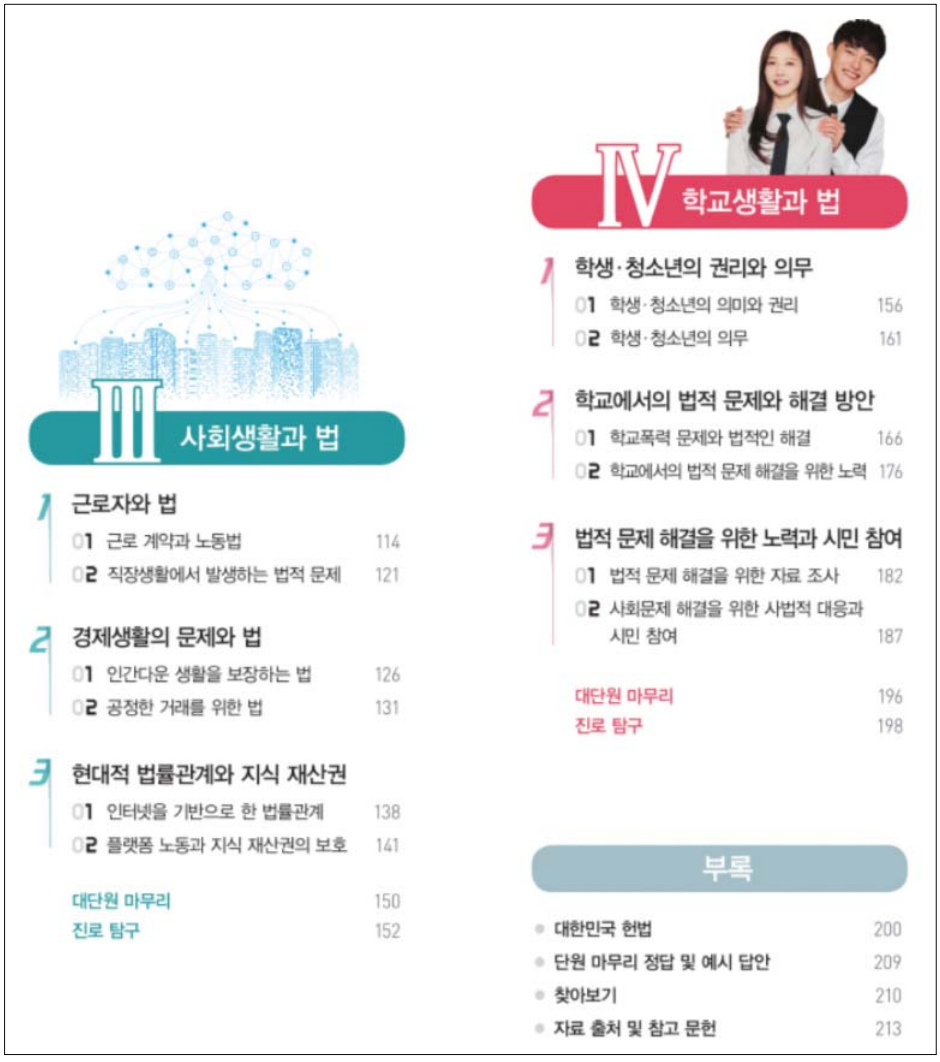

III 사회생활과 법

1 근로자와 법
01 근로 계약과 노동법 114
02 직장생활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121

2 경제생활의 문제와 법
01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법 126
02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 131

3 현대적 법률관계와 지식 재산권
01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법률관계 138
02 플랫폼 노동과 지식 재산권의 보호 141

대단원 마무리 150
진로 탐구 152

IV 학교생활과 법

1 학생·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01 학생·청소년의 의미와 권리 156
02 학생·청소년의 의무 161

2 학교에서의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
01 학교폭력 문제와 법적인 해결 166
02 학교에서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76

3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시민 참여
01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조사 182
0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적 대응과 시민 참여 187

대단원 마무리 196
진로 탐구 198

부록
- 대한민국 헌법 200
- 단원 마무리 정답 및 예시 답안 209
- 찾아보기 210
- 자료 출처 및 참고 문헌 213

II. 학교 법교육의 중요성과 문제점

1. 학교 법교육의 중요성

법교육 전문가들[138]의 의견은 법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를 통한

138) 의견조사 대상이 된 법교육 전문가들은 총 10명으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법교육 전담 교수(8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인), 법교육 전공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1인)이며, 전공을 고려하여 법교육 전공 6인과 법학

법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확산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함.', '법교육 운영은 크게 학교 법교육과 일반 시민 대상 법교육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이 가운데 법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주된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것은 일선 초중고 학교라고 봄.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목)로서 수업 활동의 하나로 진행되는 법교육은 수업 시수가 혹여 적더라도, 전국의 모든 학생이 사실상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교수학습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성과 효과가 모두 클 수밖에 없음.' 등의 응답 내용은 현실적 측면에서 법교육의 활성화는 학교 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139]

이러한 사고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일선 단위 학교가 가지는 장점이 전제되어 있다. 교육청, 교육부, 법무부 등의 유관 기관의 역할이 모두 다 중요하겠지만, 이를 하나로 모아주는 구심점의 역할, 법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는 최일선의 역할은 결국 단위 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관련한 응답으로 '법교육은 결국 학생 대상 법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학생 대상 법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학교 운영과 실제 교육과정에서 법교육이 가장 중요할 것임.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법교육 프로그램도 학교에 보급되어야 함. 학교에서 법교육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도 물론 중요할 것임.', '법무부, 교육부에서 법교육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면 법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은 각급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함.', '법교육의 시작인 학교 법교육이 '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함.'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140]

그리고 법교육 전문가들은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중점을 두고, 강화해야 할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과 중심의 학교 법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창의체험 활동 등 비교과 중심의 학교 법교육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141]

전공 4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조사는 의견조사 방향 및 질문지 구성을 위한 사전조사를 시행한 후, 본조사는 2020년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E-mail을 통해 시행되었다[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변화에 대응한 법교육 혁신 방안 연구, 법무부 (2020), 36].

139)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변화에 대응한 법교육 혁신 방안 연구, 법무부 (2020), 45-46.

140)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변화에 대응한 법교육 혁신 방안 연구, 법무부 (2020), 46.

141)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변화에 대응한 법교육 혁신 방안 연구, 법무부 (2020), 53.

2. 학교 법교육의 문제점

가. 학교 법교육의 현실과 법교육 효과 등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법교육을 받을 실질적인 기회는 학교에서의 법교육이다. 그러나 법 관련 내용이 '사회', '통합사회2', '법과 사회'와 같은 일부 교과에만 편중되어 있으며, 더욱이 고등학교 과목인 '통합사회2'는 헌법과 인권에 치중되어 있고, '법과 사회'는 고등학교 진로 선택과목으로 운영되어 법교육에 대한 학생의 접근성이 낮다. 또한 학교 법교육은 교과서 중심의 이론적 · 주입식 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져 충분한 시간 확보가 어렵고, 심화된 토론 · 체험형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법교육이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에 밀려 소외되는 경향도 있다.[142]

고등학교에서는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선택과목에 '정치와 법'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선택한 학생들은 법에 관심을 가지지만, 선택과목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해 이를 수강하는 학생 비중은 상당히 적다.[143]

참고로 2026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사회 · 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 비율은 다음과 같다.[144]

[표 15] 2026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사회 · 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 비율

구분	사회 · 과학탐구영역(최대 2과목 선택 가능)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 · 문화
인원(명)	224,552	54,014	48,500	46,697	23,490	23,208	8,525	**37,889**	263,047
비율(%)	42.21	10.15	9.12	8.74	4.42	4.36	1.60	**7.12**	49.45

구분	사회 · 과학탐구영역(최대 2과목 선택 가능)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인원(명)	46,943	26,683	112,128	115,435	6,217	6,200	8,650	4,996
비율(%)	8.82	5.02	21.08	21.70	1.17	1.17	1.63	0.94

※ 과목별 비율은 사회 · 과학탐구 영역 지원 인원에 대한 각 과목 지원자의 비율임

142) 법률신문(2025. 7. 5. 기사), "고등학생도 법을 알고싶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9428 (2026. 6. 25. 최종 확인); 법률신문(2024. 10. 5. 기사), "세 살 법교육 여든까지",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39 (2026. 6. 25. 최종 확인)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143)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조사평가팀, 2025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25), 52.

144) 아래의 표는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조사평가팀, 2025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25), 52에서의 편집본을 활용하였음, 원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 https://www.suneung.re.kr/boardCnts/view.do?boardID=1500229&boardSeq=5091315&lev=0&m=0301&searchType=S&statusYN=W&page=1&s=suneung (2026. 6. 25. 최종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음.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법교육의 수행이 부족한 것 외에도 법교육의 효과 자체도 매우 낮은 상황인 점을 지적하면서 초중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교육의 경우 추상적인 이론이나 법준수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 법교육은 특정 영역에 교육이 편중되어 법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145]

한편,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을 선정하고, 적절한 수업방법을 구안(具案)하여 이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교사이다.[146] 그러나 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법학적 전문성을 갖춘 경우가 드물다.[147] 교사의 실무적 경험이나 법제적 이해 등이 부족한 경우, 학생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교육을 하기가 어렵고, 법교육이 단편적 설명이나 시사적 이슈에 관한 토론 수준에 머무른다.

더욱이, 한국법제연구원의 2025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148]에 의하면 학교에서 법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경험 있다'(41.7%)는 비율은 '경험 없다'(58.3%)는 비율에 비해 다소 낮게 조사되었다. 법 관련 학교 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는 응답자(n[149]=1,419)를 대상으로 법 지식의 활용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충분하지 않다'가 48.4%(전혀 충분하지 않다: 5.5%, 별로 충분하지 않다: 42.9%)로 나타난 반면, '충분하다'는 14.4%(매우 충분하다: 0.2%, 대체로 충분하다: 14.2%)로 응답되어 학교에서 배운 법 지식 활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50]

145) 허성진, 법교육기초연구Ⅰ -우리나라 법교육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5), 19-20.
146) 김순희, "사회과 법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법교육의 본질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5권 제3호 (2008), 74.
147) 자세한 것은 이종훈 · 표현덕,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49 이하.
148) 이 실태조사는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17개 시 · 도 거주 3,400가구의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식 방법으로 실시한 것임[한국법제연구원 입법조사평가팀, 2025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25), 2-3].
149) 응답자 수.
150)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조사평가팀, 2025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25), 132.

[그림 5] 법 관련 교육 경험(학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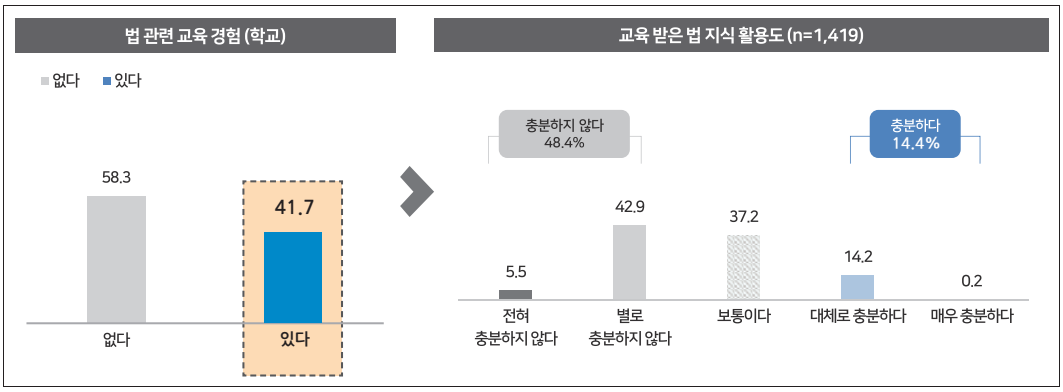

참고로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151]에서도 학교에서 법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n[152]=1,756) 성인을 대상으로 법 지식 활용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충분하지 않다'가 35.9%(전혀 충분하지 않다: 5.3%, 별로 충분하지 않다: 30.6%)로 나타났지만, '충분하다'는 22.1%(매우 충분하다: 1.0%, 대체로 충분하다: 21.1%)로 응답해 학교에서 배운 법 지식 활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53]

그리고 2025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에서 실용적인 법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9.3%, 대체로 필요하다: 58.0%)고 응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3.3%(전혀 필요하지 않다: 0.4%, 별로 필요하지 않다: 2.9%)로 조사되었다.

151) 이 실태조사는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17개 시 · 도 거주 3,400가구의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식 방법으로 실시한 것임[이유봉,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24), 48].
152) 응답자 수.
153) 이유봉,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24), 147.

[그림 6] 학교에서 실용적인 법교육 필요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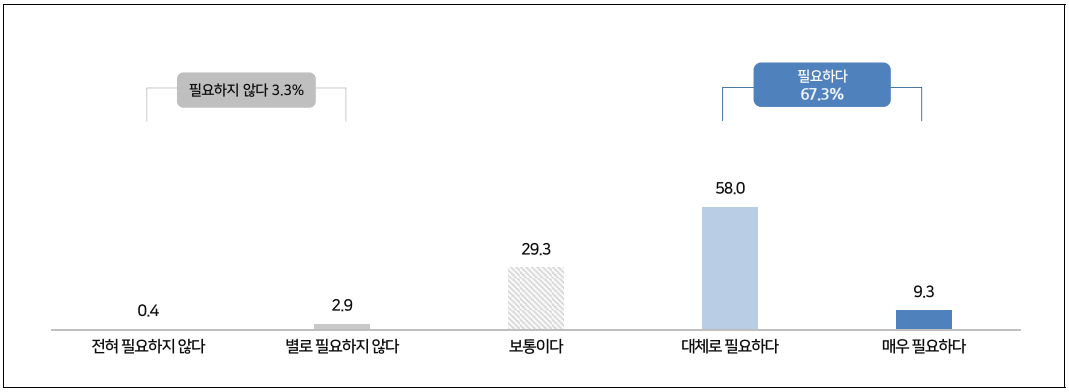

2025년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전문가 의식 조사[154]에 의하면, “초중고 학교에서 법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 평균 5점 만점에 평균 4.55점으로 나타나, 학교 법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초중고 학교에서 법에 관한 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 평균 5점 만점에 평균 2.47점으로 나타나, 법교육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매우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중고 학교에서 법에 관한 교육이 목표에 따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응답 평균 5점 만점에 평균 2.47점으로 나타나, 법교육의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법교육의 역사가 오래되고, 활성화된 미국 청소년 법의식과 우리나라 청소년 법의식에 대한 비교연구 결과[155]를 요약하여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156][157]

154) 이 설문조사는 총 1,016명의 법전문가(법학교수 330명, 변호사 등 법률전문직군 종사자 686명)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조용혁 · 윤태영(연구책임자), 법사회학연구 Ⅰ –법학기초교육 · 연구 강화를 위한 법전문가 의식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25), 요약문에서의 Ⅱ. 주요 내용 참조].

155)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박종선, “청소년의 법의식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 한국과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화학연구 제14권 제4호 (2013), 343 이하.

156) 비록 이 연구 결과가 나온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지만, 연구 당시 우리나라 청소년의 법의식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미국 청소년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학교) 법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 결과를 요약 소개하기로 한다.

157) 법의식과 관련된 질문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미국 청소년에 대한 질문은 영어로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2년 11월 7일부터 2013년 2월 7일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하였다. 그리고 미국 청소년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접수를 하

첫째, 한국 청소년의 법에 대한 신뢰도 평균이 4.09로 미국 청소년의 5.09보다 유의미하게 낮아 법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미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한국 청소년이 상황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평균 4.79로 미국 청소년의 4.37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한국 청소년의 법에 대한 공정성 인식의 평균값은 2.76이고 미국 청소년의 경우는 4.02로 상대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한국 청소년에게 법이 덜 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한국 청소년이 법을 어렵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보면 평균값이 4.80으로 미국 청소년의 평균값 3.51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 청소년의 경우 법을 어렵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법에 대한 지식도 미국 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음을 볼 때 한국 청소년의 법교육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한국의 청소년이 스스로 법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4.77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음에 비해 미국 청소년은 5.58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또 자국민의 법준수 실태에 대한 인식도 한국 청소년은 3.35인데 반해 미국 청소년은 4.4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한국 청소년은 법을 잘 지키는 이유로 처벌의 두려움이나 양심의 가책을 지적한 비율이 높지만, 미국 청소년의 경우 처벌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법을 위반하는 이유를 미국 청소년과 비교하였을 때 법대로 하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미국 청소년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미국 청소년에 비해 한국 청소년의 경우 법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높았으며, 법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 등이 대체로 나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학교를 통한 청소년 법교육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의 학교 법교육의 만족도와 효과가 낮

였으며, 외국인학교 담당자와 협조하여 해당 학교에 120부씩 발송하였고 접수된 설문지는 101건이었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해당 학교에 협조를 구하여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의 취지와 개인정보보호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접수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미국은 109건, 한국은 105건을 접수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미국 청소년은 101건, 한국 청소년은 99건을 분석에 활용하였다[박종선, "청소년의 법의식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 한국과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화학연구 제14권 제4호 (2013), 351-352].

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법의식이 미국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및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등을 통한 학교의 법교육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나. 학교 법교육 교사의 문제

위에서 서술한 2025년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전문가 의식 조사에 의하면, 학교교육과정 법교육 개선방안으로 '초중고 학교 교과 담당자에 대한 법교육 강화(5점 만점에 평균 4.2점)'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교육부와 법 관련 기관의 연계 협력 강화(5점 만점에 평균 4.11점)', '법 관련 과목을 초중고 학교 필수교과목에 포함(5점 만점에 평균 4.09점)', '초중고 학교 법교육 전문가 양성(5점 만점에 4.05점)' 순으로 나타났다.[158]

그리고 2016년도 한국법제연구원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에 의하면 '교사들이 사회과목 중 가장 중시해야 할 분야 중의 하나로 법교육을 들고 있으나,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법교육이며, 가르치기에도 가장 부담스럽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또한, 법과목은 질적 · 양적 측면에서 모두 과거의 법교육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문화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전문적인 법과목 교사 양성체계가 없으며, 학교 현장에도 법교육을 전공한 전문 교원이 거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지적되었다.[159]

2018년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교사의 법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인터뷰 요약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160]

"인터뷰에 응한 교사들은 일선 교사들의 법 관련 지식수준이 대체로 낮다고 평가하였다. 교사가 되기 전에 대학교에서 법학개론 수준의 강의를 수강한 정도의 지식만으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법과 관련한 내용을 가르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심지어 법과 관련한 부분은 자세히 가르치지 않고 회피하는 경향까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양성기관인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교 중 법 관련 강의를 필수과목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교사들은 법 관련 지식을

158) 조용혁 · 윤태영(연구책임자), 법사회학연구 I –법학기초교육 · 연구 강화를 위한 법전문가 의식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25), 118-119.
159) 김명아,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129.
160) 이종훈 · 표현덕,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50.

보충하기 위해 스스로 대학원을 다니거나 교육방송을 시청하기도 하고 법 관련 연수도 받고 있었다. 한편, 교사들은 실제로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쳐 보면 학생들이 법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재미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교과과정 중 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거나 수학능력시험에서 법 관련 과목의 선택률이 낮은 등의 이유로 인해 학생들에게 심도 있게 법을 가르칠 기회가 부족하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논쟁적 주제의 발굴, 실제 판례나 사례를 가공한 수업자료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실제로 그와 같은 자료를 만들어 토론식 수업을 시행하는 것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할 때, 학교 법교육 과정 자체 등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와 병행하여 법교육 교사의 전문성이나 자질의 문제도 학교 법교육의 주요 문제점을 구성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술하는 학교 외 법교육 주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III. 학교 외 법교육 주체의 역할

학교 외 법교육 주체란, 학교 교육과정 밖에서 법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앞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는 수업 시간과 교육과정 편성의 시간적 제약 및 교사의 전문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학생들에 대한 심화된 법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 외 법교육 주체는 전문적인 법지식과 법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법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법교육의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학교 외 법교육 주체의 법교육은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 측면에서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학교 외 법교육 주체의 법교육 방식은 강의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더 폭넓게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법교육 주체가 교과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전문적 법 영역에 관하여 강의를 하거나 관련 법교육 교재 등을 학교에 보급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법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할 경우,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보완되어 학생들의 법적 소양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나아가 학교를 매개로 하는 법교육의 실질성과 효과성 또한 강화될 수 있다.

이처럼 학교 법교육의 효과는 학교 외 법교육 주체의 법교육과 긴밀하게 연결될 때, 비로소 그 효과와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 외 법교육 주체들이 각자의 고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법교육을 한다면, 이는 학교 법교육을 일상생활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실질적이고 현장적 법교육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학교 외 법교육 주체의 활동은 단순히 청소년 법교육의 영역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숙을 이끄는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Ⅳ. 소결

우선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 법교육의 연혁에 관하여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법교육은 근대 교육이 시작된 대한제국 말기인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법교육은 '법제' 혹은 '법제 경제'라는 과목으로 바뀌었고, 1932년에는 군국주의 강화로 인해 법교육이 전면 폐지되었다.

교수요목기(1946년~1954년)는 광복 후 법교육은 제국주의 교육방식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사회과'라는 과목이 등장하며 국가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기 위한 법교육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사회과' 과목은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법 영역과 관련성이 있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명칭은 '정치문제'로 주요 법교육 내용은 헌법과 사법제도에 관한 것이다.

정부 수립 후 제1차 교육과정기(1954년~1963년)는 민주주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고, 반공 교육이 강화되었다. 법 영역과 관련이 있는 제1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은 '정치와 사회'였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정부 구조론이 내용의 핵심이었고 대단원 '법원'에서는 심급제, 민 · 형사 재판, 사법권의 독립과 견제 및 균형을 다루고 있었다. 뒤의 입헌정치 대단원에서는 비중이 작지만, 헌법도 다루었다.

제2차 교육과정기(1963년~1973년)의 방향은 반공 교육과 신인간상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 시기에는 법교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고, '정치 · 경제' 교과목에서 헌법 내용이 다뤄졌는데, 정치영역이 확대되었고, 법 영역의 범위는 축소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기(1973년~1981년)의 배경에는 '국민교육헌장'과 유신헌법의 제정이 있었다. 법교육은 '정치 · 경제' 과목을 통해 더 강화되었는데, 새로운 법교육 내용으로는 '법의 기초이론', '개인 간의 생활에 관한 법', '범죄와 형벌', '경제와 복지에 관한 법', '행정에 관한 법' 등 법기초 이론 및 생활 관련 법 영역이 포함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기(1981년~1987년)에는 경제교육의 확대로 인하여 법교육의 비중은 축소되었고, 법교육의 주요 내용도 헌법 영역으로 제한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기(1987년~1992년)에는 선택과목인 '사회 · 문화' 과목을 선택한 고교 인문계 과정의 학생들만 법의 일반 이론 등을 학습할 수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공통필수과목인 '정치 · 경제'의 헌법교육만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정치 · 경제' 교과서에서는 헌법상 기본권과 통치 기구에서의 법원 정도만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법교육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축소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기(1992년~1997년)에서는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되면서 법교육은 '공통사회(상)'과 '정치' 과목 내에서 다루어졌다. '공통사회(상)'의 'Ⅴ. 개인과 국가' 단원에서 헌법 영역 이외의 법주제를 학습하게 되었고, '정치' 과목의 'Ⅱ. 시민생활과 법' 단원에서도 법 영역을 다루고 있어 학습 내용이 다양화되었지만, 오히려 교과서에서의 법 영역의 비중이 줄어드는 원인 등으로 오히려 제5차 교육과정기보다 법교육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기(1997년~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심화선택과목인 '법과 사회' 과목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법치 사회의 실현뿐만 아니라 실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법과 사회' 과목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인문계열 학생들만 심화선택과목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법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해 법교육 내용이 더 분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법과 사회'가 폐지되고 정치영역과 통합된 '법과 정치'가 만들어졌다. '법과 정치'는 교사가 가르치기 어려운 과목, 학생에게는 외울 것이 많은 과목이 되어 선택과목으로서의 선호도가 낮았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법 영역이 명료화되었고, 고등학교 '법과 정치'가 '정치와 법'으로 교과목명이 변경되었고, 학교에서의 법교육에 대한 어려움으로 법교육의 내용이 대폭 축소 또는 삭제되었다. 현재의 교육

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2' 외에 진로선택과목인 '법과 사회' 과목이 신설되어, 다양한 법 영역에서의 내용을 비교적 고르게 반영하고 학생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영역의 주제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 공간인 학교를 통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법교육이 특정 과목에만 집중되어 있고, 특히, 고등학교 '통합사회2'에서의 법교육은 헌법과 인권에 집중되어 있고, '법과 사회'가 진로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학생들의 법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이로 인해 권력 분립, 사법부 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의 보장,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과 같은 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심층적인 학교 법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또한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법교육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법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 등이 높지 않으며 교사의 법교육 수업에 대한 부담도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학교 법교육은 이론적 · 주입식 교육에 집중되고, 법과 관련한 심화된 토론이나 체험형 수업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학교를 통한 학생 법교육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실시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 법교육 현장에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학교 외에도 다른 법교육 주체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 법교육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특히 학교 외 법교육 주체를 통한 법의 기본원리 등에 대한 심층적 교육과 체험형 법교육의 제공은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법과 법률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한다. 결론적으로는 학교 외 법교육 주체들의 학생 법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전제되는 경우, 학생들이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법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제3장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논의에 앞서

I.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의 목표와 의의 등

1. 청소년 법교육의 목표로서의 사법 신뢰와 사법 접근성

가. 사법 신뢰의 측면

일반론적으로 말하자면,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일반적 청소년 법교육과 같이 청소년에 대해 법과 관련된 지식, 법의 기능, 법의 가치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민주적 법치주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권리 의식을 함양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법원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그 내용이 법에 관한 일반적 · 포괄적 주제가 아니라 법원의 기능과 역할 및 그 구조, 재판절차 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법원과 재판 및 판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사법 신뢰를 향상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법교육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원은 전통적으로 분쟁 해결과 법질서 유지라는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시민과의 소통 및 신뢰 형성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법교육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법적 가치와 민주적 절차를 내면화시키는 통로가 되며, 장기적으로 사법 신뢰를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단순한 교육프로그램을 넘어 법원 판결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참고로 2019년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보고서[161]에 의하면, 청소년의 법과 사법, 법원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162]

---

161)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162) 이 조사는 전국에 초중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전국 광역시와 도 교육청에 실태조사 참여를 공고하였고, 네이버 폼 설문을 동시에 발송하여 실태조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 558명, 중학생 560명, 고등학생 901명으로 총 2,019명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 조사는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컴퓨터 및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129].

초등학생의 경우, 법원과 사법에 관하여 많은 수의 학생이 법원과 판사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고(53%), 재판받을 권리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보장되지 않고(31%), 법원의 판결을 옳다고 믿지 않으며(39%),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은 법을 어겨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38%)으로 나타나 법원과 사법에 대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163]

중학생의 경우, 많은 수의 학생이 법원과 재판과정을 낯설게 느끼고(59%), 법원과 판사를 두려워(4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 재판받을 권리의 공평한 보장,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164]

고등학생들의 법과 사법, 법원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어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법과 사법, 법원에 대한 불신이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많은 수의 학생이 법원과 재판과정을 낯설게 느끼고(58%), 법원과 판사를 두려워하며(48%), 자신의 문제해결에서도 법적 대응은 돈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참는 편이 낫다고 생각(48%)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많은 학생들은 사법부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40%), 법원의 판결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49%), 특히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80%)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분쟁 발생 시 법적 해결방법을 알아보겠다고 응답하면서도, 돈이나 힘을 통한 해결과 사법절차를 통한 해결을 비교하는 문항에서는 상당수(67%)가 돈이나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응답하여, 청소년의 법과 사법, 법원에 대한 인식 및 신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165][166]

---

163)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304.

164)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306.

165)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309.

166) 참고로 법원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도가 행정부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있다[한겨레신문(2025. 5. 15. 기사), "두 번째로 높았던 '법원 신뢰도' 6개월 새 밑에서 두 번째로 추락",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97519.html (2026. 6. 25. 최종 확인). 이 기사에 의하면 '2025~26 유권자 패널조사'에서 기관 및 집단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10점 척도(0~10점)로 물어보니, 법원은 3.8점을 기록해 검찰(3.2점)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 국회는 법원과 같은 3.8점, 행정부는 4.2점, 중앙선관위는 4.7점을 기록했다. 헌재는 5.2점으로 6개 기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의 믿음이 훼손된 결과라고 한다. 이 조사는 한겨레신문과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으로 조사의뢰(조사기관: (주)에스티아이)를 하였고,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2,775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97.8%)와 유무

위의 조사결과를 볼 때, 청소년의 법원에 대한 인식 및 신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법원에 대한 청소년의 부정적인 인식은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법교육을 통하여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167]

이 보고서에서는 왜 청소년이 법원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과 불신을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법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은 우리나라 법체계가 추구하는 가치와 원리, 사법체계와 절차, 공정한 재판을 위한 원칙과 실제적 장치들, 법원의 구성과 역할, 법관의 전문성 등에 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가운데, 신문과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한 부정적 뉴스들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168] 따라서 법원이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을 통하여 법원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이 법원에 대해 잘못 알려지거나 오해가 있는 사항 등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법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169]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법 신뢰와 긴밀히 연계된다.

첫째, 법원의 사법적 절차와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교육과 체험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완화 또는 제거된다.

둘째, 모의재판이나 재판 방청 등을 통해 청소년이 직접 '공정한 절차'와 '판단 기준'을 접하면서,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다.

셋째, 법원의 법교육을 통해 청소년 시기에 형성된 법원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인식은 청소년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되어 사법부 전반에 대한 장기적 신뢰로 연결된다.

넷째, 청소년 법교육은 청소년이 장차 배심원, 증인, 또는 소송 당사자가 될 때 법원의 사법적 절차에 대해 더 협조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다.

선 전화면접조사(무선 1.5%, 유선 0.7%)를 병행 조사한 것이다.

167)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317.

168)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317.

169) 부정적이고 왜곡된 법의식은 청소년 개인 측면에서 준법의식과 시민의식 고취, 사회에 대한 신뢰와 능동적 참여, 법 준수 및 범죄 예방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법기관 및 사회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갈등과 분열, 범죄와 부정부패, 법적 무력감 또는 기피 태도, 법 집행 및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등을 조장하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교육기관과 사법기관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요청된다. 따라서 정부, 특히 사법기관은 청소년들이 법과 사법에 대하여 올바르고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법 원리와 가치, 사법체계와 절차, 관련 지식 등이 부족함으로 인한 왜곡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 법교육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317].

법교육을 통한 사법 신뢰 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원의 법교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교육적 목표를 가진다. 첫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사법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청소년이 사법절차와 원리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셋째, 청소년이 사법제도나 원리에 관해 갖고 있을지 모르는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극복함으로써 사법 신뢰를 증진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법원 법교육의 내용과 목표는 법원이 법교육을 함에 있어 중점을 둬야 할 분야와 지향해야 할 점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170]

특히 청소년이 법원의 법교육 방식으로서 판사와의 대화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경우에는 청소년이 법원이나 판사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리감을 해소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되는데, 이는 법원과 재판에 대한 사법 신뢰 형성에 기여한다.

청소년은 대체로 언론 보도나 대중문화 매체를 통해 법원과 재판을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법제도에 대한 왜곡되거나 단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쉽다. 법원의 법교육은 재판절차, 법원의 역할, 판결이 형성되는 과정 등을 실제 사례와 체험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사법제도에 대한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이해를 형성한다.

사법 신뢰는 결과 중심적 신뢰가 아니라 절차적 신뢰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법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민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과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는 유지될 수 있다. 법원의 법교육은 이러한 이해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나. 사법 접근성의 측면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단순히 사법 신뢰의 강화 측면에서만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성인보다 법적 지식과 경험이 제한적이며, 사법절차에 대한 정보 접근 능력 또한 낮은 집단으로 평가된다. 특히 법원이 청소년에게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면 법원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은 권리 침해 상황에서도 법적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법을 '자신과 무관한 제도'로 인식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은 사법 접근성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해당한다.

사법 접근성은 현대 법치국가에서 핵심적인 과제이며, 이는 단순히 법원에 출입

170) 황승태, 법관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5), 24.

할 수 있는 물리적 접근을 넘어 실질적으로 권리를 알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법원의 법교육은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법원견학, 모의재판, 판사와의 직접적인 소통 경험은 법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완화하고,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정보적 · 심리적 접근성을 동시에 향상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법원을 권위 기관이 아닌, 자신의 권익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하게 된다.

특히 법원의 법교육은 청소년이 '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 즉 소송 이용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장차 성인이 되었을 때, 권리 침해적 상황에서 법적 구제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사법 접근성 강화 정책의 교육적 축으로서 이론적 · 실천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법 접근성은 사법 신뢰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국민이 사법제도를 이해하고 접근 가능하다고 인식할수록, 법원에 대한 신뢰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사법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하게 인식될 경우, 이는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원 법교육을 통한 사법 접근성 제고는 단기적인 교육 효과를 넘어, 장기적인 사법 신뢰 형성의 기초 조건으로 기능한다.

법원의 법교육은 법원과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심리적 장벽 완화를 통해 사법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법의식 함양과 사법 신뢰 구축에 기여한다. 청소년 법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권리 행사 역량을 강화하고, 법원 접근의 심리적 · 사회적 장벽을 해소하는 실질적 도구이다.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청소년이 법원과 사법절차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제공한다. 따라서 법원은 청소년 법교육을 통하여 사회와의 소통이라는 새로운 공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법원의 단순한 부가적인 교육이나 홍보 활동이 아니라, 사법 신뢰는 물론 사법 접근성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법정책의 핵심 수단이다.

2. 청소년 법교육의 의의

학교와 법원 외 법교육 주체의 법교육과 비교해볼 때,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법원은 법원견학, 모의재판, 판사와의 대화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인적 구성원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심화된 법교육을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방식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학교 법교육의 현실적 공백을 보완한다(학교 법교육의 현실적 공백보완 기능).

둘째,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단순히 법원을 처벌기관이나 권리구제 기관으로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 법치주의가 민주국가의 근간이 되는 핵심 원리임을 인식시킨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법을 강제 규범이나 처벌 수단으로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공적 규범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이러한 인식은 향후 법 준수 태도와 공공 규범에 대한 존중으로 연결되는 기초가 된다(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증진 기능).

셋째, 법원의 법교육은 법 지식의 암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사실관계와 규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그 의의가 있다. 법원은 체험형 법교육 방식을 통해 청소년이 감정이나 선입견이 아닌 절차와 규범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사고방식을 습득하도록 할 수 있다(합리적인 법 판단능력과 법적 사고력의 배양).

넷째,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범죄 억제를 위한 사후적 수단이 아니라, 위법 행위의 결과와 법적 판단 과정을 사전에 이해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이 스스로 합법적 행동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소년사건, 학교폭력, 사이버 범죄 등 청소년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교육은 법 위반 행동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예방적 차원의 법 준수 태도 형성 기능).

다섯째, 법교육은 특정한 정치적 이념, 정당, 정책 또는 사회적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지 않고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초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2일 발의된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171] 제2조 제3항도 “법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 당파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가치관 형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법교육에서의 중립성은 법교육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따라서 정치적 · 정책적 관점이나 정책

171) 김병주 의원 대표 발의(2025. 12. 2.),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4795.

적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법원이 청소년 법교육을 담당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현재 법교육의 중립성과 관련한 본격적인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보수 정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준법정신 등에 관한 법교육이, 진보 정권에서는 인권교육이 강조된다고 한다.[172] 청소년 법교육이 특정 정치적 관점이나 정책적 입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은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중심으로 한 중립적 법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로 평가된다(법교육에서의 중립성 확보).

참고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법무부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대법원이 좋아 보임.', '사법부 독립을 전제하자면... 법교육에서 일정의 비율을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봄.'이라는 법전문가 의견이 있었다.[173]

3. 청소년 법교육의 강점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을 학교와 법원 외 법교육 주체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법원은 법무부나, 헌법재판소 등 다른 법교육 주체와는 달리 민사, 형사 등과 같은 특정 법 분야 외에도 다른 법 분야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례가 축적된 국가기관이고, 법교육을 위한 인적 · 물적 역량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체험방식의 법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법교육을 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의 체험방식의 법교육은 청소년의 법 이해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몰입도와 기억 지속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둘째, 법원은 최종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독립된 사법부라는 위상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법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 법의 공신력과 정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법에 대한 신뢰 형성의 출발점이 된다.

셋째, 법원은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강점을 가진다.

---

172) 경향신문(2023. 8. 30.자 기사), "'무지의 벽' 부술 법교육 지원법엔 무관심…위원회는 존폐기로", https://www.khan.co.kr/article/202308302131005 (2026. 6. 25. 최종 확인).

173)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변화에 대응한 법교육 혁신 방안 연구, 법무부 (2020), 48; 의견조사 대상이 된 법교육 전문가들은 총 10명으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법교육 전담 교수(8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인), 법교육 전공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1인)이었다.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보장되는 당사자의 권리, 공정한 심리 절차, 증거조사와 판단의 논리 구조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경우, 청소년은 법의 핵심 가치가 결과보다 과정에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시민이 법을 수용하고 준수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이해를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

넷째, 법(실무)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입증된 판사가 청소년 법교육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 역시 법원 법교육의 중요한 강점이다. 재판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판사의 법교육은 이론 중심의 법교육에서 다루기 어려운 법 적용의 현실적 맥락, 판단 과정에서의 고민과 한계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인 청소년은 법의 복합성과 현실성을 균형 있게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의 질문에 대한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응답도 보장된다. 특히 판사의 법교육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법원'이 가지는 상징성이 교육의 수용성과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II. 법원 법교육의 근거

앞에서 서술한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의 의의 및 중요성과 관련하여 법원 법교육의 법적 근거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교육지원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법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마련' 규정[174]이 법원 법교육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175]

그러나 이 법 제3조 제2항[176]은 법교육 지원 시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상호 간

174)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2. 법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 배치 · 처우 및 연수
4. 법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 · 개발 및 지원
5. 법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 · 관리
6. 법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75)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법연수원 발전계획의 방향성 점검 및 구체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21), 534.

176)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의 협력 체제 구축의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만 명시하고 있고, 법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법교육지원법의 다른 조문들도 법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177]에서의 재정지원 대상에 법원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법교육지원법은 법원 법교육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사법연수원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법원규칙인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조는 사법연수원의 관장사무로서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 그리고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1년 6월 22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는 "사법연수원은 1971. 1. 1. 개원 이래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 수습사무 등 법조인력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그 외에도 오랜 기간 법실무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원 내 · 외부 요청에 따라 다양한 법률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시행해 오고 있음. 현재도 사법연수원은 사법보좌관 등 재판 관련 법률전문가, 군법무관 등 국가기관 법률 관련 직역 종사자, 일선 교육현장에서 법률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중 · 고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 수요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센터를 통해 개발도상국 사법역량강화사업,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지속해 오면서 해외 각국 법관, 법원 직원,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한 초청 및 방문연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법원조직법에서는 사법연수원의 사무 범위에 법교육 및 법실무연수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법연수원이 수행하고 있는 법교육 전문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아울러 공공재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원의 인적 ·

177) 제2조 (재정상의 지원) ①「법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재정상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관 · 단체 또는 시설로서 재정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 · 의결한 법교육 관련 기관 · 단체 또는 시설
②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법교육 지원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2. 법교육 시설 ·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법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 · 의결하는 법교육 시행에 필요한 비용

물적 자산을 활용한 법교육 및 법실무연수의 연구 · 실시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연수원의 관장 사무에 '법교육 및 법실무연수의 연구와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0조)."[178]

이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연수원을 포함한 법원의 법교육 활동은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며,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 다만, 법원의 법교육 활동의 근거를 굳이 말하자면 재판이 아닌 사법행정권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법교육 활동은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와 이해 증진 및 국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하는 법원의 사법행정 활동의 유형으로 국민의 권리 · 의무와는 관련 없는 사법행정상의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교육 활동에 관한 내부적인 예산적 근거만 있다면, 법원의 국민 법의식 제고를 위한 공익적 활동으로서의 법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의 법교육은 국민에 대한 법원의 자율적인 사법행정권에 근거한 사법부의 사회적 책무로서의 공적 기능 수행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법원은 법원의 공적 기능 수행의 하나로서 스스로 법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법교육 방식을 정할 수 있고, 법원 자체 또는 외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법교육을 할지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2014년 9월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학생 법교육 지원과 중학교 자유학기제[179]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교육부와 체결하고,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은 학생들에게 재판 참관 프로그램, 법원견학 프로그램, 법관 학교 출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에 협조하고, 교육부는 사법부 법교육 취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여건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180]

---

178)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2021. 6. 22.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950), 1-2.

179)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 · 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 방식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는 짧은 시간에 공교육 체제를 완성하여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하고 높은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한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전체 교육체제의 우수성에 초점', '점수 위주의 교육', '자신에 대한 탐색 · 고민의 시간 부족'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 주는 교육,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탐색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한다[황승태,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5), 42].

180) 대법원 보도자료(2014. 9. 19.), '대한민국 법원으로 초대합니다' 2014. 9. 19. 법원행정처-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1.

[표 16] 교육부 - 법원행정처 업무협약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와 사법부 법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서
교육부와 법원행정처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구현을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사법부의 학생 법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활동과 사법부가 추진 중인 미래세대에 대한 다양한 법교육 지원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법교육을 통한 진로탐색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와 사법부 사이의 협조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내용)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1. 교육부는, 사법부의 학생 대상 법교육과 법원체험 프로그램이 미래세대의 법치주의와 사법제도에 관한 기본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여건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은, 재판참관 프로그램, 법원견학 프로그램,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강좌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법교육 프로그램의 폭넓은 제공을 통해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며, 협의회의 개최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1년에 2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정보교환) 각 기관은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상호 적극적으로 교환 또는 공유한다. 제5조(효력 및 협약 기간) 본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6조(비밀유지) 각 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체계적 홍보) 각 기관은 공동 협력사업의 성과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한다. 제8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 조정 또는 결정한다. 2014년 9월 19일 교육부 장관 황 우 여 　　법원행정처장 박 병 대

이러한 업무협약의 취지에 따라 각급 법원들도 관내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청소년 법교육을 활성화하였다. 예를 들어 청주지방법원은 2015년 3월 충청북도교육청과 '법교육 지원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주지방법원 관내 6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법원체험 기본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181]

181) 코트넷 게시판, http://gwsearch.scourt.go.kr/SCOURT/court_new/searchBody.jsp#_ (2026. 6. 25. 최종 확인).

제2절 대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I. 서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가지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심에는 법원행정처 공보관실이 있다. 대법원규칙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제3항과 이 규칙 별표 제1의8 제4호에 의하면 공보관실은 법원견학 및 법원전시관 등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데, 분장사무로서 법교육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법원의 법교육은 법원전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법원전시관은 법과 법원실, 법원역사실, 기획전시실, 어린이 법 체험실, 법정체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법원은 2008년 법원전시관을 개관하였고,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2012년 7월 법원전시관 개편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3월 25일 법원전시관을 재개관하였다. 리모델링된 법원전시관은 전시 공간을 크게 도입부, 법과 법원실, 법원 역사실, 어린이 법체험실, 기획전시실 등으로 구성하고, 2013년 12월 10일에는 법정체험실을 준공하여 모의재판 체험장까지 마련하였다.[182]

최근 2024년 11월 20일에는 어린이 법체험실을 전면 개편 후, 재개관하였다. 참고로 2015년 3월 19일 법원전시관 관람객은 10만 명을 달성하였고, 2020년 1월 21일에는 관람객 40만 명을 달성하였다.[183]

182) 황승태, 중·고등학생을 위한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5), 83 참조.
183) 대법원 법원전시관 홈페이지, https://museum.scourt.go.kr/courtmuseum/sub2/sub2_02.html (2026. 6. 25. 최종 확인).

[그림 7] 법원전시관 전경



이하에서는 법원전시관 학교연계 법교육 프로그램, 법원전시관 방학 법교육 프로그램 및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대법원의 법교육 활동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II. 법원전시관 학교연계 법교육 프로그램

1. 초등학교 고학년[184]

대법원 법원전시관은 학기 중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학급 15~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법원의 역할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 어디까지 아니?'라는 교육주제로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기 중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총 12회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방식은 대면 교육이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도 가능하다.

184) 이하는 법원행정처 공보관실이 제공한 자료 및 대법원 법원전시관 홈페이지, https://museum.scourt.go.kr/courtmuseum/DcBoardViewAction.work?gubun=1&pageIndex=1&searchWord=%C7%CF%B9%DD%B1%E2&seqnum=153 (2026. 6. 25. 최종 확인)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국민참여재판, 어디까지 아니?'의 2024년 교육시간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17] '국민참여재판, 어디까지 아니?' 2024년 교육시간표

	학습과정	소요 시간	학습·체험 활동	장소
대면 교육 (총 110분)	도입	10분	- 학습목표 및 활동소개	법원전시관
	법정관람	20분	- 법원의 역할 및 재판 알아보기 - 법정 및 재판 과정 안내	소·대법정
	이론학습	20분	- 형사재판 안내 영상 관람 - 교재를 활용하여 기본개념 교육	법정체험실
	모의 법정 체험	30분	- 모의 국민참여재판 준비 - 모의 국민참여재판 체험 및 관람	
	만들기 체험	20분	- 국민참여재판 모형(3D퍼즐) 체험	
	마무리	10분	- 설문지 작성 및 활동 정리	

	학습과정	소요 시간	학습·체험 활동	비고
비대면 교육 (총 50분)	도입	5분	- 학습목표 및 활동소개	
	이론학습	20분	- 법원 및 재판과정 개념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	영상 2건
	만들기 체험	20분	- 국민참여재판 모형(3D퍼즐) 체험	교보재(3D퍼즐)
	마무리	5분	- 설문지 작성 및 활동 정리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타임머신을 타고 온 꼬마 판사'라는 교육주제로 법교육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교재와 학습 자료를 통해 법원의 역사와 역할을 학습하고 판결문을 직접 작성하여 발표해 보는 체험 활동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18] '타임머신을 타고 온 꼬마 판사' 2022년 교육시간표

학습 과정	소요 시간	학습 · 체험 활동	비고
도입	5분	- 기기 체크 - 출석 확인	
이론 학습	20분	- 법원 소개 - 재판 및 법원의 역사	영상 등
교재 학습	10분	- 법원의 역할 및 재판 알아보기 - 대법원과 대법관	PPT 교재
체험 활동	10분	- 판결문 작성 및 선고	팝업북 교재
마무리	5분	- 온라인 설문	

2. 중 · 고등학생[185]

대법원 법원전시관은 위에서 서술한 초등학교 고학년 법교육 외에도 학기 중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인의 꿈, 나의 꿈'이라는 교육주제로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의 일생과 업적을 통해 근대 이후 사법제도의 변화상을 배우고, 더 나아가 장래 법조인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진로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다.

2024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학기 중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총 12회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방식은 대면 교육이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도 가능하며, 1회 참가대상은 인솔 교사를 포함한 중 · 고등학생 15~30명이다.

'가인의 꿈, 나의 꿈'의 교육시간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19] '가인의 꿈, 나의 꿈' 2024년 교육시간표

	학습과정	소요 시간	학습·체험 활동	장소
대면 교육 (총 110분)	도입	5분	- 학습목표 및 활동소개	법정체험실
	이론학습	30분	- 가인 김병로 선생의 일생 소개	
	전시관 관람	10분	- 가인 선생 관련 자료 살펴보기	법원전시관
	법정 관람	30분	- 현재의 법원의 모습과 제도 알아보기	소·대법정
	판사와의 대화	30분	- 꿈에 대한 깊이 찾기	법정체험실
	마무리	5분	- 설문지 작성 및 활동 정리	

	학습과정	소요 시간	학습·체험 활동	비고
비대면 교육 (총 50분)	도입	5분	- 학습목표 및 활동소개	영상, PPT, 교재 활용
	이론학습	20분	- 대법원과 법원의 역할 알아보기	
	판사와의 대화	20분	- 꿈에 대한 깊이 찾기	질문사전 취합
	마무리	5분	- 설문지 작성 및 활동 정리	

185) 이하는 법원행정처 공보관실이 제공한 자료 및 대법원 법원전시관 홈페이지, https://museum.scourt.go.kr/courtmuseum/DcBoardViewAction.work?gubun=1&pageIndex=3&searchWord=&seqnum=153 (2026. 6. 25. 최종 확인)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III. 법원전시관 방학 법교육 프로그램(2025년 겨울방학을 중심으로)[186]

법원전시관은 여름 · 겨울 방학에 학생들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최근 2025년에 실시된 겨울방학 법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1. 개요

2025년 겨울방학 동안 일반 학생과 법원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는데(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4개의 프로그램이 총 62회 진행되었고, 여기에 총 477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직원 자녀는 공문회신을 통해 모집하고, 일반 학생은 법원전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착순 접수하였다.

직전 2024년 여름방학 기간에 진행된(2024년 7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4개의 프로그램은 총 36회 진행되었고, 여기에 총 35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2025년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이보다 횟수로는 26회, 참여 인원으로는 126명(약 36% 증가)이 늘어난 것이다. 접수 일정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0] 2025년 겨울방학 법교육 프로그램 접수 일정 및 결과

접수 대상	프로그램명(교육 대상)	접수 일시	마감 소요시간
직원 자녀	어린이 판사의 하루, 공정한 판결을 부탁해! (초등학교 저학년 및 고학년)	2024년 12월 2일~12월 13일	12일
일반 학생	어린이 판사의 하루(초등학교 저학년)	2024년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41초
	공정한 판결을 부탁해!(초등학교 고학년)	2024년 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44초
	가인의 꿈, 나의 꿈(중학생)	2024년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1분 1초
	어린이 활동지와 함께하는 해설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2025년 2월 2일부터 28일까지 (주말, 설날 및 설 연휴 제외)	현장 접수

186) 이하는 법원행정처 공보관실이 제공한 자료 및 대법원 법원전시관 홈페이지, https://museum.scourt.go.kr/courtmuseum/main.work (2026. 6. 25. 최종 확인)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평균 접수 마감 소요 시간이 100명당 45초 이내였으며, 추가 신청 및 다른 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참고로 2024년 겨울방학과 2024년 여름방학 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의 평균 접수 마감 소요 시간도 각각 100명당 50초와 60초 이내였으며, 추가 신청 문의가 많았다.

2. 어린이 판사의 하루

가. 교육 일시와 참가 현황 등

'어린이 판사의 하루'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법 체험실에서 어린이 판사가 되어 판사의 역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10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는 데, 교육 일시와 참가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표 21] '어린이 판사의 하루' 프로그램 교육 일시와 참가 현황

회차	일시		신청 인원(명)	참여 인원(명)	비고
1	2024년 12월 26일	15:00~15:50	16	11	직원 자녀 대상
2	2025년 1월 7일	14:00~14:50	20	18	일반 대상
3	2025년 1월 14일		20	16	
4	2025년 1월 21일		20	18	
5	2025년 2월 4일		20	20	
6	2025년 2월 11일		20	18	
합계	6회		116	101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 법 체험실 개편을 통하여 신규 개발된 교육으로, 어린이가 판사가 되어 주어진 활동을 통해 재판의 종류와 사건의 해결책을 찾아 직접 판결을 내려보고, 마지막에는 판사 페이퍼 토이(paper toy)를 만들어보는 창의체험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판사 페이퍼 토이를 통해 법복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각 등으로 인하여 활동 카드를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5분 정도의 복습시간을 제공하여 법원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어린이 판사의 하루'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표 22] '어린이 판사의 하루' 프로그램 구성

학습과정	소요 시간	학습·체험 활동	장소
도입	5분	- 학습목표 및 활동 소개	어린이 법 체험실
탐구 학습	20분	- 전시 관람을 통해 법원에 대해 이해하기 - 카드를 활용하여 토론 및 탐구	
창의 활동	20분	- 판사의 역할에 대해 배워보기 - 페이퍼 토이를 활용하여 어린이 판사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는 창의 체험 활동	법정체험실
마무리	5분	- 설문지 작성 및 활동 정리	
총	50분		

나. 설문조사 결과

직원 자녀를 제외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요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23] 거주지

서울특별시	52명(52%)	충청도	1명(1%)
경기도/인천	29명(33%)	전라도	0명(0%)
경상도	4명(4%)	제주도	0명(0%)
강원도	1명(1%)	미응답	3명(3%)

[표 24]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

① 부모님을 통해	63명(70%)
② 대법원, 법원 전시관 홈페이지를 통해	11명(13%)
③ 주변 사람을 통해	8명(9%)
④ 전시관 방문을 통해	4명(4%)
⑤ SNS를 통해	3명(3%)
⑥ 미응답	1명(1%)

[표 25] 선생님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었나요?

① 매우 어렵다	1명(1%)	④ 이해된다	34명(38%)
② 어렵다	3명(3%)	⑤ 매우 잘 이해된다	34명(38%)
③ 보통	18명(20%)	⑥ 미응답	0명(0%)

[표 26] 수업 및 체험 활동은 재미있었나요?

① 매우 재미있지 않다	0명(0%)	④ 재미있다	31명(34%)
② 재미있지 않다	0명(0%)	⑤ 매우 재미있다	43명(48%)
③ 보통	16명(18%)	⑥ 미응답	0명(0%)

[표 27] 오늘 수업으로 법과 법원에 대해 관심이 생겼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4명(4%)	④ 그렇다	30명(33%)
② 그렇지 않다	6명(7%)	⑤ 매우 그렇다	28명(31%)
③ 보통	21명(23%)	⑥ 미응답	1명(1%)

[표 28] 교육 후의 느낀 점이나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세요.

①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9명(32%)
② 재미있고(흥미로운) 좋은 교육이었다.	20명(21%)
③ 궁금증이 해결되었다.	10명(11%)
④ 미응답	7명(8%)
⑤ 없습니다.	6명(7%)
⑥ 법과 법원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5명(6%)
⑦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다.	5명(6%)
⑧ 판사, 검사가 되고 싶다.	5명(6%)
⑨ 교육에 또 참여하고 싶다.	3명(3%)

참고로 2024년 여름 프로그램의 경우, 직원 자녀를 제외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수업 및 참여 활동이 '매우 재미있다' 또는 '재미있다'고 응답한 대답은 전체 응답자 수의 78%에 달했고, 오늘 수업으로 법과 법원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는 응답(매우 그렇다, 그렇다)도 68%에 달했다.

3. 공정한 판결을 부탁해

가. 교육 일시와 참가 현황 등

이 프로그램은 법과 사법제도의 역사를 배워보고, 실제 법정 관람을 통해 재판의 형식과 재판에 참여하는 역할에 대해 학습하고 판결문을 직접 작성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총 146명이 참여하였다. 교육 일시와 참가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표 29] '공정한 판결을 부탁해' 교육 일시와 참가 현황

회차	일시		신청 인원(명)	참여 인원(명)	비고
1	2024년 12월 27일	14:00~14:50	9	7	직원 자녀 대상
2	2025년 1월 2일		25	24	
3	2025년 1월 9일		25	25	
4	2025년 1월 16일		25	24	
5	2025년 1월 23일		25	20	
6	2025년 2월 6일		25	22	
7	2025년 2월 13일		25	24	
합계	7회		159	146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교과과정 중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심화 학습 및 체험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교재 및 교육 자료를 통해 법과 사법제도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는 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며, 법원 전시관에서만 배워볼 수 있는 과거 사법제도의 전시 자료들을 통해 사법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그리고 체험 학습 전 실제 법정을 관람한 후, 재판의 형식과 재판에 참여하는 역할을 살펴보고 판사의 역할을 학습하였고, 이후 직접 작성한 판결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정한 판결을 부탁해'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표 30] '공정한 판결을 부탁해' 프로그램 구성

학습과정	소요 시간	학습·체험 활동	장소
도입	5분	- 학습목표 및 활동 소개	법정체험실
이론 학습	30분	- 과거의 법과 사법제도의 역사 이해	
전시 관람	10분	- 전시 유물을 통한 조선시대의 사법제도 및 근대의 사법부에 대해 이해 및 복습	상설전시실
법정 관람	30분	- 재판 제도와 법정 살펴보기	소·대법정
체험 학습	30분	- 사건 영상 시청 - 어린이 판사가 되어 판결문 작성 체험	법정체험실
마무리	5분	- 설문지 작성 및 활동 정리	
총	110분		

나. 설문조사 결과

이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31] 거주지

서울특별시	69명(50%)	전라도	1명(1%)
경기도/인천	59명(42%)	강원도	0명(0%)
충청도	7명(5%)	제주도	0명(0%)
경상도	2명(1%)	미응답	1명(1%)

[표 32]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

① 부모님을 통하여	90명(65%)
② 주변 사람을 통해	27명(19%)
③ 대법원, 법원 전시관 홈페이지를 통해	11명(8%)
④ SNS를 통해	8명(6%)
⑤ 전시관 방문을 통해	2명(1%)
⑥ 미응답	1명(1%)

[표 33] 선생님의 이야기가 이해하기 쉬웠나요?

① 매우 잘 이해됨	49명(35%)	④ 이해되지 않음	1명(1%)
② 이해됨	64명(46%)	⑤ 전혀 이해되지 않음	1명(1%)
③ 보통	2명(17%)	⑥ 미응답	0명(0%)

[표 34] 수업 및 체험 활동은 유익했나요?

① 매우 유익함	64명(46%)	④ 유익하지 않음	1명(1%)
② 유익함	55명(40%)	⑤ 매우 유익하지 않음	1명(1%)
③ 보통	18명(12%)	⑥ 미응답	0명(0%)

[표 35] 오늘 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① 법정 살펴보기	58명(42%)	④ 전시관 자료 학습	12명(9%)
② 판결문 체험	52명(37%)	⑤ 기타	3명(2%)
③ 재판의 역사 알아보기	14명(10%)	⑥ 미응답	0명(0%)

[표 36] 오늘 수업이 법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요?

① 매우 그렇다	63명(45%)	④ 그렇지 않다	0명(0%)
② 그렇다	56명(40%)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명(2%)
③ 보통	18명(13%)	⑥ 미응답	0명(0%)

[표 37] 교육 후의 느낀 점이나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세요.

① 재미있고(흥미로운, 좋은) 유익한 교육이었다.	29명(22%)
② 없다.	26명(19%)
③ 법과 법원에 대해 새로 알게 된 점이 많았다.	23명(17%)
④ 무응답	20명(14%)
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9명(6%)
⑥ 모의재판, 다른 사건 판결문 체험, 새로운 교육도 해보고 싶다.	7명(5%)
⑦ 법정을 직접 볼 수 있어 새롭고 좋았다./신기했다./인상 깊었다.	6명(4%)
⑧ 또 오고 싶다.	6명(4%)
⑨ 법원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다.	5명(4%)
⑩ TV 수리/의자와 책상이 멀어서 불편했다. 교육에 또 참여하고 싶다.	3명(2%)
⑪ 판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 수 있었다./진로에 대해 알 수 있었다.	3명(2%)
⑫ 법정이 추웠다./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2명(1%)

참고로 2024년 여름 프로그램의 경우, 직원 자녀를 제외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수업 및 체험 활동이 유익했다고(매우 유익함, 유익함) 응답한 대답은 전체 응답자 수의 96%에 달했고, 수업이 법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매우 그렇다, 그렇다)고 응답한 대답은 93%에 달했다.

4. 가인의 꿈, 나의 꿈

가. 프로그램 내용과 구성

'가인의 꿈, 나의 꿈' 프로그램은 사법부의 역할을 알아보고 법원에서 존경받는 인물의 삶을 통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으로 2025년 1월 17일 14시부터 15시 50분까지 중학생 18명을 대상으로 1회 진행되었다. 그리고 2026년의 경우에는 1월 16일 14시부터 15시 50분까지 중학생 18명을 대상으로 1회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생애와 판사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2025년의 경우, 교육 신청은 60초 이내에 마감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인 '판사와의 대화'를 위해 해당 교육 일주일 전에 사전 질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다.

'가인의 꿈, 나의 꿈'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표 38] '가인의 꿈, 나의 꿈' 프로그램 구성

학습과정	소요 시간	학습·체험 활동	장소
도입	5분	- 학습목표 및 활동 소개	법정체험실
이론 학습	30분	- 가인 김병로 선생의 일생 소개	
전시 관람	10분	-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현재의 법과 법원에 대한 이해 학습	상설전시실
법정 관람	30분	- 소·대법정 살펴보기	소·대법정
판사와의 대화	30분	- 판사와의 대화를 통한 진로 탐색 활동	법정체험실
마무리	5분	- 가인의 꿈을 통해 나의 꿈 생각하기 - 설문지 작성 및 활동 정리	
총	110분		

나. 설문조사 결과

2025년도에 실시된 '가인의 꿈, 나의 꿈'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39] 거주지

서울특별시	15명(83%)	전라도	0명(0%)
경기도/인천	3명(17%)	경상도	0명(0%)
강원도	0명(0%)	제주도	0명(0%)

[표 40]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

① 주변 사람을 통해	10명(56%)
②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7명(39%)
③ 기타	1명(5%)
④ 전시관 방문을 통해서	0명(0%)
⑤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0명(0%)

[표 41] 수업 및 체험 활동은 유익했나요?

① 매우 유익함	4명(22%)	④ 유익하지 않음	0명(0%)
② 유익함	8명(44%)	⑤ 매우 유익하지 않음	1명(6%)
③ 보통	5명(28%)	⑥ 미응답	0명(0%)

[표 42] 오늘 수업으로 법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나요?

① 매우 그렇다	7명(39%)	④ 그렇지 않다	0명(0%)
② 그렇다	6명(33%)	⑤ 전혀 그렇지 않다	0명(0%)
③ 보통	5명(28%)	⑥ 미응답	0명(0%)

[표 43] 교육받은 후의 느낀 점이나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말씀해주세요.

없다(미응답 1명 포함).	6명(33%)	좋은 기회, 유익한 경험이 되었다.	2명(11%)
재미있었다. 또는 만족스러웠다.	4명(22%)	판사님의 진솔한 이야기, 판사님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었다.	2명(11%)
모의재판 체험 등 다양한 활동	3명(17%)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다.	1명(6%)

참고로 2024년 여름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수업 및 체험 활동이 유익했다고(매우 유익함, 유익함) 응답한 대답은 전체 응답자 수의 46%로 나타났고, 보통이라는 답변은 55%로 나타났으며, 수업이 법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매우 그렇다, 그렇다)고 응답한 대답은 91%에 달했다.

5. 어린이 활동지와 함께하는 전시 해설

'어린이 활동지와 함께하는 전시 해설' 프로그램은 법원전시관의 정기 해설 시, 어린이(유치원 및 초등학생) 관람객 비중이 높은 방학 기간 '어린이 활동지'를 활용하여 상설 및 기획 전시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2025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2회 총 48회, 21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약 30분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참고로 2024년 여름방학 기간에는 총 26회, 16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약 30분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기획 전시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 해설 시 이를 함께 진행하며, 해설 후에는 퀴즈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답변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예를 들어 기획 전시('결정의 순간, 나와 가족 그리고 법원') 연계 어린이 활동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8] 기획 전시 연계 어린이 활동지의 주요 내용



6. 방학 법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주요 후기

법원전시관은 참여 학생 및 학부모의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후기(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및 인스타그램)를 수집 및 선별하여 프로그램의 보완 및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23년 겨울방학부터 2025년 겨울방학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의 온라인 주요 후기를 소개하기로 한다.

[표 44] 프로그램 온라인 주요 후기

교육시기	주요 후기
2023년 겨울방학	“왜 인기가 많은 방학 프로그램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유익하고 알찬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법과 대법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수업의 백미는 판결문 작성~ 한창 사회, 시사에 관심 보이는 나이라 잼났다고,…추천 답사 장소인 이유가 있는 듯,. 나도 강력 추천.”
	“너무 재미있었다며 장래희망 또 바뀐 아들, 광클릭한 보람이 있고만.”
2023년 여름방학	“초등 고학년만 듣는 수업이라 5학년 1학기 사회 수업에 법에 대해서 배운 게 있어서 이번 여름방학 시기가 적절한 시기였다. 5학년 여름방학에 가는 걸 추천!”
	“법복 입고 판사자리 검사자리에서 사진 찍어보고,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맞춰 클레이로 법원 마크도 만들어보고 퀴즈도 풀어봤더라고요. 집에 와서 법원 관련 활동지와 책도 열심히 보더라는.”
	“법의 역사도 배우고 대법정이 하는 일과 재판의 종류 등을 배웠더라고요. 또 판결문을 스스로 완성해 보는 시간도 가졌대요. 초등방학체험으로 너무너무 굿굿!! 퀄리티 좋아요.”
2024년 겨울방학	“대법원에서 실제 재판이 이뤄지는 대법정, 소법정을 둘러보고 판결문도 써 보는 경험. 아직 무엇이 될지 모르는 꿈 많은 아이들에게 추천합니다.”
	“재판의 역사도 배우고 대법원 투어, 전시유물도 관람한 후 법정체험실에 들어가서 수업 후 마지막 판결까지 써보는 수업. 보호자 투어시간에는 대법정, 소법정에 안내해 주시고, 주차도 무료라서 편하게 다녀왔다.”
	“체험이 끝나고 나서 법원은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과 법원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냥’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법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법과 법원의 위대함도 다시 느꼈다. 법원전시관에 가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2024년 여름방학	“선착순 25명 10초 마감 컷에 8월 총 4회 중 다 순식간에 마감되고 어쩔 수 없이 개학 첫 주에 있는 4회차 금요일로 예약해버렸다. 끝나고 교육받은 책자를 짧은 시간에 나름 알차게 배운 것 같다.”
	“아이가 너무 재밌었다며 즐겁게 교육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들고 나온 교육 책자를 보니 생각보다 정말 열심히 교육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025년 겨울방학	“꼭 예약 성공하고 싶은 프로그램 중 하나였는데, 만반의 준비를 했으나 광탈하고 만 ㅠㅠ 체감 1초 컷이었던 법원전시관의 방학 프로그램이다.”
	“겨울방학 기간인 1~2월 중 주 1회, 총 6회 동안 선착순 25명으로 구성된 체험 수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약 신청 마감이 전회 30초 컷이라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과 동시에 신청했는데 남편이 원하는 날짜에 재빠르게 예약 성공하여 기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었다.”
	“1분도 안 돼서 프로그램이 마감되는 거 보고 너무 놀랐지만 다행히 예약에 성공!(중간 생략) 5학년 사회 – 인권, 헌법, 법의 의미, 역할 어려운 내용일듯 싶어 다녀왔는데 역시나 유익한 장소였어요.”

Ⅳ.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대법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법교육을 제공하는 전용 웹사이트인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를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주요 콘텐츠는 '사법부 소개', '법원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요?', '법교육 교재', '동영상 보러가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외에도 '법관이 되려면', '재판의 종류와 절차', '법교육', '알쏭달쏭 OX퀴즈' 등을 어린이 법교육 차원에서 배너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시작 화면과 주요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9]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시작 화면[187]



187)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kids/index.html (2026. 6. 25. 최종 확인).

[그림 10]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주요 학습 내용[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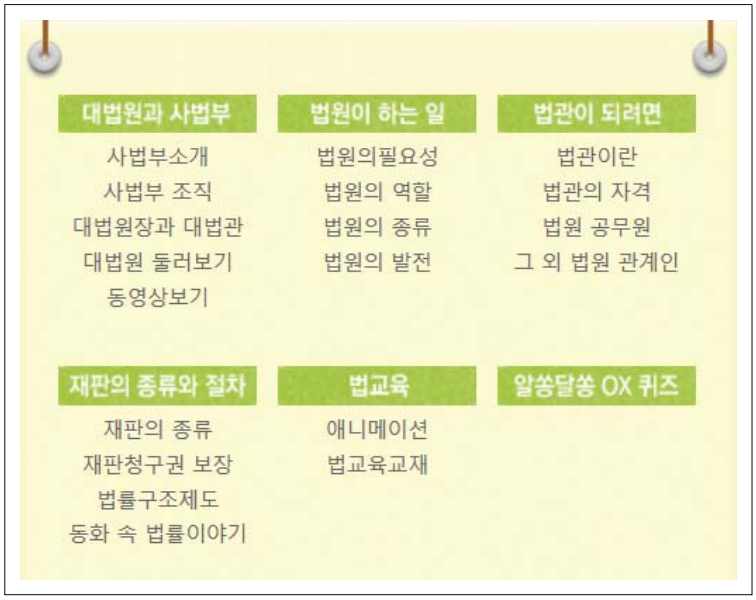

이 홈페이지의 특징은 관련 설명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고, '알쏭달쏭 OX퀴즈'를 통해 학생들이 흥미롭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생용 법교육 교재 만화인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개정판)' 시리즈 제1권~제6권과 '초등학생용 법교육 교재: 가인 김병로',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이야기' 시리즈 제1권~제5권을 공개하여 학생들이 쉽게 법교육 교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V. 기타 법교육 프로그램

1. 법원전시관 견학

법원전시관 견학은 단체 관람과 개인 관람으로 구분된다. 단체 관람은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단체가 사전 예약(관람 희망 전월 1일부터 관람 희망일 5일 이전)을 하는

188)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kids/images/circle_location_off.png (2026. 6. 25. 최종 확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 관람은 단체가 아닌 개인 및 가족 단위 소수 관람객이 법원전시관을 관람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예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매주 토 · 일요일 및 국경일 등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14시와 16시에 약 30분의 해설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탈북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 견학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전시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전시관 온라인 VR 전시실을 통해서 간접 방문할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도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189]

2. 사법역사문화관 법교육 프로그램[190]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사법역사문화교육관 내에는 사법역사문화전시실과 어린이 법체험 공간인 '어린이 로스쿨 캠프'가 있다. 사법역사문화전시실에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이야기하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의 법원과 법원이 재판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를 알 수 있다. 현재 사법역사문화교육관 로비에서는 '조선시대 재판과 판결'을 주제로 기획 전시를 하고 있다.

전시실 내부 첫 번째 테마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현대까지 우리 사법부의 변천사이고, 두 번째 테마인 '법원, 오늘'에서는 법원의 구조와 3심 제도, 재판의 종류와 절차, 그리고 시대별 판결문 작성 방식과 양식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등기, 공탁, 회생, 경매 같은 생활과 밀접한 법원 업무들도 쉽게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테마에서는 사법제도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법 서비스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전시실에서는 부동산 등기를 체험할 수 있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대법원의 판결을 미디어로 체험할 수도 있으며, 법복 체험도 할 수 있다.

'어린이 로스쿨 캠프'에서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법과 법원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 법지식을 학습한다.

---

189) 대법원 법원전시관 홈페이지, https://museum.scourt.go.kr/courtmuseum/sub3/sub3_01.html (2026. 6. 25. 최종 확인).

190) 대법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_zzang/223870742628 (2026. 6. 25. 최종 확인).

[그림 11] 사법역사문화관 내부 사진[191]



〈법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조망하는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어린이 로스쿨 캠프의 모습, 놀이를 통해 법원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3. 대한민국 법원의 날 프로그램

대법원은 법원의 날을 기념하여 법원전시관 '대한민국 법원의 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25년 9월 12일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전시 해설을 듣고 관람 후,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골든벨 문제를 푸는 특별 해설 프로그램인

191) 법원사람들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12&seqNum=2236 (2026. 6. 25. 최종 확인).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 및 기타 이벤트를 진행하였고,[192] 그리고 9월 26일에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최대 4인, 총 10가족) 대법원을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가족 초청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법원전시관 방문, 소법정 · 대법정 · 정의의 여신상 방문, 판사와의 대화로 진행되었다.[193]

4. 사법견학 프로그램

매년 대법원은 대검찰청과 함께 서초구청이 주최하는 '아 · 태 사법정의 허브 사법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6년 상반기의 경우 대법원은 1월 28일, 2월 25일, 3월 25일, 4월 22일에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사법정의 라운지와 향나무 상징공간 방문, 법원전시관 관람, 대법정 · 소법정 · 정의의 여신상 관람 및 모의재판 체험으로 구성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약 2시간 정도 진행된다.[194]

5. 대법원 유튜브 등

대법원은 국민과의 소통 및 법원 홍보를 위하여 2013년 8월 8일부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구독자는 3만 8천 9백여 명이며, 약 870개의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다.[195] 이 유튜브에 생성된 재생목록에는 '청소년 법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재생목록은 없다. 그러나, 개별 재생목록인 '가정법원 탐구생활', '미성년 피해자 증언 안내 영상', '대법원 판례 온(On, 溫)', '대법원 영블영상팀' 등에서 청소년 법교육에 적합한 수준과 내용을 가진 영상을 찾을 수는 있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 탐구생활'에서의 개명 절차 알아보기 영상, 아동보호 절차 알아보기 영상, 가정보호 알아보기 영상,

192) 대법원 법원전시관 홈페이지, https://museum.scourt.go.kr/courtmuseum/DcBoardViewAction.work?gubun=1&pageIndex=1&searchWord=%B9%FD%BF%F8%C0%C7%20%B3%AF&seqnum=182 (2026. 6. 25. 최종 확인).

193) 대법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_zzang/223999883464 (2026. 6. 25. 최종 확인).

194) 서초구청 홈페이지, 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bbs/View.do?cbIdx=57&bcIdx=407494 (2026. 6. 25. 최종 확인). 참고로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6년 4월 8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견학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형사재판 방청, 판사와의 대화, 법복 입어보기 체험으로 구성되었다.

195) 대법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VyP8gMq5m5Ki02l6ZwEHRw (2026. 6. 25. 최종 확인).

‘미성년 피해자 증언 안내 영상’에서의 청소년을 위한 증언 안내 영상, 아동을 위한 증언 안내 영상, ‘대법원 영블영상팀’에서의 법원공무원이 되면 보낼 하루 영상, 나는야! 어린이 판사! 영상, 법복 소개 영상, 심급제도(3심제) 영상, 우리나라에 법원은 몇 개? 영상, 대법원 법원전시관 관람 꿀팁 대공개! 영상, 재판할 때 법봉(판사봉)을 사용한다 VS 사용 안 한다 영상 등이다.

한편, 대법원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블로그는 2007년 8월에 개설되었으며,[196] 현재 블로그 이웃은 16,972명, 글 스크랩은 16,275회이다.[197] 이 블로그에서 청소년 법교육 관련 배너는 없지만, ‘법원이야기’와 ‘대학생기자단’ 배너에서는 청소년에게 유용한 법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이야기’에서의 ‘땅땅땅’ 대한민국 법에도 망치가 있나요?, 국민참여재판이 궁금하다, 대법원 vs 헌법재판소 어떻게 다른가요?, 법원에서 입는 법복이란?, 재판의 종류와 절차,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법원의 날: 사법부 독립의 역사와 의미, 세계의 재판 이야기, 모두의 안전을 위한 법정 보안 검색, 국민 양형 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세종대왕 판결록, 청소년을 위한 법정 증언 안내 등이 있다. 그리고 ‘대학생기자단’에서는 조상님 묘가 있는 땅– 20년 관리하면 무조건 내 땅일까?, 그림자 배심원 체험기, 야 너도 쉽게 찾을 수 있어! “판결문”, 법원에 관한 오해와 진실, 제헌절에 대해 알아보아요, 3년 전에 도난당한 물건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영화 미녀와 야수에서 사람을 감금했다가 풀어줬던 야수의 행위는 ‘체포, 감금죄’에 해당할까? 등이다.

196) MBN 뉴스(2007. 8. 29.), “대법원, ‘사법부 블로그’ 개설”, https://www.mbn.co.kr/news/society/253077 (2026. 6. 25. 최종 확인).
197) 대법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_zzang (2026. 6. 25. 최종 확인).

제3절 사법연수원의 청소년 법교육

I. 서설

1970년 8월 7일 사법연수원 설치에 관한 법원조직법(법률 제222호)이 공포되고, 1971년 1월 1일에는 사법연수원이 개원하였다. 현재 사법연수원의 업무에는 (신임)법관 연수, 비법관(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조정위원 등) 연수, 법학전문대학원 법실무교육, 국제사법협력, 법교재 발간 등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도 포함된다. 1981년 8월 26일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전부개정을 통하여 이 운영규칙 제2조(관장사무)는 "연수원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여 법교육에 관한 내부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198]

사법연수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2010년경부터 본격화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주요 프로그램에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강의와 판사와의 대화, 모의재판과 법정 방청 등을 포함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법원가족 자녀 부모직장 체험이 있었다. 그리고 사법연수생으로 하여금 중 ·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법교육을 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참고로 2019년도 여름방학에 진행된 법원가족 자녀 부모직장 체험의 경우, 초등학생 4학년 이상 80명,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30명이 교육 대상이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1일, 중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2일 동안 진행되었다.[199]

사법연수원은 최근 2025년 6월 2일 고양교육지원청과의 공유학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청소년 법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198) 참고로 전면 개정 전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조는 "연수원은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199)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50주년 역사관[https://jrti.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gubun=319&cbub_code=&searchWord=&pageIndex=6 (2026. 6. 25. 최종 확인)]; 코트넷 게시판, http://gw.scourt.go.kr/portal.nsf/portal?readform (2026. 6. 25. 최종 확인)을 참조.

[그림 12] 사법연수원과 고양교육지원청 업무협약식[200]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과 사법연수원은 지난 2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공유학교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이하에서는 사법연수원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II. 경기공유학교 연계 법교육

경기공유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학습플랫폼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201] 이 학습 프로그램은 경기도 중 · 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학과 전문 기관이 협력하여 학생의 진로 개척 및 전문 학습역량 신장을

200) 경인매일(2025. 6. 4. 기사), "고양교육지원청-사법연수원, 공유학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815 (2026. 6. 25. 최종 확인).
201) 경기공유학교 홈페이지, https://gong-u.goe.go.kr/base/contents/view?contentsNo=177&menuLevel=2&menuNo=436 (2026. 6. 25. 최종 확인).

위한 미래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202]

최근 사법연수원은 경기공유학교 지역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2025년 7월 9일부터 2025년 9월 10일까지 총 8회(매주 수요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 법교육은 고양시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 방문 방식과 온라인 방식을 혼합하여 진행되었다. 학기 중에는 방과 후에 진행(19시부터 21시까지)하였고, 방학 기간에는 일과시간에 진행(16시부터 18시까지)하였다. 경기공유학교 연계 법교육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203]

[표 45] 경기공유학교 연계 법교육 프로그램 구성

순서	강좌 일자	차시	학습 내용
1	7. 9. 19:00	1~2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1 (사법제도와 법원의 역사)
2	7. 16. 19:00	3~4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2, 3 (재판의 모습/재판의 상식, 세상을 움직인 재판)
3	7. 23. 16:00	5~6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4, 5 (세계의 법원과 재판 이야기, 교과서 속 법으로 사는 세상)
4	8. 13. 16:00	7~8	민사 모의재판 실습
5	8. 20. 19:00	9~10	형사 모의재판 실습
6	8. 27. 19:00	11~12	소년범과 정의
7	9. 3. 19:00	13~14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책을 통한 재판과 법 이야기
8	9. 10. 19:00	15~16	양형체험 프로그램 실습

202) 경기도교육청, 2026 경기공유학교 운영계획 (2025. 12.), 1.
203) 사법연수원 제공 자료.

III. 방학 중 청소년 법교육

1. 초등학생 법교육

가. 법교육 일정

사법연수원은 하계와 동계방학에 전국 초등학생(4~6학년)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겨울방학의 경우, 2026년 1월 20일에 진행되었는데 총 38명의 학생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구체적인 법교육 일정표는 다음과 같았다.[204]

[표 46] 사법연수원 초등학교 법교육 일정표

시간	일 정	장소
09:30~09:50	등록	9강의실(303호)
1교시 10:00~10:50	법원과 재판 그리고 판사 이야기	9강의실(303호)
2교시 11:00~11:50		
12:00~13:20	점심 식사(도시락 제공)	목련식당(후생동 2층)
3교시 13:30~14:20	검사와의 대화	9강의실(303호)
4교시 14:30~15:20	판사가 된 변호사 이야기	9강의실(303호)
5교시 15:30~16:20	모의재판, 법정체험	형사 모의법정(211호) 민사 모의법정(221호)
6교시 16:30~17:20		
17:20~17:30	수료증 수여	9강의실(303호)

나. 설문조사 결과

2025년 초등학생 겨울방학 법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았다.[205]

우선 연수 프로그램 전반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4.81점)”,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었나요?(4.57점)”, “법치주의(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 내용과 가치를 이해

204)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https://jrti.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9226&gubun=41&cbub_code=000130&searchWord=&pageIndex=1 (2026. 6. 25. 최종 확인).

205) 사법연수원 제공 내부자료. 참여 학생 총 38명 중, 37명이 설문지를 제출하였고, 매우 만족은 5점, 만족은 4점, 보통은 3점, 미흡은 2점, 매우 미흡은 1점으로 계산하였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4.68점)"에 관한 종합평가는 5점 만점 중 4.7점으로 나타났고, 교육과정(교과목)별 만족도에 대한 종합평가는 5점 만점 중 4.7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당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서술식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표 47] 2025년도 초등학생 겨울방학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서술식 의견

가장 유익했던 강의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듣고 싶은 법교육 내용이 있나요?
◎ 프로그램 안내 및 사법연수원 소개 – 로스쿨에서 하는 것처럼 깊이 있는 교육과 간단한 퀴즈가 있어 흥미로움. ◎ 법원과 재판 그리고 판사 이야기 – 법원, 재판 등의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유익함. –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됨. ◎ 검사와의 대화 – 딱딱하고 무서운 직업인 줄 알았는데 따뜻하고 정직하고 올곧은 모습이 감동이예요. – 내 꿈에 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심. ◎ 판사가 된 변호사 이야기 – 부드럽고 자상한 모습이 상상 이상이고, 조용하지만 말씀에서 느껴지는 강함이 존경스러움. ◎ 모의재판, 법정체험 – 직접 실제 재판현장에서 체험해보게 되어 좋았음. –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게 되어서 좋았음. – 실전으로 해보니 도움이 많이 됨. – 역할을 나누어 직접 해보니 재미있었다.
이번 법교육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 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 진로향상에 큰 도움이 됨. – 강의가 지루했지만 기념품을 받아 좋았음. – 친구들도 이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 이번을 계기로 법률에 대한 관심과 장래희망을 꿈꾸게 됨. – 검사와 직접 대화해보고 싶습니다. – 헌법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다. –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하는 일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2024년 초등학생 여름방학 법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았다.[206]

우선 연수 프로그램 전반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4.5점)”,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었나요?(4.5점)”, “법치주의(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 내용과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4.7점)”에 관한 종합평가는 5점 만점 중 4.6점으로 나타났고, 교육과정(교과목)별 만족도에 대한 종합평가는 5점 만점 중 4.7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당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서술식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표 48] 2024년도 초등학생 여름방학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서술식 의견[207]

이번 여름방학 법교육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 재미있었다. 다음에 또 참가하고 싶다. 그런데 어떤 강의는 조금 지루했다.
– 너무 재미있었고, 신났고 배운 것도 많아서 좋았다.
– 모의재판, 법정체험이 재미있었다.
– 많이 좋았고, 유익한 하루였다.
– 변호사, 판사, 검사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서 좋은 추억이었다. 그리고 모의재판 중 형사재판이 재미있었다.
– 강의만 들으니(물론 재미있었지만) 조금 힘들어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조금 더 활발하고 재밌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처음 왔을 때 분위기가 너무 차가워서 누구한테도 말 걸기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지만, 학생이 직접 재판 시나리오를 짜면 좋겠다.
– 쉬는 시간이 짧아서 힘들었다. 하지만 재미있었다.
– 엄청 재미있었고 놀랍고 즐겁고 정말로 판사님 등등 여러분이 나오셔서 엄청 행복했습니다.
–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싶다.

2021년 겨울방학의 경우, 2022년 1월 21일 전국 초등학생(4~6학년) 36명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았다.[208][209]

206) 사법연수원 제공 내부자료. 참여 학생 총 40명 중, 27명이 설문지를 제출하였고, 매우 만족은 5점, 만족은 4점, 보통은 3점, 미흡은 2점, 매우 미흡은 1점으로 계산하였음.
207) 일부 중복되는 유사의견은 생략하였음.
208) 사법연수원 제공 내부자료. 참여 학생 총 36명 중, 27명이 설문지를 제출하였고, 매우 만족은 5점, 만족은 4점, 보통은 3점, 미흡은 2점, 매우 미흡은 1점으로 계산하였음.
209) 참고로 사법연수원은 2021년 겨울방학 이후로 별도의 법교육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2024년 초등학생 여름방학 법교육 프로그램부터 다시 설문조사를 재개하였음.

우선 연수 프로그램 전반과 관련하여 “본 교육과정의 목표가 충실하게 달성되었습니까?(4.3점)”, “본 교육과정은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4.43점)”, “교육과정(교과목)의 선정 및 편성이 적절하였습니까?(4.09점)”, “교육과정(교과목)별 강사 선정이 적절하였습니까?(4.39점)”, “교육방법은 교육내용을 이해하는 데 적절하였습니까?(4.17점)”에 관한 종합평가는 5점 만점에 4.28점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교육과정(교과목)별 만족도에 대한 종합평가는 5점 만점 중 3.8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족에 가까운 평가이다. 그리고 해당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서술식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표 49] 2021년도 초등학생 겨울방학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서술식 의견
(가장 유익했던 강의 및 그 이유)[210]

가장 유익했던 강의 및 그 이유
◎ 모의재판, 법정체험(가장 유익한 강의로 11명 선택) – 재판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직접 참여해서 재미있었음. – 정말 그 상황이 떠오르는 것 같고 정말 내가 맡은 역할로 역할극을 하니까 더 재미있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 – 헷갈리는 게 직접 해보면서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해보니까 이해가 더 잘 되었기 때문이다. ◎ 재판에는 정답이 있을까?(가장 유익한 강의로 3명 선택) – 모의재판과 형사재판들 중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며 재미있게 설명해 줬기 때문입니다. – 실제 상황들을 예시로 함으로써 사건들에 대해서 더 생각해볼 수 있었다. – 어떤 사건은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이 있고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 판사가 된 변호사 이야기(가장 유익한 강의로 2명 선택) – 선생님께서 강의를 재미있게 해주셔서입니다. – 알기 쉽고 흥미롭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성의 있게 해주셨습니다. ◎ 검사와의 대화(가장 유익한 강의로 2명 선택) – 검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고 하는 일이 다양하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 검사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는데 강의를 듣고 검사에 대해 알게 되어서 유익했다.

210) 2021년 겨울방학의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졌음, 그리고 일부 중복되는 응답은 삭제하였음.

가장 유익했던 강의 및 그 이유
◎ 기타 – 판사님의 판결경험 이야기가 재미있고 감동적이었어요. – 귀에 내용이 잘 들어왔다. – 내용 이해가 되고 흥미로웠음.

[표 50] 2021년도 초등학생 겨울방학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서술식 의견(기타 의견 및 건의사항)[211]

1. 향후 이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제나 강의 및 강사에 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들로 이해하기 쉬우면서 재미있는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토론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 검사와의 대화 때 검사님께서 말이 너무 빨라 제대로 못 들었다. – 실제 모의재판 경험을 모두 다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 수업 구성은 다 좋았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강사님 중에 초등학생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분이 한 분 있으셨는데 말씀하시는 속도, 용어 등을 초등학생에게 맞춰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 실제로 참여 가능한 활동이 더 많으면 좋겠다. – 학교 폭력에 대한 실사례로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 – 초등학생에 맞는 법에 대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전을 통해서나 어른들의 일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2. 기타 교육과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한 과정당 소요시간이 길어(학교수업시간이 40분) 힘들었다고 해요. –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 초등학생 대상이므로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이 되면 좋겠고 줌으로 장시간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으므로 되도록 현장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좀 어려웠고 지루한 면도 있었지만 법에 대해 알게 되어 유익했다. – 위드코로나니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온라인 수업이어서 많이 아쉬워서 꼭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수업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학교수업도 비대면 수업이라 집중도가 낮고 피로하였는데 법교육도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되어 아쉽습니다. – 검사분이 처음 이론 얘기하실 때 아이가 뉴스 보는 거 같다고.. 녹화방송이 아닌 소통되는 줌인데 너무 지루했음.

211) 일부 무의미하거나 중복되는 응답은 삭제하였음.

[표 51] 2021년도 초등학생 겨울방학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서술식 의견(개선과제 및 교육성과)[212]

1. 개선과제
– 시나리오에서 역할이 많아지는 것. – 줌 수업 시 수업시간 조정. – 1회차 참여한 초등학생들을 위한 중학교 심화과정도 개설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직접 연수원에 가서 참여해보고 싶다. –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수업 원함. – 양방향 소통이 원활히 안 되어 아쉬웠지만 코로나로 연수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열어주신 부분은 정말 감사합니다.

2. 교육성과
– 판/검/변(호)사가 하는 일과 법에 대해 아주 잘 알았다. – 법에 대한 기본을 조금은 알 수 있었고 판결의 중요성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 재판과 법에 대해 많이 알았다. – 재판의 종류와 특징을 분명히 이해했다. – 법에 관련한 직업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다. – 꽤 유익했다. – 법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해석이 다양할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그만큼 복잡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법에 대해 접해보고 현직에 계신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중학생 법교육

가. 법교육 일정

사법연수원은 2026년 1월 15일에 2025년 겨울방학 중학생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총 36명의 학생이 다음과 같은 교육일정에 참여하였다.[213]

212) 일부 무의미하거나 중복되는 응답은 삭제하였음.
213)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https://jrti.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9226&gubun=41&cbub_code=000130&searchWord=&pageIndex=1 (2026. 6. 25. 최종 확인).

[표 52] 사법연수원 중학교 법교육 일정표

시간		일 정	장소
	09:30~09:50	등록	9강의실(303호)
	09:50~10:00	프로그램 안내 및 사법연수원 소개	9강의실(303호)
1, 2교시	10:00~10:50 11:00~11:50	판사라는 직업을 말하다 – 법, 재판, 그리고 판사	9강의실(303호)
	12:00~13:20	점심 식사(도시락 제공)	목련식당(후생동 2층)
3교시	13:30~14:20	검사와의 대화	9강의실(303호)
4교시	14:30~15:20	판사가 된 변호사 이야기	9강의실(303호)
5, 6교시	15:30~16:20 16:30~17:20	모의재판, 법정체험	형사 모의법정(211호) 민사 모의법정(221호)
	17:20~17:30	수료증 수여 및 기념 촬영	9강의실(303호)

나. 설문조사 결과

2025년 겨울방학에 실시된 중학생 법교육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았다.[214] 우선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조사에서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4.88점)”,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었나요?(4.7점)”, “법치주의(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 내용과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4.76점)”에 관한 종합평가는 5점 만점 중 4.8점으로 나타났고, 교육과정(교과목)별 만족도에 대한 종합평가는 5점 만점 중 4.8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당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서술식 자유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214) 사법연수원 제공 내부자료. 참여 학생 총 36명 중, 33명이 설문지를 제출하였고, 매우 만족은 5점, 만족은 4점, 보통은 3점, 미흡은 2점, 매우 미흡은 1점으로 계산하였음.

[표 53] 2025년도 중학생 겨울방학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서술식 의견

가장 유익했던 강의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듣고 싶은 법교육 내용이 있나요?
◎ 판사라는 직업을 말하다. – 내 또래 아이들을 상대로 한 재판에 대해 알게 되었고, 판사라는 직업이 내가 생각하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강의 내용이 신선하고 유익하여 남은 강의도 잘 즐길 수 있었다. – 판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 ◎ 검사와의 대화 – 평소 궁금했던 것을 알게 됨. – 평소 검사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 ◎ 판사가 된 변호사 이야기 – 절차를 알 수 있어 좋았다. ◎ 모의재판, 법정체험 – 실제 법정에서 역할을 나누어 실제로 재판을 하는 것 같은 현장체험이 아주 좋았음. – 실제 재판의 과정을 구현해 재판과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됨. – 법조인에 대해 깊이 있게 알게 됨. – 가장 기억에 남고 유익함.

이번 법교육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 송명철 교수님의 강의와 모의재판이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 원래 알고 있던 판검사와 변호사의 모습이 실제 모습과 달라서 신기했음. – 현역 법조인의 현실적인 조언을 얻음. – 진로탐색에 큰 도움을 줌. – 프로그램의 퀄리티는 좋았지만, 교육이 너무 흔한 내용이었음. – 조금 지루했지만 재밌었음. – 다음에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오늘 들은 내용을 잘 참고하여 다양한 분야의 책도 읽고 사고력도 길러야겠다. – 초등학교 때 왔었는데 고등학교 가서도 올게요. – 중복강의가 많았다.

2021년 겨울방학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았다.[215][216]

우선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조사에서 "본 교육과정의 목표가 충실하게 달성되었습니까?(4.8점)", "본 교육과정은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4.8점)", "교육과정(교과목)의 선정 및 편성이 적절하였습니까?(4.8점)", "교육과정(교과목)별 강사 선정이 적절하였습니까?(4.8점)", "교육방법은 교육내용을 이해하는 데 적절하였습니까?(4.8점)"에 관한 종합평가는 5점 만점 중 4.8점으로 나타났고, 교육과정(교과목)별 만족도에 대한 종합평가는 5점 만점 중 4.59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당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서술식 자유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217]

[표 54] 2021년도 겨울방학 중학생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서술식 의견[218]

가장 유익했던 강의 및 그 이유
◎ 모의재판(가장 유익한 강의로 3명 선택) – 대본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직접 검사, 판사가 되어 모의재판을 해보니까 더욱 더 실감이 났습니다. 또한 재판 전후에 실제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모든 강의가 유익했지만 모의재판이 가장 유익했습니다. 재판 상황이 나타나 있는 지문을 역할에 맞게 읽으면서 형량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어떤 법에 해당되는지 등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검사와의 대화(가장 유익한 강의로 2명 선택) – 나의 진로와 관련된 강의였다. – 검사와의 대화. ◎ 담장 안 이야기(가장 유익한 강의로 2명 선택) – 접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라서 흥미로웠다. – 교도소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 ◎ 법과 재판 이야기(가장 유익한 강의로 1명 선택) – 법이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매우 재미있었다.

215) 사법연수원 제공 내부자료. 참여 학생 총 18명 중, 10명이 설문지를 제출하였고, 매우 만족은 5점, 만족은 4점, 보통은 3점, 미흡은 2점, 매우 미흡은 1점으로 계산하였음.
216) 참고로 사법연수원은 2021년 겨울방학 이후로 한동안 중학생 법교육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217) 2021년 겨울방학의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졌음.
218) 일부 무의미하거나 중복되는 응답은 삭제하였음.

가장 유익했던 강의 및 그 이유
◎ 판사가 된 변호사 이야기(가장 유익한 강의로 1명 선택) – 변호사가 변호하는 사람 중 나쁜 사람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양형체험 프로그램(가장 유익한 강의로 1명 선택) – 판사가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어서입니다.

기타 의견, 건의사항 및 교육성과
1. 향후 이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제나 강의 및 강사에 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 어려운 내용이라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선생님이 이해가 잘 되도록 쉽고 정확하게 수업해 주셨다. 2. 기타 교육과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수업 일수를 늘리면 좋겠다. – 직접 가서 듣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3. 교육성과 – 같은 내용이어도 판사님들과 검사님들께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까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서 더욱 흥미를 느꼈던 거 같다. – 법과 재판에 대해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고 양형체험 프로그램으로 판사가 하는 일을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 – 범죄를 저지를 경우 받게 되는 벌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재판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3. 고등학교 법교육

가. 법교육 일정

사법연수원은 2026년 1월 21일에 겨울방학 고등학생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총 16명의 학생이 다음과 같은 교육일정에 참여하였다.[219]

219)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https://jrti.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9226&gubun=41&cbub_code=000130&searchWord=&pageIndex=1 (2026. 6. 25. 최종 확인).

[표 55] 사법연수원 고등학교 법교육 일정표

시간		일 정	장소
	09:30~09:50	등록	9강의실(303호)
	09:50~10:00	프로그램 안내 및 사법연수원 소개	9강의실(303호)
1, 2교시	10:00~10:50 11:00~11:50	고등학생이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9강의실(303호)
	12:00~13:20	점심 식사(도시락 제공)	목련식당(후생동 2층)
3교시	13:30~14:20	검사와의 대화	9강의실(303호)
4교시	14:30~15:20	판사가 된 변호사 이야기	9강의실(303호)
5, 6교시	15:30~16:20 16:30~17:20	모의재판, 법정체험	형사 모의법정(211호) 민사 모의법정(221호)
	17:20~17:30	수료증 수여 및 기념 촬영	9강의실(303호)

나. 설문조사 결과

2025년도 겨울방학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았다.[220] 우선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조사에서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4.87점)”,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었나요?(4.67점)”, “법치주의(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 내용과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4.87점)”에 관한 종합평가는 5점 만점 중 4.8점으로 나타났고, 교육과정(교과목)별 만족도에 대한 종합평가는 5점 만점 중 4.9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당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서술식 자유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220) 사법연수원 제공 내부자료. 참여 학생 총 16명 중, 15명이 설문지를 제출하였고, 매우 만족은 5점, 만족은 4점, 보통은 3점, 미흡은 2점, 매우 미흡은 1점으로 계산하였음.

[표 56] 2025년도 겨울방학 고등학생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서술식 의견

가장 유익했던 강의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듣고 싶은 법교육 내용이 있나요?
◎ 고등학생이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 고등학생에 최적화된 교육. –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됨. ◎ 판사가 된 변호사 이야기 – 판사와 변호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와 차이점을 알게 됨. ◎ 모의재판, 법정체험 – 실제 재판장에서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판사들이 직접 설명하여 재판의 판단기준을 알 수 있던 점. – 이렇게 formal한 경험은 처음이다. – 재판과정을 이해하게 됨. – 판결문 작성을 직접 해보고 싶음. –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잘 이해하게 됨. – 실제 판사님들이 설명해 주니 실감났다.

이번 법교육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 이론을 학습하고 체험도 하여 즐거움. – 법조계에 대한 메커니즘과 사실에 관해 알게 되었음. – 책에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됨. – 장래희망에 대한 궁금증 해소. – 모의재판 경험이 매우 유익함.

2021년도 겨울방학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았다.[221)222)] 우선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조사에서 “본 교육과정의 목표가 충실하게 달성되었습니까?(4.69점)”, “본 교육과정은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4.85점)”, “교육과정(교과목)의 선정 및 편성이 적절하였습니까?(4.85점)”, “교육과정(교과목)별 강사 선정이 적절하였습니까?(4.85점)”, “교육방법은 교육내용을 이해하는 데 적절하였습니까?(4.62점)”에 관한 종합평가는 5점 만점에 4.77점으로 나타났고, 교육과정(교과목)별

221) 사법연수원 제공 내부자료. 참여 학생 총 16명 중, 13명이 설문지를 제출하였고, 매우 만족은 5점, 만족은 4점, 보통은 3점, 미흡은 2점, 매우 미흡은 1점으로 계산하였음.

222) 참고로 사법연수원은 2021년 겨울방학 이후로 한동안 중학생 법교육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만족도에 대한 종합평가는 5점 만점에 4.51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당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서술식 자유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223]

[표 57] 2021년도 겨울방학 고등학생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서술식 의견[224]

가장 유익했던 강의 및 그 이유
◎ 양형체험 프로그램(가장 유익한 강의로 4명 선택) – 어떠한 사건의 자세한 진상과 다양한 측면에서 사건을 바라봄으로써 적절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 – 사이트를 통해 국민이 직접 양형체험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어서 좋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형절차를 몸소 체험하며 과정을 자세히 알게 되어서 유익했다. – 평소 법원의 양형 기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확한 기준을 알게 되었음. ◎ 모의재판(가장 유익한 강의로 2명 선택) – 실제 재판의 진행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재판 과정을 제대로 알 수 있었다. 평소에 내가 알고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틀린 부분이 많아서 더욱 유익했다. ◎ 판사가 된 변호사(가장 유익한 강의로 2명 선택) –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 현실감 있고 정성 담긴 설명. ◎ 기타(2명) – 전부 다. – 이번 법교육을 통해 '법'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얻고 법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음. 선택과목으로 정치와 법을 배웠으나 기초적인 부분만 배우게 되어 아쉬웠는데, 이번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심화적인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 자세히 배우게 되어 법과 법의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음. – 가장 유익했던 강의를 고르기가 어렵다. 각 과목마다 겹치는 내용이 없이 모두 새로운 내용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의재판 때에는 직접 사건을 이해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서 유익했고,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양형을 내리는 법관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어서 유익했다. 그 외의 강의 모두 일반적으로 접할 수 없는 경험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223) 2021년 겨울방학의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졌음.
224) 일부 무의미하거나 중복되는 응답은 삭제하였음.

가장 유익했던 강의 및 그 이유
◎ 법과 재판 이야기(가장 유익한 강의로 1명 선택) – 판사님께서 궁금한 점을 잘 알려주셔서입니다. ◎ 검사와의 대화(가장 유익한 강의로 1명 선택) – 설명이 깔끔했으며, 나도 검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멋있었다. ◎ 담장 안 이야기(가장 유익한 강의로 1명 선택) – 강의가 가장 유익했고, 평소에는 교도관님을 뵐 기회가 없어 관련 내용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타 의견 및 건의사항
1. 향후 이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제나 강의 및 강사에 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 헌법에 관한 교육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완벽해서 딱히 없음. –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실제 재판에 참관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2. 기타 교육과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교도관님 수업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유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선의견 및 교육성과
1. 개선과제 – 쌍방향으로 활발한 소통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실제 법정 사진자료 삽입. 2. 교육성과 – 법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게 됨. –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게 되었다.

Ⅳ. 기타[225]

위에서 열거한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사법연수원은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된 중학생 자유학기제에 발맞추어, 고양시 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법조 직역에 대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출장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법조 직역 소개, 판사의 업무, 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등 법조 직역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 실시되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은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10일 동안 고양시 소재 중 · 고등학교 20개 학급을 방문하여 약 6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실시하였다.

또한 고양시 소재 특수학교 학생들과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2024년에는 특수학교 학생 57명(상 · 하반기)과 다문화가정 학생 20명(하반기)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25년에는 특수학교 학생(정서행동장애학생) 30명과 다문화가정 학생 30명(하반기), 그리고 2026년에는 특수학교 학생(시각장애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신임 법관 연수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2018년 11월에는 사법연수원 신임 법관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듣고, 고양시 소재 명현학교 학생 26명에게 신임 법관들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직업체험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참고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사법부 소개, 사법연수원 청사견학, 신임 법관들과의 대화, 법복착용 체험 등으로 구성되었다.[226]

225) 사법연수원, 2024 사법연수원 연간보고서 (2025), 334 및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https://jrti.scourt.go.kr/jrti/training/training_05/training_05_01/index.html (2026. 6. 25. 최종 확인)를 참조.

226) 법률신문(2018. 11. 8. 기사), "사법연수원, '신임법관이 함께하는 특수학교직업체험' 실시",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119 (2026. 6. 25. 최종 확인).

제4절 각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은 대법원, 사법연수원뿐만 아니라 각 법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227] 각 법원의 법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는 강의형 법교육뿐만 아니라 견학형 · 참여형 · 체험형 법교육도 포함된다. 이하에서는 각 법원의 주요 법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I. 법원의 법강연

1. 서설

법원의 법강연은 판사 등이 직접 학교,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을 방문해 법과 법원의 역할 및 사법제도, 실생활과 관련한 법률 문제 등을 사례 등을 통하여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강의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법강연의 내용에는 학생들의 진로(법조인)에 대한 특강도 포함된다. 법원의 대표적인 법강연에는 대전고등법원의 '판사들의 법률학교',[228]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법원 특강', 춘천지방법원의 '법관과의 대화: 찾아가는 법률강연' 등이 있다.

2. 대전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의 '판사들의 법률학교'는 대전 · 세종 지역의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강의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시간에 주로 강의가 진행된다. 강의 대상 인원은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의 날 주간(9. 1.~9. 15.)에 한정하여 강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기간 외의 신청은 별도 검토 후 실

227) 참고로, 양형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인터넷 사이트[https://www.scourt.go.kr/sc/exp/main.work (2026. 6. 25. 최종 확인)]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회생법원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이다.

228) 대전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s://djgodung.scourt.go.kr/djgodung/join/communication/lawschool.html (2026. 6. 25. 최종 확인).

시 여부가 결정된다. 강의 시간은 학교별 1회 중학생 45분, 고등학생 50분으로 진행되며, 법원의 역할과 의미, 재판소개, 기초법률 지식 교육 등에 대해서 강의한다.

대전고등법원의 '판사들의 법률학교'는 2016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2018년 9월 14일 대전 성덕중학교 2학년 4반 교실에서 실시된 강의에서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행정재판, 소년보호재판, 가사재판, 특허재판, 국민참여재판 등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강의 중 학생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왜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건가요?", "미래에는 로봇이 재판을 할 수 있는지", "판사는 공무원 직위가 어떻게 되는지", "월급은 얼마인지", "진실과 거짓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229]

3.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법원 특강'은 판사 등이 일일 교사의 형태로 출강하여 기초적인 생활법률, 법원의 역할과 사회적 기능 등에 관해 강의를 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법원 특강' 강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장, 판사 및 법원 간부직원이며 연중 실시하고, 신청기관의 희망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강의주제는 법과 생활 그리고 법조인, 법관이 하는 일 및 법원에서 하는 업무, 재미있는 법률생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법률상식, 한국의 법체제, 진로지도, 법관이 되는 길 등이다.[230]

4.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의 '법관과의 대화: 찾아가는 법률강연'은 춘천 지역의 교육기관, 지역 · 사회 단체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관들이 직접 찾아가 (요청에 따른)법과 관련된 여러 주제에 대해 강연하는 법교육 방식이다.[231]

춘천지방법원의 법률강연은 2012년 1월 5일부터 시작된 법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다음과 같은 강연 주제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

229) 금강일보(2018. 9. 17. 기사), "눈높이 맞춘 법 이야기, 판사들의 법률학교", 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46698 (2026. 6. 25. 최종 확인).

230) 서울북부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slbukbu.scourt.go.kr/slbukbu/join/join_01/specialLecture.html (2026. 6. 25. 최종 확인).

231) 이하는 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chuncheon.scourt.go.kr/chuncheon/join/join_04/lecture_rq_01/index.html (2026. 6. 25. 최종 확인).

[표 58] 춘천지방법원의 법률강연 주제

춘천지방법원 「법관과의 대화 : 찾아가는 법률 강연」

강연 주제 및 담당 판사

이 름	주 제
임성철 수석부장판사	○ 구속제도 개관 ○ 외국 사법체계의 소개 - 프랑스 사법체계를 중심으로 -
윤종섭 부장판사	○ 재판에 대한 오해와 진실 ○ 해설이 있는 재판 ○ 재판에 대한 재미있는 해설
강성수 부장판사	○ 실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법률상식 ○ 영화에 나타난 재판의 모습
권순건 판사	○ 소년재판의 실제 ○ 가사재판의 실제
이삼윤 판사	○ 내가 꿈꾸던 판사이야기(중·고등학생 대상) ○ 검찰권의 행사와 사법부의 역할(일반인 대상)
이진희 판사	○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 ○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제도
신동주 판사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내용과 절차 ○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보전처분에 관한 개관 ○ 민사 조정 절차에 대한 안내

춘천지방법원 총무과

☎ 033-259-9104~6

이메일 : gm260130@scourt.go.kr

법률강연 프로그램이 시작된 2012년에는 공식적으로 2건의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이 실시되었는데, 그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9] 춘천지방법원 법률강연 프로그램의 대상과 내용 등

강연자	강연 기간	강연 대상	강연 주제
판사	4. 17.~4. 19.	효제초등학교 학생 70명	법원에서 하는 일, 법원의 역할 등
		대륭중학교 학생 40명	소년재판
		봉의고등학교 학생 40명	우리나라의 재판 현황 (솔로몬의 지혜 사례를 바탕으로)
판사	7. 18.	인제초등학교 5·6학년	내가 꿈꾸던 판사이야기

최근 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에는 강연 법관과 강연 주제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여 프로그램 초창기보다 더 다양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표 60] 춘천지방법원 '법관과의 대화: 찾아가는 법률강연'

강연법관	주제
공보판사 소년·가사 담당 판사 민사재판 담당 판사 형사재판 담당 판사 행정재판 담당 판사 개인회생·파산 담당 판사	• 법원의 구조와 역할 • 재판의 기능과 절차 • 재판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우리나라를 움직인 판결 • 해설이 있는 재판
	• 금전 거래 관련 법적 문제 • 주택 및 상가임대차 관련 법적 문제 • 부동산 거래 관련 법적 문제
	• 학교폭력 등 소년 범죄 • 학교 안전과 자녀 교육의 법적 문제 • 가족관계에 관한 법적 문제
	•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형사사건의 처리와 법적 문제 • 형사재판의 기본구조와 종류
	• 교통사고 관련 법적 문제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범위 • 민사재판절차 및 조정 제도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내용과 절차 •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보전처분에 관한 개관 •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민사집행의 법적 문제

5. 기타 법원

법원의 법강연은 법원의 계기 법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법원의 계기 법교육은 법의 날, 법원의 날 등과 같이 법과 관련하여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날을

기념하는 계기로 법원이 법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 13일 법원의 날을 맞이하여 광주지방법원장과 판사들은 대안학교인 광주 새날학교와 고려인마을을 방문해 '찾아가는 법원'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를 통하여 판사들은 고려인 등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만나 법조인이 하는 일과 재판에 관한 궁금증을 주고받았는데, 학생들은 판사가 되는 방법, 외국 국적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다르게 재판을 받는지, 재판부 구성이 1명 또는 3명일 때의 차이점 등에 대해 질문했다. 그리고 법관들은 로스쿨과 귀화 제도를 설명하고, 통역인 등 국적을 불문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한 법률 지원 체계들을 이야기했다.[232]

참고로 법원의 법강연은 실무적 내용 측면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은 대전 서구청과의 협업을 통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 29일(한밭고등학교)과 2024년 12월 9일(만년고등학교)에 '찾아가는 등기강좌(부동산 등기 및 전세 사기 피해예방 교육)'를 실시하였다.[233]

II. 법원 체험 프로그램

법원 체험 프로그램은 관내 청소년들이 법원을 직접 방문해 법과 재판, 사법제도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많은 법원, 특히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이 법원견학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법원 체험 프로그램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법원 소개, 법원 홍보 동영상 시청, 법정 방청, 판사와의 대화, 기념촬영 등으로 구성되지만, 법원 체험 프로그램의 내용은 법원마다 약간씩 다르게 구성된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의 참가 대상 및 인원, 소요시간 등도 법원마다 약간씩 다르게 구성된다.[234]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등은 사전 신청이 있는 경

232) 연합뉴스 한민족센터(2022. 9. 13. 기사), "광주지법, 법원의 날 맞아 고려인마을 찾아 학생들과 소통",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708662 (2026. 6. 25. 최종 확인).
233) 코트넷 게시판 각급 법원소식, http://gw.scourt.go.kr/intranet/no03900.nsf/0/163EEB1AEE1B530449258BF500060F23?opendocument&option=portal&type=portal&slocal=Y (2026. 6. 25. 최종 확인).
234) 이하는 각 법원 홈페이지에 소개된 법원견학 안내를 취합한 것임.

우 모의재판 프로그램이 추가되며, 부산고등법원과 청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법원시설 견학과 판사와의 대화 후에 각각 법원과 재판 등에 대한 퀴즈 시간, O, X 퀴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진행 시 행정소송의 기본적인 특성 및 절차 등을 소개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은 체험 프로그램에 법원전시관 견학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구가정법원의 경우에는 체험학습으로서 소장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가정법원의 경우에는 가정문제, 청소년 문제 등과 관련한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재판 방청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 등에 대한 지식 정도에 따라 기본과정인 법일로(法1路)와 법이로(法2路)로 나누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61] 광주지방법원 법원 체험 프로그램

법일로(法1路)

견학 기본과정은 처음 법원을 방문한 분에게 적당합니다. 실재 재판이 열리고 있는 법정을 견학하고 직접 판사와 대화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을 수 있는 과정으로 2시간 소요됩니다.

1코스	법정방청(민사재판, 형사재판)
2코스	법복착용 후 법정촬영
3코스	법원 소개 동영상 시청
4코스	판사와의 대화
5코스	판사와의 기념사진 촬영

법이로(法2路)

견학 심화과정으로 법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에게 적당합니다. 법원 소개 동영상을 시청한 후 『모의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 시나리오 및 법정, 법복 등을 제공하여 실재 재판을 진행해 보도록 하고 법정에서 단체기념사진을 찍는 과정으로 2시간 소요됩니다.

1코스	법원 소개 동영상 시청
2코스	모의재판진행
3코스	법정에서 단체기념사진 촬영

법원 체험 프로그램의 내용 중 '판사와의 대화'는 참여적 법교육의 대표적인 형태로 재판과 법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묻고, 판사의 개인적 견해 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으로, 참여 청소년에게 높은 흥미와 법교육적 가치를 제공한다.

부산고등법원의 경우에는 법원 체험 프로그램에서 나온 청소년의 질문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주요 질문들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235]

[표 62] 부산고등법원 법원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의 질문 목록

○ 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재판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지?
○ 판결에 불만을 품은 사람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은 적 있는지?
○ 장래희망이 판사였는지?
○ 피고인이 선처해달라고 하면 마음이 아픈지?
○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 판사님이 처음 재판을 할 때 느낌은?
○ 판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인지?
○ 재판 중에 감정이 격해진 경우가 있는지?
○ 피고인의 반성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지?
○ 실형을 선고할 때 어떤 기분인지?
○ 우리나라 성폭력, 살인범죄에 대한 형이 낮다는 인식이 많은데 그에 대한 생각은?
○ 법복을 입고 재판할 때 더운지?
○ 재판하는 드라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 판사나 변호사, 검사가 재판을 받게 되면 유리한지?
○ 민사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정해져 있는지?
○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이 법원 밖으로 도주하는 경우가 있는지?
○ 조두순의 형을 늘릴 방법은 없는지?
○ 업무가 많은데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지?
○ 법전을 보니 한글과 한자를 같이 쓰는데 왜 그런지?
○ 담당했던 형사재판에서 최고형은 얼마였는지?
○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지?
○ 판사도 인공지능으로 대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235) 이러한 질문들은 법원이 향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프로그램 진행이나 법교육 교재 및 강의안 제작 등에 있어서 학생들의 법 지식수준, 관심사 등을 고려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 지인의 재판을 부탁받은 적이 있는지?
○ 판사의 가족 재판을 판사가 직접 재판할 수 있는지?
○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은 무엇인지, 맡기 싫은 사건은 있는지?
○ 합의재판에서 판사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 판사가 사형선고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 부담스럽지 않은지?
○ 재판하는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 피고인이 돈이 많고 적은지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지?
○ 선고할 때 6개월이라 안하고 6월이라고 하는 이유는?
○ 판사님들 사이에서도 전문분야가 있는지?
○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면 전관예우가 있는지?
○ 판사가 재판할 때 개인적 감정이 반영되는지?
○ 재판 중에 안타까웠던 사건은 무엇인지?
○ 판사님은 행복하신지?
○ 법관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 하루에 재판은 몇 건이나 하는지?
○ 재판 중에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나요?
○ 법원과 검찰은 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나요?
○ 인공지능 판사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 판사님은 언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나요?
○ 어떤 사건을 비공개로 재판하나요?
○ 재판 외에 법원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 변호인은 왜 법복을 입지 않나요?
○ 합의부 재판에 판사가 3명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임료가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면 유리한가요?
○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판사의 법복은 왜 검은색인가요?
○ 법원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사건이 무엇인가요?
○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법원 체험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과 인원은 법원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 부산고등법원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20~30명),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초중고 학생(15~30명), 대전지방법원은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의 학생(15~20명, 최

대 25명), 광주지방법원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15~20명, 최대 30명), 울산지방법원은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학생(10~25명), 전주지방법원은 중 · 고등학생(20~40명)으로 정하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 소요시간은 일반적으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인데, 모의재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시간이 연장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체험 프로그램 참여 후, 법원 체험기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게 하고, 울산지방법원은 체험 후 소감문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법원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진로 · 직업체험교육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는 광주지방법원이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학생의 진로 · 직업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1학교 1법관 진로 멘토링 체결식을 진행하였다. 이 1학교 1법관 프로그램에는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21개교 일반고등학교 학생들과 16명의 법관이 참여했으며, 멘토링은 참여 학생과 법관의 1:1 매칭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를 통해 학교 방문 강연 및 모의재판 등의 실습과 함께 법원견학 및 재판 방청도 이루어졌다.[236]

지방법원 지원의 경우에도 법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025년 8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법체험 캠프 프로그램[237]을 실시하였고, 참가한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모의재판, 법원 업무 체험, 법관과의 대화를 통해 법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한다.[238]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2022년 12월 6일 의성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원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형사재판 방청뿐만 아니라 법복 체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지원장과 대화 시간이 포함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사회수업시간에 재판절차를 배웠는데 실제로 그 과정을 보니 쉽게 이해가 되었다. 또 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딱딱하고 무서울 것 같았던 법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았다”며 소감을 전했다.[239]

---

236) 전남투데이 신문방송(2023. 5. 31. 기사),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지방법원과 ‘1학교 1법관 진로멘토링’ 체결”, https://www.jntoday.co.kr/news/article.html?no=135007 (2026. 6. 25. 최종 확인).

237) 명칭은 ‘법체험 캠프 프로그램’이지만,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법원 체험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238) 코트넷 게시판 각급 법원소식, http://gw.scourt.go.kr/intranet/no03900.nsf/0/45A114755FD855D649258CE6000EC5F2?opendocument&option=portal&type=portal&slocal=Y (2026. 6. 25. 최종 확인).

239) 경북일보(2022. 12. 6. 기사), “의성중, 대구지법 의성지원 견학…형사재판 방청”,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700 (2026. 6. 25. 최종 확인).

[그림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법원 체험 프로그램 기념촬영[240]



의성군 소재의 의성중학교(교장 장재익)는 6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방청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성중학교

법원 체험 프로그램은 법원의 날 기념을 계기로도 실시되는데,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는 '오픈 코트: 법원의 날 기념 집중 법원견학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이 캠페인에서의 주요 법원 체험 프로그램은 판사와의 대화, 법정 방청, 모의재판, 자유학기제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241]

부산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부산, 대구 · 경북)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체험 프로그램으로 상설 법률문화학교를 운영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2007년 6월 4일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체험식 법교육 프로그램인 '부산법률문화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협약을 부산교육청과 체결하였다. 협약상 주요 프로그램은 학생

240) 경북일보(2022. 12. 6. 기사), "의성중, 대구지법 의성지원 견학…형사재판 방청",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700 (2026. 6. 25. 최종 확인).

241)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busa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4714&gubun=41&cbub_code=000410&searchWord=%C4%DA%C6%AE&pageIndex=1 (2026. 6. 25. 최종 확인).

들이 법원을 방문하여 실제 재판과정을 견학하고, 법정에서 모의재판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상설 법률문화학교', 1일 교사로 위촉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해당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강의 등의 교과 지도에 참여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모의법정 등의 체험활동도 지원하는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의 법원탐방 연수, 법률문화 관련 영상물, 법률문화 교재의 개발 및 보급 등으로 구성되었다. 협약체결 시 '부산법률문화학교'에 참여를 희망한 학교는 부산지역 관내 총 292개 초등학교 중 105개 학교(6학년생 556학급, 16,884명)였다.[242]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2016년 4월 12일 노변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1월 죽전중학교까지 총 17개 학교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상설 법률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법정 견학, 법복착용 체험, 모의재판, 법원 관련 퀴즈 게임 등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243] 최근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대구 용호초등학교 외 3개 학교, 약 262명을 대상으로 상설 법률문화학교를 운영하였다.

III.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1. 서설

일부 법원들은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법정에서의 재판절차를 역할극 형식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 분석, 법적 쟁점 파악, 변론 및 판결 과정을 통하여 법의 역할과 가치, 법원의 재판절차 등을 체감하고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2025년에는 부산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이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242)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busa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535&gubun=41&cbub_code=000410&searchWord=%B9%FD%B7%FC%B9%AE%C8%AD%C7%D0%B1%B3&pageIndex=2 (2026. 6. 25. 최종 확인).

243) 경북일보(2016. 4. 10. 기사), "대구지법, 초 · 중학생 대상 상설 법률 문화학교 운영",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6201 (2026. 6. 25. 최종 확인).

2. 부산가정법원

청소년들이 직접 재판의 모든 과정을 구성하고 출연하는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2018년 8월 9일 부산가정법원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는데, 2025년 8월 7일에 개최한 제5회 경연대회에서는 부산지역의 6개 고등학교 재학생이 '사이버 도박의 경솔함은 거대한 눈덩이가 되었다', '절박함의 그림자, 소망이의 선택', '딥페이크의 그림자, 가려진 진실', 'SNS 인플루언서의 명예훼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범죄', '벌점 테러를 통한 고의적 교내 불이익 유도 사건'을 주제로 모의재판을 진행하였다.[244]

3. 광주지방법원[245]

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9월 1일에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참가 학생들은 광주지법에서 기본 법률교육을 받은 뒤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했으며, 법원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학교(광주진흥고, 금호고, 대광여고, 문성고, 보문고)가 본선에 진출하였다. 이 모의재판 프로그램은 현직 판사가 멘토로 배정돼 시나리오 수정과 재판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도를 담당하며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학생들은 모의재판에서 '공권력의 정당성', '연구소 합성 유전체 유출', '고액 알바의 진실' 등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다루었다.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인의 역할을 맡아 법복을 입고 실제 재판절차에 따라 공소사실 진술, 증인신문, 최후 변론 등을 진행했다. 각 순서가 끝난 후에는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현직 부장판사들의 심사평을 통해 한층 성장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 참가 학생은 "꿈에 그리던 실제 법정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됐다"며 "법관들의 조언 덕분에 올바른 법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고, 자유, 평등, 정의의 정신을 다시금 새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244) 리걸타임즈(2025. 8. 8. 기사), "부산가법 주최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금정고 대상",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510 (2026. 6. 25. 최종 확인).

245) 진일보, "진짜 법정서 열린 모의재판… 학생들, 정의 실현 체험", https://www.j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00004122 (2026. 6. 25. 최종 확인).

4.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도 2025년 9월 8일 관내 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총 30여 개의 팀이 예선에 참여하였고, 그중 예선 대본 심사를 통과한 5개 학교가 본선 무대에서 모의재판을 진행하였다.[246] 김해 외국어고등학교 「슈뢰딩거의 시험지」, 창원 경일여자고등학교 「사라진 경계」, 양산 웅상여자중학교 「청소년 인플루언서 마약 유통사건」, 마산 성지여자고등학교 「누가 죄인인가?」, 거창 대성고등학교 「조작된 주가」 주제 순으로 모의재판 경연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각 참가팀은 시험지 유출, 교권 침해, 청소년 마약, SNS 명예훼손, 주가 조작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각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경연하였다.[247]

[그림 14] 창원지법 법정동에서 열린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기념사진



246)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changw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8243&gubun=41&cbub_code=000420&searchWord=%B8%F0%C0%C7%C0%E7%C6%C7&pageIndex=1 (2026. 6. 25. 최종 확인).

247) 뉴스1(2025. 9. 10. 기사), "창원지법,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진로모색 기회 제공'", 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5907311 (2026. 6. 25. 최종 확인).

제5절 소결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다른 법교육 주체 법교육의 목표인 법이해와 법적 사고력의 증진, 권리의식과 책임의식의 함양 외에도 사법 신뢰와 사법접근성의 향상에도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소통을 통한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 접근성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사법정책적 수단이다.

법원의 법교육은 특히, 법의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법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과 법원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사법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민주적 법치국가의 지속가능성과도 관련된다.

청소년이 가진 법원과 소송절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오해 등은 법원의 법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완화될 수 있고, 법원과 소송절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법원 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신뢰 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인 '법원전시관 방학 법교육 프로그램'과 사법연수원의 '방학 중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법원의 법교육의 가치는 학교 법교육의 현실적 공백보완 기능,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증진 기능, 합리적인 법 판단능력과 법적 사고력의 배양, 예방적 차원의 법 준수 태도 형성 기능, 법교육에서의 중립성 확보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다른 법교육 주체의 법교육보다 체험형 중심의 효과적인 법교육, 법의 공신력과 정당성에 대한 신뢰 형성,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이해, 실무경험에 기반한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법 이해의 측면에서 다른 법교육 주체보다 청소년 법교육에서의 강점을 가진다.

현행 법교육지원법에 의하면 법원의 법교육에 관한 책무는 없지만, 사법부의 사법정책 수행의 중심에 있는 대법원(법원행정처)과 사법교육을 핵심임무로 하는 사법연수원 외에도 각급 법원은 법강연, 법원견학을 중심으로 하는 법원체험 프로그램, 모의재판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청소년 법교육을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본래적인 법교육 기관은 아니지만, 청소년 법교육을 단순히 법원 홍보 수단으로 보지 않고 법교육의 진정한 의의와 가치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법교육을 통한 법원과 국민의 소통 강화가 민주사회에서의 사법 신뢰와 사법접근성의 출발점이자 강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단순히 법원의 일회성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하 제4장과 제5장에서는 각각 해외 주요국에서의 청소년 법교육과 국내에서의 법원 외 주요 법교육 주체의 청소년 법교육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6장에서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제4장

해외 주요국에서의 청소년 법교육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미국

I. 미국에서의 법교육 전개

미국의 법교육은 주로 학자, 민간단체, 법전문가 등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생활 중심의 법교육'으로 발전해 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248] 1950년대까지의 법교육은 헌법적 원리와 기본권, 통치 구조와 그 기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교육 위주로 행해졌다. 그러나 1950년대 말부터 추상적이고 탈 맥락적인 헌법 지식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헌법교육보다 그러한 헌법적 내용이 일상에서 어떻게 실현되며 어떤 문제들을 가졌는지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성이 확산했고, 이러한 반성을 계기로 기존의 법교육을 개선하고자 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249]

한편, 1994년 이후 미국의 법체계 내 법교육 용어가 사라지고 현재 미국 내 법교육은 시민교육으로서 추진되고 있다. '시민교육(civic education)'의 개념을 함께 살펴보면, 낙오학생방지법은 시민교육을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책임을 함양하는 교육(education to foster civic competence and responsibility)'으로 정의하였다. 최근에는 시민교육의 관심이 시민의 의무와 책임에서 개인의 표현과 참여로 이동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시민으로서 사회와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250]

미국의 청소년 법교육 발전과정은 법교육 주제와 내용을 기준으로 크게 1962년에서 1968년, 1968년에서 1978년, 1978년 이후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1962년~1968년)의 청소년 법교육은 권리장전(Bill of Rights) 중심의 법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251] 권리장전은 사회계약의 역사적 부산물이며, 인간의 존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민주주의와 시민성을 가르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였다.[252]

---

248) 오승호 · 곽한영, "미국 법교육 교과서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교사교육연구 제51권 제1호 (2012. 4.), 43.
249) 오승호 · 곽한영, "미국 법교육 교과서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교사교육연구 제51권 제1호 (2012. 4.), 43.
250)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100.
251)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101.
252) 김범주 · 정순원, "미국 법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시사점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관련법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2호 (2011. 8.), 35.

미국 청소년 법교육은 1962년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 Williamstown 보고서 발표와 Brennan 대법관의 연설, Airlie House 콘퍼런스의 영향으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Williamstown 보고서는 뉴욕의 교육자이자 변호사로 미국사회과교육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NCSS) 부회장이었던 Isidore Starr가 1962년 발표한 보고서다. 당시 Starr는 시민자유교육재단(Civil Liberties Education Foundation, CLEF)의 Minna Peyser 이사장과 함께 고등학생의 인권과 권리에 관한 인식 및 관심을 제고하는 교육안 개발 워크숍을 전국의 교사, 교수들과 함께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유와 정의, 평등을 교육'하는 계획안을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하였다.[253]

1962년 제42회 NCSS 연례학술대회에서의 Brennan 대법관의 연설도 법교육 활성화를 가져온 주요한 사건 중 하나다. 당시 Brennan 대법관은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서 '법과 교육 시스템의 상호 의존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강조하며 청소년 대상의 권리장전 교육실시를 주장하였다. 교육자와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인 Airlie House 컨퍼런스 역시 '권리장전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 교육에 있어 중요한 우선순위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합의를 이끌었고, 이후 권리장전을 가르치는 교육과정과 워크숍 등이 학교들에 소개 · 도입되기 시작했다.[254]

이러한 흐름은 법교육 교사와 교육학자들의 노력에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더 발전되었다. 1963년 Vivian Monroe가 설립한 기본권재단(Constitutional Rights Foundation, CRF)은 지역 변호사단체나 유지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교육 보조자료, 모의재판이나 경찰순찰 게임(police patrol game) 등과 같이 활동 중심의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는 학습 보조자료를 개발, 보급하였고 이런 교재의 활용과정에서 변호사, 경찰 등 외부인사들이 참여하여 수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255]

이처럼 1962년부터 1968년은 교육, 법률, 시민사회 등 법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와 단체들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기였다.[256] 그러나 이와 같은 관심과

253)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101.
254)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101.
255) 오승호 · 곽한영, "미국 법교육 교과서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교사교육연구 제51권 제1호 (2012. 4.), 44.
256)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101.

발전에도 불구하고 교실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은 개발되지 않았다. 또한 교육자, 법조인,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충분히 합의를 이끌지 못하였고, 교육과정이나 교사교육의 부족, 주입식 그리고 암기 위주의 고전적인 교육방법, 이미 포화상태인 교육과정 문제 등을 가지고 있었다.[257]

2단계(1968년~1978년)의 청소년 법교육은 시민 의식과 책임, 실생활 중심의 법교육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베트남 참전으로 인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극대화되고 미국 내 범죄도 증가하면서 법교육의 중심 내용도 권리장전에서 실생활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다.[258] 이와 같은 실생활 중심의 법교육을 미국인의 정서에 맞게 'Street Law(생활법)'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거리'에서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259]

'Street Law'는 주로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재를 다루고자 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Street Law 시행 초기에는 형법, 소년법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했으나, 점차 생활법, 형법, 가족법, 소년법, 소비자법, 부동산 및 임대차법 등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발전한다.[260]

이 시기에는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의 역할이 매우 컸다. 당시 회장으로 활동한 Leon Jaworski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법의식과 법소양 등이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역량이라 판단하고 미국변호사협회 내 청소년 시민성 교육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Youth Education for Citizenship, YEFC)[261]를 설치하여,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정부 기관과 학교, 변호사, 민간단체, 지역사회 간의 연대와 협력 추진, 초중등학교의 법교육 도입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초 6개 주, 150개 프로그램에 불과하던 학교 법교육 프로그램의 수가 1977년 35개 주의 500여 개로 급증하였고, 법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도 활발하여 1977년까지 천여 권 이상의 책과 교재, 500개 이상의 영상과 게임 등이 개발되었다.[262]

---

257) 김범주 · 정순원, "미국 법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시사점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관련법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2호 (2011. 8.), 36.
258)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102.
259) 김범주 · 정순원, "미국 법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시사점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관련법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2호 (2011. 8.), 36.
260) 정상우(연구책임자), 법교육지원법 개정 방향 및 내용 연구, 법무부 (2015), 43.
261) 오늘날 Division for Public Education으로 변경됨.
262)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102.

1977년에는 법교육 풀뿌리 운동(grassroots movement in LRE)이 시작되었다. 즉, 법교육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조직과 지역사회의 관심,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개별 교사의 참여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하였다. 또한 지역의 법교육 프로그램들이 전국적으로 생겨났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법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낳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개인과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법교육 프로그램의 발전, 법조계에서 법교육을 수행,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재정지원, 법교육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 증대 등이다.[263]

이 시기의 법교육은 권리장전보다는 일상생활을 위한 법지식과 시민 의식에 중점을 두어 일상생활과 관련한 법과 사법절차, 시민의 권리와 의무,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하였고, 교육방법보다는 실질적, 참여적 형태로 발전하여 참여형 학습, 롤 플레이(role play), 의회 절차 체험, 모의재판, 경찰차 동승 체험 등이 활용되었다. 이처럼 법교육 발전과정 2단계는 정부뿐 아니라 미국변호사협회, 교사, 지역사회의 참여로 법교육이 급성장 및 확산되고, 교육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향상과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그러나 이미 포화된 교육과정 내 법교육을 추가로 도입함에 따른 학교와 교사들의 부담이 높아지면서 학교교육 내 법교육의 필요성, 법교육의 역할과 의의 등에 대한 논쟁과 갈등이 상당해졌다. 그에 따라 미국 연방교육부는 1978년 '법교육에 관한 최종 보고서(Final Report of the US Office of Education Study Group on Law-Related Education)'를 발표하며 법교육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법교육지원법(Law-Related Education Act of 1978)을 제정하였다.[264]

참고로 1978년 미국 연방교육부의 법교육에 관한 최종 보고서에서 법교육 발전방안에 대해서 6가지를 제안하였는데, 그 내용 중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265]

첫째, 법교육은 지식과 책임 있는 시민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둘째, 시민들의 법적 소양을 향상하여 민주주의의 옹호와 법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정당화해야 함

셋째, 연방교육부는 법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교사연수 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함

---

263) 김범주 · 정순원, "미국 법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시사점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관련법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2호 (2011. 8.), 40.

264)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102-103.

265) 정상우(연구책임자), 법교육지원법 개정 방향 및 내용 연구, 법무부 (2015), 42-43.

3단계(1978년~현재)의 청소년 법교육은 시민의식과 지역사회 참여 중심의 법교육이다. 1978년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법교육 발전은 더 본격화되었다. 연방정부는 법교육을 위하여 교육부 내 시민교육국(Citizen Education Office)을 설치하고 법교육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고, 특히 1981년에는 법교육연구개발센터(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Law-Related Education: CRADLE)를 설립하여 학교 및 교사들의 법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1981년 초중등교육법(Education Consolidation and Improvement Act of 1981)이 개정되면서 법교육지원법은 폐지되었고, 그 후 법교육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특별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지원되다가, 1994년 초중등교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법교육 프로그램'의 용어 및 연방정부의 특별재정지원 근거는 모두 삭제되고 대신 시민교육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었다. 현재는 그간의 초중등교육법을 개혁한 '낙오학생방지법' 아래 시민교육의 하나로서 법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미국변호사협회는 법교육에 대한 참여를 더 확대하여 1993년 조사결과 미국 50개 주 중 49개 주 변호사협회, 133개 지역변호사협회가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청소년 시민성 교육 특별위원회(YEFC)는 대학생 및 성인에게로 법교육을 확대해 나갔다.[266]

1990년대 이후, 미국 법무부 산하 청소년비행예방국(Office of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이 청소년 비행예방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법교육에 주목하여 다양한 지원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미국의 법교육은 학교 내의 법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하여 학교 밖 청소년 비행을 예방 ·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되면서 확고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런 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는 미국의 법교육은 생활 맥락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 및 체험을 강조하는 시민교육이라는 점이다.[267]

1994년 이후 시민교육에 대해 다시 강조하게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다민족국가인 미국은 소수민족을 미국 민주주의에 적응하도록 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쌓아가며, 미국 사회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시민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필요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268]

---

266)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102-103.
267) 오승호 · 곽한영, "미국 법교육 교과서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교사교육연구 제51권 제1호 (2012. 4.), 44.
268) 김범주 · 정순원, "미국 법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시사점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관련법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2호 (2011. 8.), 43.

미국의 법교육은 부시 행정부 이래로 지원이 축소되고 교육과정으로의 진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바탕으로 튼튼한 뿌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엔 동유럽이나 아프리카 등 외국에 법교육을 통한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프로젝트를 활성화하여 법교육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269]

미국의 법교육은 민간 주도의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흐름에 지역사회단체와 대학, 변호사단체, 국가의 지원이 결합하여 확산하고 발전하는 형태를 취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각기 다른 이름으로, 중복적으로 시행되거나, 자료의 축적이 집중적이지 않고 재정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각 주별, 커뮤니티별 독립성이 강한 미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일 뿐 오히려 법교육에서 이러한 독자적인 움직임들이 훨씬 더 큰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여주고 있다.[270]

II. 미국 학교에서의 법교육과 법원 외 법교육 주체

미국의 학교 법교육이 전개되는 양상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즉 법교육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로, 특히 사회과목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 대부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과 함께 하나의 사회과라고 하는 과목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역사나 정부, 사회 등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짐은 물론 선택과목으로서 다루어지기도 한다.[271]

미국 학교 법교육에서 한 가지 특징을 찾는다면 학교 밖의 법교육 기관 혹은 단체들이 학교 법교육과 청소년 법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미국 연방 교육부와 법무부, 연방 의회가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법교육 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각종 자료 및 시설을 제공하고, 법교육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272] 그리고 '민주주의를 가르치다' 협회(Teach Democracy, 과거 기본권재단),[273] 시민교육센터(Center

269) 곽한영 외 5인, 법교육학 입문, 박영스토리 (2022), 367.
270) 곽한영, 법교육 교수학습방법론 강의, 박영스토리 (2020), 33.
271) 허종렬, "우리나라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 (2010. 12), 61.
272) 허종렬, "우리나라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 (2010. 12), 61.
273) '민주주의를 가르치다' 협회 홈페이지, https://teachdemocracy.org/about-us/ (2026. 6. 25. 최종 확인).

for Civic Education),[274] 미국변호사협회[275]와 각 주의 변호사협회 등의 단체들도 학교 법교육에 참여하거나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민주주의를 가르치다' 협회는 캘리포니아주 판사와 변호사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연결하여 헌법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실제 대법원 사건을 사용한 모의재판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Courtroom to Classroom)을 진행하고 있다.[276]

헌법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보급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시민교육센터의 'The We the People : The Citizen and the Constitution program'을 들 수 있다. 'We the people…'은 미국 헌법의 첫 구절로 이 프로그램은 미국 헌법의 주요한 내용을 유치원부터 12학년에 이르는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중고 수준의 교재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고 e-book으로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 모든 주에 변호사단체 및 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연수를 시행하여 1987년 이래로 2,800만 명 이상의 학생과 7만 5,000명 이상의 교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277] 그리고 미국 변호사협회 공공교육부는 모의재판 대본과 지도자료, 초중고 법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법률 분야 직업체험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278]

한편, 법원과 관련한 법교육 주체인 사법학습센터(Judicial Learning Center)가 있다. 이 센터는 법조계의 주요 인사들이 설립한 비영리 법교육 센터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 청사 내에 있다. 비영리 법교육 센터로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과의 협력하에서 법원과 사법제도 및 법치주의에 관해 교육하고, 시민들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 방문, 법교육 자료,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279] 이 센터의 특이한 점은 학생들의 법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문 신청 학생과 교사에게

274) 시민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www.civiced.org/ (2026. 6. 25. 최종 확인).
275) 미국변호사협회 홈페이지, https://www.americanbar.org/groups/public_education/ (2026. 6. 25. 최종 확인).
276) '민주주의를 가르치다' 협회 홈페이지, https://teachdemocracy.org/program-page/courtroom-to-classroom-c2c/ (2026. 6. 25. 최종 확인).
277) 에듀인뉴스(2017. 5. 30. 기사), "미국 헌법교육,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37 (2026. 6. 25. 최종 확인).
278)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109.
279) Judicial Learning Center 홈페이지, https://judiciallearningcenter.org/about-us/our-mission/ (2026. 6. 25. 최종 확인).

1인당 최대 500달러까지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280]

참고로 사법학습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Student Center 배너에는 법교육 주제가 게시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각 주제별 학습자료를 보고 관련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개별 주제로는 법과 법치주의, 헌법 비준 논쟁, 헌법 제3조와 법원, 헌법과 기본권, 주법원 vs. 연방법원, 연방법원의 단계, 연방대법원, 사법부의 독립, 소송사건의 유형, 소송참여자들, 판사와 배심원, 재판 준비하기, 재판절차, 항소절차, 주요 판례 등이 있다.[281] 그리고 사법학습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Educator Center 배너에서는 교사를 위한 법교육 강의자료들(법의 날 관련 자료, 제헌절 관련 자료, 권리장전 관련 자료, 온라인 학습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282] 더 나아가 주요 법률용어에 대한 해설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283]

미국 초중고 학교에서 활용하는 법교육 교재 및 수업자료는 단일한 교과서라기보다는 시민교육과 연계된 교재, 활동 자료, 프로그램 패키지 형태로 제공된다.[284] 즉,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적 차원의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고 주별, 교육구(School district)별로 교육과정이 정해질 뿐 아니라,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재량의 폭도 넓은 편이라서,[285] 학교별로 다양한 법교육 교재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법교육 교재로는 'Street Law'가 있는데, 같은 이름의 비영리 단체인 'Street Law'에서 발간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고등학생용 법교육 교재이다. 참고로, 1972년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우드로 윌슨 고등학교(Woodrow Wilson High School)와 이스턴 고등학교(Eastern High School)의 학생들에게 최초의 Street Law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초기 프로그램의 성공을 바탕으로, 비영리 단체인 'Street Law'는 로스쿨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법을 가르치는 교육 모델을 확산시켰다. 이 모델은 현재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로스쿨에서 채

280) Judicial Learning Center 홈페이지, https://judiciallearningcenter.org/how-to-visit/transportation-grants/ (2026. 6. 25. 최종 확인).
281) Judicial Learning Center 홈페이지, https://judiciallearningcenter.org/student-center/ (2026. 6. 25. 최종 확인).
282) Judicial Learning Center 홈페이지, https://judiciallearningcenter.org/educator-center/ (2026. 6. 25. 최종 확인).
283) Judicial Learning Center 홈페이지, https://judiciallearningcenter.org/student-center/glossary/ (2026. 6. 25. 최종 확인).
284) 미국 변호사협회 홈페이지, https://www.americanlawyersalliance.org/law-related-educational-materialss (2026. 6. 25. 최종 확인).
285) 에듀인뉴스(2017. 5. 30. 기사), "미국 헌법교육,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37 (2026. 6. 25. 최종 확인).

택되고 있다. 비영리 단체인 'Street Law'의 경우 학생들과 지역공동체에 법, 민주주의, 인권을 교육하는 수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능한 법교육자(Law Educator)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다.[286]

법교육 교재인 'Street Law'는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들에 초점을 맞추고, 법치 사회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 하에 헌법상의 기본권을 소비자 문제, 주택문제, 범죄문제, 가족 관계 등과 같은 실용적이고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단원으로 재구성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 출판 이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계속 개정되어 오고 있으며, 변화된 법률 및 법적 절차를 중심으로 최근의 쟁점과 주제들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287]

이 책의 법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학생들에게 법으로 둘러싸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보와 문제해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커리큘럼은 사례연구, 모의재판, 역할극, 소집단 활동, 시청각 분석 활동을 포함한다.[288]

법교육 교재인 'Street Law'는 2025년 현재 제11판까지 출판되었으며, 현재 수십만 명의 미국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법 지식과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교재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을 이해하도록 돕는 동시에,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변화하는 연방과 주의 법교육 기준에도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289]

참고로 이 교재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86) Street Law 홈페이지, https://streetlaw.org/who-we-are/about/history/ (2026. 6. 25. 최종 확인).
287) 서지수 · 박성혁,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생활법교육 내용 범위 및 계열 분석", 법교육연구 제20권 제2호 (2025. 8.), 214.
288) 황승태, 법관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5), 88.
289) Street Law Resource Library 홈페이지, https://store.streetlaw.org/resource/street-law-textbook-11th-edition/ (2026. 6. 25. 최종 확인).

[표 63] 법교육 교재인 'Street Law'의 단원과 주요 내용[290]

장번호	장별 주제	주요 내용(예시)
1	법과 법제도 입문	법의 본질, 법의 가치, 입법, 분쟁 해결, 법원의 종류와 구조, 변호사 등
2	형법과 소년사법	인신과 재산에 대한 범죄, 형사절차, 피고인의 권리와 방어수단, 형벌의 종류, 형사미성년자, 소년재판 등
3	불법행위	불법행위의 개념과 종류, 과실, 엄격책임 등
4	소비자법	계약, 보증, 신용과 금융, 사기판매, 소비자의 권리 등
5	가족법	혼인, 사실혼, 부부재산, 가정폭력, 동성혼, 위탁보호와 입양, 이혼, 양육비와 재산분할 등
6	개인의 권리와 자유	헌법의 이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적법절차, 사생활의 보호, 차별, 직장에서의 권리와 의무, 이민법 등
7	법에서의 현대적 이슈	국가안보법, 환경법, 사이버 범죄, 지식재산, 법의 지배, 정부 권한의 제한 등

미국 로스쿨 중 상당수 학교가 임상법학 교육의 차원에서 교육과정에 'Street Law'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강좌는 이를 수강하는 법대생들로 하여금 로스쿨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초중고 학교나 비행청소년 혹은 성인형사범들을 선도하는 각종의 교정기관에 직접 나가 그동안 로스쿨에서 배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이들 학생을 일정 기간 직접 가르쳐 보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강좌이다.[291]

한편, 미국 전역의 변호사, 법률 사무소, 법률전문가들을 지원하는 법률 전문 조직인 미국 법률가 연합(American Lawyers Alliance)의 홈페이지에는 교사들이 법교육 자료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교육 관련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있다. 미국 법률가 연합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현재 28개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292]

290) Street Law 홈페이지, https://streetlaw.org/introducing-the-11th-edition-of-street-law-a-course-in-practical-law/ (2026. 6. 25. 최종 확인).
291) 이종훈 · 표현덕,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65.
292) 미국 법률가 연합 홈페이지, https://www.americanlawyersalliance.org/law-related-educational-materialss (2026. 6. 25. 최종 확인).

III. 미국 법원에서의 법교육

1. 연방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표적인 청소년 법교육은 법원견학 프로그램과 법교육 자료의 제공이다. 미국의 제15대 연방대법원장인 Warren E. Burger는 "대법원의 전시 프로그램은 미국인들에게 대법원이 살아있는 기관으로서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그 과정에서 건물 자체에 온기와 인간미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였다.[293]

연방대법원 전시관은 대법원의 역사, 대법관들과 대법원의 업무 등에 관해 전시를 하고 있다. 연방대법원 전시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방문할 수 있으며, 전시관 견학은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정해진 일정 없이 방문자가 자유롭게 장소를 이동하면서 견학하는 방식이다.[294]

[그림 15] 미국 연방대법원 법원전시관 모습[295]



293) 미국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https://www.supremecourt.gov/visiting/exhibition.aspx (2026. 6. 25. 최종 확인).
294) 미국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https://www.supremecourt.gov/visiting/hoursanddirections.aspx (2026. 6. 25. 최종 확인).
295) 미국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https://www.supremecourt.gov/visiting/exhibition.aspx (2026. 6. 25. 최종 확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시관 특별 기획전 목록은 다음과 같다.

[그림 16] 미국 연방대법원 전시관 특별 기획전 목록[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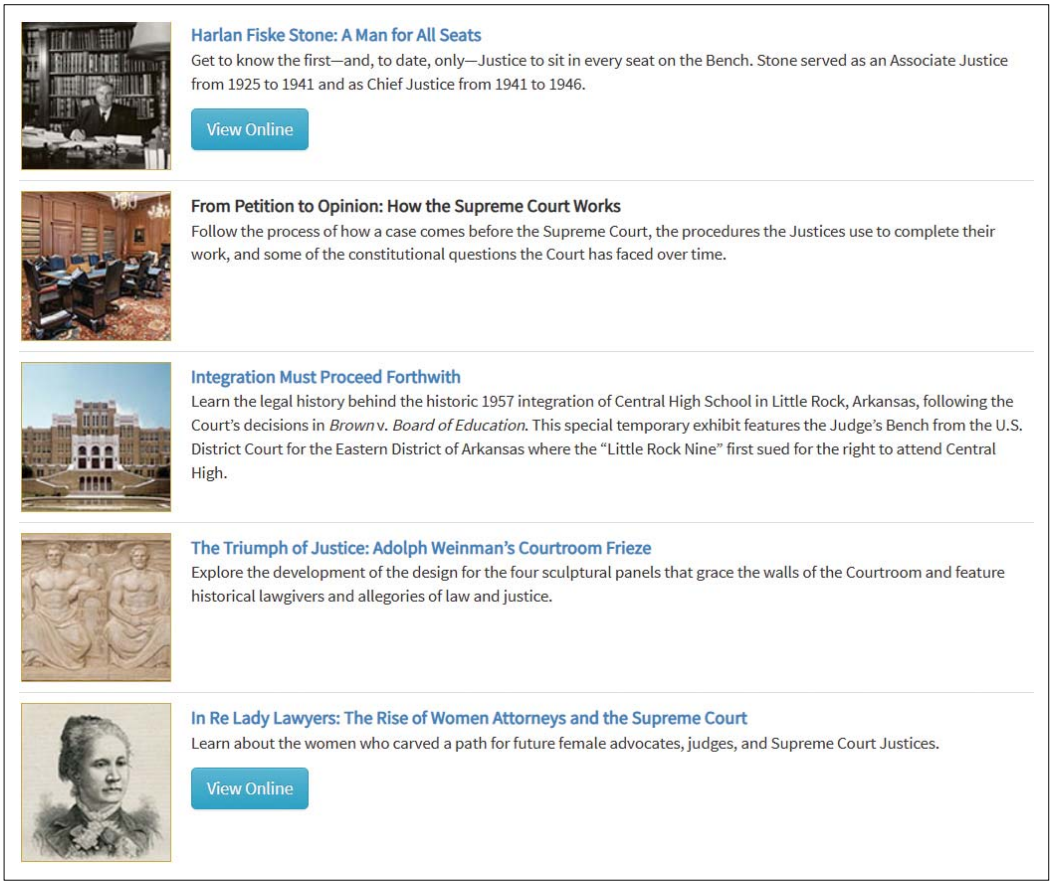

전시관 견학에는 법정 강의(Courtroom Lectures), 동영상 시청(Visitor's Film), 전시품 관람 등이 포함된다. 법정 강의는 방문객들에게 대법원의 사법적 기능, 건물의 역사, 법정의 건축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인 도슨트(Docent)와 인턴들이 25분 정도의 법정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법정 강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오전 11시 30분, 오후 12시 30분,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297]

296) 미국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https://www.supremecourt.gov/visiting/exhibition.aspx (2026. 6. 25. 최종 확인).
297) 미국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https://www.supremecourt.gov/visiting/courtroomlectures.aspx (2026.

연방대법원은 학생과 가족 및 교사의 연방대법원 견학을 위한 다양한 법교육 소책자(booklet)를 홈페이지에서 PDF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소책자들은 다음과 같다.

[그림 17] 학생 등을 위한 연방대법원 법교육 소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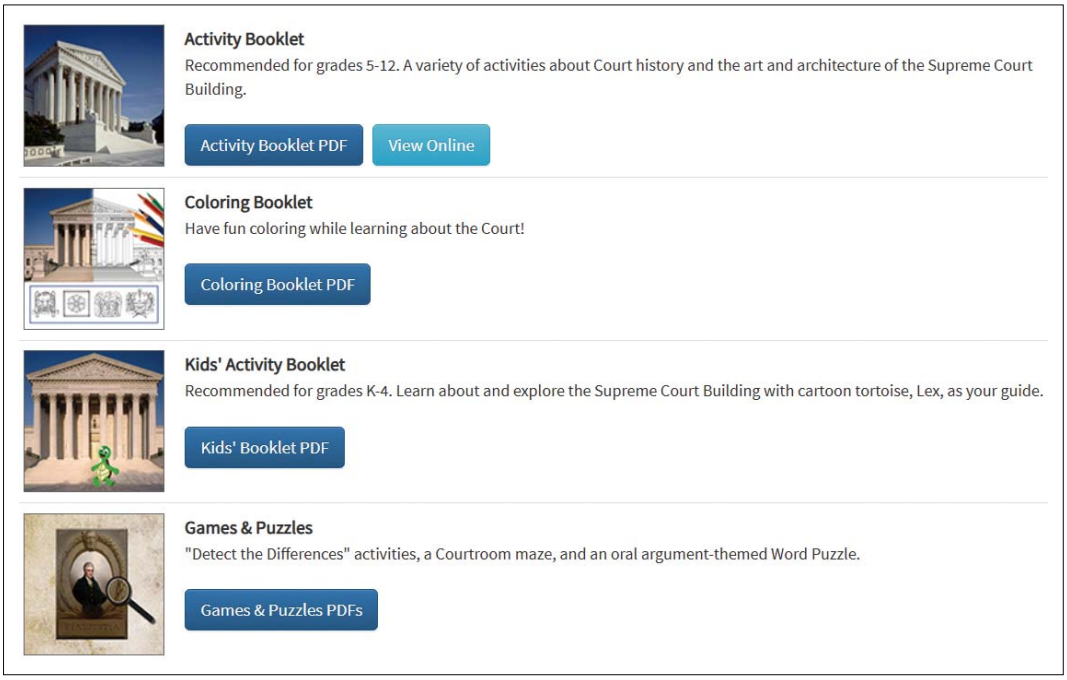

연방대법원 외에 연방법원들도 청소년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경우에는 법원견학, 찾아가는 법교육, 법교육 자료의 제공 외에도 2015년부터 관할 구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 관련 에세이 및 영상 콘테스트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298]

6. 25. 최종 확인).

298)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홈페이지, https://www.ca9.uscourts.gov/community/ (2026. 6. 25. 최종 확인).

[그림 18]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법 관련 에세이 및 영상 콘테스트 홍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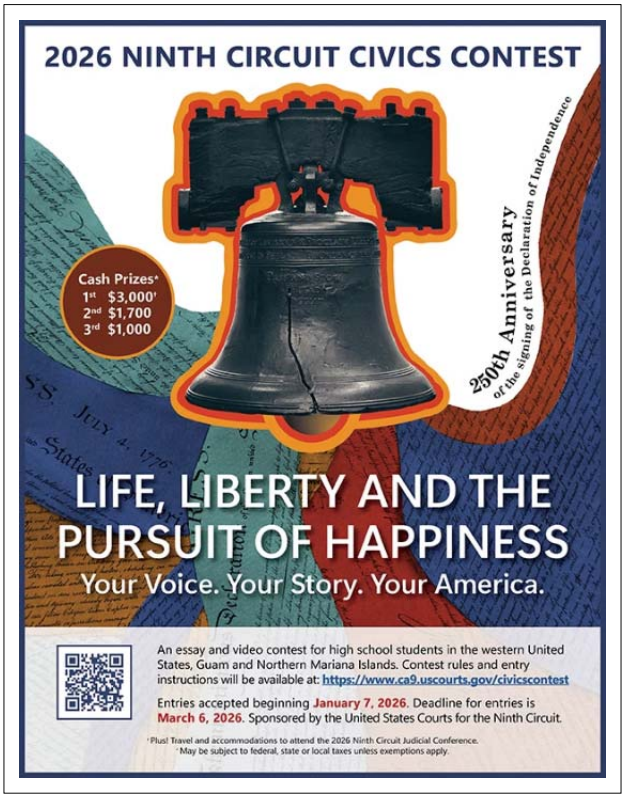

그리고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경우에는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법원견학, 고등학생(9학년-12학년)에 대한 법교육 강좌 진행, 모의재판 대회 및 에세이 대회, 역사적인 법정 소송 재현 프로그램, 찾아가는 법교육, 원격학습 리소스 제공, 법원학습센터 운영 등을 하고 있다. 참고로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찾아가는 법교육 주제를 예시하고 있는데, 연방법원과 그 기능, 헌법적 권리와 의무, 진로지도, 배심원 제도, 중요하고 역사적인 재판, 금융 문해력의 중요성 등이다.[299]

또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청소년 법교육 외에도 체험 프로그램인 Nelson Fellowship과 Lindsay Fellowship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Nelson Fellowship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매년 약 10명에서 12명의 선발된 학생들이 인턴으로 선발되어 몰입형 학습과 현장 학습을 진행하고 판사실에서 인턴을 하며, 다양

299)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홈페이지, https://justiceforall.ca2.uscourts.gov/civic-education/ (2026. 6. 25. 최종 확인).

한 법정 절차에 참석한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6주간 진행되며, 이 기간에 법률전문가의 지도하에 모의재판도 준비한다.[300]

[그림 19] 2024년도 Nelson Fellowship 수료 기념사진



2. 연방법원행정처의 청소년 법교육

연방법원행정처는 연방사법회의(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 연방사법회의에서 결정된 사법행정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방법원행정처의 주된 업무는 연방법원 구성원을 지원하고, 연방사법회의와 연방사법회의 산하 위원회(Committees of the Judicial Conference)를 돕는 것이다.[301]

연방법원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U.S. Courts)는 법교육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300)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www.mad.uscourts.gov/outreach/nelson.htm (2026. 6. 25. 최종 확인).
301) 송현정, 미국 연방사법센터(FJC)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2), 14-15.

[그림 20] 연방법원행정처 법교육 홈페이지[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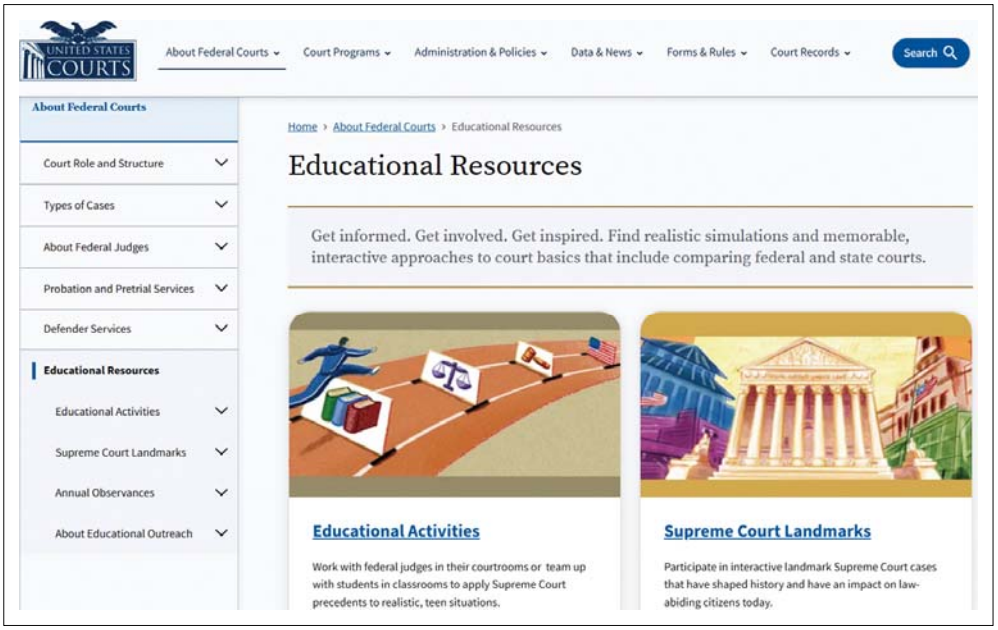

이 홈페이지 배너에서는 연방법원의 역할과 구조, 연방법원 사건의 유형, 연방 판사에 관한 사항 등을 소개하는 것 외에도 법교육으로서의 연방 판사들의 교육 활동,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 소개, 연방법원의 법교육 관련 연례행사(법정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연방법원 개방의 날, 제헌절과 시민의 날, 연방법원 기념일, 권리장전의 날, 독립 선언 250주년 기념일 등) 소개, 찾아가는 법교육(Outreach)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연방 판사들의 법교육 내용에는 청소년 참여형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Civil Discourse and Difficult Decisions', 연방법원의 기원, 법원 이해의 핵심 요소, 연방법원 운영의 기본 원리 등을 포함한 연방법원의 기본 사항, 연방대법원 판례의 수정헌법으로의 적용, 쌍방향 원격 법교육 학습, 법치주의, 연방항소법원에 대한 소개 및 이 법원이 삶에 끼치는 영향 (US Courts of Appeals and Their Impact on Your Life)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찾아가는 법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연방법원 판사의 찾아가는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프로그램 담당자의 메일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교육과 관련한 배너 곳곳에는 법교육을 위한 유튜브 영상들도 게시하고 있다.

302) 연방법원행정처 법교육 홈페이지, https://www.uscourts.gov/about-federal-courts/educational-resources# (2026. 6. 25. 최종 확인).

[그림 21] 연방법원행정처 법교육 홈페이지 배너에서의 법교육 유튜브 영상 예시[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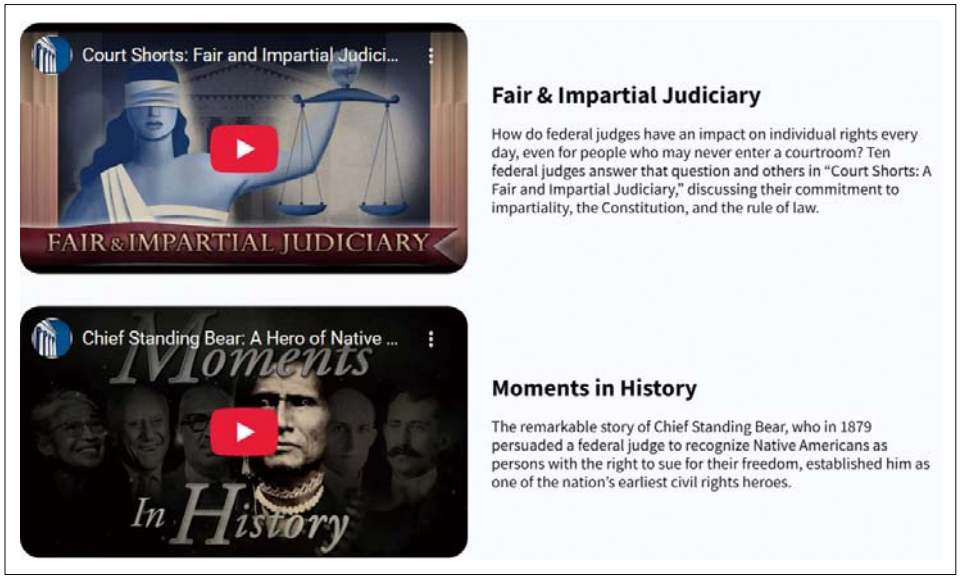

3. 연방사법센터의 청소년 법교육

연방사법센터(Federal Judicial Center)는 판사 및 직원의 교육, 사법정책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 · 교육기관이다.[304)] 연방사법센터는 사법행정과 법원의 사건관리 향상을 위하여 계량적 평가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시점에, 장기적으로 연방법원의 운영 및 재판절차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할 독립적인 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한 Warren E. Burger 연방대법원장의 주도로 1967년 설립되었다.[305)]

연방사법센터는 연방법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조직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정부 체계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연방법원 직원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자료를 제작한다. 또한 연방사법센터는 연방법원의 역사를 연구하고, 사법부의 역사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여기에는 주요 연방 판례와 그 판례들이 미국 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도 포함된다. 이러한 법교육 자료들은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303) 연방법원행정처 법교육 홈페이지, https://www.uscourts.gov/about-federal-courts/educational-resources/annual-observances (2026. 6. 25. 최종 확인).
304) 송현정, 미국 연방사법센터(FJC)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2), 15.
305) 송현정, 미국 연방사법센터(FJC)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2), 19.

청소년들도 연방법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306]

법교육 자료는 크게 4개의 주제로 구분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4] 연방사법센터 법교육 주제와 주요 내용[307]

주제	주요 내용
사법사(司法史)에 관한 논점 (Talking Points on Judicial History)	연방사법부의 역사와 발전과정, 제도 변화, 주요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요점 중심으로 설명하는 교육 자료
주요 연방법원 판례를 통한 교육 (Teaching Famous Federal Trials)	미국 역사상 중요한 연방법원 판례를 통해 사건 배경, 쟁점, 판결 및 역사적 영향을 교육적으로 소개
주 법원과 연방법원 (State and Federal Courts)	미국의 이원적 사법체계에서 주 법원과 연방법원의 관할, 구조, 역할 및 상호 관계를 비교 · 설명
연방법원의 내부 운영 (Inside the Federal Courts)	연방법원의 조직 구조, 판사의 역할, 사건 처리 절차, 법원 직원의 역할 등 실제 운영 방식 설명

4. 국립 주 법원센터[308]

국립 주 법원센터(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는 1971년 설립 이래 연구 개발, 주 법원 간 연합과 협력 증진 활동, 주 법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식과 정보, 그 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 법원의 사법행정 향상을 지원하는 독립적 비영리 단체이다. 법교육에 있어서도 국립 주 법원센터는 교사, 학생, 지역사회를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 · 보급하고, 주 법원의 법교육 프로그램 실행을 지원한다.

특히 국립 주 법원센터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법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교육 교재 'Justice Case Files'를 개발, 보급하고 있는데 인터넷상 불법 다운로드(The Case of Internet Piracy), 이메일 피싱을 통한 개인 정보 도용(The Case of Stolen Identity), 배심원의 의무(The Case of Jury Duty), 부서진 게임기를 둘러싼 사법절차(The Case of Broken Controller), 학교폭력과 사이버 폭력(The Case of the

306) 연방사법센터 홈페이지, https://www.fjc.gov/education/civic-education-about-courts (2026. 6. 25. 최종 확인).
307) 연방사법센터 홈페이지, https://www.fjc.gov/education/civic-education-about-courts (2026. 6. 25. 최종 확인).
308)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104-106.

Cyberbully), 애완동물로 인한 집주인의 퇴거 명령(The Case of No Pets Allowed) 등 청소년의 일상과 관심을 고려한 여섯 가지 주제별로 소설 만화와 교안, 활동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 만화는 유상으로 판매하되(권당 60센트), 교안과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표 65] 국립 주 법원센터의 Justice Case Files 6개 주제와 내용

#1. 인터넷상 불법 다운로드 (The Case of Internet Piracy)	#2. 이메일 피싱을 통한 개인정보 도용(The Case of Stolen Identity)	#3. 배심원의 의무 (The Case of Jury Duty)
수용권(eminent domain) 디지털 시대와 인터넷상 불법 다운로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제5차 수정헌법 사실심법정과 형사법정 법원 직원의 역할	개인정보 도난과 도용 피싱 범죄 헌법 연방무역위원회 전자금융거래 보증서와 진술서 형사법정	배심원 제도와 절차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배심원 예비심문 미성년자 음주/음주운전 배심재판의 진화와 중요성 법원 직원의 역할
#4. 부서진 게임기를 둘러싼 사법절차 (The Case of Broken Controller)	**#5.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 (The Case of the Cyberbully)**	**#6. 애완동물로 인한 집주인의 퇴거명령 (The Case of No Pets Allowed)**
입법부-행정부-사법부 헌법 사법 원리와 절차 법정(법원) 규정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법원 직원의 역할	적법한 절차 사이버 폭력 Magna Carta(대헌장) 헌법 및 제1차 수정헌법 법의 지배 소셜미디어와 법 학교폭력 관련 판례	언어의 접근성 임대차 계약 Gentrification(젠트리피케이션) 시 조례 이주와 이주민
		

국립 주 법원센터의 지원 및 협력 아래, 각 주 법원들은 법원견학, 법교육 교재 발간과 보급, 학교 내 법교육 프로그램, 교사연수 프로그램, 판사와의 만남, 모의재판 토너먼트, 입법절차 체험, 진로체험, 시민교육(법교육) 위원회 운영 등의 청소년 법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5. 각 주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미국의 각 주 법원들은 다양한 방식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개별 주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법원견학, 학교방문 강의, 법원체험 프로그램, 법교육 자료의 제공, 모의재판 대회와 에세이 대회 등을 포함하는 법 관련 기념일 행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 각 주 대법원의 법교육 프로그램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고등학교 4학년 교실과 캘리포니아주 법원을 연결하여 판사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법교육 강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판사들은 300개 이상의 학교를 방문하여 강의하였다.[309]

나. 워싱턴주 대법원

워싱턴주 법원의 경우에는 1996년부터 'Judges in the Classroom'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판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주법과 실습을 포함한 강의를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활발한 토론, 법정 시뮬레이션, 역할극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법 시스템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Judges in the Classroom' 프로그램에 참여한 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워싱턴주 법원 홈페이지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헌절 자료, 법률 관련 교육자료, 용어 사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판사들은 청소년 법원의 설립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에게 이 법원의 운영 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310]

다. 코네티컷주 대법원

코네티컷주 대법원의 경우에는 시민 아카데미 프로그램, 법원 봉사 프로그램(Court

309) 캘리포니아주 법원 홈페이지, https://courts.ca.gov/policy-administration/chief-justice-patricia-guerrero/civic-learning-initiative/judges-classroom (2026. 6. 25. 최종 확인).
310) 워싱턴주 법원 홈페이지, https://www.courts.wa.gov/education/?fa=education.jitc (2026. 6. 25. 최종 확인).

Aide Program), 그림자 직업 프로그램(Job Shadow Program)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 아카데미는 초등학생들에게 법교육을 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된 판사와 변호사의 그룹으로, 이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급을 방문하여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된 50분짜리 수업 계획을 발표한다. 시민 아카데미의 수업 계획을 보면, 첫 번째 섹션은 '규칙과 공정성', 두 번째 섹션은 '대의 민주주의', 세 번째 섹션은 '민주주의와 당신'이다. 수업의 각 부분은 학생들이 그 안에 담긴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311]

법원 봉사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에게 매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법원 직원의 업무를 돕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법원과 사법부의 기능을 이해하고,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지역사회 봉사 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귀중한 경험을 얻으며, 직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담당 교사나 보호자가 학생의 신분과 품성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가자로 선정되면 1주에 이틀씩 하루당 최소 3시간을 근무한다.[312]

그림자 직업 프로그램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나, 참가 학생이 법원 업무를 돕는 정도가 아니라 법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그대로 따라 함으로써(Shadowing) 직업적 흥미를 고취하고 관련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얻는 것으로 보인다. 매년 2월 1일부터 '법의 날' 전날인 4월 30일까지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참가 학생이 관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해당 직원을 멘토로 하여 1 대 1 관계가 되도록 하며, 그에 따라 멘토 직원별로 1명의 학생만 선정한다. 최소한 프로그램 시작 일주일 전에 해당 직원이 학교에 가서 참가 학생을 만나, 사법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비밀 보장 서류의 검토, 담당할 직위와 업무의 소개, 방문 기간, 방문 날짜 등을 소개하는 절차를 가진다.[313]

라. 미시간주 대법원

미시간주 대법원의 경우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311) 코네티컷주 법원 홈페이지, https://www.jud.ct.gov/civics/civicsacademy.html (2026. 6. 25. 최종 확인).
312) 황승태, 법관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5), 122.
313) 황승태, 법관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5), 122-123.

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정보, 미시간 법원 시스템, 초등학생을 위한 법교육 수단으로서의 게임과 영상자료, 헌법, 모의재판과 법원 시뮬레이션, 법원의 구성원과 그 역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등에 관한 학습을 할 수 있다.[314]

마. 테네시주 대법원

테네시주 대법원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을 위한 'SCALES'(stands for Supreme Court Advancing Legal Education for Students)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테네시주 대법원은 학생들이 법률 시스템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실제 대법원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참관할 수 있으며, 1995년에 시작된 'SCALES' 프로그램은 560개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41,000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학생들이 사건을 듣기 전에, 수업에 참여하여 교사로부터 주 및 연방법원 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해당 사건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그다음에 학생들은 또한 학교를 방문한 판사와 변호사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법적인 교육을 받는다.

사건이 논의될 때, 테네시주 대법원 판사들은 'SCALES'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벤치에 앉아 사건을 심리한다. 학생들은 그룹으로 나누어져 변호사들이 사건을 판사들 앞에서 주장하는 것을 들으며, 사건이 종결된 후 학생들은 변호사들과 만나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학생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받는다.[315]

바. 유타주 대법원

유타주 대법원의 경우에는 1일 법관 프로그램(Judge for a Day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에게 매년 4월에서 5월 중 하루 동안 법관을 따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매년 '법의 날'을 맞아 정해지는 주제와 관련한 에세이를 제출한 학생, 사회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학생, 교사가 추천한 학생 중에서 참가 학생을 선발한다. 참가 학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판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판사의 일상을 경험하게 된다.[316]

---

314) 미시간주 대법원 학습센터 홈페이지, https://www.courts.michigan.gov/courts/supreme-court/learning-center/ (2026. 6. 25. 최종 확인).
315) 테네시주 법원행정처 홈페이지, https://www.tncourts.gov/programs/scales-project (2026. 6. 25. 최종 확인).
316) 황승태, 법관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5), 128.

제2절 영국

I. 영국에서의 법교육 전개

영국에서 법교육은 시민성(citizenship)을 고양하는 시민교육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시민교육은 1999년을 전후로 커다란 분기점을 맞이하게 된다. 1998년 시민교육자문위원회(Advisory Group on Citizenship, AGC)는 공교육에서 시민교육을 가르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학교에서의 시민성과 민주주의 교육(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the Teaching of Democracy in Schools)'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999년 9월 국가교육 지침이 공표됨에 따라 2002년에 시민교육이 정식 교과과목으로 신설되기에 이르렀다.[317]

도입 초기의 시민교육은 학교와 교사에게 높은 수준의 자유를 허락하는 'light touch' 방식으로 소개되어 교육 운영 방식과 교수법 등에 있어 학교와 교사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였지만, 시민교육에 대한 교사의 역량과 경험, 학교의 준비가 부족하여 시민교육의 질은 높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후 시민교육은 빠른 속도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어 2007년 교육과정 개편, 2009년부터 중등교육 졸업자격 시험(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GCSE)의 선택과목으로 추가, 2014년부터 초등교육과정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시민교육이 양적 확대, 질적 성장을 거두고 시민교육을 참여한 학생들의 법과 정치적 소양이 높아지며 사회참여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들이 확인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초등교육과정 내 의무교육 확대(양적 성장), 교사의 시민교육 역량 제고 및 시민교육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 강화(질적 향상)' 등 향후 시민교육을 보다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318]

2014년 개정 중등교육과정 내 시민교육 교과의 목적은 '사회에서 온전하고 적극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이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시민교육 교과목의 목표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① 영국 국가의 운영

317) 이종훈 · 표현덕,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72.
318)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113.

원리와 정치 체계, 민주주의 및 시민참여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쌓고, ② 법의 역할, 사법체계, 입법원리와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③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한 사회 참여에 관해 관심과 실천을 제고하고, ④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과 토론 기술을 향상하는 동시에 실생활에서 합리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미래를 위해 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민교육 교과 내용은 민주주의와 정부, 시민의 권리와 책임, 정체성과 다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19]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는 중등 교육과정(Key Stage 3 & 4)에서 시민교육을 법적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 주요 학습 항목은 법의 역할과 사법 체계(민사, 형사)의 운영 방식, 의회의 역할, 입법과정 및 투표의 중요성, 인권법 및 국제법을 통한 인권 보호와 자유, 치안판사(Magistrate), 배심원(Jury), 변호사 등 사법 시스템 내 시민의 역할이다.[320]

영국은 국가 차원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인 시민교육을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시민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있을 뿐,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시민교육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영국의 교육제도에서는 정부가 인정하는 공통 교과서가 없고, 이는 시민교육 교과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시민교육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는 전적으로 학교와 교사의 자율과 역량에 맡긴다. 따라서 시민교육 교과목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이해를 돕고 시민교육 교과의 구체적인 내용, 교육방법,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민간단체들이 설립되었다.[321]

현재 시민교육 교과는 중등과정에 해당하는 핵심 단계(Key Stage) 중 3단계(7~9학년)와 4단계(10~11학년)에 수강해야 하는 기초과목(Foundation Subject)으로 명시되어 있다. 교과의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9)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113-114.
320)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ational-curriculum-in-england-citizenship-programmes-of-study (2026. 6. 25. 최종 확인).
321) 이종훈 · 표현덕,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73.

[표 66] 시민교육 교과의 목표와 내용[322)]

○ 교과의 목적

▸ 양질의 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사회에 완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해 지식과 기술, 이해를 제공한다. 특히 시민교육은 민주주의와 정부 및 법의 형성과 준수 방법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인다. 학생들이 정치와 사회문제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객관적 증거를 분별하며, 토론과 이성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길러 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고, 경제적인 능력과 건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목표

▸ 영국의 통치 방식, 정치 체제, 시민들이 민주적인 정치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과 이해 습득

▸ 사회에서 사법제도의 역할 및 법의 형성과 집행 방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 개발

▸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할 수 있는 자원봉사 및 다른 형태의 책임 있는 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 개발

▸ 비판적인 사고와 정치문제에 대한 토론, 건전한 재정관리 방법과 장래를 위한 재정계획 수립 방법 습득

○ 달성 목표

▸ 핵심단계마다 관련 프로그램에서 구체화된 문제, 기술, 과정을 알고, 적용하며, 이해할 것을 기대

○ 교과 내용

◇ 핵심단계 3

▸ 민주주의, 정부,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자료 조사, 증거 도출, 토론, 견해 평가, 논리적인 주장 전개, 적합한 행동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면서 지식을 활용하고 적용하도록 함

▸ 주요 교육 내용:

– 시민, 의회, 군주의 역할을 포함하여 영국 민주 정부의 정치 체계 발전

– 투표와 선거, 정당의 역할을 포함하여 의회의 운영

– 영국 시민이 누리는 자유의 소중함

322)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ational-curriculum-in-england-citizenship-programmes-of-study (2026. 6. 25. 최종 확인). 다만 시민교육 교과과정은 잉글랜드에만 적용된다. 이종훈 · 표현덕,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74-75에서의 번역본을 참조.

– 규칙과 법의 본질, 경찰의 역할 및 심판소와 법원의 운영을 포함한 사법제도
– 학교에 기반한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포함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협력해야 하는 방법과 사회에서 공공기관과 지원단체의 역할
– 화폐의 기능과 사용, 예산의 중요성과 실천, 위기관리

◇ 핵심단계 4

▸ 핵심단계 3에서 배운 민주주의, 정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심화 학습하고, 자료 조사 방법, 증거의 선별, 설득력 있는 주장, 결론의 도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 또한 시민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평가하고 경험해야 함

▸ 주요 교육 내용:

– 의회민주주의와 영국 헌법의 핵심 요소들, 즉, 정부의 권한, 시민과 의회의 역할, 삼권분립, 언론의 자유
– 영국 외에 다른 나라의 선거제도 및 지역적 · 국가적 ·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민주주의와 선거절차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행동
– 영국 이외의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 정부형태와 시스템
– 지역, 지방, 국제적인 협력 및 영국과 유럽국가, 영연방, 유엔 및 더 넓은 세계와의 관계
– 인권과 국제법
– 영국의 법제도, 그 밖에 다양한 법 근거 및 법이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
– 영국의 다양한 민족, 지역, 종교 및 종족 정체성과 상호 존중 및 이해의 필요성
–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사회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및 기타 다른 형태의 책임 있는 활동
– 소득과 지출, 신용과 부채, 보험, 저축과 연금, 금융상품과 서비스, 공공 자금의 조달 및 지출 방법

II. 영국에서의 법원 외 법교육 주체

시민교육을 통한 청소년 법교육의 대표적인 단체로는 'Young Citizens', 영국 법정변호사협회(the Bar Council)가 있다.

'Young Citizens'는 영국의 대표적인 시민교육단체로 원래 1989년에 설립된 시민성 재단(Citizenship Foundation)을 계승한 독립적이고 비당파적인(non-partisan) 교육 자선단체이다. 이 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시민교육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다.[323]

'Young Citizens'는 지금까지 거의 40년 동안 백만 명이 넘는 청소년에게 시민교육을 하고 있다. 시민교육의 방식은 모의재판 대회, 시민성 워크숍, 100개 이상의 무료 수업 등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매년 8,000명 이상의 청소년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모의재판 대회의 경우, 15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 모의재판 대회와 12세부터 1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치안법원 모의재판 대회로 구분된다.[324]

더 나아가 'Young Citizens' 교사들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외에도 높은 수준의 교육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자료들은 SmartLaw 교실 교육 자료(SmartLaw classroom resources)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데, 이 자료들은 법률전문가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이 자료들은 다양한 법교육 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의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325]

영국 법정변호사 협회의 대표적인 법교육 방식에는 모의재판 대회 개최와 변호사의 학교방문 강의가 있다. 모의재판 대회의 경우 1년에 한 번 개최되며, 이 대회에는 2,000명 이상의 학생(10학년부터 13학년까지)과 200명 이상의 변호사와 90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한다.[326]

III. 영국 법원에서의 청소년 법교육

1. 영국 대법원

영국 대법원은 우선 법원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견학 프로그램은 약 45분간 진행되며, 가이드의 안내와 정보담당관의 소개 강연, 교육전시 구역 방문, 재판 참관으로 구성된다. 견학 프로그램은 인기가 많은 법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최소 2

323) Young Citizens 홈페이지, https://www.youngcitizens.org/about-us/ (2026. 6. 25. 최종 확인).
324) Young Citizens 홈페이지, https://www.youngcitizens.org/programmes/ (2026. 6. 25. 최종 확인).
325) Young Citizens 홈페이지, https://www.youngcitizens.org/resources/smartlaw/ (2026. 6. 25. 최종 확인).
326) 영국 법정변호사협회 홈페이지, https://www.barcouncil.org.uk/becoming-a-barrister/i-am-a-school-or-college-student/bar-mock-trials.html (2026. 6. 25. 최종 확인).

개월 전에 예약이 필요하며 최소 견학 인원은 10명, 최대 견학 인원은 30명이다. 현재 가상 법원견학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법원전시관의 상설 및 임시 전시회를 통하여 대법원의 역사와 업무에 관하여 학습할 수 있다.[327]

영국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법교육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에는 인권보호, 판결 해석, 권력분립, 영국 대법원과 미국 대법원의 차이점 등에 관한 사항들이 있다.[328] 그리고 온라인 법강좌인 'Royal Hollow Way'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2주의 과정을 통하여 영국 대법원의 역사와 운영 방식, 전 세계의 법원과의 비교, 인권 및 고용법부터 공법 및 형법에 이르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다루는 법적 이슈, 법원 구성원의 목소리 등을 들을 수 있다.[329]

영국 대법원은 '학생토론의 날(Student Debate Days)'을 개최하고 있는데, 학생토론의 날 기간에 10개 학교가 대법원에서 법적 주제에 관하여 토론할 기회를 가진다. 선정된 학교들은 대법원 견학을 통해 법원의 역할과 역사에 대해 배우고, 학생들은 전문 변호사들의 지도를 통해 논리적 주장, 추론 및 대중 연설 기술을 익힌다. 토론은 영국 대법원의 사건에서 선정된 핵심 법적 문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과 웨일스의 12-13학년 학생들, 북아일랜드의 12-14학년 학생들, 스코틀랜드의 S5 및 S6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런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에 위치한 학교들이 신청 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330]

영국 대법원의 '정의를 묻는다(Ask a Justice)'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대법관과의 실시간 질의응답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영국과 웨일스의 11-13학년 학생들, 북아일랜드의 12-14학년 학생들, 스코틀랜드의 S5 및 S6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331]

2. 국립사법박물관[332]

영국 국립사법박물관(National Justice Museum)은 어린이, 청소년과 시민들이

327) 영국 대법원 홈페이지, https://supremecourt.uk/tours (2026. 6. 25. 최종 확인).
328) 영국 대법원 홈페이지, https://supremecourt.uk/education/learning-resources#futurelearn-course (2026. 6. 25. 최종 확인).
329) 영국 대법원 홈페이지, https://www.futurelearn.com/courses/inside-the-supreme-court (2026. 6. 25. 최종 확인).
330) 영국 대법원 홈페이지, https://supremecourt.uk/education/debate-days (2026. 6. 25. 최종 확인).
331) 영국 대법원 홈페이지, https://supremecourt.uk/education/ask-a-justice (2026. 6. 25. 최종 확인).
332)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117.

적극적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책임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95년에 설립된 박물관(당시에는 Galleries of Justice Museum, 이후 2017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으로 법과 정의와 관련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전시와 체험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립사법박물관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법과 사법체계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높이고,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며 사회에서 적극적 역할 수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매우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립사법박물관의 법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게 영국의 법과 사법체계에 대한 교육 및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① 학생들이 법의 입법 및 개정 절차와 방법을 배우고, ②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진하는 동시에 적극적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함양하며, ③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판단 능력을 키우고, ④ 법과 관련한 직업과 진로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여, ⑤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 토론과 발표 기술, 의사소통 기술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립사법박물관의 법교육 프로그램에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법정을 경험할 수 있는 법정 워크숍 프로그램, 견학 프로그램, 잉글랜드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방문형 법교육 프로그램, 교사와 교육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3. 치안판사의 법교육[333]

매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치안판사는 치안판사 협회를 통하여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법교육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교육 강의의 주제는 치안판사로 임명되는 방법, 치안판사가 다루는 사건의 종류, 유죄 또는 무죄가 결정되는 방법, 판결하는 방법, 사이버 범죄 · 괴롭힘, 흉기 범죄와 같은 주제별 문제들 등이다. 그리고 치안판사는 12세에서 14세의 청소년들과 함께 모의재판 대회에 참가하기도 한다.

333) 치안판사협회 홈페이지, https://www.magistrates-association.org.uk/get-involved/help-educate-your-community/ (2026. 6. 25. 최종 확인).

제3절 독일

I. 독일에서의 법교육 전개

독일의 법교육(Rechtskunde 또는 Rechtserziehung)은 단순한 법률적 지식의 전달을 넘어,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334]의 하나로서 발전해 왔다. 독일에서의 법교육 즉,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의 이념, 제도, 생활 속에서의 법 등을 교육하는 것은 정치교육이라는 용어 아래 법을 비롯해 정치, 경제, 역사 등 광범위한 사회과학의 영역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335]

정치교육의 핵심 내용은 독일의 헌법인 '독일 기본법'(Grundgesetz)의 헌법적 질서의 이념과 가치 및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들이며,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의 교과 수업과 더불어 학교 외의 교육제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336]

독일의 정치교육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수립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 히틀러 정권과 전쟁 등을 경험한 독일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를 필요로 한다(Democracies need democrats)'는 것에 합의하며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서의 정치교육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정치교육은 1990년 통일을 맞이한 독일은 전체주의 아래 수십 년을 살아온 동독 시민들에 대한 재교육, 1990년대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매년 급증하는 이주민과 난민 등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독일 사회의 원리와 가치, 법과 정치, 시민의식 등에 대한 교육으로 발전하였다.[337]

독일은 정치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을 설치함으로써 초당파적이고 거국

334)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에 해당하는 것을 정치교육이라고 부른다[설규주,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민교육연구 제50권 제3호 (2018. 9.), 155].

335) 곽한영, 법교육 교수학습방법론 강의, 박영스토리 (2020), 35.

336) 정상우(연구책임자), 법교육지원법 개정 방향 및 내용 연구, 법무부 (2015), 50.

337)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119-120.

적이며 민간을 주체로 정부와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가 차원의 제도교육에서 정규과목으로 배우게 되어 있으며, 평생교육 또는 평생학습의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 직업교육, 재교육, 학교 외 청소년 교육 등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기관과 국가에 의해 보조받는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교육을 시행하고 있다.[338]

독일 정치교육의 기본은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에 명시된 세 가지 원칙을 따른다. 이 합의는 1976년에 이루어졌으며, 모든 정치교육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주입 금지의 원칙(Überwältigungsverbot),[339] 논쟁성 보장의 원칙(Kontroversitätsgebot),[340] 학생지향성의 원칙(Gebot der Schülerorientierung)[341]이다.[342]

독일에서의 청소년 법교육의 목표는 청소년들에게 법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법의 본질과 질서 유지 기능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행동의 법적 결과와 이에 따른 법 집행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개인의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것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법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초역량을 전달하는 것이 목표이다.[343]

독일의 학교교육으로서의 법교육 도입은 문화부나 교사단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무부와 법률가에 의하여 요청되었다. 1952년 12월 제20차 법무부 장관회의에서는 법교육의 진흥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였으나 문화부의 참여가 없어서 법교육에

---

338) 곽한영, 법교육 교수학습방법론 강의, 박영스토리 (2020), 37.

339) 교사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학생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핵심 규범으로, 교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의 자유로운 판단 형성을 방해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단순한 강요뿐만 아니라, 특정 가치나 관점을 은밀하게 주입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 · 축소하여 전달하는 행위 역시 주입 금지의 범주에 포함된다.

340) 학문적 · 사회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은 교실 수업에서도 반드시 논쟁적인 상태 그대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구체적인 교수 방법론에 관한 원칙으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주제를 교사가 특정 입장만을 정답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교사의 정치적 입장이 유일한 선으로서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강요 · 주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의미를 가진다.

341) 정치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스스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적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학습자의 동기부여를 중시하는 방법론으로, 교육의 목적이 지식 전달을 넘어 학습자 스스로 현실의 정치 문제를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기르는 데 있음을 의미한다.

342) 이계정 외 3인, 법학기초정책연구 Ⅰ –법치주의의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5), 125–126.

343) Parlamentarischer Beratungs– und Gutachterdienst des Landtags Nordrhein–Westfalen, Rechtskundeunterricht–Unterrichtskonzept in Nordrhein–Westfalen im Vergleich mit anderen Bundesländern und europäischen Ländern, 2020, 7–8 참조.

근본적인 영향력은 행사할 수 없었다. 그리고 1950년대의 법교육 옹호자들도 법교육을 독립된 과목으로 만들기보다는 문학이나 사회, 역사과목에서 법적인 관련성을 통합하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344]

1968년 10월 제36차 법무부 장관회의가 각 주 정부에 대하여 법교육을 사회교과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법교육위원회는 활동을 강화하였다. 1968년 이후 독일에서의 법교육은 현저히 확대되었다. 1972년 7월 7일 독일 문화부 장관회의는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계 중등교육과정으로, 9년제로 운영되는 김나지움(Gymnasium) 상급과정의 개편에서 교과과목으로 법교육(Rechtsunterricht)을 채택하였다.[345]

II. 독일에서의 학교 법교육과 법원 외 법교육 주체

1. 독일에서의 학교 법교육

독일은 주별로 학교법(Schulgesetz)과 학사정책이 상이하여 가장 보편적인 초등학교(Grundschule)를 제외하고는 학교체계와 학사운영이 주마다 다르다. 이에 따라 각 주별로 상이한 학교 법교육체계를 가진다.[346][347] 예를 들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일반계 학교(allgemein bildende Schule)[348]에서 자율적 학습모임(Arbeitsgemeinschaft)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9 · 10학년(및 중등교육 2단계)에 속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매년 약 10,000명의 학생이 법교육 학습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법교육 학습모임은 학기당 10~12회의 2차시 수업으로 구성된다. 수업 내용으로는 형법, 민법(특히 상속법과 가족법), 노동 · 사회법

344) 이기우, "독일과 미국의 법교육",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제17호 (1993. 8.), 50.
345) 이기우, "독일과 미국의 법교육",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제17호 (1993. 8.), 50-51, 52 참조.
346) 통계회사 Statista 홈페이지, https://de.statista.com/themen/250/schule/#statistic (2026. 6. 25. 최종 확인).
347) 이하 독일 각 주의 학교 법교육에 관한 내용은 Parlamentarischer Beratungs- und Gutachterdienst des Landtags Nordrhein-Westfalen, Rechtskundeunterricht-Unterrichtskonzept in Nordrhein-Westfalen im Vergleich mit anderen Bundesländern und europäischen Ländern, 2020 참고.
348) 독일에서의 일반계 학교는 직업적 자격취득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모든 학교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러한 학교들의 공통점은 직업계 학교에서의 전문 · 기술 지식 전달과 달리, 일반지식(Allgemeinwissen)의 전달에 중점을 둔다[위키피디아 홈페이지, https://de.wikipedia.org/wiki/Allgemeinbildende_Schule#:~:text=Allgemeinbildende%20Schule%20(gem%C3%A4%C3%9F%20neuer%20Rechtschreibung,%2C%20Spezial%2D%20und%20F%C3%B6rderschulen%20sein (2026. 6. 25. 최종 확인)].

및 행정법이 다루어지며, 또한 우익 극단주의(Rechtsextremismus)와 법치국가성(Rechtsstaatlichkeit)에 관한 주제도 함께 다루어진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브레멘주, 헤센주, 라인란트-팔츠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및 자를란트주에서는 일반계 학교에 법교육 내용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교과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주들에서도 각 주의 교육과정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교과목 내에서 일부 법적 쟁점이 제한적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이들 주에서도 직업학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직업학교에서는 전공(전문)분야에 따라 법교육 과목이 별도로 개설된다.

헤센주에서는 법교육 과목을 사회학 계열(gesellschaftswissenschaftlicher Aufgabenbereich)에 속하는 과목으로서 김나지움 상급과정(gymnasiale Oberstufe)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필수과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과목은 기본과정(Grundkurs)으로 개설되며, 이 과목을 통해 대학진학시험인 아비투어(Abitur) 시험을 치를 수도 있다. 법교육 과목은 상급과정에서 처음 개설되며, 중등교육 1단계(Sekundarstufe I)에서의 사회과(Sozialkunde), 사회통합 교과(Gesellschaftslehre) 및 법교육(Rechtserziehung)을 토대로 구성된다. 헤센주의 일부 학교에서는 법교육 과목으로 아비투어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중등교육 1단계(7학년부터)에서 필수과목인 공동사회과(Gemeinschaftskunde)가 운영된다. 이 과목에서는 기본권, 평화와 인권, 그리고 국가조직에 관한 문제 및 일부 정치적 쟁점이 다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독일에서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이나 청소년의 법적 지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나지움 상급과정에서는 공동사회과를 선택에 따라 기본과목(Basisfach) 또는 심화과목(Leistungsfach)으로 이수할 수 있다. 선택한 과정에 따라 입법과 통치 또는 정치 참여와 같은 주제들이 '정치 체제'라는 상위 주제 아래에서 더 심층적으로 다루어진다. 그 외 전반적으로는 정치적 쟁점이 수업의 중심을 이룬다.

그 밖의 연방주인 바이에른주, 베를린주, 브란덴부르크주, 함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니더작센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및 튀링겐주에서는 일반계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법적 내용을 전달하는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내용 구성은 주별로 상이하다.

베를린주, 브란덴부르크주, 함부르크주, 니더작센주 및 작센-안할트주에서는 법

교육이 독립된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이들 주에서는 김나지움 상급과정에서 기본과정 또는 심화과정의 선택 필수과목으로 법교육이 주로 실시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 주에서는 법적 기초 소양이 '일반교양의 핵심적 구성 요소'이자, 세계를 이해하고 정치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업의 주요 주제는 법체계에 대한 이해와 법률행위(Rechtsgeschäft)에 놓여 있다. 아울러 일부 주에서는 노동법, 형법, 가족법, 물권법 또는 상속법의 기초도 함께 다루고 있다.

베를린주에서는 김나지움 상급과정에서 '법(Recht)'이라는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는 중등교육 1단계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사회과 계열 교과목과 연계되어 있다. 이 과목은 내용상으로 매우 폭넓은 영역을 포괄한다. 즉, 핵심 교육과정(Kerncurriculum)으로 구속력 있게 규정된 바에 따라, 각 학기별로 사법(민사)법, 형법, 노동법 및 가족법이 교육된다. 해당 과목은 기본과정 또는 심화과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과정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요구 수준은 달라진다.

함부르크주의 경우, 예컨대 소비자법, 노동법 및 형법의 기본 내용이 교육된다. 주목할 점은 법 과목이 베를린과는 달리 김나지움 상급과정에서만 개설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지역통합형 학교(Stadtteilschule)'에서 이미 5학년부터 11학년까지 제공된다는 점이다.

작센-안할트주에서는 김나지움에서 법교육 과목을 9학년부터 주당 2시간의 선택필수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김나지움 상급과정에서도 아비투어까지 선택 필수과목으로 계속 이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종합학교(Gesamtschule)에서도 역시 9학년부터 주당 2시간으로 해당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교과별 교육과정(Fachlehrplan)은 각 교육 단계별 수업 목표와 내용을 구속력 있게 규정하고 있다.

작센주에서는 김나지움에서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공동사회과/법교육/경제'라는 통합 교과가 운영된다. 이 과목은 하급 학년에서는 선택 필수과목으로, 상급 학년에서는 기본과정 또는 심화과정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독일 법질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얻게 되며, 민주주의, 정의, 그리고 일부 경우 국제법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수업 내용에는 헌법, 정치 체제, 사법의 기능 및 법치국가 원리가 포함된다.

바이에른주와 튀링겐주에서는 '경제와 법'이라는 통합 과목이 선택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이 과목은 김나지움(9~12학년)뿐만 아니라 공동학교 및 일반 중등학교에서도 제공된다.

튀링겐주에서는 해당 과목이 법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며, 늦어도 12학년까지는 법규의 해석과 적용과 같은 법률적 기초 기법과 함께 물권법 등 개별 법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이 수업 내용으로 포함된다. 또한 '경제와 법' 과목으로 아비투어 시험을 치르는 것도 가능하다.

바이에른주에서는 '경제와 법' 과목이 특성화 중학교라고 할 수 있는 직업학교 또는 김나지움에서 개설되며, 아비투어 과목으로도 선택될 수 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수업의 심도는 학교 유형과 과정 형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비투어 시험에 대해서는 통일된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경제와 법'은 김나지움 9 · 10학년에서는 필수과목으로, 이후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경제 · 사회과학 계열 김나지움에서는 8학년부터, 그 외 김나지움 교육과정에서는 9학년부터 수업이 시작된다. 내용상으로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관한 경제적 측면만 아니라 독일 법체계의 기초, 법률적 작업 기술의 기본 문제, 형법의 원칙, 민법전(BGB)의 체계 등 폭넓은 주제를 포괄한다.

2.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은 독일 내 어린이, 청소년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치교육과 그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952년에 설립된 연방내무부 산하의 기관이다. 이 교육원의 기본적 임무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민주적 의식을 확립하며, 정치적 참여 의지를 강화하는 것에 있다.[349]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주요 임무는 정치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 제작 및 제공 외에도,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인가 교육기관들의 정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적인 재정보조를 통해서도 구체화 된다. 연방정치교육원의 가장 대표적인 주요 사업은 출판간행물을 통한 교육사업, 정치교육 관련 학술대회 지원사업, 외부 정치교육단체 지원은 시민단체와 같은 민간 정치교육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중심으로 매우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350] 하지만 법교육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정치교육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법교육에 관련된 개별적인 프로그램은 없다.[351]

---

349)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홈페이지, https://www.bpb.de/die-bpb/ueber-uns/auftrag/51248/leitbild-der-bundeszentrale-fuer-politische-bildung/, https://www.bpb.de/system/files/dokument_pdf/bpb_tiu_grundgesetz_aufl1_2019_ausf%C3%BCllbar.pdf (2026. 6. 25. 최종 확인).
350) 정상우(연구책임자), 법교육지원법 개정 방향 및 내용 연구, 법무부 (2015), 55.
351) 곽한영, 법교육이란 무엇인가, 박영스토리 (2025), 77.

다만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은 정치교육의 하나로서 법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는 대표적으로 학문, 직업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법률용어를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는 법률용어사전, 기본권과 법치주의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정치교육정보(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다양한 형식의 독일연방공화국 기본권 책자, 초보자를 위한 기본법 해설 등이 있다.[352] 그리고 학교 법교육과 학교 외 법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제별, 형식별, 연령 및 대상자별 필터를 통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53]

3. 주 법무부

상당수의 주 법무부들은 청소년 법교육을 기획 · 홍보하거나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란덴부르크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는 학교 법교육 방식인 '법조인들이 학교에 간다(Juristinnen und Juristen gehen in die Schulen)'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와 담당자의 연락처 및 자주 묻는 말(FAQ)에 관하여 게시하고 있다.[354] 그리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경우에도 법무부 홈페이지에 노동법원과 사회법원이 제공하는 학교방문 법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담당자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다.[355]

다만, 함부르크주 법무부는 학교, 및 직업교육청, 교원양성 및 학교발전 주립 연구소와 협력하여 변호사, 판사, 공증인, 검사, 행정 분야의 법률가 등이 학교를 방문해 자신의 실무 경험과 시각, 그리고 독일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학교와 법(Schule mit Rech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356]

학교방문 프로그램 수업 주제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352)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홈페이지, https://www.bpb.de/shop/ (2026. 6. 25. 최종 확인).
353)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홈페이지, https://www.bpb.de/lernen/materialsuche/?field_filter_thema=all&field_filter_format=all&field_filter_zielgruppe=all&d=1 (2026. 6. 25. 최종 확인).
354)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법무부 홈페이지, https://mdjd.brandenburg.de/mdjd/de/themen/rechtskundeunterricht/ (2026. 6. 25. 최종 확인).
355)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justiz.nrw/BS/rechtskunde/arbeitsrecht_sozialrecht (2026. 6. 25. 최종 확인).
356) 이하는 함부르크주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hamburg.de/politik-und-verwaltung/behoerden/bjv/projekte-und-initiativen/schule-mit-recht/informationen-215014 (2026. 6. 25. 최종 확인).

[표 67] 방문 프로그램 수업 주제 예시

○ 헌법
–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능 등

○ 형법
– 청소년 형법의 특수성, 형량 산정의 기본원리, 마약과 이른바 'KO 약물', 사이버 그루밍 (Cybergrooming)

○ 민법/비송사건
– 주의! 함정: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구매, 지식재산권(음악, 영화, 인터넷 언론 관련 사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비교형량)

○ 노동법
– 노동법의 오해들(해고 등에 관한 잘못된 통념, 노동법과 노동 현실의 차이)

○ 공법
– 우리의 법치국가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시민수당(Bürgergeld)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형 집행
– 형 집행 제도의 개관, 재사회화는 왜 중요한가?
※ 교정시설(교도소) 방문은 포함되지 않음

○ 일반적 · 융합적 주제
– 법률가는 어떻게 사고하는가(법적 사고와 업무 방식에 대한 기본적 고찰)?, 법정에서의 '개인 대 대기업', 법조인의 직업 세계와 직업상, 사법의 독립성(내용과 한계), 변호사라는 직업("이보다 더 흥미로운 일이 있을까?")

이러한 주제들은 온라인 수업, 재판 방청, 진로교육 등의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 '학교와 법' 프로그램을 통하여 2024년에는 법률전문가들이 41개 학교를 방문했으며, 2025년에는 55개 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하여 매년 약 200명의 전문가가 대기 중이다.[357]

4. 독일 변호사협회

독일 변호사협회(Deutscher Anwaltverein)는 학교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변호

357) 북독일 방송(NDR) 홈페이지, https://www.ndr.de/nachrichten/hamburg/Artikelvorlage-HH,schulemitrecht-100.html (2026. 6. 25. 최종 확인).

사가 학교로 간다'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각 주의 변호사협회에서도 운영되고 있다.[358] 이 프로그램에서는 변호사들이 자원봉사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법적 주제에 대해 정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법률적 도움도 제공한다. 다루는 주제의 범위는 의도적으로 폭넓게 설정되어 있다. 형법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범죄구성요건과 함께, 범죄 발생부터 유죄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절차 전반이 다루어진다. 이 밖에도 계약,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 그리고 기본법과 기본권이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포함된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법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법의식을 형성함으로써 법 준수 의식을 강화하는 데 있다. 동시에 본 프로젝트는 매우 구체적인 생활 지침의 역할도 수행한다. 즉, 스토킹과 사이버 괴롭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휴대전화 이용계약, 음악 · 영화의 불법 다운로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게 되며, 나아가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이해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이 프로그램은 실천적 사례를 통해 법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법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모든 유형의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이 법을 더 실감 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생활 현실이 폭넓게 반영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다루어진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학교나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에 대해 어떤 법적 대응 수단이 있는가?, 휴대전화 이용계약은 언제부터 체결할 수 있는가?

이와 함께 법사회학적 질문 역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우리의 법체계는 실제로 기능하는가,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혹은 개선이 필요한 취약점은 무엇인가와 같은 문제들이 제기된다.

둘째, 학생을 참여시키고 사고를 자극하는 수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만으로는 법이 지닌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학적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청소년의 흥미를 특히 효과적으로 자극하며, 개별 수업 설계에 유연하게 통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정 법 분야에 관한 주제 토론, 모의재판(법정

358) 이하는 독일 변호사협회 홈페이지, https://rechtsstaat-erleben.de/de/ (2026. 6. 25. 최종 확인).

절차 시뮬레이션), '무인도'를 위한 자체 법률 제정 과제, 실제 재판 방청, 생활 밀착형 사례 중심 학습 등을 하고 있다.

셋째, 일상생활과 직결된 법적 문제를 다룬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전면적인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허용되는가,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 내용을 검사할 수 있는가, 인스타그램에서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아동에게 용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부모는 자녀의 행위에 대해 항상 책임을 지는가, 언제부터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가, 스토킹과 사이버 괴롭힘 및 학교 내 괴롭힘의 경계는 어디인가, 이른바 'K.O.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가(형법 입문의 구체적 사례로 활용 가능), 음악 · 영화의 불법 다운로드는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하는가, 휴대전화 이용 계약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인터넷 구매 시 소비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와 같은 법적 질문들을 다룬다.

넷째, 추상적 · 사회적 쟁점을 통한 법 이해의 확장이다. 학생들의 법에 대한 관심은 추상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촉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만약 여객기가 가득 찬 축구 경기장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위험이 있다면 이를 격추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유괴된 아동을 구하기 위해 폭력의 위협이나 사용이 고려될 수 있는 경우에 고문 금지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망명(난민)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기본법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와 같은 질문들이 가능하다.

다섯째, 다양한 교과와의 연계가 가능하다. 법은 사회적 공동생활 전반을 규율하며, 그만큼 삶 자체처럼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변호사의 학교방문은 다양한 교과 영역과 연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교과와의 통합도 가능하며, 예컨대 환경법 관련 주제는 생물 수업과의 연계도 고려될 수 있다.

III. 독일 법원에서의 청소년 법교육

독일은 5개(연방일반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사회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재정법원)의 연방대법원 차원에서의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359]

359) 다만 청소년들이 단체로 신청을 통하여 연방대법원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방일반법원은 사전에 신청한 단체 방문객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기초적인 설명을 하고 재판을 방청하게 한 뒤에 법원에 대한 안내 투어를 한다. 안내 투어는 연방일반법원의 업무와 기능에 대한 개요 설명으로 시작하여, 이어서 연방일반법원 부지 전반, 에르프그로스헤르초크 궁전(Erbgroßherzogliches Palais), 그리고 법원도서관이 있는 북관(Nordgebäude)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된다. 안내 투어의 소요시간은 약 90분이다[연방일반법

따라서 이하에서는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을 대표적인 프로그램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법원견학

독일 대부분의 법원은 자체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법원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고등법원의 경우에는 '생생한 사법현장!(Justiz live!)'라는 법원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360] 이 프로그램에서는 공보팀 직원과 판사 및 검사가 재판 시작 전인 오전 8시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사공판의 진행 절차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의 구성원과 직역에 대한 소개를 진행한다. 이후 학생들은 법정 심리를 방청하고, 피드백 시간을 통하여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사법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학기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뮌헨고등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정 방청에 관한 추가 정보가 담긴 브로슈어를 제공하고 있다.

원 홈페이지, https://www.bundesgerichtshof.de/DE/Service/Besucherdienst/besucherdienst_node.html (2026. 6. 25. 최종 확인).

360) 이하는 뮌헨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s://www.justiz.bayern.de/gerichte-und-behoerden/oberlandesgerichte/muenchen/info_service_2.php (2026. 6. 25. 최종 확인).

[그림 22] 뮌헨고등법원 법정 방청 브로슈어



2. 학교방문 법교육

독일 각 주의 법원은 학교방문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각 주에 따라 '학교로 찾아가는 법원(Jura macht Schule)', '학교로 찾아가는 법치국가(Rechtsstaat macht Schule)', '학교와 법(Schule mit Recht)' 등으로 불린다.

예를 들어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법원들의 경우, '학교로 찾아가는 법치국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중등교육 1단계(Sekundarstufe I)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8-9학년 학생에게 적합한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수업은 하루 진행되거나 여러 차시에 나누어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사례를 바탕으로 하는 수업 외에 모의재판의 준비와 진행도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은 지역 법원을 방문하여 실제 형사재판도 참관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실시 후에는 주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평가지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다.[361]

[그림 23] 2022년에 실시된 '학교로 찾아가는 법치국가' 프로그램 현장



한편, 독일의 판사와 검사들의 자율적인 모임인 독일 판사연합(Deutsche Richtervereinigung)의 산하에 있는 각 주의 판사연합도 학생들을 위한 법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브란덴부르크주 판사연합은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모임의 방식으로 평균적으로 약 12차시의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362]

361)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법무부 홈페이지, https://jum.baden-wuerttemberg.de/de/justiz/justizpruefungsamt/rechtsstaat-macht-schule (2026. 6. 25. 최종 확인).
362) 브란덴부르크주 판사연합 홈페이지, https://www.drb-brandenburg.de/landesverband-brandenburg/rechtskundeunterricht (2026. 6. 25. 최종 확인).

제4절 일본

I. 일본에서의 법교육 전개

일본의 법교육은 1990년 쓰쿠바 대학의 에구치 유지(江口勇治) 교수가 미국의 법교육을 일본 학계에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일본 변호사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발전해 오던 일본의 법교육은 고이즈미 정권하에서 사법제도 개혁이 논의되면서 크게 확산했다.[363]

1990년 후반부터 착수된 일본의 사법제도 개혁은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기존 사법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민사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조인의 증원 및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 법률전문 인력의 유연한 활용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접근이 주로 정계, 재계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었다면 변호사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은 사법민주화, 인권옹호 기능의 강화를 목적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강조했다.[364]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3년 일본 법무성 사법법제부에 '법교육연구회'가 설립되었고, 법교육연구회는 법교육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법, 사법절차, 사법제도와 그 기초를 이루는 가치에 관한 지식과 생각을 익혀서 원만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365]

일본 법무성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법교육 연구회의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2005년 5월 법교육 추진협의회를 발족시켰다. 법교육추진협의회는 기존 법교육연구회의 회원을 중심으로 새로이 많은 중 · 고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하는 체제를 만들어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정부대책의 구체화 활동을 계획한 것이었다.[366]

법교육 추진협의회는 ① 학교교육에서의 법교육 실천, ② 교육관계자, 법조관계

363) 이종훈 · 표현덕,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89.
364) 곽한영, "재판원제도의 시행에 대응하는 일본의 법교육 사례 연구", 법교육연구 제19권 제3호 (2024. 12.), 44.
365) 이종훈 · 표현덕,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89.
366) 김대홍,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일본 법교육의 변화", 법교육연구 제13권 제3호 (2018. 12.), 6.

자에 의한 법교육에 관한 대처, ③ 재판원제도[367]에 대한 법교육 교재의 작성, ④ 기타 법교육의 연구 · 실천 · 보급 방법 등을 목적으로 법교육에 관한 방향 설정과 프로그램 제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산하에 교재개정검토부 및 재판원 교재작성부회를 두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이어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사회경제 시스템의 고도화와 복잡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충실한 법교육을 제시하고 법교육의 현대적이고 올바른 방법을 학습지도요령에 포함하도록 결정하였다.[368]

일본의 법교육이 사회 전면에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재판원법 제정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 2009년 재판원제도의 실시와 함께 법교육의 연계를 구상한 것이 일본 법교육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369]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교육 모의재판이나 법원 방청 프로그램이 증가하였다.

일본에서 사법제도 개혁과 함께 법교육이 주목받게 된 배경에는 우선 1990년대 이후 본격화한 행정개혁이나 규제 완화의 영향을 들 수 있다. 행정개혁이나 규제완화는 행정에 의한 과잉의 사전규제를 재검토하여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활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렇지만 규제 완화 등이 진행되어 갈수록 국민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자유로운 활동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 역시 예상되므로, 그러한 분쟁을 법에 근거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370]

사법제도 개혁은 이처럼 법에 근거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러한 개혁은 국민적 기반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자각하며 국민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지하는 법과 사법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해야 함이 요청되었고, 국민 스스로 사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사법에 관한 학습기회의 확충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371]

---

367) 재판원제도란 ① 사형, 무기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예컨대 살인, 강도치상 등), ② 법정합의사건으로서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예컨대 상해치사, 위험운전치사 등 사형, 무기 등의 경우는 제외)의 재판에 대하여 재판관 3 인과 국민 중에서 선임된 재판원 6 인이 협동하여 재판하는 제도이다. 단, 자백사건으로서 검찰관과 피고인 · 변호인이 이의가 없고, 또한 재판소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 1 인과 재판원 4 인의 재판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일본의 재판원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재판원이 되어 법관과 함께 사실인정을 통한 유무죄 판단과 양형까지 참여한다는 점에서 사실인정의 역할만 하는 배심제와 다른 특성이 있다[곽한영, "재판원제도의 시행에 대응하는 일본의 법교육 사례 연구", 법교육연구 제19권 제3호 (2024. 12.), 45].

368) 이종훈 · 표현덕,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90.

369) 곽한영, "재판원제도의 시행에 대응하는 일본의 법교육 사례 연구", 법교육연구 제19권 제3호 (2024. 12.), 48.

370) 김대홍,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일본 법교육의 변화", 법교육연구 제13권 제3호 (2018. 12.), 10.

371) 김대홍,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일본 법교육의 변화", 법교육연구 제13권 제3호 (2018. 12.), 10.

최근 2022년 4월 1일부터 일본의 성인연령이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이 더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372]

II. 일본에서의 법원 외 법교육 주체

1. 일본에서의 학교 법교육

일본에서는 학교 교육에서의 법교육이 정규 교과가 되지는 못하였고, 사회과 교과에서 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373]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법과 관련된 내용은 독립된 과목이 아닌 사회(社会) 교과의 6학년 과정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 헌법의 3대 원칙(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 우리 생활을 지키는 법과 정치(재판소의 역할, 남녀평등과 법, 조례), 납세의무와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 등이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서 법 관련 내용은 사회과 내의 공민(公民)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에는 대표적으로 일본 헌법의 3대 원칙, 재판의 종류, 심급제, 재판원제도, 계약의 자유와 책임, 소비자 보호, 노동법 기초 등이 있다. 중학교 교과서의 법 관련 내용에는 실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소개되며, 사생활권, 알 권리, 환경권, 저작권 등과 같은 현대적인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고등학교의 법교육은 2022년 교육과정 개편을 기점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현대 사회' 과목이 폐지되고, 법적 사고력과 주권자 교육을 강화한 '공공(公共)' 과목이 필수화되었다는 점이다. 필수과목인 '공공' 과목은 일본 민법 개정으로 고등학생이 재학 중 성인이 됨에 따라, 부모 동의 없는 계약의 효력과 책임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계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계약서 읽는 법, 다단계 피해 예방, 소비자 계약법 등을 배운다.

더 나아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형량이나 유 · 무죄를 토론하는 내용도 있다. 한편, 선택과목인 '정치와 경제'에서는 법 관련 내용을 더 심화해 학습하는데, 이에는 국제

372)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 홈페이지, https://www.shiho-shoshi.or.jp/consulting/seinen/?utm_source (2026. 6. 25. 최종 확인).

373) 이하는 일본 교과서협회 홈페이지, https://www.textbook.or.jp/index.html (2026. 6. 25. 최종 확인)를 바탕으로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학습지도요령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법, 지식재산권, 정보보안, 생명윤리와 법 등이 포함된다.

2. 일본 법무성[374]

일본 법무성은 재판원제도의 도입 이후, 법교육을 민주주의 기반 강화 정책의 하나로서 추진하고 있다. 법무성은 직접 법교육을 담당하기보다는 주로 학교 법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법무성은 청소년 법교육을 위하여 법무성 유튜브에 법교육 영상을 게시하고 있으며 법교육 전단도 배포하고 있다.

[그림 24] 법무성 유튜브 법교육 영상 예시



374) 이하는 법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j.go.jp/housei/shihouhousei/index2.html (2026. 6. 25. 최종 확인) 참조.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초 · 중 · 고) 법교육 교재와 형사재판 절차를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청각 교재의 제작 및 배포, 모의재판 교육자료, 교사용 법교육자료 및 (모범)사례 제공, 학교 법교육에 관한 설문조사 및 연구 등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법무성은 법무성 관계자 및 보호관찰관을 학교에 파견하여 현장 법교육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 법무성은 청소년이 친근하게 법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교육 마스코트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림 25] 일본 법무성 법교육 마스코트



3. 일본 변호사연합회[375)]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일본 내 법교육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이다. 도쿄, 오사카 등 지역 변호사연합회도 자체적인 학생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개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일동경변호사회(第一東京弁護士会)는 관내 학교에서 모의재판 실시를 요청받으면, 해당 학교에 변호사를 보내서 모의재판 실시를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376)]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법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행, 학교 법교육 교재 연구 및 개발, 법교육 관련 교육자와의 정보 교환 등을 위하여 2003년 4월에 시민을 위한 법교육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2007년부터 최고재판소, 법무성, 검찰청, 도쿄지방재판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매년 고등학교 모의재판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법교육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법교육 교재를 발

375) 이하는 일본 변호사연합회 홈페이지, https://www.nichibenren.or.jp/activity/human/education.html (2026. 6. 25. 최종 확인) 참조.
376) 박영규,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4), 47.

간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2022년)에 발간된 '사회와 법을 이해하는 15개의 이야기(중학생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표 68] '사회와 법을 이해하는 15개의 이야기'의 목차

1.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을까? – 계약
2. 수익 보장 제안에 주의! – 소비자 문제
3. 가짜 뉴스에 주의하자 – 정보 리터러시
4. 사고는 갑자기 일어난다 – 교통사고
5. 첫 아르바이트 – 고용과 노동 문제
6. 형체 없는 것을 지켜라 – 지식재산권
7. 반 친구가 체포됐다! – 소년사건(절도사건)
8. 재판원으로 뽑혔다!? – 형사재판과 재판원 재판
9. 상징적인 나무를 베어야 할까? – 정치 참여(주권자 교육)
10. 가정 방문을 가보니 – 아동학대
11. 설마 그가 데이트 폭력 가해자였다니… – 데이트 DV
12. 이모(아주머니)의 파트너 – 젠더 평등
13. 스포츠로 생각하는 '페어' – 공정이란 무엇인가
14. 포스터를 지켜라 –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15. 국제 이혼? 아이는 어떻게 될까? – 국제법

이 외에도 학생들을 위한 법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에는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변호사가 진행하는 방과 후 수업'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를 만나보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변호사의 업무, 변호사가 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학습한다.

4.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377]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는 공익활동의 하나로 학교 법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법교육의 주된 주제는 주권교육, 소비자교육, 노동교육이다. 일본 사법서사연합회는 법교

377) 일본 사법서사회협회 홈페이지, https://www.shiho-shoshi.or.jp/ (2026. 6. 25. 최종 확인).

육 교재도 제작하고 있는데, 이 교재들은 부모와 자녀 법률수업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는 성인연령의 하향에 따라 고등학생들이 악덕 상술이나 다단계, 부당 계약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교육에 가장 집중하고 있다. 이 연합회는 사법서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법교육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 방문 법교육 강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6] 연도별 방문 법교육 강의 학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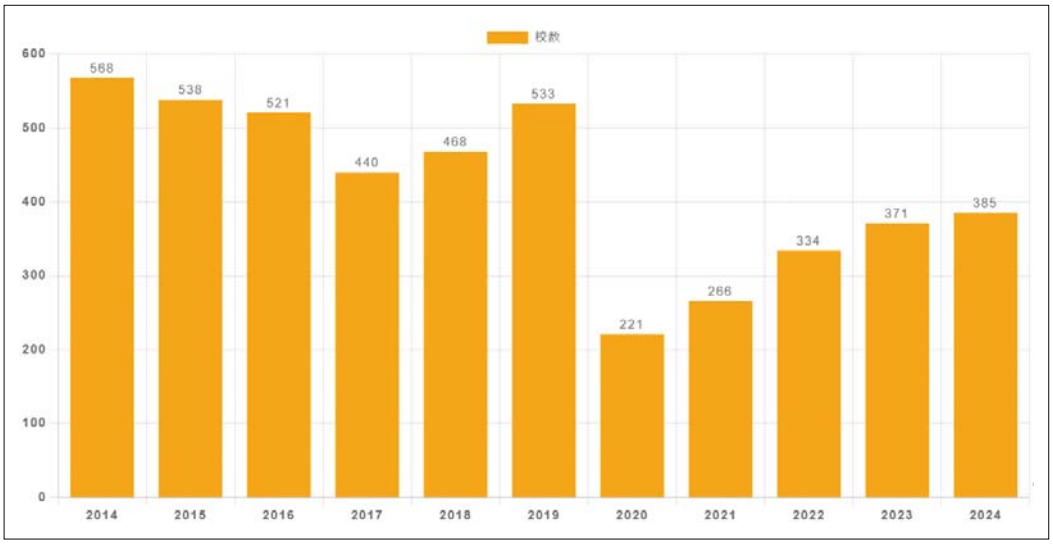

III. 일본 법원에서의 청소년 법교육

1. 일본 최고재판소

일본 최고재판소의 청소년 법교육 활동은 주로 법원견학 프로그램과 법교육 자료 배포에 집중되어 있다. 우선 최고재판소는 학생들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사회과 수업이나 수학여행을 계기로 방문하는 견학 프로그램과 그 외의 일반 견학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다.

앞의 견학 프로그램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약 45분 정도 진행되며, 약 1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뒤의 견학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에 한정하여 진행되는데, 단체 신청의 경우에는 최대 50명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378] 한편, 최고재판소 홈페이지에서는 견학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가상 투어 영상과 견학 후 활용할 수 있는 '퀴즈 최고재판소'라는 퀴즈 영상 및 재판소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7] 유튜브 일본 최고재판소 가상 투어 영상[379]



앞에서의 견학 프로그램 외에도 매년 여름방학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방학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견학 외에 판사 직무소개 및 판사들과의 질의응답, 법복 착용 기념사진 등이 포함된다.[380]

---

378) 일본 최고재판소 홈페이지, https://www.courts.go.jp/saikosai/kengaku/chousyakenngaku/index.html (2026. 6. 25. 최종 확인).
379) 일본 최고재판소 홈페이지, https://www.courts.go.jp/saikosai/kengaku/kengakudouga/index.html (2026. 6. 25. 최종 확인).
380) 일본 최고재판소 홈페이지, https://www.courts.go.jp/saikosai/about/saikousaikouhou/R7_natu/index.html#:~:text, (2026. 6. 25. 최종 확인).

최고재판소는 어린이 전용 재판원 교육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는 재판원제도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퀴즈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381] 참고로 최고재판소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따로 청소년 법교육과 관련한 배너는 없지만, 청소년 법교육과 관련한 유용한 영상들도 게시되어있다.[382]

2. 일본 하급재판소

일본 하급재판소의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은 판사의 학교방문 강의, 모의재판과 모의조정, 법원견학, 2009년부터 시행된 재판원제도 교육 및 법교육자료 제공으로 정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지방재판소인 동경지방재판소의 주요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에 관하여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383]

예를 들어, 동경지방재판소는 동경고등재판소와 함께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원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대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법원견학에서는 법원과 재판에 관한 설명, 형사사건 모의재판 및 재판원제도에 관한 체험이 진행된다.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에는 '민사재판 주니어 투어'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심리전 예비 설명, 민사재판 참관, 판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이 포함된다. 형사재판 방청 프로그램도 있으며, 모의재판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또한 동경지방재판소 민사부 판사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강의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법원의 역할, 민사재판의 구조, 판사의 일과 삶 등에 관한 강의가 진행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재판원제도에 관한 홍보영상과 이 제도에 관한 챗봇(Chatbot)도 운영하고 있다.

381) 일본 최고재판소 홈페이지, https://www.courts.go.jp/saibanin/introduction/kids/index.html (2026. 6. 25. 최종 확인).
382) 일본 최고재판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ourtsjapan/videos (2026. 6. 25. 최종 확인).
383) 이하는 동경지방재판소 홈페이지, https://www.courts.go.jp/tokyo/kengaku/index.html (2026. 6. 25. 최종 확인).

[그림 28] 동경지방재판소의 재판원제도에 관한 홍보영상



오사카지방재판소의 재판원제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법원이 학교를 직접 찾아가거나 학생들을 법원으로 초청하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고등학교 학생 약 15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는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재판원제도 소개, 재판원제도의 최근 현황, 판사와의 질의응답, 법정견학 등이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현직 판사와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으며, 일본의 재판원제도는 일반 시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인기가 높은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또한 헌법 주간과 법의 날 주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384]

384) 오사카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www.courts.go.jp/osaka/kengaku/mottokuwasiku_saibaninseido/index.html (2026. 6. 25. 최종 확인).

제5절 소결

미국의 법교육은 1950년대 이전까지는 헌법교육이 주된 법교육의 내용이었으며, 헌법적 원리와 기본권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1950년대 후반부터는 법적 원리와 일상 문제를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법교육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학생들에게 법적 원리의 적용을 실제 상황에서 이해하고 실습하는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1994년 이후에는 법교육을 '시민교육(civic education)'의 하나로 추진하면서, 시민의 책임과 권리를 가르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시민의 의무와 책임에서 개인의 표현과 참여로 교육의 초점이 이동하였다.

미국 법교육은 다양한 법교육 주체와 협력을 통하여 발전하였는데, 이 주체들은 법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실시하고, 교사들에게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학교 법교육을 지원한다. 미국의 법교육은 다양한 교재와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법적 지식과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Street Law 교재는 학생들에게 법과 관련된 일상적인 문제들을 이해시키고, 실용적인 법적 지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교재를 통하여 다양한 법적 문제를 다루며 참여형 법교육을 지향한다.

미국의 연방법원과 각 주 법원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은 법과 사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생들이 실제 법원 시스템과 절차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과 연방법원들은 청소년들을 위해 법원견학, 법교육 자료 제공, 모의재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연방대법원은 방문객들에게 대법원의 역사와 기능을 알리는 전시관을 운영하며, 법정 강의와 동영상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법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연방법원행정처는 법교육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방법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외에도 연방법원 판사의 찾아가는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프로그램 담당자의 메일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립 주 법원센터는 주 법원들의 청소년 법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각 주 법원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원견학, 학교방문 강의, 법원체험 프로그램, 법교육 자료의 제공, 모의재판 대회와 에세이 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법원과 사법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 그리고 법원의 법교육 프로그램은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적 이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국에서의 청소년 법교육은 시민교육의 하나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법과 정치, 사회문제를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시민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국에서 법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법교육 주체에는 'Young Citizens'과 영국 법정변호사협회가 있다. 이들은 시민교육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법적 지식과 체험적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영국 법원은 청소년들에게 법과 사법체계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대법원은 법원견학 프로그램, 학생토론의 날, '정의를 묻는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국립사법박물관은 법과 사법체계에 대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활동을 제공하며,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치안판사는 학교방문 법교육 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법교육은 정치교육의 하나로 발전해 왔는데, 이를 통하여 독일은 법이 단순히 규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은 주마다 상이한 법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 법교육의 내용을 달리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학교 외 법교육 주체로는 법원 외에도 대표적으로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주 법무부, 독일 변호사협회가 있는데, 주 법무부는 특히 법원을 포함한 법교육 주체들의 청소년 법교육을 기획 · 홍보하거나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의 핵심은 법원견학을 통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와 학교방문을 통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에 있다. 그리고 독일 청소년 법교육은 독일 판사연합 소속 판사들이 자율적으로 법교육을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법교육은 미국, 영국, 독일보다는 늦게 시작되었으나 사법제도 개혁과 함께 법무성 법교육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 법무성은 법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기반을 강화하려고 했으며, 특히 2004년 재판원법 제정 이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일본 청소년 법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일본 변호사연합회와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의 자체적인 학교 법교육 프로그램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고, 일본의 법교육은 법원견학, 모의재판, 학교방문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

지 다양한 대상에 맞춰 진행된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청소년 법교육 활동은 주로 가상 투어를 포함한 법원견학 프로그램과 법교육 자료배포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 하급재판소의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은 판사의 학교방문 강의, 모의재판과 모의조정, 법원견학, 2009년부터 시행된 재판원제도 교육 및 법교육자료 제공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주요 외국 법원들은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에게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법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법원견학과 모의재판 등을 포함하는 체험형 법교육이며, 법교육 강의도 학교 방문형 프로그램이 주된 방식이다.

물론 학교 법교육 강의도 학생들의 일상생활 사례와 관련된 필수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으며, 학교 법교육에 필요한 (교사용) 법교육 (동영상) 자료들도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 법원들에서는 법조 유관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주요 외국 법원들의 법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법에 대한 기초 지식뿐만 아니라, 법원과 사법제도에 관한 이해를 위한 사항들을 교육하는 것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 인턴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판사와의 대화 프로그램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요 외국 법원들은 학교 법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부분의 주요 외국 법원은 홈페이지에 개별적인 배너를 통하여 법교육 소식과 법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및 담당자의 연락처를 게시하고 있다.

제5장

법원 외 주요 법교육 주체의 청소년 법교육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I. 법무부

법교육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는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과 정책 방향 설정, 법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한 활동 지원 및 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 ·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지원 등을 관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법교육 주체로서 학교 법교육을 제외한 청소년 법교육에 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로 법교육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법무부를 법교육 운영 및 추진 주체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와 관련된 의견에는 '행정부 산하 정부 부처로서 법무부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집행할 책임이 있는 기관임', '국회나 헌법재판소, 대법원도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있으나, 추상적 접근을 넘어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교육부와 협력 속에서 학교 법교육을 주도할 수 있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왔던 지난 과정을 감안할 때, 법무부가 가장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기 어려움', '법교육지원법 주무부서로서 법교육 지원에 관한 가장 확실한 기반을 갖추고 있음' 등이 있었다.[385]

법무부는 법교육지원법 주무부처로서 이하에서는 법무부가 하는 다양한 방식의 법교육 활동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법교육 통합 플랫폼 이로운법

이로운법(www.lawnorder.go.kr)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교육 통합 플랫폼으로, 국민 특히 청소년과 시민들이 법과 제도, 권리 · 의무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법교육을 학교

385)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변화에 대응한 법교육 혁신 방안 연구, 법무부 (2020), 44-45.

와 관련 법교육 기관의 법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로운법이 제공하는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유형은 크게 법교육 출장강연, 학생자치법교육, 온라인 법교육 콘텐츠를 통한 법교육, 법교육 관련 자료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교육 출장강연은 이로운법을 통하여 학교나 관련 기관 등이 신청하면 법교육 전문강사가 대면 강의방식 등을 통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대상 프로그램에는 현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자치 법교육, 학교밖 · 가정밖 법교육, 도박예방 법교육, 마약예방 법교육, 디지털성범죄 예방 법교육, 모두가 행복한 교실 등이 있다.

법교육 출장강연 프로그램의 내용 대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예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림 29] 법교육 출장강연 프로그램의 예[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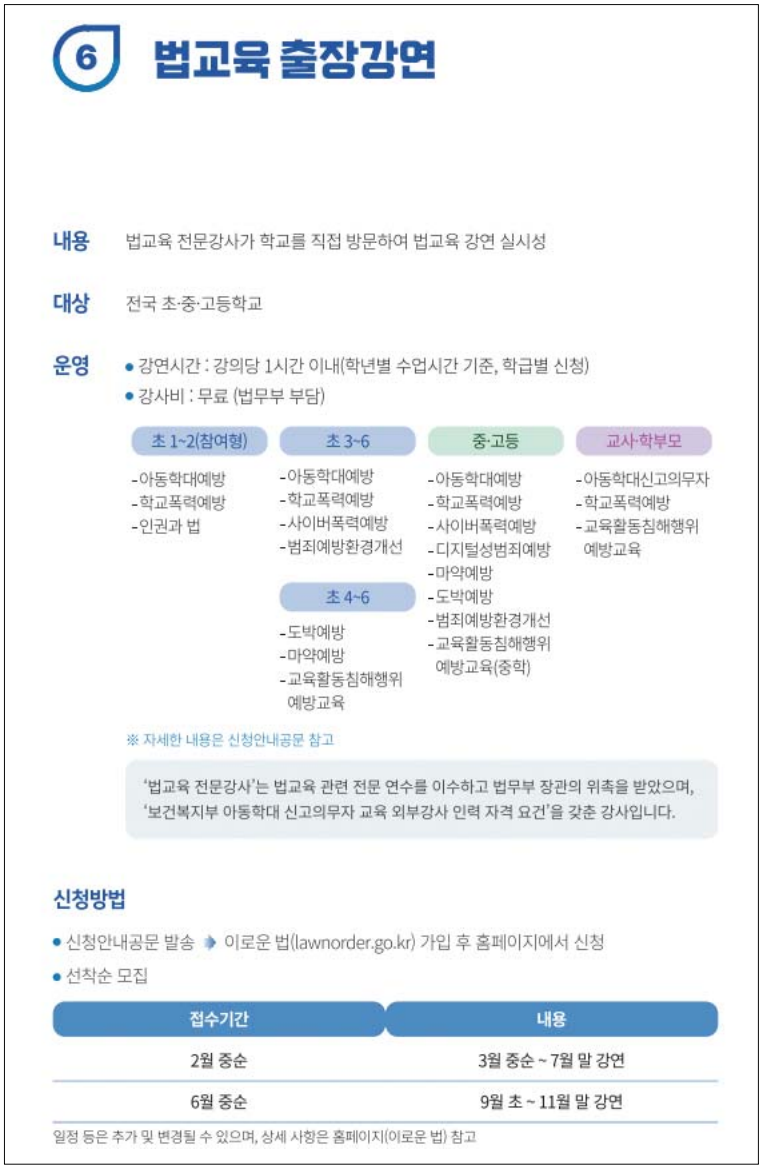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법교육은 영상과 게임을 통하여 다양한 법 영역에 대한 법교육을 하는 방식이다. 이로운법 홈페이지에는 약 330개의 법교육 영상자료가 있는데, 이 중 약 150개가 청소년 법교육용으로 제작되었다. 이 영상들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

386) 법무부 보호정책과, 2024 학교 법교육 프로그램 안내 (2024), 9.

고 이해할 수 있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제작되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청소년 대상 온라인 콘텐츠 법교육 영상자료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387]

[표 69] 청소년 대상 온라인 콘텐츠 법교육 영상자료

주제	내용 요약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 대응 방법 등
사이버 스토킹 가해자의 심리	가해자의 심리적 동기, 왜 범행에 이르는지 설명
숫자로 알아보는 도박 문제	통계 자료로 도박의 위험성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설명
다음 판엔 딴다? 도박 중독자의 잘못된 믿음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중독자의 인지 왜곡 분석
노벨도박예방상 – 예감, 도박중독의 모든 것	도박 중독의 전반적 실태와 사회적 폐해 설명
사기 QR코드(큐싱) 예방 영상	스마트폰 · QR코드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 수법 경고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전자기기 과의존)	스마트폰 · 게임 과의존 문제와 자기통제 필요성
세상을 변화시킨 재판 이야기(미란다 원칙)	경찰 조사 시 권리 고지(진술거부권 · 변호인 조력권)의 중요성 설명
마약 예방 교육 영상	마약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 청소년이 유혹을 피하는 방법

온라인 법교육 콘텐츠에서는 한국어 콘텐츠 외에도, 다문화 배경 청소년이나 외국인 청소년을 위한 다국어(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온라인 콘텐츠 법교육 영상도 게시하고 있다(약 140개). 다국어 온라인 콘텐츠 법교육 영상은 다문화 배경 청소년 등이 언어 장벽 없이 법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387) 법무부 이로운법 홈페이지, https://www.lawnorder.go.kr/uce/learning/onlineList.do?menuIdx=55&bbsIdx=&subIdx=56 (2026. 6. 25. 최종 확인).

[그림 30] 다국어 온라인 콘텐츠 법교육 영상[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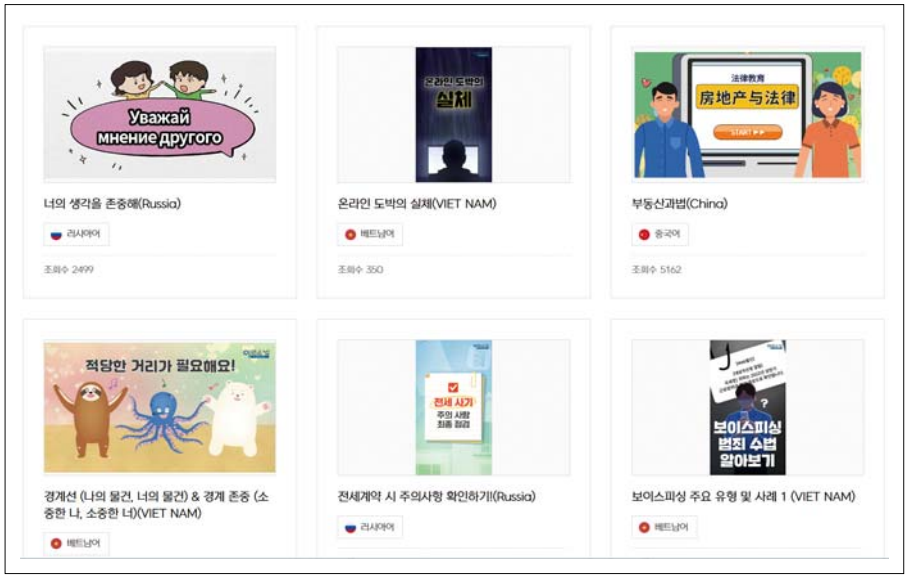

이로운법을 통한 법교육 자료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실 메뉴에서 법교육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청소년 법교육에 한정된 관련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70] 이로운법 청소년 법교육 관련 자료

구분	내용
강의안	중 · 고등학교 법교육 수업안, 주제별 PPT 등
교사자료	수업 지도안, 활동지, 토론 가이드라인
교재	청소년용 교재
대본	모의재판 시나리오, 역할극 대본

2. 법무부 솔로몬로파크

솔로몬로파크(Solomon Lawpark)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공원으로

388) 법무부 이로운법 홈페이지, https://www.lawnorder.go.kr/uce/learning/multiList.do?menuIdx=55&subIdx=57 (2026. 6. 25. 최종 확인).

2008년 1월 29일에 설치된 대전 솔로몬로파크를 시작으로 2016년 7월 8일에는 부산, 2023년 3월 1일에는 광주에도 설치되었다.

[그림 31] 솔로몬로파크 현황[389]

기관명	대전솔로몬로파크	부산솔로몬로파크	광주솔로몬로파크
			
위치	대전 유성구 원촌동	부산 북구 구포동	광주 북구 문흥동
개관	2008. 1. (2019. 12. 리모델링 완료)	2016. 7. (2023. 12. 리모델링 완료)	2023. 3. (2023. 1.~2. 시범운영)
규모	· 부지 84,284㎡(25,540평) · 건물 5,433㎡(1,646평)	· 부지 14,925㎡(4,527평) · 건물 4,642㎡(1,406평)	· 부지 18,988㎡(5,744평) · 건물 7,557㎡(2,290평)
시설	· 법체험관(2층) · 법연수관(2층)	· 법체험관(3층)	· 법체험관(3층) · 법연수관(3층)

솔로몬로파크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 그리고 일반 국민도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법교육 강의, 다양한 법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이외에도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도 하고 있다.

참고로 광주 솔로몬로파크에는 지난해 9만 6천 580명이 방문해 법무부 목표치인 5만 5천 명을 초과 달성했다고 한다. 방문자 유형별로는 일반 관람 7만 4천 933명, 기획 법체험 1만 6천 608명, 법 진로체험 4천 121명, 청소년 법연수 543명, 성인 법연수 375명 등으로 나타났다.[390]

솔로몬로파크의 청소년 법교육 주요 방식은 크게 체험 중심의 법교육과 청소년

389) 김갑석, "솔로몬로파크에서의 법교육 현황과 과제", 법교육연구 제19권 제3호 (2024. 12.), 70.
390) 연합뉴스(2025. 1. 7. 기사), "[광주소식] 솔로몬로파크 2024년 방문객 9만 6천여 명",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7128000054?input=1195m (2026. 6. 25. 최종 확인).

법연수로 나눌 수 있다. 각 지역별 솔로몬로파크 법체험관에서는 체험 중심의 법교육이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 부산 솔로몬로파크 법체험관의 단체체험코스는 헌법배움터, 선거체험관, 모의국회, 모의 국무회의, 과학수사, 모의 법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캐릭터 제작, 폭력 예방을 위한 법 무대극 시나리오 작성 및 공연, 머그컵 만들기(법 관련 상징물 그리기), 법 퀴즈쇼, 역할극 등의 프로그램도 체험 중심의 법교육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 특히 체험 중심의 법교육이 더 많이 진행되고 있다.[391]

청소년 법연수도 개별 솔로몬로파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전 솔로몬로파크의 경우에는 청소년 개인 법연수와 청소년 단체 법연수로 구분하면서, 전자의 경우에는 어린이 법나들이 캠프,[392] 어린이 법탐험 캠프,[393] 중학교 법사랑 캠프,[394] 고교생 법치세상 캠프, 온라인 어린이 법진로 체험,[395] 메타버스 어린이 캠프[396]가 있다. 그리고 후자에는 어린이 법탐험 미니 캠프,[397] 중학생 법진로체험 캠프,[398] 온라인 어린이 법진로 체험(특강)[399]이 있다.[400]

참고로 부산 솔로몬로파크의 청소년 법연수는 초등학생 법캠프, 중학생 법진로 캠프, 고교생 법치세상 캠프, 법고을 학당, 찾아가는 법교육, 특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광주 솔로몬로파크의 청소년 법연수는 초등학생 법동기 강화, 중학생 일상생활과 법, 고등학생 법으로 만나는 인문학, 법진로체험으로 구성된다.[401]

대전 솔로몬로파크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법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초등학교는 인성덕목을 중심으로 한 활동형 법교육(민주시민, 예의, 정직, 책임, 소비자 권리, 존중, 배려, 소통, 저작권, 협동)을 진행하였고, 중 · 고등학교는 자립성장을 위한

391) 김갑석, "솔로몬로파크에서의 법교육 현황과 과제", 법교육연구 제19권 제3호 (2024. 12.), 75.
392) 동일 연령을 포함한 초등학생 3-4학년과 부모 중 1명이 교육대상이고, 연 2회 실시(여름방학 중 1회, 겨울방학 중 1회)된다.
393) 초등학교 5~6학년과 동일연령 아동이 교육대상이 되고, 연 4회 실시(여름방학 중 1회, 겨울방학 중 1회, 1학기 중 1회, 2학기 중 1회)된다.
394) 중학교 1~3학년이 교육대상이 되고, 연 4회 실시(여름방학 중 1회, 겨울방학 중 1회, 1학기 중 1회, 2학기 중 1회)된다.
395) 고등학생 1~3학년이 교육대상이고, 연 2회 실시(여름방학 중 1회, 겨울방학 중 1회)된다.
396) 게더타운(Gather Town) 프로그램을 활용한 법교육으로 초등학교 5-6학년이 교육대상이며, 연 2회 실시(여름방학 중 1회, 겨울방학 중 1회)된다.
397) 초등학교 5학년 중 1개 학급이 교육대상이고, 연 15회 실시된다.
398) 중학생 1~3학년이 교육대상이며, 연 12회 실시된다.
399) 초등학생 5학년이 교육대상이며, 연 10회 실시된다.
400) 법무부 대전 솔로몬로파크 홈페이지, https://solomon.lawnorder.go.kr/dj/front/sdytrn/rsvt_info.do?progrmCd=LAWPR05&ms=11074&mc=training (2026. 6. 25. 최종 확인).
401) 법무부 광주 솔로몬로파크 홈페이지, https://solomon.lawnorder.go.kr/gj/front/sdytrn/rsvt_info.do?ms=11087&mc=training&progrmCd=LAWPR01 (2026. 6. 25. 최종 확인).

체험형 법교육(진로탐색, 경제 · 금융 · 부동산 관련 법교육 및 법보드게임 만들기)을 진행하였다. 부산 솔로몬로파크도 소외계층 대상 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402]

마지막으로 각 지역의 솔로몬로파크는 법의 날, 제헌절 등을 기념하여 법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많은 시민이 가족들과 함께 법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솔로몬로파크의 특색 있는 법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진다.

솔로몬로파크는 온라인 법교육을 통해 청소년 법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에는 '해돌이 방송국'의 시설 · 장비를 확장하여 메타버스 및 디지털 교육컨텐츠를 활용한 법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실시간 온라인 법교육 및 온라인 법페스티벌을 실시하였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온라인 진로체험 특강, 어린이 · 중학생 온라인 법캠프, 메타버스 법사랑 캠프 등이 있다.[403]

부산 솔로몬로파크의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하여 법교육 영상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그림 32] 부산 솔로몬로파크 유튜브



최근 2025년 7월에는 솔로몬로파크 통합 인스타그램(@solomon_lawpark_official)을 오픈하였는데, 이를 통해 법체험 프로그램과 행사 소식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주요 콘텐츠에는 법 체험관 운영, 모의 법정 · 모의 국회 등 체험 프로그램, 법의 날 기념행사, 가족 참여 이벤트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사진 및 안내가 포함되어 있다.

402) 김갑석, "솔로몬로파크에서의 법교육 현황과 과제", 법교육연구 제19권 제3호 (2024. 12.), 76.
403) 김갑석, "솔로몬로파크에서의 법교육 현황과 과제", 법교육연구 제19권 제3호 (2024. 12.), 78.

3. 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404]는 위기 청소년 대상 대안교육, 법원 상담조사, 검사 결정 전 조사, 심리검사, 청소년 비행진단, 청소년 회복캠프, 보호자 교육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 청소년 전문교육기관이다.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안산,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을 비롯해 현재 전국에 총 18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에서 예시한 프로그램 외에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405]

예를 들어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작년에 이어 최근 2025년 6월 12일에도 대구 · 경북 소재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형 모의 법정과 청소년 비행사례 교육으로 진행되었다.[406] 그리고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는 2025년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법원에서 의뢰한 절도, 폭력 등 비행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회복적 사법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407]

[그림 33] 서울북부 청소년꿈키움센터 모의 법정[408]



404) '청소년비행예방센터'라고 하기도 한다.
405)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s://www.cppb.go.kr/cppb/981/subview.do (2026. 6. 25. 최종 확인).
406) 경상매일신문(2025. 6. 12. 기사),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법체험 프로그램' 운영", https://www.ksmnews.co.kr/news/view.php?idx=545456 (2026. 6. 25. 최종 확인).
407) 로이슈(2025. 9. 11. 기사),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회복적사법 전문교육과정 운영",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9111015372879a8c8bf58f_12 (2026. 6. 25. 최종 확인).
408) 법무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jjustice/222911266280 (2026. 6. 25. 최종 확인).

4. 검찰청

법무부 소속 전국의 검찰청들은 주로 견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검찰청의 경우, 검찰역사관과 검찰체험관을 중심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견학 진행순서는 검찰역사관(30분), 조형물 관람(10분), 검찰체험관(80분)으로 진행된다. 검찰체험관 프로그램은 법복입어보기, 검사선서, 검찰 수사체험, 검사실과 영상녹화조사실 체험, 구형체험 등으로 구성된다.[409] 그리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의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하여 관내 초등학생(5 ·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견학 일정은 검찰홍보물 시청, 검사와의 대화, 수사장비 시연 및 체험, 청사견학,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소요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다.[410][411]

더 나아가 법의 날을 계기로 법체험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2025년 제62회 법의 날을 맞아 이틀에 걸쳐 2개 초등학교 6학년생을 초청해 '법 체험 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검사와의 질의응답 시간, 검사의 검찰 업무 소개, 검찰 홍보영상 시청, 검찰 수사관과의 대화를 통한 검찰 일반직 업무 이해, 가스총 및 수갑 등 수사 장비 체험 등을 진행하였다.[412]

5. 법무부 법교육 최근 동향

가. 법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법교육의 강화[413]

법교육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청소년 법교육과 관련하여 '어디라도 찾아가는

409)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s://www.spo.go.kr/site/spo/01/10103010000002018100810.jsp (2026. 6. 25. 최종 확인).

410)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https://www.spo.go.kr/site/mokpo/01/10103010000002018102501.jsp (2026. 6. 25. 최종 확인).

411) 이외에도 매년 대검찰청은 대법원과 함께 서초구청이 주최하는 '아 · 태 사법정의 허브 사법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사법정의 라운지와 향나무 상징공간 방문, 검찰역사관 관람, 청사 내 조형물 관람, 검찰체험관(영상녹화조사실, 검사실, 과학수사)으로 구성된다[서초구청 홈페이지, 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bbs/View.do?pageIndex=1&pageUnit=20&cbIdx=57&searchMedia=&bcIdx=408271&searchCondition=subCont&searchKeyword= (2026. 6. 25. 최종 확인)].

412) 대경일보(2025. 4. 28. 기사), "나도 오늘은 검사 '법의 날 기념' 경주 법 체험 교실",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94208 (2026. 6. 25. 최종 확인).

413) 법무부 보도자료(2025. 8. 28.), 법무부,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으로 섬마을 청소년 1,000명을 만나다 – 도서벽지 학생 맞춤형 서비스로, 법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 – 참조.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서벽지 학생을 상대로 한, 맞춤형 법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평등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8월 25일부터 5일간 전남 완도, 신안 등 도서벽지 초중고 학생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 71] 도서벽지 지역 내 법교육 현황

연번	일자	학교명	대상	횟수(건)	인원(명)	지역
1	8. 25. (월)	하의초	저학년	2	25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
2		하의중	1~3학년	1	20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
3		하의고	1~3학년	1	16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
4	8. 26. (화)	황산초	4~6학년	1	25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5		마산초	전교생	1	16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6	8. 27. (수)	완도여중	전교생	10	261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7	8. 28. (목)	북평초	4~6학년	1	20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8		금일초	4~6학년	2	29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9		보길초	4~5학년	2	30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10		소안중	3학년	1	35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11	8. 29. (금)	어란진초	5학년	1	5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12		송지초	4~6학년	3	63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13		송지고	1, 3학년	2	76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14		완도고	전교생	1	368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합계				29	989	

법교육 전문강사의 도서벽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법교육의 주제는 마약 예방, 학교폭력 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주제들이었고,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이로운법 홈페이지에 수록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토론과 발표, 퀴즈 등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역별 법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나. 유튜브 활동의 강화를 통한 청소년 법교육의 활성화

유튜브를 통한 청소년 법교육은 접근성과 확산성, 학습효과와 이해도, 비용효율성과 지속성, 참여와 소통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는 2020년 5월 6일에 유튜브 채널인 '범죄예방 365'를 개설하여 이를 활용한 청소년 법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 유튜브에는 현재 481개의 동영상이 있고, 이 중 청소년 법교육 관련 영상은 약 130개이다. 참고로 이 유튜브의 구독자 수는 약 4만 명이고, 조회 수는 약 900만 회이다.[414]

법무부 범죄예방 365는 '청소년 법교육', '배리어프리 법교육', '빠르게 알아보는 범죄예방', '연속기획(Short)' 등 다양한 법교육 시리즈를 제공하면서, '헌법시간탐험대', '위험한 선택, 마약 떡볶이' 등 청소년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주제와 표현 방식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법교육 테마파크인 '솔로몬로파크'와 같은 오프라인 체험형 콘텐츠와 연계한 홍보영상도 포함되어, 청소년 법교육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접점을 마련하고 있다. 위에서 예시한 유튜브 활용을 통한 청소년 법교육의 장점으로 인하여 법무부는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청소년 법교육을 더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4] 법무부 유튜브 범죄예방 365 청소년 법교육 재생목록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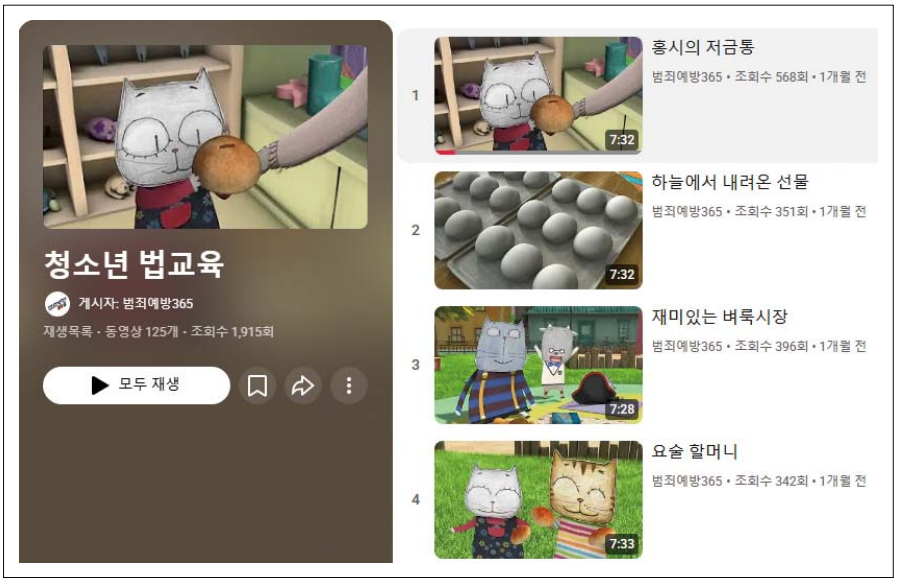

414) 유튜브 범죄예방 365 홈페이지, https://www.youtube.com/@cppbmoj/playlists (2026. 6. 25. 최종 확인).

II.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2011년 6월 3일 개소한 대한법률구조공단[415] 법문화교육센터는 다문화가족 법교육을 시작으로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농업인, 청소년 등을 위한 맞춤형 ·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법문화교육 전문 기관이다.[416]

법문화교육센터는 법문화교육팀, 교육연수팀, 교육운영지원팀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법문화교육팀이 법교육 강연, 교육계획 수립,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교육생 모집 및 안내 교육일정 관리, 교육실적 관리 · 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 강사 섭외 · 배정 및 관리, 법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417]

법문화교육센터에서는 법교육 강사들이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자립준비청년, 중장년층 및 노인, 귀농 · 귀촌인, 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하고 있다.[418] 참고로 법교육 강사들은 법률구조공단의 직원 중 전문강사교육을 받은 자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업무를 통하여 쌓아온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법교육강의, 교안제작,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고 있다.

법문화교육센터 교육동에는 법문화체험관(법률구조관, 법치주의관, 준법생활관)과 강의동(소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및 숙소동이 있어, 찾아가는 법교육 외에도 청소년의 방문(체험)학습과 입소교육도 가능하다.[419] 그리고 법문화교육센터는 청소년 법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고 유익한 콘텐츠(교육콘텐츠 동영상, 메타버스 게임, 카드뉴스 등)를 개발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시적인 법교육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420]

법문화교육센터의 청소년 법교육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총 107회의 청소년 법교육을 통하여, 총 2,440명의 청소년이 법교육에 참여하였다.

---

415)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의 산하기관이기는 하나, 법률구조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정관을 통하여 공단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점에서 일정 부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법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교육 활동을 법무부의 법교육 활동과 분리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416)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edu.klac.or.kr/edu/ko/greetings-contents (2026. 6. 25. 최종 확인).

417)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edu.klac.or.kr/edu/ko/business-contents (2026. 6. 25. 최종 확인).

418)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edu.klac.or.kr/edu/ko/greetings-contents (2026. 6. 25. 최종 확인).

419)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edu.klac.or.kr/edu/ko/center-information-contents (2026. 6. 25. 최종 확인).

420)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edu.klac.or.kr/edu/ko/game-notice-boards (2026. 6. 25. 최종 확인).

그리고 2023년에는 총 142회의 청소년 법교육을 통하여 총 3,392명의 청소년이 법교육에 참여하였다.

[그림 35] 법문화교육센터의 법(문화)교육 현황[421]

연도	대상자	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기타 (장애인, 노인, 재소자 등)	학교폭력예방 출장강연	농협이동상담실 출장강연
2020	횟수	405	44	3	40	5	242	71
	명	13,788	914	51	1,382	324	6,536	4,581
2021	횟수	642	58	4	104	20	362	94
	명	18,209	1,182	48	2,385	1,006	9,502	4,086
2022	횟수	803	34	7	91	55	492	124
	명	23,691	560	71	3,378	1,184	12,487	6,011
2023	횟수	643	26	8	142	102	255	110
	명	23,602	369	85	3,392	3,042	9,178	7,536
2024	횟수	913	28	5	107	89	581	103
	명	27,138	429	48	2,440	2,793	13,501	7,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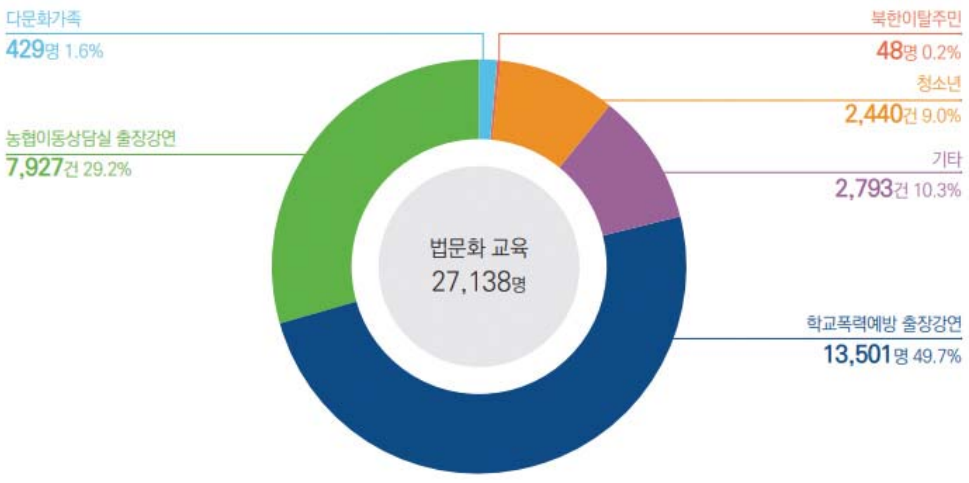

법문화교육센터의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421) 대한법률구조공단, 2025 법률구조연감 (2025), 190.

[그림 36] 법문화교육센터의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422)]



법문화교육센터는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림 37] 법문화교육센터의 진로체험 프로그램[423)]



422)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edu.klac.or.kr/edu/ko/educational-program-contents?educontents=2 (2026. 6. 25. 최종 확인).
423)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edu.klac.or.kr/edu/ko/educational-program-contents?educontents=1 (2026. 6. 25. 최종 확인).

III. 법제처

법제처는 매년 어린이 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 법제관(중 ·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의 경우에는 어린이 법제관 1,300명, 청소년 법제관 300여 명을 선정하였으며, 어린이 법제관과 청소년 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헌법, 입법과정 등 법제 교육은 물론 토론마당, 모의 법안(규칙) 제정 · 개정,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424]

법제처는 어린이 법제관의 교육과 활동 등을 위하여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425]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법제교육' 배너에서는 온라인 법제교육을 통한 어린이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제교육 과정은 '법이란 무엇일까', '어린이가 알아야 할 우리나라의 법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가 직접 만드는 법(실습), '재미있고 다양한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어린이 법제관 광장' 배너는 '어린이 법제관 온라인 법안제출', '생활 속 법령 소개', '질문 있어요', '준법일기', '입법체험 활동 소감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426]

424) 법률저널(2025. 3. 6. 기사), "법령과 친구처럼…법제처 정책 서포터즈 출범 및 법제관 모집",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9541 (2026. 6. 25. 최종 확인).
425) 법제처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index.es?sid=a2 (2026. 6. 25. 최종 확인).
426) 법제처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board.es?mid=a20301000000&bid=0015 (2026. 6. 25. 최종 확인).

[표 72] 어린이 · 청소년 법제관 모집 개요[427]

구분	어린이법제관	청소년법제관
모집 대상	4~6학년 초등학생	중 ·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모집 규모	1,300명	20개 학교 · 센터(300여 명) 내외
모집 시기	2025년 3월 4일 ~ 3월 31일	
선정 시기	4월 중	
활동 기간	2025년 5월 ~ 2026년 2월	2025년 5월 ~ 2025년 12월
신청 방법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http://moleg.go.kr/child)에서 개인이 직접 신청	지도 교사가 학교(센터)명 및 지도 교사 연락처를 적어, 전자우편(jungbi@korea.kr)으로 신청 (학교 및 센터 단위의 활동이 어려운 청소년은 개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
선정 방법	신규 신청을 우선하되 지역 균형을 고려한 선착순 선정	
선정자 발표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별 통지

Ⅳ.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견학 프로그램,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청소년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견학 프로그램은 1코스(초중고 학생 대상)와 2코스(대학생 · 일반인 · 외국인 대상)로 구분되는데, 1코스 소요시간은 약 80분이며 영상 시청과 헌법재판소 소개, 심판정 소개 및 촬영, 백송 및 헌법수호자상 관람, 도서관 방문 및 (해설사를 통한) 전시관 관람으로 구성된다.[428]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는 '살펴봐요 대한민국 헌법', '알아봐요 헌법재판소', '재미있게 배워요 헌법과 헌법재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살펴봐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 기본권 등에 관한 사항을, '알아봐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

427) 법제처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egin/223783563913 (2026. 6. 25. 최종 확인).
428)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s://www.ccourt.go.kr/site/kor/04/10407020000002020100509.jsp (2026. 6. 25. 최종 확인).

판소의 탄생과 기능 및 조직과 헌법재판소 둘러보기, 세계 헌법재판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재미있게 배워요 헌법과 헌법재판'에서는 동영상, 만화, 동화, 학습, 게임, 헌법송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헌법과 기본권 및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그림 38]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429]



더 나아가 어린이 홈페이지에서는 헌법과 기본권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챗봇을 활용한 헌재톡, 유튜브 채널, 블로그, 페이스북, X(구 트위터)를 활용하고 있다.

429)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https://kids.ccourt.go.kr/site/kids/main.do (2026. 6. 25. 최종 확인).

[그림 39] 헌법재판소 헌재톡[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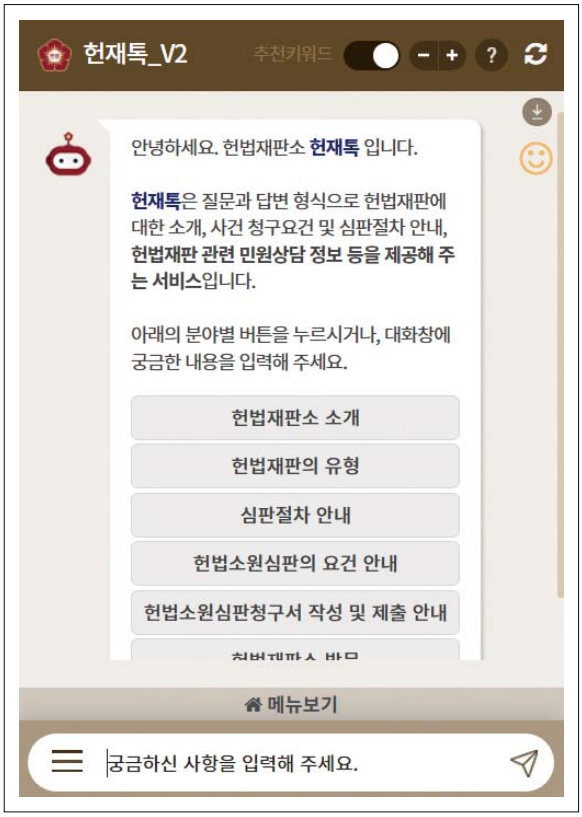

헌법재판소 유튜브 채널의 현재 구독자는 약 7천 명이고 동영상 913개가 게시되어 있는데, 이 중 주요 결정 오디오북, 무빙툰으로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 영상으로 보는 헌법재판이야기, 헌법재판소 30초 영화제, 영상으로 보는 나의 기본권 등이 청소년이 손쉽게 법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동영상으로 판단된다.

430)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https://talk.ccourt.go.kr/ (2026. 6. 25. 최종 확인).

[그림 40] 헌법재판소 유튜브 재생목록[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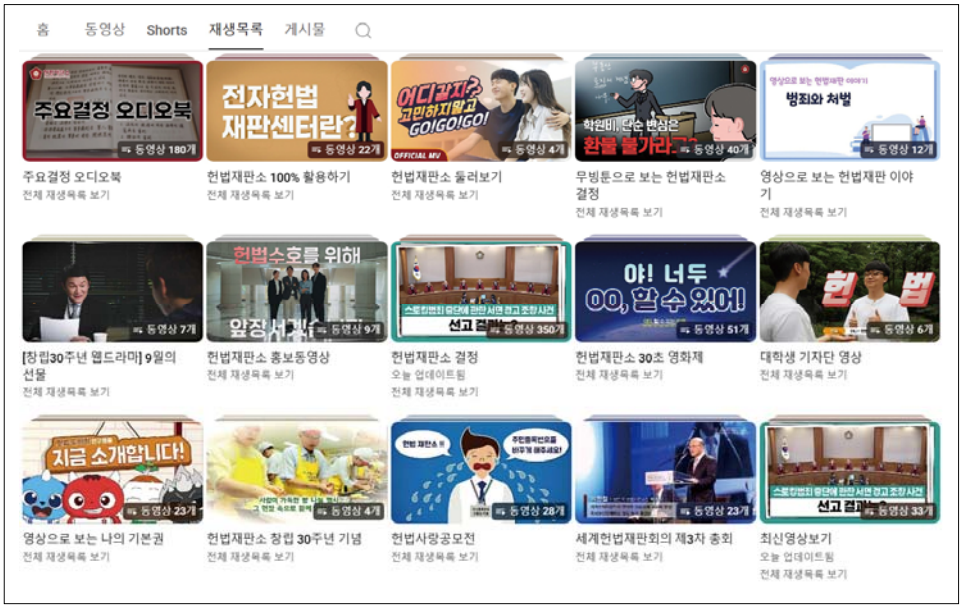

2.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2011년 1월 1일 개원하였다. 참고로 헌법재판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헌법과 헌법재판 관련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교육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에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하여 법률실무가와 예비법조인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초중고 교사, 청소년 등 일반 대중에게 보편적인 법교육을 제공하고 있다.[432]

우선 헌법재판연구원의 법교육과 관련한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 공무원(파견받은 공무원 포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법학전문대학원생,

431) 헌법재판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courtkorea/playlists (2026. 6. 25. 최종 확인).
432)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 https://ri.ccourt.go.kr/site/cri/05/10502000000002022092704.jsp (2026. 6. 25. 최종 확인).

변호사 및 국선대리인, 외국 사법기관 직원 및 로스쿨 학생,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 운영 규칙 제20조 이하에서는 교육계획과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제20조에 1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연구원장은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 목표, 교과목, 교육 기간, 교육예정 인원 등을 포함한 교육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는 연구원장이 교육 기본계획과 교육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운영 규칙 제23조는 교육은 강의, 토의, 사례연구, 견학, 실무수습,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 제25조에서는 외부 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제26조는 원외 교육에 관한 사항, 제27조는 위탁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은 크게 연구와 관련한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비교헌법연구팀 외에 교육팀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교육팀은 교육팀장 1명과 4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과 관련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 관리, 강의교재 작성 및 교육기법 연구 · 개발 외에 헌법재판연구원 운영규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법교육을 담당한다.[433]

청소년 법교육과 관련한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 활동은 다음과 같다.[434]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은 2021년부터 중 ·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헌법교육(집합 또는 원격)을 실시하였는데, 2021년에는 51명, 2022년에는 57명의 학생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본격적으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총 21회와 15회(2024년 10월 기준)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대상 학생 인원은 각각 408명과 268명으로 집계되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방문강의 형식의 중 · 고등학생 헌법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의 누적된 헌법교육 횟수와 학생 인원은 각각 67회와 2,433명으로 집계되었다.

---

433)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 https://ri.ccourt.go.kr/site/cri/05/10503000000002022092704.jsp# (2026. 6. 25. 최종 확인).

434) 이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국민과 함께하는 헌법재판연구원 (2024), 17 및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4 연차보고서 (2025), 100 이하를 참고하여 작성.

2024년 헌법교육 내용은 헌법과 민주주의(헌법의 개념,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주의), 헌법재판 및 헌법재판소(헌법재판의 의의 · 기능 · 필요성, 헌법재판의 종류,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한 등), 헌법과 헌법재판(헌법과 헌법재판제도의 이해,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소개, 헌법재판소 견학)이었다.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은 법교육을 진행하면서 직접 발간한 교재들을 활용 · 참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헌법(2013)', '알기 쉬운 헌법 개정판(2016)', '헌법과 헌법재판 표준강의안(2017)' 등이 있다.[435] 이 중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헌법(2013)'은 주요 기본권 등과 관련한 총 33개의 주제를 선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용어와 시사적인 관련 뉴스 기사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 사례를 통하여 생각해 볼 문제들[436]을 제시하여 청소년들이 단순히 암기나 주입식 헌법교육 방식이 아닌 소위 '생각' 해보고 논의할 수 있는 방식의 창작 · 응용형 법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이 쉽게 법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이버 강좌를 개설 · 운영 중이다.

[표 73] 사이버 강좌 과정명과 주제[437]

과정명	차시	주제
헌법과 헌법재판	1	헌법이란
	2	헌법의 기본 원리
	3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4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6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및 권한쟁의심판

435)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ccourt.go.kr/site/cri/ex/bbs/List.do?cbIdx=1515 (2026. 6. 25. 최종 확인).

436) 예를 들면, 존엄사가 법제화될 경우를 생각해 보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 있을까?, 성 소수자의 인권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까?, 남성들이 군대에서 복무하는 기간만큼 여성에게도 다른 곳에서 국가를 위해 근무하도록 하게 한다면, 그것이 평등정신에 부합하는지 토론해 보자, 인터넷 실명제로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은 무엇이 있을까?, 수업중 휴대 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다가 적발된 학생의 메시지를 선생님이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형마트를 동네에 신규로 개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까? 등.

437) 헌법재판소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ourtkorea/221510052766 (2026. 6. 25. 최종 확인).

과정명	차시	주제
헌법과 국가기관	1	국가기관의 조직원리
	2	국회
	3	대통령과 정부, 지방자치
	4	법원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의 이해	1	위헌법률심판의 주요 결정
	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주요 결정
	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주요 결정
	4	탄핵 · 정당해산 · 권한쟁의심판의 주요 결정
알기 쉬운 헌법재판 이야기 I	1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
	2	표현의 자유
	3	경제생활
	4	평등권
알기 쉬운 헌법재판 이야기 II	1	공정한 재판
	2	교육,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3	정당과 선거
	4	범죄와 처벌

한편, 헌법재판연구원은 2017년부터 매년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본선 진출작인 우수 강의안은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교원연수에 활용하였으며,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전국의 교사들이 수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38]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의 참가자격은 전국 초 · 중 · 고교 교사 및 교대 · 사범대 재학생(3, 4학년)인데, 제9회 경연대회에는 총 61명이 지원했으며, 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 10명이 선발되었다. 참고로 헌법재판연구원은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439]

첫째, 우수 헌법수업 사례를 공유 · 활용함으로써, 헌법교육에 대한 교육현장의 관심을 유도하고 헌법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438)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기능 강화방안, 정책개발연구 제13권 (2021), 26.
439) 헌법재판연구원, 제9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자료집 (2025), 2.

둘째, 헌법과 헌법재판 관련 우수 교육 콘텐츠를 확보하여 향후 교육과정의 내실화 및 교육기법 발전에 활용한다.

셋째, 헌법과 헌법재판 관련 중 · 고교 교과서 내용의 서술을 개선하는 계기를 만든다.

[그림 41] 제9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시상식[440]



8일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본선 진출자들, 심사위원들이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연구원 제공>

V. 교육청

전국의 각 교육청은 주로 업무협약을 통하여 관할 구역 내의 청소년들을 위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2020년 5월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 · 공포하여, 교육감이 준법교육 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 예산 지원, 연수 지원,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 제1조에 의하면 이 조례는 준법교육의 활성

440) 법률신문(2025. 8. 8. 기사), "박주홍 두실초 교사 대상… 헌법재판연구원, 제9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 https://www.lawtimes.co.kr/news/210386 (2026. 6. 25. 최종 확인).

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이 조례 등을 근거로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6개 대형 로펌(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화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2025년 10월부터 현직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고등학교 교실을 직접 방문하는 '쉽고 재미있는 법률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법교육 프로그램은 매년 약 50개 고등학교에서 1,3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악성 댓글 대응, 지식재산권, 소년법, 영화 속 법률 이야기 등 학생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441]

이에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017년 5월 법무법인 율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과 지난해에 관내 13개 고등학교 4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호사와 함께 하는 쉽고 재미있는 법률교육'을 진행했다. 이 법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덕목, 지식재산권, 말과 법(SNS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이해), 영화로 이해하는 법률이야기, 꺼진 글도 다시 읽자(법문서 작성의 이해), 소년법 강의를 제공했고, 신청학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442]

참고로 위에서 서술한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6개 대형 로펌과의 업무협약은 2019년 4월에 체결되었는데, 이는 기존 강의 참여 학교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신청학교가 급증함에 따라 출강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발생하여 로펌공익네트워크 차원에서 찾아가는 법률교육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마련되었다.[443]

441) 천지일보(2025. 7. 28. 기사), "서울 교원 · 학생 법 소양 키운다… 서울교육청, 헌법 · 법률교육 프로그램 운영",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8114 (2026. 6. 25. 최종 확인).
442) 파이낸셜 뉴스(2019. 4. 6. 기사), "로펌공익네트워크-서울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실' 확대 시행", https://www.fnnews.com/news/201904031343396062 (2026. 6. 25. 최종 확인).
443) 파이낸셜 뉴스(2019. 4. 6. 기사), "로펌공익네트워크-서울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실' 확대 시행", https://www.fnnews.com/news/201904031343396062 (2026. 6. 25. 최종 확인).

[그림 42] 서울시 교육청과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6개 로펌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444)]



444)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 https://barunlaw.com/outreach/O/46609 (2026. 6. 25. 최종 확인).

제2절 민간단체

I. 한국법교육센터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한국법교육센터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산하 법교육 기관으로 2006년에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영 · 유아, 청소년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교육 전문강사를 양성 · 관리하고 법교육 자료의 연구와 발간, 법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법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445]

청소년 법교육과 관련한 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 프로그램에는 법교육 출장강연, 찾아가는 로파크 사업, 학생자치법교육, 북한이탈 청소년 법교육 등이 있다.

법교육 출장강연은 법교육 전문강사가 전국의 초중고 학교 및 청소년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법교육 강연으로 출강횟수는 2020년에는 1,494회, 2021년(8. 31. 기준)에는 1,934회로 나타났으며, 주요 강의 주제는 아동인권보장(아동학대예방), 학교폭력예방, 사이버폭력예방, 디지털성범죄예방, 인권과 법 등이다.[446] 참고로 2015년에는 2,988회(480,170명 대상), 2016년에는 3,055회(553,216명 대상), 2017년에는 2,864회(640,975명 대상)의 출장강연이 있었다.[447]

찾아가는 로파크 사업은 지역 · 계층 간 진로체험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해 주로 법교육 강사가 교육용 차량(찾아가는 로파크 버스)과 함께 교육 소외지역으로 찾아가 법 관련 진로체험 및 법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특별시, 광역시 소재 외의 초중고 학생이 교육대상인데, 교육 소외지역인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 학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우선 접수대상이다. 참고로 2017년에는 총 167개교, 10,91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하였다.[448]

---

445) 자녀안심국민재단 홈페이지, https://www.xn—3e0bn6ensbu5sxvistd02etg.kr/kr/law/law_intro.php (2026. 6. 25. 최종 확인).
446) 자녀안심국민재단 홈페이지, https://www.xn--3e0bn6ensbu5sxvistd02etg.kr/kr/law/law_program02.phphttps://www.xn—3e0bn6ensbu5sxvistd02etg.kr/kr/law/law_intro.php (2026. 6. 25. 최종 확인).
447) 입법발전소 블로그, https://blog.naver.com/legislationpp/221414174434 (2026. 6. 25. 최종 확인).
448) 입법발전소 블로그, https://blog.naver.com/legislationpp/221414174434 (2026. 6. 25. 최종 확인).

[그림 43] 울릉도를 방문한 '찾아가는 로파크 버스'[449]



찾아가는 로파크 사업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74] 찾아가는 로파크 사업 교육 프로그램

구분	유형	프로그램명	교육시간	교육 인원
버스 교육	체험형	모의재판 모의국무회의(초5~중1)	1~2차시 1차시	7~25명
교실 교육	체험형	(키트활용) 모의재판 모의행정부(중2~고3)	1~2차시 2차시	7~25명
	진로체험	법을 다루는 사람들	1차시	10명~150명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1차시	10명~150명
박람회	체험형	수사 체험교육 규칙 · 예방문구 만들기	20분	1~25명
	진로체험	법관련 직업흥미 검사	20분	1:1진행

학생자치법교육은 학교 및 학급 단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치규약을 만들고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자치규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토론 ·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지원 대상은 운영학교로 등록된 전국 초중고 학교이며 지원내용은 학생자치법교육 운영 지원(매뉴얼, 교구재 보급), 등

449) 경북매일(2017. 6. 13. 기사), "울릉도 간 '찾아가는 로파크 버스'", https://www.kbmaeil.com/article/201706130194658 (2026. 6. 25. 최종 확인).

록 학교에 교사 대상 전문 지도강사, 학생 대상 전문 지도강사 지원(예산 가용 범위 내 지원)이다.[450]

참고로 학교 내 학생자치법정 운영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학생자치법정 지정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75] 학생자치법정 지정학교 현황[451]

총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7,684 (개교)	16	23	34	49	388	660	1,045	1,580	1,720	1,139	1,030

북한이탈 청소년 법교육은 시설에서 거주 중인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북한 이탈 청소년에 대하여 헌법 가치 및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이해 증진과 법의식 제고를 위한 법교육이다. 2021년 상반기에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174회의 법교육이 이루어졌다.[452]

한국법교육센터의 법교육과 관련한 주요 사업에는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 · 관리와 법교육 연구 · 개발이 있다. 우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 · 관리는 법무부의 위탁사업인데, 전문강사는 40시간의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을 통과한 법무부 위촉 강사이다. 전문강사의 지원자격은 대학에서 법학(로스쿨 포함) 및 사회 · 교육계열 전공한 자이다.[453]

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규정 제8조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연평가에 합격한 자를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전문강사로 위촉한다(제1항). 전문강사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중 제9조에 따른 전문강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위촉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위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항). 이 규정 제9조에 제1항에 따라 전문강사는 위촉 기간 중 3회 이상 강의하여야 하고, 위촉 기간 중 총 15시간 이상 양성기관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

450) 자녀안심국민재단 홈페이지, https://www.xn—3e0bn6ensbu5sxvistd02etg.kr/kr/law/law_program04.php (2026. 6. 25. 최종 확인).
451) 입법발전소 블로그, https://blog.naver.com/legislationpp/221414174434 (2026. 6. 25. 최종 확인).
452) 자녀안심국민재단 홈페이지, https://www.xn--3e0bn6ensbu5sxvistd02etg.kr/kr/law/law_program07.php (2026. 6. 25. 최종 확인).
453) 자녀안심국민재단 홈페이지, https://www.xn--3e0bn6ensbu5sxvistd02etg.kr/kr/law/law_program01.php (2026. 6. 25. 최종 확인).

제1기(위촉 기간 2020년~2022년)에는 총 175명(변호사 45명 포함)의 법교육 전문강사가 위촉되었으며, 제2기(2021년~2023년)에는 총 33명(변호사 9명 포함)의 전문강사가 위촉되어서 활동하였다.[454]

한국법교육센터의 법교육 연구 · 개발사업은 크게 법교육 콘텐츠 및 교재 개발, 현장 중심 프로그램 및 강의안 개발, 법교육 관련 연구로 구분되는데, 청소년 법교육 교재로는 대표적으로 학생자치법교육 매뉴얼, 학생자치법정 3.1 매뉴얼, 법세상 탐험대(Ⅰ, Ⅱ, Ⅲ), 청소년의 법과 생활, 나인주와 유인권이 함께하는 세상을 바꿀 청소년을 위한 인권과 법(청소년용), 행복한 세상을 위한 인권과 법(초등학생용), 대한민국으로 온 청소년을 위한 우리법 이야기, 청소년이 알아야 할 인권과 기초법질서 우리로(중고등학생용), 하나로 바른 법질서로 하나되는 세상(초등학생용), 전국을 누비는 법체험 테마파크 찾아가는 로파크(초등학생용), 법대장 나준수가 간다!, 조선은 법치국가다!, 나는야 법짱(재미있는 법이야기), 보배야!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줘, 우리 공주의 나를 사랑하는 법(초등학교 저학년용 강력범죄 예방 교재), 우리법 바로알기, (만화로 보는)우리나라 헌법 등이 있다.

한국법교육센터가 발간한 청소년 법교육 관련 교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학교)생활법률을 포함한 청소년이 알아야 할 법지식과 법상식을 총망라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발간된 청소년의 법과 생활은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소재를 관련 법률과 접목하여,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교재의 주요 내용에는, 예를 들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 공화국, 표현의 자유(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학생인권, 헌법재판(헌법소원), 혼인과 이혼, 부모와 자녀 관계(친권, 입양), 상속과 유언, 형사법의 기본 이념(죄형법정주의), 형사절차와 인권, 형사재판, 아동학대와 아동의 권리, 성희롱과 성범죄(성적 자기결정권), (미성년자의) 계약, 근로와 이에 대한 법적 구제, 부동산(등기, 주택임대차, 임차인 보호법), 소비자 보호(전자 상거래, 소비자 문제), 학교폭력, 저작권 보호, 사이버 범죄, 인공 지능, 게임과 법, 차별과 혐오, 사생활 보호, 빅데이터와 개인 정보, 동물권과 동물보호법, 환경, 입법 참여, 선거와 정치(선거 제도의 기본 원칙,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이 있다.

454) 자녀안심국민재단 홈페이지, https://www.xn--3e0bn6ensbu5sxvistd02etg.kr/kr/law/law_program01.php (2026. 6. 25. 최종 확인).

II.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455]와 대한민국 청소년헌장의 청소년 사회참여 근거[456] 등을 바탕으로 2003년 6월에 출범한 비영리 법인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고유목적사업인 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신장을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다.[457] 참고로 청소년의회 운영 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의회의 청소년 의원의 수는 200인 내외로 하며 의원의 임기는 12개월이며, 이 규정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만 13세에서 20세까지의 청소년은 피선거권이 있으며 만 13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은 선거권을 가진다.

청소년의회의 활동 목적은 청소년에게 정치적 권리 실현 및 사회참여, 진로체험,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익과 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청소년이 민주적 참여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것에 있다.[458]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회는 모의 의정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제안 활동뿐만 아니라 입법청원 활동도 하고 있다.

참고로 입법청원 활동에는 자립준비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청소년 선거교육 및 모의 선거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 학교 상대평가 폐지 제안, 청소년 문화의 집 보급 활성화 제안,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제안, 유튜브 관련 법률안 제안, 다문화 관련 정책제안, 대한민국 영어 교육 관련 제안, 민생법안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국회법 개정 법률안 제안 등 약 300여 건에 제안이 포함되었다.[459]

대한민국 청소년의회가 출범 당시에는 흥사단과 민주화운동사업본부와 같은 사회단체들이 운영하였으나, 청소년의회의 도입 취지와 정치적 중립성을 지향하기 위하여 2010년에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고,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460] 여러 활

455)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456)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57)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홈페이지, https://www.youthassembly.or.kr/ (2026. 6. 25. 최종 확인).

458)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홈페이지, https://www.youthassembly.or.kr/bbs/page.php?hid=about (2026. 6. 25. 최종 확인).

459)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홈페이지, https://www.youthassembly.or.kr/bbs/board.php?bo_table=propose (2026. 6. 25. 최종 확인).

460)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홈페이지, https://www.youthassembly.or.kr/bbs/board.php?bo_table=faq (2026.

동에서의 정치적인 중립성은 보장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의회는 법조인(로스쿨)이 되고 싶은 청소년들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는 대표적으로 청소년 로스쿨 프로그램과 청소년 리걸 클리닉이 있다.

우선 청소년 로스쿨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전국의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 100명을 상대로 3개월간 진행된다. 2025년의 경우(청소년 로스쿨 8기),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기초 법교육(헌법, 민법, 형법),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형사와 민사 판례 분석, 모의재판, 현직 법조인 또는 로스쿨생의 특강을 통한 실제 법률 현장 강의로 구성되었다.

[그림 44] 청소년 로스쿨 프로그램 내용[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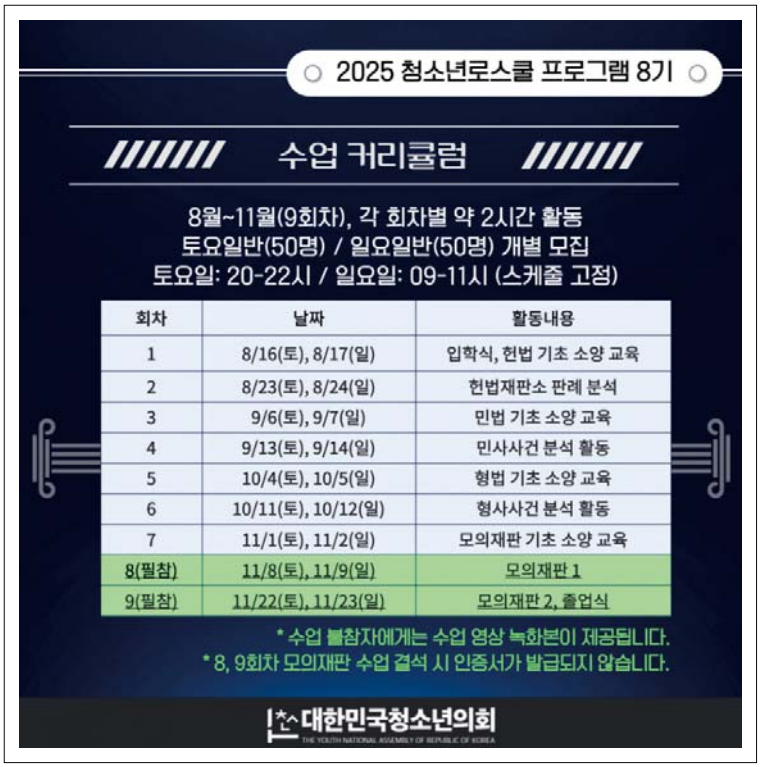

6. 25. 최종 확인).

461)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홈페이지, https://www.youthassembly.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41198882 (2026. 6. 25. 최종 확인).

청소년 리걸 클리닉은 202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법조인의 실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로스쿨의 필수 과정인 '법률 문서 작성'을 미리 체험하고 법학적성시험(LEET)에 대해 미리 알아보아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참여 대상은 전국의 중·고등학생 및 이에 준하는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청소년 리걸 클리닉 2기의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462]

[그림 45] 청소년 리걸 클리닉 일정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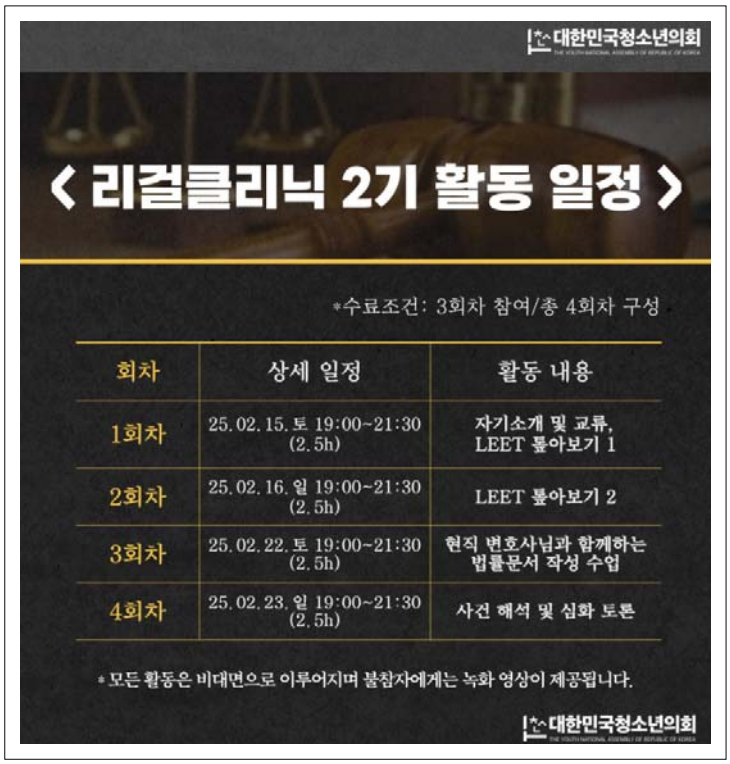

한편,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는 2026년 1월 24일에 현직 변호사들의 지원(서면 피드백 및 강연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 모의재판을 실시하였다. 이 모의재판의 참여 대상은 총 60명의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검정고시 포함)이었다.[463]

462)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홈페이지, https://www.youthassembly.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41198872&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B%A6%AC%EA%B1%B8&sop=and (2026. 6. 25. 최종 확인).

463)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youthassembly/224028652000 (2026. 6. 25. 최종 확인).

III. 대형로펌 공익재단

대형로펌 공익재단의 경우, 사회공헌 또는 공익활동의 방식(pro bono)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무법인 김앤장의 사회공헌위원회는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인 '리더(리걸마인드로 더 나은 세상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 비대면 법률교육 방식으로 이를 통한 법률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리걸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가 직접 강의해 주는 강의방식의 진행과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률교육용 교구를 활용한 교육 및 문답형식으로, 실시간으로 변호사로부터 피드백(feed back)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464]

법무법인 화우 화우공익재단은 교실법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2024년 11월 7일에는 제7회 교실법 대회를 개최하였다. 교실법 대회는 청소년들이 사회 이슈나 주변 관심사에 대해 직접 법안을 만들고 발표하는 경연대회로, 기존에는 참가 신청 자격을 서울 소재 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정했던 것을 2024년부터는 경기도와 인천시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 지역을 확대하였다. 이에 어느 때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교실법 대회 참가를 신청하였다. 참고로 고등부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화이트헬퍼에 관한 법률(약칭: 화이트헬퍼법)'을 발표한 '화이트헬퍼' 팀이 화우공익대상을, '중등부에서는 '국민비만관리법'을 발표한 'Fitfuture(핏퓨처)' 팀이 화우공익대상을 수상하였다.[465]

그리고 2023년 11월에 화우공익재단은 처음으로 서울 외 다른 지역의 학교인 충남 홍성군 내포중학교를 찾아가 3학년 학생 전원인 280명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진행하였고, 그해 7월에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고 학생들이, 8월에는 전북 익산시 원광고 학생들이 화우를 직접 방문하여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교육에 참가하였다.[466]

464)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kimchangprobono.com/news/detail.kc?curPage=1&idx=31874&scroll=400&sch_cd=total&sch_nm=%EB%A6%AC%EA%B1%B8%EB%A7%88%EC%9D%B8%EB%93%9C (2026. 6. 25. 최종 확인).
465) 화우공익재단, 2024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2025), 47-48.
466) 화우공익재단, 2023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2024), 33-34.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법원 외 주요 법교육 주체의 청소년 법교육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법원 외 주요 법교육 주체는 크게 법교육 주체로서의 국가 ·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에는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법제처,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및 교육청이 있고, 후자에는 한국법교육센터,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대형로펌 공익재단이 있다.

우선 법무부는 법교육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법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역별 법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찾아가는 법교육과 유튜브 활동 강화를 통한 법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교육 통합 플랫폼 '이로운법'은 청소년이 법과 제도, 권리 및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로운법이 제공하는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유형은 크게 법교육 출장강연, 학생자치법교육, 온라인 법교육 콘텐츠를 통한 법교육, 법교육 관련 자료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출장강연의 경우 전국 초중고 학교가 대상이 되며, 이로운법 홈페이지에는 약 150개의 청소년 법교육용 영상자료가 있으며, 다국어로 제공되는 법교육 영상도 있어, 다문화 배경 청소년도 언어 장벽 없이 법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무부는 법교육 테마공원인 솔로몬로파크를 대전, 부산, 광주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청소년이 가까운 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하여 법교육 강의, 다양한 법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솔로몬로파크는 이 외에도 법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솔로몬로파크는 온라인 법교육을 통해 청소년 법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 청소년 전문교육기관인 청소년꿈키움센터와 검찰청도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자는 법교육 대상에 위기청소년을 포함하고 있고, 후자는 주로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에게 법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맞춤형 ·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교육 전문 기관으로 법교육 전문강사들을 통한 맞춤형 수시교육 외에도 청소년의 방문(체험)학습과 입소교육, 진로체험 및 법교육 프로그램과 법교육 콘텐츠 개발도 하고 있다.

법제처는 헌법과 입법과정을 중점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와 청소년은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법교육을 통해 법 제정 과정과 헌법, 입법과정 등을 배우고 모의 법안 제정 활동에 참여하며 온라인 법제교육을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견학 프로그램,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청소년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헌법과 기본권 및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이 법교육의 중점대상이다. 한편,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에는 청소년들이 헌법과 기본권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챗봇을 활용한 헌재톡, 유튜브 채널, 블로그, 페이스북, X(구 트위터)를 게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헌법재판연구원 운영규칙을 통하여 법교육의 대상과 기본계획 수립 및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교육전담팀을 두고 방문교육 형식 및 (집합 및 원격) 헌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발간하고 사이버 강좌도 운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매년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강의안은 교원연수에 활용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전국의 교사들이 수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간단체인 한국법교육센터는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법교육 출장강연, 찾아가는 로파크 사업, 학생자치법교육, 북한이탈 청소년 법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법교육 출장강연은 법교육 전문강사가 전국의 초중고 학교 및 청소년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법교육이고, 찾아가는 로파크 사업은 지역 · 계층 간 진로체험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소외지역으로 찾아가 법 관련 진로체험 및 법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한국법교육센터의 법교육과 관련한 주요 사업에는 법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 관리와 법교육 연구 · 개발이 있다. 법교육 연구 · 개발사업은 크게 법교육 콘텐츠 및 교재 개발, 현장 중심 프로그램 및 강의안 개발, 법교육 관련 연구로 구분되는데, 한국법교육센터가 발간한 청소년 법교육 관련 교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학교)생활법률을 포함한 청소년이 알아야 할 법 지식과 법상식을 총망라하고 있다.

한국법교육센터 외에도 민간 법교육 주체로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와 대형로펌 공익재단이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권리 실현 및 사회참여

의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이 법교육을 받으며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소년의회는 법조인(로스쿨)이 되고 싶은 청소년들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는 청소년 로스쿨 프로그램과 청소년 리걸 클리닉이 있다. 대형 로펌 공익재단은 청소년 법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예를 들어 법무법인 김앤장의 사회공헌위원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법률교육을 하고 있고, 화우공익재단은 '교실법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 법안을 만들고 발표하는 경연을 개최하며,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교육을 하고 있다.

앞에서 서술한 사항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의 국가 ·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 의한 청소년 법교육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법교육 관련 프로그램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법교육 통합 플랫폼인 이로운법, 솔로몬로파크, 청소년꿈키움센터 및 검찰청을 통한 법무부의 청소년 법교육 활동은 전국적 영역에 걸쳐 있으며, 청소년 법교육 실적도 매우 높다. 이러한 청소년 법교육의 전국적 범위와 높은 실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 및 한국법교육센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국가 · 공공기관의 경우, 청소년 법교육을 위한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및 민간단체인 한국법교육센터는 법교육의 지속적 실행을 위한 자체의 전문적인 법교육 인력 양성과 법교육 자료제공 체계를 갖추고 있다.

법교육 주체인 국가 ·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청소년 법교육 활동 목적과 범위 및 방식이 다소 상이한 측면은 있지만, 청소년 법교육의 강화와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목적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6장

법원 청소년 법교육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3장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의 목표인 사법 신뢰와 사법 접근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다른 (해외) 법교육 주체의 청소년 법교육 활동을 분석하여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청소년 법교육과 관련한 법원의 현황을 제3장(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제4장(해외 주요국에서의 청소년 법교육)과 제5장(법원 외 주요 법교육 주체의 청소년 법교육)에서의 청소년 법교육과 관련한 사례를 참고하여 법원 청소년 법교육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

이에는 법교육 조직구성과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법교육 대상 인원과 지역의 확대,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법교육 자료의 제작 및 배포,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의 구축, 법교육 관련 대법원규칙의 제정 및 기타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다.

제1절 법교육 조직구성과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I. 법교육 조직

1. 법원의 현황

현재 법원에서는 청소년 법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실에서 청소년 법교육을 담당하고는 있으나, 공보관실의 일부 업무이고 법교육 수요가 많음에도 직원 1명이 대법원 견학과 법정체험실을 담당하고 있으며, 2명의 학예사가 법원전시관 법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법교육이 주요 업무 사항 중의 하나인 사법연수원의 경우에도 기획 ·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사법행정지원 판사 1명(기획교수)이 청소년 법교육을 포함하는 다른 법교육 업무(법관연수, 신임 법관 연수, 재판연구원 등)를 전담하고 있고, 이를 보조 · 지원하는 총무과 직원도 1명에 불과하다.

법원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고등법원의 경우에는 관리과 직원 1명이 법원견학 외에도 기숙사와 어린이집 업무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고등법원의 경우에는 지출업무(급여)를 담당하는 총무과 직원 1명이 법원견학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법교육은 총무과 또는 관리과에서 일회적이거나 부수적인 업무로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의 법교육 조직체계가 완비되지 않으면,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이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인 운영 방식으로 진행되기 쉬워,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이 사법 신뢰과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 있는 법교육 프로그램'이라기보다 '기관 홍보성 행사'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법교육 횟수와 수요도 충족하기 어렵다.

특히, 법원의 법교육이 법원의 날 등과 같은 특정 기념일이나, 학교 등과 같은 단체의 법원방문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는 경우에는 청소년 법교육의 지속성과 교육 노하우 및 교육콘텐츠의 축적성을 결여시키고,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교육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어려워진다. 더 나아가 학교 법교육과의 연계성도 제한된다.

예를 들어 가장 인기가 많은 대법원 법원전시관 학교연계 법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학생의 인원과 참여 가능일이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인 '공정한 판결을 부탁해'의 경우에는 참여 인원이 1회당 25명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더욱이 특정 기간(2026년 1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6회만 진행되었다.[467]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견학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30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매주 1회(목요일)만 실시되고 있다.[468] 그리고 부산지방법원의 경우에는 30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매달 둘째 주 수요일로 한정되어 있다. 더 나아가 일선 법원이 법원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간도 1시간 30분에서 최대 2시간에 불과하다.

또한, 청소년 법교육 수요가 많은 사법연수원의 경우에도 방학 중 청소년 법교육의 인원과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중학생의 경우 동계방학 1일 동안 40명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 동계방학 1일 동안 20명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진행하였다.[469]

---

467) 법원전시관 홈페이지, https://museum.scourt.go.kr/courtmuseum/sub4/sub4_04.html (2026. 6. 25. 최종 확인).

468)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seoul.scourt.go.kr/seoul/join/join_03/index.html (2026. 6. 25. 최종 확인).

469)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https://jrti.scourt.go.kr/jrti/training/training_05/training_05_01/index.ht

2. 다른 법교육 주체의 현황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를 두어, 법교육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데, 다양한 개별 분야별(학생 법교육 총괄, 법교육 정책, 헌법교육과 학생자치법교육, 법교육 누리집과 SNS 채널 운영, 북한이탈주민과 이민자 법교육 및 출장강연과 전문강사 등의 분야)로 담당 직원을 두고 있다. 물론 법무부의 경우, 관여하고 있는 법교육 분야와 그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별 분야별로 담당자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법무부의 법교육 조직체계 사례를 참고하여 법원의 법교육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문화교육팀, 교육연수팀, 교육운영지원팀으로 구성되는 법문화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법교육 강연, 교육계획 수립,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생 모집, 교육실적 관리 · 분석, 법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제처도 청소년 법교육을 위한 어린이 법제처 운영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직원 3명이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연구원은 교육팀장 1명과 4명의 교수로 구성된 전담 교육팀을 두어 법교육 외에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 관리, 강의교재 작성 및 교육기법 연구 · 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참고로 헌법재판연구원의 경우, 늘어나는 헌법교육 수요로 인하여 교육팀 조직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한다.

3. 개선방안

위에서 서술한 법원 외 다른 법교육 주체들은 청소년 법교육을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어, 청소년 법교육의 활성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른 법교육 주체들처럼 법원도 청소년 법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 법원마다 법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법원의 규모와 인력수급 등과 같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는 대법원 공보관실 조직을 확충하여 공보관실에 전국 법원의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기획 · 총괄하는 법교육 담당관을 두고, 이를 지원하는 직원들을 확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그리고 법교육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법연수원에는 총무과에 가칭 '법교육지원팀'을 설치하여 사법연수원의 법교육을 지원하는 방식과 법교육 수요가 많은 일

---

ml (2026. 6. 25. 최종 확인).

선 법원에서는 법교육의 확대와 법교육의 학교연계성 및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교육을 전담하는 전담직위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법교육 수요가 많은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도 가칭 '법교육지원팀'을 두어,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과 협력 · 연계하여 법교육 기획하고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면적인 법원 법교육 조직 신설이 아닌 대법원 공보관실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 다층적 법교육 조직체계 구축 방안을 전제로 한다. 이는 대법원 공보관실의 조직 확충과 사법연수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의 실정에 맞는 조직 보강을 전제로, 법원 법교육 조직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조하는 방안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법원의 법교육 조직을 협력과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집중, 권역 분산, 현장실행의 3단계 체제를 구축하여 전체 법원의 법교육 총괄 · 기획조직으로서의 대법원 공보관실, 권역별 법교육 총괄 · 기획 조직으로서의 사법연수원과 고등법원 및 실질적인 법교육 실행기관으로서의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을 의미한다. 물론 대법원,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등의 법교육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미국 연방법원행정처도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연방법원 판사의 찾아가는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프로그램 담당자의 메일 등을 제공하고 있고, 미국 국립 주 법원센터도 법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 · 보급하면서, 주 법원의 법교육 프로그램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주 법무부들도 주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을 기획 · 홍보하거나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II. 법교육 전문인력

1. 법원의 현황

사법연수원의 경우에는 기획교수 1명과 법교육 경험이 있거나 법교육을 할 수 있는 사법연수원 외의 법원의 판사 및 검사 등과 같은 외부인력을 법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각급 법원의 법교육은 사법행정지원 판사나 판사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원 자체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

한 법교육 역량을 향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원은 법교육을 위한 자체 법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2. 다른 법교육 주체의 현황

법원과는 달리 솔로몬로파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한국법교육센터 및 헌법재판연구원에서는 법교육 전문인력이 청소년 법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법교육지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기 위한 필수 시책 사항으로서의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법교육센터는 법무부의 위탁으로 법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도 그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교육을 진행하여 법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3. 개선방안

사법연수원의 경우에는 신임 법관 연수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법교육에 적성이 있거나 (법)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법관을 선발하고 교육하여, 향후 법원 내 법교육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은 법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사법연수원에 가칭 '법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이 센터에 법원 내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리 업무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있다.

또한, 경륜 높고 원숙(圓熟)한 원로법관이나 퇴직법관을 청소년 법교육에 초빙할 수 있다. 참고로 전 대법관이자 전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박일환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의 경우, 유튜브 채널 '차산선생법률상식(검색일 현재: 구독자 13.2만 명, 동영상 192개)'을 운영하여 법지식과 법조경험을 널리 전파하였다.[470]

한편, 법관 외에도 법교육에 적성이 있거나 (법)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직원을 법교육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법교육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장은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원 소속 직원이 아닌 사무처 공무원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참고로, 법원공무원교육원은 과거 2018년 5월 28일부터 6월 27일 한 달간 고양시

470) 유튜브 차산선생법률상식, https://www.youtube.com/@%EC%B0%A8%EC%82%B0%EC%84%A0%EC%83%9D%EB%B2%95%EB%A5%A0%EC%83%81%EC%8B%9D-d6j/playlists (2026. 6. 25. 최종 확인).

초중고 학교 20여 곳을 방문해 '찾아가는 법교육 강연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양 지역 청소년 2,672명에게 사법부 소개와 소송제도 안내를 포함한 다양한 법교육을 실시하였다.[471] 법원 직원을 법교육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 법원 직원을 법교육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471) 법률신문(2018. 7. 6.), "법원공무원교육원, 찾아가는 법교육 강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640 (2026. 6. 25. 최종 확인).

제2절 법원의 법교육 대상 인원과 지역의 확대

법원 법교육의 대상 인원과 지역의 확대는 사법 신뢰와 사법 접근성의 강화를 위한 법교육 접근성 향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중요 과제이다. 따라서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는 학습자인 청소년의 인원 확대와 법교육 대상 지역의 확대로 볼 수 있다.

I. 법교육 대상 인원의 확대

1. 법원의 현황

현재 법원 공간과 법교육 조직 및 법교육 인력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법교육 수요를 완전히 충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4년과 2025년 법원전시관 방학 법교육 프로그램 신청의 경우에는 평균 1분 이내로 마감되었고, 추가 신청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472] 그리고 대법원 법원전시관 법교육 프로그램 설문조사에 의하면[473] "선착순 25명 10초 마감 컷에 8월 총 4회 중 다 순식간에 마감되고 어쩔 수 없이 개학 첫 주에 있는 4회차 금요일로 예약해버렸다.", "꼭 예약 성공하고 싶은 프로그램 중 하나였는데, 만반의 준비를 했으나 광탈하고 만 ㅠㅠ 체감 1초 컷이었던 법원전시관의 방학 프로그램이다.", "겨울방학 기간인 1~2월 중 주 1회, 총 6회 동안 선착순 25명으로 구성된 체험 수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약 신청 마감이 전회 30초 컷이라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과 동시에 신청했는데 남편이 원하는 날짜에 재빠르게 예약 성공하여 기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었다.", "1분도 안 돼서 프로그램이 마감되는 거 보고 너무 놀랐지만 다행히 예약에 성공!(중간 생략)"과 같은 의견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472) 제3장(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제2절(대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Ⅲ(법원전시관 방학 법교육 프로그램), 1. 개요 참고.
473) 제3장(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제2절(대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Ⅲ(법원전시관 방학 법교육 프로그램), 6. 방학 법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주요 후기 참고.

제3장(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제2절(대법원의 청소년 법교육)과 제3절(사법연수원의 청소년 법교육)에서 서술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법원의 법교육은 법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법원 법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청소년의 관심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법원이 법교육 대상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다른 법교육 주체의 현황

법무부의 경우에는 대전, 부산, 광주에 솔로몬로파크를 설치하고, 전국 총 18개 지역에 청소년꿈키움센터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법교육 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 법교육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추가로 전국의 검찰청도 법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참고로 2023년도에 광주 솔로몬로파크는 법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자원봉사자인 '법체험 해설사'를 모집하였다.[474] 이에 따라 청소년 법교육 인원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교육동에는 숙소동도 있어 청소년에 대한 입소교육도 가능하며, 2023년과 2024년에는 5,83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법제처의 경우 매년 1,600여 명의 청소년 대상으로 약 1년 동안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법교육지원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한국법교육센터는 법교육 출장강연으로만 2015년에는 480,170명, 2016년에는 553,216명, 2017년에는 640,975명의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반면 일선 법원보다 청소년 법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연수원의 경우, 경기 공유학교 법교육 프로그램, 하계 및 동계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 특수학교 학생 법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학생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다 합쳐도 매년 1천 명 정도이다.[475]

3. 개선방안

법원이 법교육 대상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에서 언급한 법교육 전담

474) 광주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https://www.donggu.kr/board.es?mid=a10504020402&bid=0001&act=view&list_no=35528 (2026. 6. 25. 최종 확인).

475)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https://jrti.scourt.go.kr/jrti/training/training_05/training_05_01/index.html (2026. 6. 25. 최종 확인).

조직과 전문인력의 확충, 그리고 후술하는 온라인 법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청소년 법교육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법교육 플랫폼 구축은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법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법교육 대상 인원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인구가 집중되어 법교육 수요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의 법원의 경우, 법교육 횟수를 늘리거나 법교육을 상시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교육 대상 인원의 확대와 관련하여 법의 날이나 법원의 날 등과 같은 기념일이나 중학생 자유학기제를 집중적인 법원 법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법원은 법원견학 활성화 캠페인(Open Court)을 진행하여 약 2주에 걸쳐 집중적인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지방법원의 경우 2주간 5회에서 17회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476]

추후 법교육 대상 인원이 확대되면, 법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한국법교육센터, 법무부 청소년꿈키움센터 및 사법연수원의 법교육 사례를 참조하여 북한이탈 청소년, 다문화가족 청소년, 학교 밖 위기청소년, 보호소년, 장애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법원이 이들에 대한 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 제공 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법접근센터를 활용하여 법교육을 진행한다면,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 접근성을 실현하는 법교육 방식이 될 것이다.

참고로 2025년 12월 2일 발의된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477] 제22조 제1항은 사회통합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 난민법에 따른 난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교육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23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회 ·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교육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정법원의 경우에는 촉법소년에 대한 법교육을 전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

476) 대법원 보도자료(2013. 4. 22.), 대한민국 법원으로 초대합니다, 4. 25. '법의 날' 맞이 법원견학 활성화 캠페인(Open Court) 전국 법원 동시개최, 1.
477) 김병주 의원 대표 발의(2025. 12. 2.),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4795.

는데, 촉법소년에 대한 법교육은 법질서의 이해, 재범방지, 피해자 관점에서의 교육 및 공감과 책임능력의 향상 등과 관련하여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478]

II.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법교육 지역의 확대

1. 법원의 현황

법교육 대상 인원의 확대 외에 법교육 지역의 확대도 청소년의 법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2025년 겨울방학 법원전시관 법교육 프로그램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479]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절대다수가 수도권 학생이다. '어린이 판사의 하루'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의 85%, '공정한 판결을 부탁해'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의 92%, '가인의 꿈, 나의 꿈 중학생'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의 100%가 수도권 학생이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 2025년도 겨울방학 초등학생 법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경우를 보아도, 절대다수가 수도권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480] 따라서 법원의 법교육 지역의 확대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원 법교육에서의 지역 간 격차의 해소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대법원 법원전시관과 사법연수원이 다른 일선 법원보다 더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 법교육에서의 지역적 격차의 문제점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 법원, 특히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의 법교육이 수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는 단순한 '지역 편중'을 넘어 사법 신뢰와 사법 접근성은 물론 법의식 형성과 교육기회의 평등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2. 다른 (해외) 법교육 주체의 현황

청소년 법교육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어디라도 찾아

478) 전국 18개의 법무부 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연계하여 촉법소년에 대한 법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있다.
479) 제3장(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제2절(대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Ⅲ. 법원전시관 방학 법교육 프로그램 참고.
480)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https://jrti.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9043&gubun=41&cbub_code=000130&searchWord=&pageIndex=1 (2026. 6. 25. 최종 확인).

가는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서벽지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을 진행하여 전국적 범위의 청소년 법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법교육센터의 경우에는 출장강연을 통해 청소년 법교육 강의를 진행하고, 지역 간 법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로파크 사업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법제처의 경우,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법교육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 법제관의 경우 초등학생 수의 권역별 비중에 따라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집비율을 수도권 49.9% 강원·제주 4.2%, 충청권 11.8%, 전라권 9.6% 경상권 24.5%로 설정하고 있다.[481]

주요 외국의 법원들도 청소년 법교육에서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법교육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예를 들어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및 각 주 법원들이 학교방문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미국의 사법학습센터(Judicial Learning Center)는 학생들의 법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문 신청 학생과 교사에게 1인당 최대 500달러까지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대법원 견학을 포함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인 '학생 토론의 날(Student Debate Days)'을 개최할 때, 런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에 위치한 학교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있다.

3. 개선방안

법원이 온라인 법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법교육 지역을 확대하면서 지역 간 법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면하여 법교육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482] 일선 법원, 예를 들어 대전고등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의 경우에도 출장형식의 법교육을 하고 있지만, 특히 청소년 법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에는 법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인근 법원의 출장 법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법원 가인연수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재)과 대법원 사법역사문화

481)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board.es?mid=a21701000000&bid=0089#content (2026. 6. 25. 최종 확인).

482) 이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지즉위진간(知則爲眞看)으로 법원의 법교육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사법절차를 바르게 이해하고 법치주의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대법원 보도자료(2013. 4. 22.), 대한민국 법원으로 초대합니다, 4. 25. '법의 날' 맞이 법원견학 활성화 캠페인(Open Court) 전국 법원 동시개최, 1].

교육관(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 소재)의 법교육 시설을 보강하여 인근 격오지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법교육에 활용하여 청소년 법교육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두 기관은 숙박시설을 완비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숙박을 통한 집중형 법교육도 가능하다. 참고로 국회의정연수원은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 국회고성연수원을 설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국회의 기능 · 역할과 의회정치 및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483]

법제처의 경우처럼, 대법원이나 사법연수원의 법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수도권 외 거주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법교육 대상을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사법학습센터 사례를 참고하여 학생들의 법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서벽지 학생들이 법원 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영국 대법원처럼 법교육 프로그램 참여신청에서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483) 국회고성연수원 홈페이지, https://yeyak.assembly.go.kr/community/scheduleView.do (2026. 6. 25. 최종 확인).

제3절 법원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I. 법원 체험형 법교육의 의의

법원의 법교육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법원에 대한 흥미를 느껴서 법원의 법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욕구를 가지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법원의 법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민주시민의 자질과 법치주의 가치를 청소년이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원의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은 법원이 실제 사법절차와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이 법의 작동 방식과 법원의 역할 등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절차적 정의에 대한 이해를 넘어 사법 신뢰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론적 강의보다는 법원의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이 사법 신뢰 형성에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법교육에 익숙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법원이나 소송제도 등에 관한 사항들이 교과서 속의 추상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기 쉬우며, 그만큼 이에 대한 이해도 쉽지 않다. 따라서 재판방청을 포함한 법원(전시관)견학, 법원 내에서의 모의재판과 진로체험 및 판사와의 대화 등을 통한 법원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은 추상적인 법원 관련 지식의 전달을 넘어, 법원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법원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법 영역을 포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원의 체험형 법교육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법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

II. 다른 (해외) 법교육 주체의 현황

법원 외 국내 법교육 주체들은 이론적인 강의식 법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부산 솔로몬로파크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문화)체험관을 통한 체험형 법교육, 법제처의 입법체험, 한국법교육센터의 학생자치법교육,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의 입법청원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해외 주요국의 법원들도 체험형 법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체험

형 법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역사적인 법정 소송 재현 프로그램,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Nelson Fellowship과 Lindsay Fellowship 프로그램, 미국 연방법원의 청소년 참여형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Civil Discourse and Difficult Decisions', 코네티컷주 대법원의 법원 봉사 프로그램(Court Aide Program)과 그림자 직업 프로그램(Job Shadow Program), 테네시주 대법원의 'SCALES'(stands for Supreme Court Advancing Legal Education for Students) 프로그램, 유타주 대법원의 1일 법관 프로그램, 영국 국립사법박물관의 법정 워크숍 프로그램, 일본 하급재판소의 모의 조정 프로그램, 동경지방재판소의 민사재판 주니어 투어 프로그램 등이 있다.

III. 법원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법원 법원전시관과 사법연수원의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484] 특히, 사법연수원 초·중·고 겨울방학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서술식 의견에서 가장 유익했던 강의로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인 모의재판과 법정체험 및 양형체험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원은 체험형 법교육에 대한 청소년의 선호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에 대한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발굴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청소년 체험형 법교육으로 재판방청을 포함한 법원(전시관)견학, 모의재판, 진로체험, 양형체험 및 판사와의 대화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 외에 법원이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에는 배심원 토론과 결부된 그림자배심원(Shadow Jury) 프로그램,[485] 법원 인턴십 프로그램,[486] 조

484) 자세한 것은 제3장(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제2절(대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Ⅲ. 법원전시관 방학 법교육 프로그램에서의 개별 프로그램(어린이 판사의 하루, 공정한 판결을 부탁해, 가인의 꿈, 나의 꿈)에 대한 설문조사와 제3장(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제3절(사법연수원의 청소년 법교육), Ⅲ. 법원전시관 방학 법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설문조사 참고.

485) 그림자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며, 재판의 전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의 평결내용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으며, 평결 과정이 공개될 수 있는 점이 정식 배심원과 다르다. 청소년은 그림자배심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제 사건에 대한 생생한 법정 공방을 체험하고 실제 평의와 같은 방법으로 유·무죄 및 양형 등 재판 결과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홈페이지,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13M01 (2026. 6. 25. 최종 확인)].

486) 법원 인턴십 프로그램은 법원 업무와 재판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법조계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이다[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ch

정체험 프로그램, 판결 토론 프로그램 및 청소년 참여법정 프로그램[487]이 있다.

그러나, 그림자배심원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일부 법원에서만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고,[488] 법원 인턴쉽 프로그램의 참가자격은 주로 대학생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489] 그리고 조정체험 프로그램 및 판결 토론 프로그램은 실시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490] 더 나아가 과거 일부 법원, 예를 들어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등에서 실시된 청소년 참여법정 프로그램도 근래 실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491][492]

배심원 토론과 결부된 그림자배심원(Shadow Jury)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이해하고, 청소년이 장차 성인이 되어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법원 인턴십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활동을 넘어, 법원에 대한 이해 증진과 미래 법조인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청소년 참여법정을 통하여 사건본인에게는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의식 함양 및

---

angw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9015&gubun=41 (2026. 6. 25. 최종 확인)].

487) 청소년 참여법정은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또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 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488)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그림자배심 참가신청) 홈페이지,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13M01 (2026. 6. 25. 최종 확인).

489)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gwangju.scourt.go.kr/info/intern/new/InternApp.work (2026. 6. 25. 최종 확인);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changw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9015&gubun=41 (2026. 6. 25. 최종 확인).

490) 한국법교육학회, 사법부의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법원행정처 (2009), 81 이하 참조.

491) 인터넷 검색 결과, 울산가정법원이 2020년 4월 29일까지 청소년 참여법정 참여인단을 모집했다는 인터넷 자료 이후에는 최근 청소년 참여법정 참여인단 모집에 관한 인터넷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다[법률신문(2020. 4. 27. 기사), "울산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단' 모집",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72 (2026. 6. 25. 최종 확인)].

492) 청소년 참여법정 프로그램이 근래에 실시되지 않는 정확한 이유에 관한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다만, 2014년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인 '청소년 참여법정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131면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대상 건수의 증가 및 다른 지방법원에서의 도입 등 활성화의 움직임이 보이던 청소년 참여법정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유사한 시기에 도입했던 화해권고제도와 달리 청소년 참여법정은 소년법 내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또한 비슷한 시기에 도입했던 심리상담제도 등 후견복지 업무와 달리 기본 이념, 인력과 운영 형태가 복잡하고 생소하여 사법부 내부에서 다양한 이견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가정법원에서 도입 첫해부터 청소년 참여법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소년부 판사는 2010년 6개월간 총 207건을 청소년 참여법정에 회부하였다.... 2012년 이후부터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청소년 참여법정 실시 건수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소년 및 보호자의 참여 거부 건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 참여법정에 대한 동의율이 낮은 것은 청소년 참여법정이 일반 소년재판절차에 비해서 법원에 출석하는 횟수가 많다는 부담이 있고, 또래 청소년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거부감 때문이다".

자존감 회복을 유도하여 치료사법적 효용을 높이며, 청소년 참여인단이 된 학생은 사법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493]

조정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분쟁 당사자와 조정위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체험형 법교육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분쟁 해결을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판결 토론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구체적 판결을 바탕으로 판결이 타당한지 스스로 판단하고 토론하는 체험형 법교육이다. 이를 통해 법원의 판결이 임의적이 아니라 법 논리와 법적 기준을 따른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유형의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원은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의 유형과 내용을 제시하고, 학생이나 학교 등의 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원의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 사후 연계형 교육방식으로 체험형 프로그램이 형성되어야 한다. 사전 · 사후 연계형 교육방식의 예를 들면 학생들이 신청을 통해 법원방문을 하기 전, 법원 법교육과 관련한 정보나 자료 등을 미리 제공받아 교사 등을 통하여 학습하고 법교육 프로그램을 법원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사전 연계형). 그리고 법원방문 프로그램 진행 후 학생과 교사가 법원에서의 경험과 학습 내용 등을 바탕으로 논의 · 토론하고, 추후 판사와의 대화(질의응답) 시간 등을 통하여 법원에 피드백하고 응답받는 형식이다(사후 연계형).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물론 교사도 법원을 '구경하는' 경험이 아니라, 법원을 '실질적인 법교육 장소'로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계형 교육방식은 '학교로 찾아가는 판사의 방문강의'에도 적용될 수 있다.

493)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65&gubun=41 (2026. 6. 25. 최종 확인).

제4절 법교육 자료의 제작 및 배포

I. 법원의 현황

법원의 대표적인 법교육 교재로는 법원행정처가 2019년에 발행한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제1권~제5권)”이다. 물론, 법원은 이 교재를 활용하여 청소년을 법교육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교재는 다음과 같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법교육 기관에서 발간한 법교육 강의교재의 내용과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한다. 둘째, 내용적으로는 단순 정보전달형이 아닌 대화 및 소통형 강의가 가능한 방식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셋째, 소개하고 있는 내용과 판례가 가능한 최신 사항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소수의견 및 대법원 입장과 상반되는 하급심 소개도 필요하다고 한다. 넷째, 외국 주요 판례의 소개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우리 판례 등도 소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을 상대로 강의하기에는 수준이 다소 낮다고 한다.[494]

이에 따라 실제 청소년을 상대로 법교육 강의하는 판사들은 업무시간을 쪼개어, 법교육 강의자료를 따로 제작하거나 청소년 법교육을 담당하는 사법연수원 기획교수나 사법연수원에서 청소년 법교육 강의를 의뢰받은 판사들도 실제 이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는다고 한다.[495]

그리고 사법정책연구원이 2015년에 발간한 연구보고서인 ‘각급 법원의 중 · 고등학생 법원체험 프로그램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및 지도안’과 ‘법관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별책)’도 최초 발간 후, 기간의 경과로 인한 사회적 · 법적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법교육을 위한 계속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다.

494) 참고로 사법정책연구원 내부 검토회의에서는 고등학생을 상대로 강의하기에는 수준이 다소 낮다는 의견에 대하여 진로선택과목인 ‘법과 사회’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보기에 수준이 낮은 것이지, 고등학교에서 ‘통합사회’만 수강한 학생들이나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보기에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다.

495) 사법연수원 측과의 면담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II. 다른 (해외) 법교육 주체의 현황

현재 법원 외 다른 법교육 주체들은 개별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른 법교육 관련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은 자체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헌법' 등을 제작하여 법교육에 활용하고 이를 배포하고 있으며, 한국법교육센터도 강의 대상인 청소년의 연령과 법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하게 다양한 교재를 제작하여 법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법교육센터의 법교육 자료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솔로몬로파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등도 이 자료를 활용하거나 교재제작에 참고하고 있다.

다만, 한국법교육센터 등이 제작 · 배포하고 있는 법교육 자료들의 주요 내용은 법에 관한 일반적 소개, 헌법의 기본 원리(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와 인권 및 기본권, 가족관계와 법, 계약과 불법행위, 형법과 형사절차, 학생 ·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학교폭력, 근로와 법, 게임과 법, 현대적 법률관계(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범죄 등) 등이 대부분이고, 법원에 대한 내용의 비중이 작다.

그리고 법원에 관한 소개의 내용도 법원의 역할, 법원과 재판의 종류, 재판절차 등에 관하여 개념 중심의 요약적 서술형식으로만 되어 있고, 제시된 사례도 제한적이다. 물론 이러한 법교육 자료들이 법원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공하는 것에는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실제 법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은 실제 재판과의 거리감을 느끼고, 법원을 단순히 '판결하는 곳'으로만 인식하기 쉽다.

특히, 한국법교육센터가 청소년 법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2024년 발간된 법교육 교재인 '청소년의 법과 생활'은 총 3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법원에 관한 내용은 없다.

[표 76] '청소년의 법과 생활'의 내용

○ 제1장 인간 존엄: 인간이라면 그 자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가치 –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명문화, 우리 헌법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
○ 제2장 민주 공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 헌법 제1조의 역사, 민주 공화국의 보장: 헌법

○ 제3장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을까?
– 표현의 자유,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 제4장 평등: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 평등권의 역사, 우리나라에서의 평등권 보호

○ 제5장 인간다운 생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간다운 생활의 조건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우리 헌법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 제6장 학생 인권: 학생의 인권도 어른의 인권만큼 소중하다
– 학생 인권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

○ 제7장 헌법소원: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 헌법재판이란 무엇일까?,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국민의 기본권 지킴이, 헌법소원 심판

○ 제8장 결혼과 이혼: 결혼, 이혼, 어떻게 달라질까?
– 혼인이란 무엇일까?, 혼인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혼이란 무엇일까?, 이혼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 제9장 부모와 자녀: 가족이란 무엇일까?
– 부모와 자녀 간의 가족관계, 자녀가 태어났어요–친생자, 입양으로 만들어진 부모–자녀 관계,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 친권

○ 제10장 상속과 유언: 유언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질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질까?, 상속,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상속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까?

○ 제11장 죄형법정주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일까?, 우리나라 형법상 '범죄'란 무엇이며, '형벌'에는 무엇이 있을까?

○ 제12장 형사 절차와 인권: 범죄 용의자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이유는?
– 형사법의 기본 이념은 무엇일까?,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형사절차에서 인권은 어떻게 보호될까?

○ 제13장 아동학대: '사랑의 매'도 안 됩니다.
– 한국 사회에서의 아동학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아동의 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

○ 제14장 성희롱과 성범죄: '사랑'은 서로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
–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희롱 · 성폭력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희롱, 성범죄를 어떻게 예방하거나 구제할까?

○ 제15장 계약: 나도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
– 계약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 미성년자도 계약을 할 수 있을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까?,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제16장 근로: 중학생도 철야 택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 아동 노동의 역사, 아동 노동에 대한 법의 보호: 헌법과 근로기준법, 아동 노동에 대한 법적 구제/입법 방안

○ 제17장 부동산: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부동산이란 무엇일까?, 부동산 등기, 어떻게 읽을까?, 주택 임대차란 무엇일까?,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

○ 제18장 소비자 보호: 청소년의 소비 생활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 청소년의 물품 구매, 전자 상거래와 법, 소비자 문제 발생,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제19장 학교폭력과 소년사건: 대한민국, '소년'을 부탁해!
–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 대안은 무엇일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서 처벌을 강화하면, 소년사건이 줄어들까?

○ 제20장 저작권 보호: 저작권을 왜 보호해야 하는 것일까?
–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표현에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 보호의 역사, 저작권은 왜 보호해야 할까?, 이런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저작권을 침해하면 항상 처벌을 받을까?

○ 제21장 사이버 범죄: 택배 배송 문자, 뭔가 이상한데?
–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증가, 사례로 보는 사이버 범죄, 사이버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면?

○ 제22장 인공 지능: 우리는 인공 지능과 공생할 수 있을까?
– 인공 지능의 발전 단계, 인공 지능과 지능형 로봇, 챗 GPT, 인공 지능과 자율 주행 자동차

○ 제23장 게임과 법: 청소년의 게임 제한은 정당한가?
– 게임 셧다운제 폐지, 청소년의 게임 제한, 게임 산업과 법

○ 제24장 차별과 혐오: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차이를 매개로 행해지는 차별, 미묘하고 심오한 차별과 평등의 세계, 차별은 혐오에서 자라나고, 다시 혐오를 키운다,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 제25장 팬데믹과 건강: 감염병 확대 방지 VS 개인의 사생활 보호
– 팬데믹에 대한 법의 보호: 헌법과 감염병예방법, 국민 건강과 법: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 제26장 빅데이터와 개인 정보: 당신의 개인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 개인 정보의 의미, 개인 정보에 대한 법의 보호: 개인 정보 보호법, 개인 정보 유형과 개인 정보 침해 신고

○ 제27장 동물권: 동물들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 동물권에 대한 논의, 동물과 관련된 법: 동물보호법

○ 제28장 환경: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 헌법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 녹색 성장 기본법, 기후 위기와 국제적 협력

○ 제29장 입법 참여: 입법 참여를 통해 주권자가 되다.
– 우리는 정말로 주권자일까?, 시민들의 입법 참여가 필요하다, 어떻게 입법 참여를 할 수 있을까?

○ 제30장 선거와 정치: 정치는 어른들만의 전유물일까?
– 선거란 무엇일까?, 헌법에 나타난 선거 제도의 기본 원칙,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시대

주요 외국 중, 특히 미국의 연방사법센터의 경우에는 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법원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교육 자료를 제작 · 배포하고 있는데, 이 법교육 자료의 주요 내용에는 연방사법부의 역사와 발전과정, 주요 판결의 역사적 의미, 연방법원과 주 법원의 관할과 상호 관계, 연방법원의 조직 구조와 판사의 역할, 법원의 사건 처리 절차, 법원 직원의 역할 등이 포함되어 있다.

III. 개선방안

우선 법원의 대표적인 법교육 교재인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제1권~제5권)'를 위에서 서술한 개선점을 바탕으로 수정하고 보충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사법정책연구원의 법교육 관련 연구보고서도 그러하다. 법원이 법교육 자료를 제작하는 경우, 학교 교과서나 다른 법교육 주체들의 법교육 자료의 내용과 최대한 중복을 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법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흥미

로운 주제와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법교육 교재의 주제와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법관에 대한 질문 사항들[496]을 수집하고 체계화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법교육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법교육 교사와 법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 대한 기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법교육 교재의 내용을 구성할 필요도 있다.

더 나아가 법원의 법교육 자료는 단편적인 법 지식 전달이 아닌, 법원과 사법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이를 통한 법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법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언론매체, 풍문 등으로 인하여 잘못 인식되고 있는 법원과 판사에 대한 부정적 사항 등을 제거하고, 법원이 국민의 권익,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인간의 존엄성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최종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제고할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법원의 법교육 자료의 제작 및 배포는 단순한 법원 홍보가 아니다. 법원은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므로, 공신력 있는 법원이 법교육 자료를 제작 · 배포하는 경우에는 학교와 민간 법교육 자료에 대한 표준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청소년 법교육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다.

법교육 자료 개발 및 연구를 위하여 법원 내 가칭 '법교육실무연구회'를 구성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법교육을 주요 업무 중의 하나로 하고 있는 사법연수원이 법교육실무연구위원회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통일적이고 표준적인 법교육 자료를 제작 · 배포한다면, 각급 법원의 법교육 강사가 이 자료를 참조하여 자료작성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고,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법원의 법교육 효과의 균질성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496) 예를 들어, 제3장(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제4절(각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Ⅱ. 법원 체험 프로그램에서 부산고등법원 법원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의 질문 목록 참조.

제5절 법원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의 구축

I.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의 장점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을 통한 청소년 법교육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청소년이 시간과 공간의 구애 없이 쉽게 법교육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다.

둘째, 검색과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법 지식에 접근하고, 이를 학습할 수 있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에 댓글과 실시간 채팅 기능이 있는 경우, 법교육자와 청소년 간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 기존의 강의식 교육보다 효과적이다.

넷째,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법교육 담당자도 쉽게 법교육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다섯째, 텍스트보다는 영상이 직관적이고, 법 개념이나 법절차 등이 영상 · 자막 · 그래픽 등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추상적인 법 개념 등에 대한 이해도 향상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여섯째, 반복 재생을 통해 개인 학습 속도에 맞춰 학습할 수 있다.

일곱째, 일회성 강의와 달리 한 번 제작된 영상은 장기간 활용 가능하므로 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법 개정이나 판례 변화에 따라 업데이트된 영상을 추가 제작함으로써 지속적 교육이 가능하다.

II. 법원의 현황과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의 의의

법교육에서의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은 이를 구축하고 있지 않다. 물론 법원도 청소년 법교육에 있어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와 대법원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지만,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에는 법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고, 법교육 자료도 많이 담고 있지 않다.[497] 그리고 대법원 유튜브에도

497) 예를 들어,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에는 대법원과 사법부(사법부 소개, 사법부 조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법교육 전용 재생목록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이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학습하기에는 적합한 영상을 검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법원이 법교육을 위한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경우, 오프라인 견학 · 강의 중심 법교육의 한계 보완하기 때문에 법교육 대상 확대와 법교육에서의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일회성 법교육에서 상시 학습 구조로 전환할 수 있어 법교육의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연령 · 역량 · 교육 목적에 따른 차별화된 법교육도 제공할 수 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개별 법원과 사법연수원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법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법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한 각종 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도 있다.

III. 다른 (해외) 법교육 주체의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예를 들어 법무부가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인 '이로운법'을 구축하여 청소년 법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외국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미국 연방법원행정처[498]와 영국 법원행정처(Judicial Office)[499]는 청소년 법교육을 위한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청소년 법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의 경우, '이로운법'을 통하여,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교육 신청을 받고 있으며, 법교육 콘텐츠(영상, 게임)를 게시하고 있으며, 법교육 강의안과 논문 및 교사자료, 교재, 법교육 프로그램 등도 배포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 유튜브인 '범죄예방 365', 법무부 산하 법교육 기관인 솔로몬로파크 및 (법교육) 관련 단체 등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이로운법'은 국내의 대표적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500]

법원이 하는 일(법원의 필요성, 법원의 역할, 법원의 종류 등), 법관이 되려면(법관이란, 법관의 자격, 법원공무원 등), 재판의 종류와 절차(재판의 청구, 재판청구권 보장 등) 등과 같은 기본 사항들만 내용적으로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고, 법교육 애니메이션 영상도 4편만이 수록되어 있다.

498) 미국 연방법원행정처 홈페이지, https://www.uscourts.gov/about-federal-courts/educational-resources# (2026. 6. 25. 최종 확인).

499) 영국 사법부 홈페이지, https://www.judiciary.uk/about-the-judiciary/diversity/schools-engagement/resources-for-teachers-and-learners/ (2026. 6. 25. 최종 확인).

500) 다만, 법무부 보호정책과 '이로운법' 담당자(02-2110-3464) 문의 결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영상의 경우에는 숏폼 형식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영상 활용도는 높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2025년 2월 21일 공지된 '이로운법 교육신청 이용방법 안내' 조회 건수가 2026년 4월 16일 기준으로 6,015명인 점,

Ⅳ.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의 핵심적 내용 구성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의 핵심적 내용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내용 구성은 크게 대상별 맞춤 교육 콘텐츠 체계와 기능별 콘텐츠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플랫폼의 핵심적 내용을 예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77] 대상별 맞춤 교육 콘텐츠 체계와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청소년 대상 콘텐츠	○ 법의 개념과 법률용어, 헌법 기초, 권리와 의무, 법원의 구조와 역할, 판사의 지위와 역할, 판결절차와 판결의 유형, 학교 · 청소년 관련 법률 등 ○ 모의재판 영상, 법교육 관련 애니메이션 등 ○ 판사의 (실시간) 영상 강의 및 Q&A 등 ○ 학교 교육과정 연계 모듈 ○ 자기평가 및 법교육 만족도 조사
일반 시민 대상 콘텐츠	○ 생활법률(계약, 소비자, 노동, 가족, 상속) ○ 재판 이용 안내(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등), 나 홀로 소송 등 ○ 이 판결은 이렇습니다(사회적 이슈 판결 및 역사적 판결 등에 대한 해설, 판결과 사회적 영향 등). ○ 디지털 범죄 · 지식재산권 · 개인정보 보호 등 현안 법교육 ○ 고령자 ·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쉬운 법교육
법교육 담당자 및 교사용 콘텐츠	○ 강의안과 법원견학, 모의재판 등 체험 프로그램 자료 ○ 학교 법교육 수업자료(PPT, 지도안, 교재 등) ○ 판사 참여 수업 영상 아카이브 ○ 법원 연계 수업 사례 DB

그리고 자료실에 게시된 교사자료, 교재 등에 대한 게시일 대비 기간 조회 건수 등을 고려한 경우에는 법교육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활용 및 효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78] 기능별 교육 콘텐츠 체계

구분	주요 내용
기초 강좌	법교육 대상에 따른 개별 강의 주제
체험형 콘텐츠	가상 법원 (전시관) 견학, 온라인 모의재판 등
영상 콘텐츠	판사 강의, 판례 해설 관련 법영상, 법해설 영상, 법교육 애니메이션 등
참여형 콘텐츠	퀴즈, 토론 및 질문 게시판, 챗봇 등
자료실	판례 해설, 카드뉴스, 사진 자료, 소책자 등

추가로 법원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에는 법교육 신청란, 전국 법원의 법교육 일정표, 다국어 법교육 자료, 대법원 유튜브, 전국 법원 홈페이지 및 법교육 관련 사이트 등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의 기획 · 운영주체는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하여 법원을 홍보하고,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대법원 차원에서의 법교육을 담당하고 전국 법원의 법교육을 총괄 · 기획할 수 있는 대법원 공보관실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6절 가칭 '사법부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I. 규칙제정의 필요성

민주적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법의식 함양은 사법제도의 정당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적 기반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은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법문화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교육 주체로서 여러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개별 법원 단위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한 교육내용의 표준화 부족, 지역 간 격차, 법교육의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체계 미흡, 학교 법교육 과정과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부 차원의 체계적인 법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교육을 총괄 · 조정하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고, 가칭 '사법부 법교육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단순한 조직 설치를 넘어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정한 가칭 '사법부 법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대법원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법부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목적, 기능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교육 정책의 통합적 기획 및 조정, 교육내용 및 운영 기준의 표준화, 전문성 강화 및 인력 양성체계 구축, 타 기관과의 협력 및 정책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각급 법원의 법교육 예산의 법적 근거도 되기 때문에, 각급 법원의 지속 가능한 법교육 활동도 보장할 수 있다.

II. 규칙제정안의 예시

가칭 '사법부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9] 가칭 '사법부의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안 예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부의 법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과 법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법교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부가 법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에게 법적 지식과 법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리) ① 사법부의 법교육은 단순한 법 지식의 전달과 권리 보호의 증진을 넘어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와 사법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② 사법부는 모든 국민에게 법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③ 사법부는 법교육의 효율적 수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등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법부의 법교육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설치와 기능)
① 대법원은 법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한다.
1. 법교육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의 수립
2. 법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3.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교육 관련 자료와 그 배포 및 콘텐츠 개발
4. 법교육의 평가 및 개선 사항 도출
5.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법교육 수행 등에서의 협력체제의 구축
7. 법교육 시설의 확충과 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2. 법원공무원
3. 법교육 관련 대학교수
4. 그 밖에 법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서 자격 유지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교육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의 3분의 1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조사 등의 의뢰와 의견수렴)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사법부 법교육 실무협의회) 위원회는 법교육 관련 기관 · 단체 등이 참여하는 법교육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7절 기타

I. 법교육에서의 협력관계 구축의 확대

법원은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가 본질적 임무이기 때문에, 그만큼 법교육의 확산성과 법교육 전념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원은 외부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교육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경우에도 법교육지원법 제5조에 따라 외부기관, 단체 및 시설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법 제10조에 근거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사법연수원과 일부 법원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법교육 주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참고로 최근 2026년 1월 30일에 헌법재판연구원은 학교 현장에서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법무부, 법제처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501] 이를 통해 헌법재판연구원의 헌법교육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교육청 외에 다른 법교육 주체와의 협력관계 구축하는 경우, 법원은 청소년 법교육 수요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법원 법교육의 홍보,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법교육 체계의 구축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외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법원의 법교육에 대한 평가도 받을 수 있다.

즉, 법원은 외부기관, 특히 청소년 법교육에서의 경험과 조직체계 등을 갖춘 기관과의 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하여 법원 법교육의 효율성과 내실화에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법원 법교육의 활성화와도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501) 뉴스1(2026. 1. 30. 기사), “학교 현장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모인 교육부 · 법무부 · 법제처 · 헌법재판연구원”, https://www.news1.kr/photos/7724222 (2026. 6. 25. 최종 확인).

II. 법교육 경연대회의 활성화

법원의 법교육 경연대회는 크게 학생 또는 사회과 교사 법교육 경연대회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생 법교육 경연대회로는 대표적으로 모의재판 경연대회, 사회과 교사 법교육 경연대회로는 우수 법교육 (수업)경연대회가 있다. 이 외에도 학생 법교육 경연대회는 법 · 인권 토론대회, 법교육 콘텐츠(에세이, 영상, 웹툰 등) 경연대회, 판례 분석 경연 등이 있을 수 있다.

법원이 헌법재판연구원의 사례처럼 교사(사범대 학생 포함)의 우수 수업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우수 수업 사례와 법교육 콘텐츠를 확보하여 이를 법원 법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경우에는 단순한 행사형 프로그램을 넘어, 참여형 · 경험형 법교육의 정점으로서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가시화한다. 법교육 경연대회에서는 학생이 '듣는 주체'가 아니라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참여하며, 경연대회에서는 법적 사고력과 논리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학생들도 이에 맞추어 학습 동기가 고양된다. 특히 모의재판 경연대회 준비과정에 판사가 멘토링 역할을 하는 경우, 학습효과와 사법 신뢰는 배가된다. 결국, 법원에 의한 법교육 경연대회의 활성화는 학교와 법원 법교육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사법 신뢰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법교육 경연대회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502]

법원 법교육 경연대회는 각급 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단위에서의 개최와 대법원 또는 사법연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 단위에서의 개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국 단위의 경연대회는 법원의 법교육에 대한 전국적 홍보와 법원 법교육의 전국적 표준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단위에서의 법원 법교육 경연대회보다 더욱 중요하다.[503]

---

502) 부산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매년 정기적으로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상당수 법원은 근래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도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03) 대법원이 주최하고 사법연수원이 주관하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와는 달리,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경연대회는 현재 개최되고 있지 않다.

III. 교사에 대한 사법교육 직무연수의 강화와 활성화

1. 사법교육 직무연수의 의의

법원의 법교육은 주로 학생을 직접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실제 학교 교육현장에서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는 교사이다. 따라서 교사의 법적 이해 수준과 교육 역량은 법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교사가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에게 법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핵심 주체이기는 하지만, 실제 많은 교사들이 법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개념과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법원이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25년 12월 2일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504] 제1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법교육 강의 ·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1978년 미국 연방교육부의 법교육에 관한 최종 보고서에서는 법교육 발전방안으로 연방교육부의 교사연수를 제시하였고, 미국의 법교육주체인 시민교육센터와 각 주 법원들은 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무부는 솔로몬로파크 등을 통하여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연구원의 경우에도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교사의 교육역량 제고, 학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전파를 위하여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교사, 특히 사회과 교사에 대한 법원의 법교육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법교육에 법원의 법교육을 구조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즉,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은 법원의 법교육이 간접적으로 수많은 학생에게 확산되는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교사를 매개로 학생들의 법원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학생에 대한 법교육은 물론 교사에 대한 사법교육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 사법교육 직무연수의 강화와 활성화 방안

사법연수원은 전국 중 ·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법교육 직무연수를 하고

504) 김병주 의원 대표 발의(2025. 12. 2.),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4795.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에는 2박 3일 일정(연수시간 15시간)으로 교사 40명(사회과 및 생활지도업무 담당교사 우선)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505] 그리고 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8월에 1박 2일 일정으로 '선생님을 위한 생생 사법마당(교사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506]

그러나 사법연수원의 사법교육 직무연수는 많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연 1회 교사 40명을 상대로만 한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507] 그리고 사법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지 않는 일선 법원들이 많았고, 실시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508]

교사에 대한 사법교육 직무연수의 의의를 고려할 때, 직무연수가 더욱 강화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우선 직무연수의 수요를 반영하여, 연수 횟수와 연수 기간 및 연수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참고로 법무부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솔로몬로파크 등의 법교육시설 등을 활용하여 3일에서 5일 동안 교사 300명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509]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연구용역보고서인 '사법연수원 발전계획의 방향성 점검 및 구체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사의 직무연수 개선방안으로 교사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직무연수를 연 2회로 확대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510]

한편, 각급 법원이 교사 직무연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직무연수 내용의 균질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사법교육 직무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경험이 축적된 사법연수원이 주축이 되어, 직무연수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연수자료를 전국 법원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사법연수원이 각급 법원의 사법교육 직무연수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

505)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B1%B3%BB%E7&searchOption=&seqnum=2583&gubun=3 (2026. 6. 25. 최종 확인).

506)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gwangju.scourt.go.kr/cb_bulletin/new/detlRetrieveBulletin.work?functionCode=2121&isAdmin=N&bubName=gwangju&bulletinId=48041 (2026. 6. 25. 최종 확인).

507) 이는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2025년도 교사 사법교육 직무연수 선정자 및 대기자 발표 명단에서 알 수 있다.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https://jrti.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7781&gubun=41&cbub_code=000130&searchWord=%B1%B3%BB%E7&pageIndex=1 (2026. 6. 25. 최종 확인).

508) 다만,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2015년 광주교육청 교육연수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매년 교사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연수원 홈페이지, https://eduup.gen.go.kr/common/bbs/management/selectCmmnBBSMgmtView.do?bbscttId=133314&menuId=1000003323&bbsId=BBSMSTR_000000000791 (2026. 6. 25. 최종 확인).

509)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moj.go.kr/bbs/moj/184/228232/artclView.do (2026. 6. 25. 최종 확인).

51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법연수원 발전계획의 방향성 점검 및 구체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21), 536.

제7장

결 론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청소년기는 도덕적 판단과 사회 규범 인식이 형성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장차 시민으로서 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의 기초가 마련되는 결정적인 시기이다. 이 시기에 형성된 법적 사고와 가치관은 성인이 된 이후의 법 준수 태도, 분쟁 해결 방식, 사법제도에 대한 인식과 신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은 단순한 법지식의 전달을 넘어, 청소년이 민주적 법치주의를 내면화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교육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정 내 법교육은 과목 편제와 입시 중심 구조, 교사의 전문성 및 수업 여건의 한계로 인해 이론 중심 · 주입식 교육에 머무르는 경향이 크다. 이에 따라 학교 법교육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학교 외 법교육 주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법교육 주체 중에서도 법원은 법을 최종적으로 해석 · 적용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학교 법교육의 보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사법에 대한 신뢰와 사법 접근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사법 신뢰와 사법 접근성은 단기간에 가시화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축적되는 사회적 자산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법교육은 중장기적인 사법정책적 목표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핵심 영역이다. 따라서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홍보 활동이 아니라, 법원에 대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사법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사법정책적 수단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법원의 법교육 가치는 학교 법교육의 현실적 공백보완 기능,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증진 기능, 합리적인 법 판단능력과 법적 사고력의 배양, 예방적 차원의 법 준수 태도 형성 기능, 법교육에서의 중립성 확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다른 법교육 주체의 법교육 보다 체험형 중심의 효과적인 법교육, 법의 공신력과 정당성에 대한 신뢰 형성,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이해, 실무경험에 기반한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법 이해의 측면에서 다른 법교육 주체보다 청소년 법교육에서의 강점을 가진다.

위와 같은 법원 법교육의 교육적 · 제도적 진가(眞價)에 발맞추어, 법원의 법교육

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대법원 공보관실 내에 법교육 담당관을 두고 이를 지원하는 인력을 확충하여 전국 법원의 법교육을 총괄 · 기획하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아울러 사법연수원에는 가칭 '법교육지원팀'을 설치하여 법교육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법교육 수요가 많은 일선 법원에서는 법교육 전담직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등법원 및 규모가 큰 지방법원에도 가칭 '법교육지원팀'을 두어 관할 법원 간 협력과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법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공보관실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 다층적 법교육 조직체계 구축 방안을 전제로 하며, 이는 법원 법교육 조직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조하는 방안이다. 대법원,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등이 각자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중앙(대법원)-권역(사법연수원, 고등법원)-현장(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다층적 법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방안이다.

둘째, 법원은 자체적인 법교육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법연수원은 법교육에 적성과 관심이 있는 법관을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법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사법연수원 내에 가칭 '법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원로법관이나 퇴직법관을 법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있으며, 법원 직원을 법교육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이 업무를 법원공무원교육원이 담당하는 방안도 있다.

셋째, 법원은 법교육 대상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교육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의 확충, 온라인 법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청소년 법교육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교육 수요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의 법원의 경우, 법교육 횟수를 늘리거나 법교육을 상시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의 날 등과 같은 기념일이나 중학생 자유학기제를 집중적인 법원 법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법교육 대상 인원이 확대되는 경우, 사법 접근성의 실질적 실현의 측면에서 사법

접근센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교육을 진행하고, 가정법원이 촉법소년에 대한 법교육을 전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넷째,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법교육 지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우선 청소년 법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에는 법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인근 법원의 출장 법교육을 활성화하고, 대법원 가인연수관과 대법원 사법역사문화교육관의 법교육 시설을 보강하여 청소년 법교육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서벽지 학생들의 법원 법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하여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법교육 프로그램 참여신청에서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다섯째, 법원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법원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의 의의를 고려할 때, 기존 체험형 프로그램 외에 배심원 토론과 결부된 그림자배심원 프로그램, 법원 인턴십 프로그램, 조정체험 프로그램 및 판결 토론, 청소년 참여법정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원의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전 · 사후 연계형 교육방식이 필요하다.

여섯째, 법원 법교육 자료의 경우에는 다른 법교육 자료의 내용과 최대한 중복을 피하는 방식으로, 법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흥미로운 주제와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법원과 사법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이를 통한 사법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적이고 표준적인 법교육 자료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원 내 가칭 '법교육실무연구회'를 구성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는데, 사법연수원이 법교육실무연구위원회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통일적이고 표준적인 법교육 자료를 제작 · 배포할 필요성이 있다.

일곱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청소년 법교육의 유용성을 고려할 때, 법원도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은 법교육에서 지역 격차 해소, 상시 학습 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법교육의 지속성 확보, 연령 · 역량 · 교육목적에 따른 차별화된 법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교육 실시 및 법교육 자료 등의 효율적으로 관리와 공유의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여덟째, 개별 법원을 통한 산발적 법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의 방지와 법원 법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칭 '사법부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아홉째,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수요 파악, 법교육의 홍보,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법교육 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청소년 법교육에서의 경험과 조직체계 등을 갖춘 법교육 주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열째, 법원이 교사(사범대 학생 포함)를 대상으로 한 우수 수업 경연대회와 같은 법교육 경연대회를 개최할 경우, 법원은 우수한 수업 사례와 법교육 콘텐츠를 확보하여 향후 법원 법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법적 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는 학생의 학습 동기가 강화되며, 학교와 법원의 법교육 내실화와 사법 신뢰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전국 단위의 경연대회는 법원의 법교육에 대한 홍보와 법원 법교육의 전국적 표준화를 실현할 수 있다.

열한 번째, 교사(특히 사회과 교사)에 대한 법원의 법교육을 통하여 학교 법교육에 법원 법교육을 구조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교사를 매개로 학생들의 법원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교사에 대한 사법교육 직무연수의 의의를 고려할 때, 직무연수가 더욱 강화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직무연수 수요를 반영하여, 연수 횟수와 연수 기간 및 연수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각급 법원이 교사 직무연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직무연수 내용의 균질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사법연수원이 개발하고 관련 연수자료를 전국 법원에 배포하고, 각급 법원의 사법교육 직무연수 담당자를 사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법교육은 청소년을 미래의 권리 주체이자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정책적 수단이다. 법원 법교육 과정에서 법원은 판결기관을 넘어 민주적 법치주의의 살아 있는 교육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결국 법원의 법교육은 사법부에 대한 이해 증진이나 이미지 개선을 넘어서, 청소년이 절차적 정의와 헌법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법원을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사법 신뢰와 사법 접

근성의 향상을 통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그 궁극적 의의가 있다.

이 보고서는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원의 법교육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법원 법교육의 의의와 중요성을 알고, 이를 통해 법원의 법교육이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1. 단행본

곽한영 외 5인, 법교육학 입문, 박영스토리 (2022).

곽한영, 법교육이란 무엇인가, 박영스토리 (2025).

김명아,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박원규,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4).

법교육연구위원회,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방향, 법무부 (2006).

법무부 · 한국법교육센터, 학생자치법교육 매뉴얼 (2019).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법연수원 발전계획의 방향성 점검 및 구체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21).

송현정, 미국 연방사법센터(FJC)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2).

이계정 외 3인, 법학기초정책연구 Ⅰ –법치주의의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5).

이유봉,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24).

이종훈 · 표현덕,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변화에 대응한 법교육 혁신 방안 연구, 법무부 (2020).

정상우(연구책임자), 법교육지원법 개정 방향 및 내용 연구, 법무부 (2015).

조용혁 · 윤태영(연구책임자), 법사회학연구Ⅰ –법학기초교육 · 연구 강화를 위한 법전문가 의식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25).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201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법교육 관련 초중등 교육과정 발전방안 연구, 법무부 (2011).

한국법교육학회, 사법부의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법원행정처 (2009).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조사평가팀, 2025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25).

허성진, 법교육기초연구Ⅰ –우리나라 법교육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5).

황승태, 법관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5).

2. 논문

곽한영, “법,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법연 Vol. 88 (2025. 9.).

_____, “재판원제도의 시행에 대응하는 일본의 법교육 사례 연구”, 법교육연구 제19권 제3호 (2024. 12.).

김갑석, “법교육지원법이 한국 법교육 실천에 미친 영향”,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1권 제3호 (2018. 12.).

_____, “솔로몬로파크에서의 법교육 현황과 과제”, 법교육연구 제19권 제3호 (2024. 12.).

김대홍,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일본 법교육의 변화”, 법교육연구 제13권 제3호 (2018. 12.).

김명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정치와 법의 통합 문제 –2022 교육과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2021. 8. 30.).

김범주 · 정순원, “미국 법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시사점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관련법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2호 (2011. 8.).

김순희, “사회과 법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법교육의 본질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5권 제3호 (2008).

김재연,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의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8.).

김주선, “강의식 법교육과 학생자치법정이 고등학생의 법의식에 미치는 효과”,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권 (2008. 12.).

_____, “법교육 방법이 법의식 형성에 미치는 효과 –고등학교에서의 강의식 법교육과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류기형, “학생자치법정을 활용한 학교 법교육이 중고등학생들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박종선, “청소년의 법의식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 한국과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화학연구 제14권 제4호 (2013).

서지수 · 박성혁,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생활법교육 내용 범위 및 계열 분석”, 법교육연구 제20권 제2호 (2025. 8.).

설규주,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민교육연구 제50권 제3호 (2018. 9.).

오승호 · 곽한영, “미국 법교육 교과서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교사교육연구 제51권 제1호 (2012. 4.).

우지희,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이기우, “독일과 미국의 법교육”,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제17호 (1993. 8.).

이대성,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학교 법교육의 실천 과제”, 사회과교육연구 제16권 제3호 (2009).

이수진,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법영역의 변화와 쟁점”,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6권 제2호 (2023. 8.).

정상우 · 강은영,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법과 사회〉 과목의 전망”, 법교육연구 제17권 제3호 (2022. 12.).

정순원, “학생자치법정 확대를 위한 제도화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제4권 제3호 (2011. 12.).

조진우, “법교육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비교법연구 제16권 제4호 (2016. 12.).
한아름,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통한 법교육의 효과 분석”, 법과인권교육연구 제2권 제2호 (2009. 8.).
허종렬, “우리나라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 (2010. 12.).
허종렬 · 박형근 · 고영은, “사회과 법교육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제20권 제2호 (2010. 1.).
허종렬 · 박형근 · 이지혜, “미국 청소년자치법정 효과 분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자치법정의 활용 가능성을 위한 시사점”, 법과인권교육연구 제5권 제3호 (2012. 12.).

3. 기타 자료

(주)천재교과서 홈페이지, https://chunjae.co.kr
MBN 뉴스(2007. 8. 29.), “대법원, ‘사법부 블로그’ 개설”, https://www.mbn.co.kr/news/society/253077
경기공유학교 홈페이지, https://gong-u.goe.go.kr
경기도교육청, 2026 경기공유학교 운영계획 (2025. 12.).
경북매일(2017. 6. 13. 기사), “울릉도 간 ‘찾아가는 로파크 버스’”, https://www.kbmaeil.com/article/201706130194658
경북일보(2016. 4. 10. 기사), “대구지법, 초 · 중학생 대상 상설 법률 문화학교 운영”,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6201
_____(2022. 12. 6. 기사), “의성중, 대구지법 의성지원 견학…형사재판 방청”,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700
경상매일신문(2025. 6. 12. 기사),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법체험 프로그램’ 운영”, https://www.ksmnews.co.kr/news/view.php?idx=545456
경인매일(2025. 6. 4. 기사), “고양교육지원청–사법연수원, 공유학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815
경향신문(2023. 8. 30. 기사), “‘무지의 벽’ 부술 법교육 지원법엔 무관심…위원회는 존폐기로”, https://www.khan.co.kr/article/202308302131005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https://www.spo.go.kr/site/mokpo/main.do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gwangju.scourt.go.kr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 2021.
_____,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022.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sc/exp/main.work
국민일보(2010. 2. 28.), “특목고 싹쓸이에 분리시상…역차별 · 형평성 싸고 공방”,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3456997

국회고성연수원 홈페이지, https://yeyak.assembly.go.kr
국회박물관 홈페이지, https://museum.assembly.go.kr/museum/main/main.do
금강일보(2018. 9. 17. 기사), “눈높이 맞춘 법 이야기, 판사들의 법률학교”, 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46698
기호일보(2023. 8. 23. 기사), “인천 미추홀외고, 학생자치법정 열어 학생자치 꽃 피우다”,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996
김병주 의원 대표 발의(2025. 12. 2.),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4795.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kimchangprobono.com
뉴스1(2025. 9. 10. 기사), “창원지법,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진로모색 기회 제공’”, 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5907311
_____(2026. 1. 30. 기사), “학교 현장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모인 교육부 · 법무부 · 법제처 · 헌법재판연구원”, https://www.news1.kr/photos/7724222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s://www.spo.go.kr
대경일보(2025. 4. 28. 기사), “나도 오늘은 검사 ‘법의 날 기념’ 경주 법 체험 교실”,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94208
대법원 법원전시관 홈페이지, https://museum.scourt.go.kr
대법원 보도자료(2013. 4. 22.), 대한민국 법원으로 초대합니다, 4. 25. ‘법의 날’ 맞이 법원견학 활성화 캠페인(Open Court) 전국 법원 동시개최.
_____(2014. 9. 19.), ‘대한민국 법원으로 초대합니다’ 2014. 9. 19. 법원행정처-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대법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_zzang
대법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VyP8gMq5m5Ki02l6ZwEHRw
대전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s://djgodung.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홈페이지, https://ecfs.scourt.go.kr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youthassembly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홈페이지, https://www.youthassembly.or.kr
대한민국어린이국회 홈페이지, https://child.assembly.go.kr/child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edu.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2025 법률구조연감 (2025).
로이슈(2025. 9. 11. 기사),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회복적사법 전문교육과정 운영”,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911015372879a8c8bf58f_12
리걸타임즈(2025. 8. 8. 기사), “부산가법 주최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금정고 대상”,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510
법률신문(2018. 11. 8. 기사), “사법연수원, ‘신임법관이 함께하는 특수학교직업체험’ 실시”,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119

_____(2018. 7. 6. 기사), “법원공무원교육원, 찾아가는 법교육 강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640
_____(2024. 10. 5. 기사), “세 살 법교육 여든까지”,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39
_____(2025. 7. 5. 기사), “고등학생도 법을 알고싶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9428
_____(2025. 8. 8. 기사), “박주홍 두실초 교사 대상… 헌법재판연구원, 제9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 https://www.lawtimes.co.kr/news/210386
법률저널(2025. 3. 6. 기사), “법령과 친구처럼…법제처 정책 서포터즈 출범 및 법제관 모집”,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9541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 https://barunlaw.com
법무부 광주 솔로몬로파크 홈페이지, https://solomon.lawnorder.go.kr/gj
법무부 대전 솔로몬로파크 홈페이지, https://solomon.lawnorder.go.kr/dj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s://www.cppb.go.kr
법무부 보도자료(2025. 8. 28.), 법무부,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으로 섬마을 청소년 1,000명을 만나다 – 도서벽지 학생 맞춤형 서비스로, 법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 –.
법무부 보호정책과, 2024 학교 법교육 프로그램 안내 (2024).
법무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jjustice
법무부 이로운법 홈페이지, https://www.lawnorder.go.kr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kids
법제처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egin
법제처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index.es?sid=a2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busan.scourt.go.kr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https://jrti.scourt.go.kr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https://slfamily.scourt.go.kr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sldongbu.scourt.go.kr
서울북부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slbukbu.scourt.go.kr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https://www.smc.seoul.kr
에듀인뉴스(2017. 5. 30. 기사), “미국 헌법교육,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37
연합뉴스 한민족센터(2022. 9. 13. 기사), “광주지법, 법원의 날 맞아 고려인마을 찾아 학생들과 소통”,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708662
연합뉴스(2025. 1. 7. 기사), “[광주소식] 솔로몬로파크 2024년 방문객 9만 6천여 명”,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7128000054?input=1195m
우리역사넷 홈페이지, https://contents.history.go.kr/resources/front/html/txthj_p_03.htm

유튜브 범죄예방 365 홈페이지, https://www.youtube.com/@cppbmoj/playlists
유튜브 차산선생법률상식, https://www.youtube.com/@%EC%B0%A8%EC%82%B0%EC%84%A0%EC%83%9D%EB%B2%95%EB%A5%A0%EC%83%81%EC%8B%9D-d6j/playlists
입법발전소 블로그, https://blog.naver.com/legislationpp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홈페이지, https://www.xn--3e0bn6ensbu5sxvistd02etg.kr/kr/index.php
전남투데이 신문방송(2023. 5. 31. 기사),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지방법원과 '1학교 1법관 진로멘토링' 체결", https://www.jntoday.co.kr/news/article.html?no=135007
진일보, "진짜 법정서 열린 모의재판… 학생들, 정의 실현 체험", https://www.j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00004122 (2026. 3. 26.)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changwon.scourt.go.kr
천지일보(2025. 7. 28. 기사), "서울 교원 · 학생 법 소양 키운다… 서울교육청, 헌법 · 법률교육 프로그램 운영",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8114
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chuncheon.scourt.go.kr
파이낸셜 뉴스(2019. 4. 6. 기사), "로펌공익네트워크-서울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실' 확대 시행", https://www.fnnews.com/news/201904031343396062
한겨레신문(2025. 5. 15. 기사), "두 번째로 높았던 '법원 신뢰도' 6개월 새 밑에서 두 번째로 추락",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97519.html
한경닷컴(2008. 10. 3. 기사) "[생글기자 코너] 경시대회, 학습자료부터 제공해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0809246556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 https://www.suneung.re.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s://www.archives.go.kr
헌법재판소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ourtkorea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https://kids.ccourt.go.kr
헌법재판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courtkorea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4 연차보고서 (2025).
_____, 국민과 함께하는 헌법재판연구원 (2024).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s://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기능 강화방안, 정책개발연구 제13권 (2021).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 https://ri.ccourt.go.kr
헌법재판연구원, 제9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자료집 (2025).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2021. 6. 22.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950).
화우공익재단, 2024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2025).

【해외 문헌】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justiz.nrw

독일 뮌헨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s://www.justiz.bayern.de/gerichte-und-behoerden/oberlandesgerichte/muenchen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법무부 홈페이지, https://jum.baden-wuerttemberg.de/de/justiz

독일 변호사협회 홈페이지, https://rechtsstaat-erleben.de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법무부 홈페이지, https://mdjd.brandenburg.de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판사연합 홈페이지, https://www.drb-brandenburg.de

독일 연방일반법원 홈페이지, https://www.bundesgerichtshof.de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홈페이지, https://www.bpb.de

독일 함부르크주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hamburg.de/politik-und-verwaltung/behoerden/bjv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www.mad.uscourts.gov

미국 '민주주의를 가르치다' 협회 홈페이지, https://teachdemocracy.org

미국 Judicial Learning Center 홈페이지, https://judiciallearningcenter.org

미국 Street Law Resource Library 홈페이지, https://store.streetlaw.org

미국 Street Law 홈페이지, https://streetlaw.org

미국 법률가 연합 홈페이지, https://www.americanlawyersalliance.org

미국 시민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www.civiced.org

미국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https://www.supremecourt.gov

미국 연방법원행정처 법교육 홈페이지, https://www.uscourts.gov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홈페이지, https://justiceforall.ca2.uscourts.gov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홈페이지, https://www.ca9.uscourts.gov

미국변호사협회 홈페이지, https://www.americanbar.org

미시간주 대법원 학습센터 홈페이지, https://www.courts.michigan.gov

북독일 방송(NDR) 홈페이지, https://www.ndr.de

연방사법센터 홈페이지, https://www.fjc.gov

영국 대법원 홈페이지, https://supremecourt.uk

영국 법정변호사협회 홈페이지, https://www.barcouncil.org.uk

영국 사법부 홈페이지, https://www.judiciary.uk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

오사카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www.courts.go.jp/osaka

워싱턴주 법원 홈페이지, https://www.courts.wa.gov

일본 교과서협회 홈페이지, https://www.textbook.or.jp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j.go.jp
일본 변호사연합회 홈페이지, https://www.nichibenren.or.jp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 홈페이지, https://www.shiho-shoshi.or.jp
일본 최고재판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ourtsjapan
일본 최고재판소 홈페이지, https://www.courts.go.jp
치안판사협회 홈페이지, https://www.magistrates-association.org.uk
캘리포니아주 법원 홈페이지, https://courts.ca.gov
코네티컷주 법원 홈페이지, https://www.jud.ct.gov
테네시주 법원행정처 홈페이지, https://www.tncourts.gov
통계회사 Statista 홈페이지, https://de.statista.com
Parlamentarischer Beratungs- und Gutachterdienst des Landtags Nordrhein-Westfalen, Rechtskundeunterricht-Unterrichtskonzept in Nordrhein-Westfalen im Vergleich mit anderen Bundesländern und europäischen Ländern, 2020.
Young Citizens 홈페이지, https://www.youngcitizens.org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 2014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정	2014. 12. 30.
2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양시훈	2014. 12. 30.
3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 · 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 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강민호	2014. 12. 30.
4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양은상	2014. 12. 30.

▣ 2015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석	2015. 2. 27.
2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별책: 모의재판 시나리오 및 지도안]	박원규	2015. 2. 27.
3	오스트리아 司法制度 硏究 – 최고재판소, 행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의 상호 관계에 대한 헌법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	김태호	2015. 2. 27.
4	법관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별책: 강의안(PPT 및 해설 자료)]	황승태	2015. 5. 22.
5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철 양은상	2015. 5. 29.
6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양시훈	2015. 5. 30.
7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 수록 –	최은정	2015. 6. 10.
8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별책: 프로그램 안내]	황승태	2015. 6. 26.
9	효율적인 증거개시 · 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15. 6. 30.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0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손지영 김주석	2015. 6. 30.
11	영국의 양형기준제도 – 양형기준제도의 법령 및 현황 –	변지영	2015. 7. 13.
12	영국과 미국의 법관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재석	2015. 7. 17.
13	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 실무 개선 방안 연구 – 재판서 · 조서의 전자화, 법정녹음 시행을 중심으로 –	김형진	2015. 7. 24.
14	커뮤니케이션학에 기초한 바람직한 법정 소통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채연	2015. 7. 31.
15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 – 첨부: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 [시안] –	변지영	2015. 9. 14.
16	가사사건의 상담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정	2015. 11. 9.
1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이학인	2015. 11. 13.
18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장수영 이덕환	2015. 11. 25.
19	각국 법원모욕의 제재 방식에 관한 연구	하민경	2015. 11. 27.
20	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양시훈 최유경	2015. 12. 23.

▣ 2016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강성수	2016. 1. 13.
2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	계인국	2016. 1. 14.
3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이재석	2016. 1. 15.
4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박준선	2016. 2. 16.
5	동산공시제도 및 동산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16. 2. 25.
6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황승태	2016. 2. 26.
7	압수 · 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지영 김주석	2016. 3. 28.
8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형진 하민경	2016. 3. 28.
9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최은정 안문희	2016. 4. 4.
10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변지영	2016. 8. 26.
11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이제우	2016. 9. 8.
12	증인신문 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	김주석	2016. 9. 30.
13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하민경	2016. 10. 17.
14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김윤정 양시훈	2016. 10. 21.
15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김주경	2016. 10. 25.
16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	송현정	2016. 11. 18.

▣ 2017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민사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표현덕	2017. 1. 24.
2	대형 경제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홍진표	2017. 2. 23.
3	전자정보의 증거조사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강성수	2017. 2. 28.
4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철	2017. 3. 13.
5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태호 김정환	2017. 3. 30.
6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계인국	2017. 4. 28.
7	프랑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법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17. 5. 17.
8	북한의 신분 · 공민 ·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이제우	2017. 6. 20.
9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연구	조호성 김주완	2017. 8. 11.
10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증보판)	변지영	2017. 8. 30.
11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김윤정	2017. 9. 11.
12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홍진표	2017. 9. 15.
13	각국의 법관 다양화에 관한 연구	김주경	2017. 9. 19.
14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 방안	오세용 박원규 이덕환 장수영	2017. 9. 27.
15	미국 행정법판사제도에 관한 연구	변지영	2017. 11. 21.
16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이혜영 표현덕	2017. 12. 1.
17	미국의 증거배제신청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에서 Motion in Limine와 Motion to Suppress를 중심으로	송현정	2017. 12. 27.
18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오규성	2017. 12. 28.

▣ 2018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홍진표	2018. 2. 22.
2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하민경	2018. 3. 30.
3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김정환 박준선	2018. 4. 30.
4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18. 4. 30.
5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계인국	2018. 6. 15.
6	프랑스, 독일, 일본 상고심의 민사 판결서 작성 방식	하상익	2018. 6. 15
7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이종훈 표현덕	2018. 8. 31.
8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염호준	2018. 9. 20.
9	미국 연방파산관리인(U.S. Bankruptcy Administrator) 제도 연구	김현범 오세용 최유나	2018. 10. 10.
10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이종엽 김주경	2018. 10. 11.
11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모성준	2018. 11. 2.
12	[법원 인물사] 조진만 전 대법원장	김봉철 김대홍 양은상 최유나	2018. 11. 20.
13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	이제우 장지용	2018. 12. 26.
14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연구	오규성	2018. 12. 27.
15	아시아 · 태평양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 지역별 인권법원 설립 경과 중심으로 –	이혜영	2018. 12. 28.
16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한성수	2018. 12. 28.
17	미국 법관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외관을 중심으로	송현정	2018. 12. 31.

▣ 2019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에 관한 연구	이정은	2019. 1. 28.
2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19. 1. 30.
3	해사쟁송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변지영	2019. 2. 27.
4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하민경	2019. 2. 28.
5	외국인 인신구속시 영사 통보에 관한 연구	이선미	2019. 3. 29.
6	임기제공무원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사법부 임기제공무원을 중심으로 –	서현웅	2019. 6. 13.
7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이종훈	2019. 6. 19.
8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문선주 김윤정	2019. 7. 24.
9	인지제도 및 실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혜정	2019. 7. 29.
10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19. 8. 9.
11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오	2019. 8. 23.
1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이종엽	2019. 11. 6.
13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19. 11. 25.
14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선	2019. 12. 18.
15	중국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별책: 중국 인민법원 5개년 개혁요강 전문]	김현범	2019. 12. 27.
16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1) –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2) – 해외사례를 토대로 한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 규제방안 –	차성안	2019. 12. 31.
17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연구	송현정	2019. 12. 31.

▣ 2020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중심으로 –	이혜정	2020. 2. 19.
2	스위스 연방의회 제도에 관한 연구 – 입법과정 등을 중심으로 –	최용훈	2020. 2. 28.
3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이선미 박용철	2020. 3. 11.
4	미국 통합가정법원(Unified Family Court)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20. 3. 17.
5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	김효정 장지용	2020. 3. 20.
6	법적판단에 있어 인지적 오류와 극복방안	이종엽	2020. 3. 31.
7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과 과제	이혜영	2020. 3. 31.
8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정성민	2020. 4. 10.
9	대형 재난 발생 시 법원의 대응과 조치에 관한 연구	성대규	2020. 4. 27.
10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박우경	2020. 4. 29.
11	베트남 · 캄보디아 · 라오스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정호경	2020. 5. 14.
12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김신유	2020. 6. 18.
13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집행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와 간접강제제도를 중심으로 –	김경오	2020. 7. 21.
14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문선주	2020. 7. 24.
15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20. 9. 23.
16	독일 법관법에 관한 연구 – 직업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김봉철	2020. 11. 3.
17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백광균	2020. 12. 8.
18	영국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	이지민	2020. 12. 22.
19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송현정	2020. 12. 23.
20	법률서비스 보험제도 연구	이은빈	2020. 12. 31.
현안 1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정성민 백광균	2020. 11. 6.

▣ 2021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	김신유	2021. 2. 26.
2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박병민	2021. 3. 12.
3	공정하고 충실한 법원업무 실현을 위한 법원공무원 직급 · 직렬 구조 개편 방안	이학구	2021. 3. 18.
4	상고심 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및 재항고 제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강영재	2021. 3. 18.
5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정호경	2021. 3. 23.
6	전자소송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법원공무원의 인력운영 방안	박미정	2021. 3. 31.
7	체제 전환기의 국내 · 국제혼합 특별형사법원과 통일 한국에의 함의	이혜영	2021. 3. 31.
8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별책: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실무편람 (2019)]	이민형	2021. 4. 23.
9	도산사건의 실증적 연구와 법원의 역할 – 개인도산사건을 중심으로 –	김동현	2021. 4. 30.
10	법조일원화 시대의 법관전문화 방안	윤찬영	2021. 5. 11.
11	유럽연합(EU)의 통합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 지급명령 및 소액소송 절차를 중심으로 –	성대규	2021. 5. 14.
12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 · 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박기쁨	2021. 5. 24.
13	국제적 전자송달에 관한 연구	김효정	2021. 5. 31.
14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정책 연구	정채연	2021. 8. 26.
15	집행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 부동산 등 인도집행을 중심으로 –	나수경	2021. 9. 17.
16	행정재판과 법의 일반원칙 –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	박우경	2021. 9. 30.
17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 사용에 관한 연구 :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변화 모색	이상훈 정성민 백광균	2021. 10. 1.
18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21. 10. 18.
19	법관의 직무상 이해관계 충돌과 그 해소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와 관련 재판의 공정성 담보방안을 중심으로 –	김정환	2021. 10. 29.
20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심정희	2021. 10. 29.
21	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홍보람	2021. 12. 10.
현안 1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이재찬	2021. 10. 14.

▣ 2022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베트남 · 라오스 · 몽골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정호경	2022. 1. 10.
2	민사소송절차에서 비밀 보호에 관한 연구 – in camera 심리절차를 중심으로 –	박병민 이주연	2022. 1. 14.
3	각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에 관한 연구	강영재	2022. 2. 18.
4	공탁제도 및 공탁절차에 관한 개선방안	박미정	2022. 3. 4.
5	문서감정인 자격에 관한 개선방안	김주석	2022. 3. 14.
6	팬데믹 시대 재판의 대응과 과제	이은빈	2022. 3. 17.
7	법정녹음을 활용한 바람직한 재판의 운영 및 기록화 방안 – 녹음제도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이민형	2022. 3. 22.
8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김동현 이혜영	2022. 4. 14.
9	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정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찬영	2022. 5. 6.
10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 민사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	전휴재	2022. 5. 20.
11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 형사절차에서 증거수집 및 사용을 중심으로 –	이상훈	2022. 7. 15.
12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연구	이혜정	2022. 8. 5.
13	미국 연방사법센터(FJC)에 관한 연구	송현정	2022. 8. 16.
14	기일 전 증거개시(pre–trial discovery)로 인한 국제적 사법마찰의 해결에 관한 연구	김효정	2022. 8. 18.
15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지침에 관한 연구	박기쁨	2022. 8. 22.
16	사회보장사건의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현황과 개선방안	박우경	2022. 10. 31.
17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22. 10. 31.
18	싱가포르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22. 11. 3.
19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미정 이학구	2022. 11. 11.
20	재산명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현웅	2022. 12. 29.
현안 1	소권 남용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정승연	2022. 7. 8.
현안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정현희	2022. 12. 12.

▣ 2023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녀의 권리보장방안 – 협의이혼과 면접교섭을 중심으로 –	임종미	2023. 2. 10.
2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김윤선	2023. 2. 13.
3	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김주석	2023. 2. 28.
4	등기민원안내제도 개선방안 – 등기신청절차안내를 중심으로 –	신명훈	2023. 2. 28.
5	'혁신'과 '탈법'의 관점에서, 신산업 관련 행정형법 해석기준 연구	홍보람	2023. 3. 10.
6	민사건설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나라	2023. 3. 31.
7	법원의 압수물 보관 · 관리 개선방안	권경선	2023. 4. 21.
8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두얼	2023. 5. 19.
9	미국과 영국에서의 법관 임용 실태 및 근무 환경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진현섭	2023. 5. 30.
10	집행유예 양형요소로서 재범위험성 평가	권미연	2023. 6. 12.
11	형사법관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탁상진	2023. 6. 26.
12	경매절차의 개선방안 – 주택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 절차를 중심으로 –	이혜정	2023. 8. 14.
13	지방자치와 법원의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23. 11. 30.
14	일본 간이재판소에 관한 연구	서현웅	2023. 12. 26.
15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및 시위 금지 · 제한에 관한 연구 –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사건을 중심으로 –	송현정	2023. 12. 27.
16	벨기에 사법개혁과 법관임용제도	서용성 이상훈	2023. 12. 28.
17	인터넷에 의한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김효정	2023. 12. 28.
18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식	2023. 12. 29.
19	국제적 사법교류의 현황과 과제	이혜영	2023. 12. 30.
20	프랑스 형사배심제에 관한 연구	박우경	2023. 12. 30.
21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 방식의 개선방안	정승연	2023. 12. 30.

▣ 2024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법원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	김혜진	2024. 2. 22.
2	인간 유전자 편집 규제에 관한 연구	김윤선	2024. 2. 26.
3	공탁금 보관은행 제도의 개선 방안	정현희	2024. 2. 28.
4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연구	김종근	2024. 2. 29.
5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한나라	2024. 2. 29.
6	법원일반직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방안	이종구	2024. 3. 11.
7	형사재심의 현황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권경선	2024. 4. 24.
8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실시요건 개선을 중심으로 –	임성민	2024. 5. 20.
9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 민 · 형사 사실심을 중심으로 –	이영창	2024. 5. 21.
10	변호사강제주의에 관한 연구	진현섭	2024. 6. 3.
11	특수법인 도산절차에 관한 연구 –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관한 실무를 중심으로 –	탁상진	2024. 6. 28.
12	형사절차 내 피해자 보호 · 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	조미선	2024. 7. 8.
13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집단적 피해구제절차 개선방안	권미연	2024. 8. 27.
14	스마트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24. 9. 9.
15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방안	안원주	2024. 9. 10.
16	인공지능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이론 연구	허성욱	2024. 12. 11.
17	민간의 사법참여에 관한 연구	유영국	2024. 12. 26.
18	재개발 · 재건축의 이해와 부동산 경매 – 도시정비법을 중심으로 –	이종구	2024. 12. 27.
19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 [별책: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	권형관	2024. 12. 31.
20	형사소송에서의 송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전문식	2024. 12. 31.

▣ 2025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피고인 불출석 재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대석	2025. 3. 5.
2	기술 유출 범죄의 심리방식과 양형에 관한 연구	김종근	2025. 3. 5.
3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이혜림	2025. 4. 23.
4	독일 사회법원에 관한 연구 – 사회법원 소송절차의 특징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봉철	2025. 5. 14.
5	강제입원제도와 사법적 통제	신권철	2025. 5. 20.
6	법원 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류미리	2025. 5. 27.
7	소년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조미선	2025. 7. 10.
8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박진영	2025. 7. 11.
9	고령자의 사법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임성민	2025. 7. 17.
10	유아인도집행에 관한 연구 – 헤이그아동탈취법상 아동반환사건과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사건을 중심으로 –	심병준	2025. 7. 23.
11	장애인차별금지소송에 관한 연구	박우경	2025. 9. 25.
12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영창 홍보람	2025. 9. 26.
13	선거소송의 심급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박영욱	2025. 12. 29.
현안 1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방안 – 복잡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	남승민	2025. 4. 7.
현안 2	주식매수가액 공탁제도의 개선방안	김효정	2025. 4. 8.
현안 3	감정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연구	이정현	2025. 4. 11.
현안 4	몰수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유인규	2025. 8. 20.
현안 5	소송사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독촉절차와 무변론판결을 중심으로 –	안원주	2025. 9. 10.
현안 6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살인범죄를 중심으로	홍보람	2025. 12. 12.
현안 7	형사공탁제도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형사특례공탁을 중심으로 –	서용성	2025. 12. 30.

▣ 2026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사법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및 근무지원 개선방안	김미란	2026. 1. 29.
2	유언증서 등록 · 보관제도에 관한 연구	정현준	2026. 1. 30.
3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질 및 귀속주체 – 가상자산의 물건성과 지배 개념을 중심으로 –	이현호	2026. 2. 5.
4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보수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김영하	2026. 2. 12.
5	도산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	설동윤	2026. 4. 30.
6	각국의 사법권 독립 침해에 관한 연구 –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	이혜림	2026. 5. 18.
7	비송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비송사건절차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남승민	2026. 5. 27.
8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우용	2026. 6. 30.
9	유해물질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인과관계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홍보람	2026. 7. 16.
10	준거법의 지정, 조사 및 해석 · 적용에 관한 연구	김효정	2026. 7. 23.
11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26. 7. 24.
현안 1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에 관한 연구	윤동현	2026. 3. 10.
현안 2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방법과 범위에 관한 연구	이정현	2026. 3. 19.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26년 7월 13일 인쇄
2026년 7월 24일 발행

발 행 처 사법정책연구원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TEL 031-920-3583

인 쇄 처 감디자인
TEL 031-939-3300

〈비매품〉

1. 본 연구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윤리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2.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s://jpri.scourt.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BN 979-11-6168-416-1 95360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사법정책연구원

104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본관동 4, 9, 10층
대표전화 : 031)920-3583 E-mail : jpriga100@scourt.go.kr

비매품
95360
9 791161 684161
ISBN 979-11-6168-416-1